

**2019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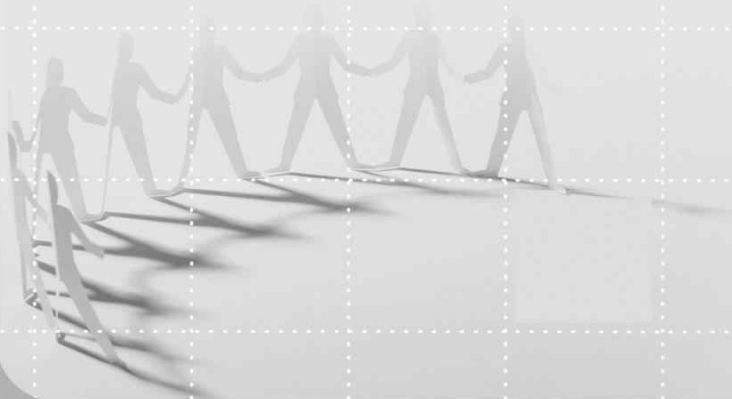
## 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관

###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생성 및 발전 / 3

제1절 산재보험제도 생성 .....	3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연혁 .....	5
제3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연혁 .....	17
제4절 주요 사업 개요 .....	24
1. 적용·징수 .....	24
2. 요양·보상 .....	27
3. 재활·복지 .....	31

### 제2장 산재보험제도 관리조직 / 35

제1절 산재보험 운영기관 .....	35
1. 고용노동부 .....	35
2. 근로복지공단 .....	37



제2절 권리구제기관 .....	40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근로복지공단) .....	40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	41
제3절 산재보험 심의기관 .....	43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	43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	44

### 제3장 산재보험 시설 / 47

제1절 병원 시설 .....	49
1. 인천병원 .....	50
2. 안산병원 .....	51
3. 창원병원 .....	54
4. 대구병원 .....	56
5. 순천병원 .....	57
6. 대전병원 .....	59
7. 태백병원 .....	61
8. 동해병원 .....	63
9. 정선병원 .....	65
10. 경기요양병원 .....	67
11. 서울의원(외래재활센터) .....	68
12. 대전의원(근로자건강센터) .....	69

# Contents

제2절	케어센터	69
1.	경기요양병원 부설 케어센터	69
2.	대백병원 부설 케어센터	70
제3절	연구기관	71
1.	근로복지연구원	71
2.	재활공학연구소	72
3.	직업환경연구원	75
제4절	교육기관	77
1.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77



## 제2편

# 산재보험제도 운영

## 제1장 산재보험 적용 /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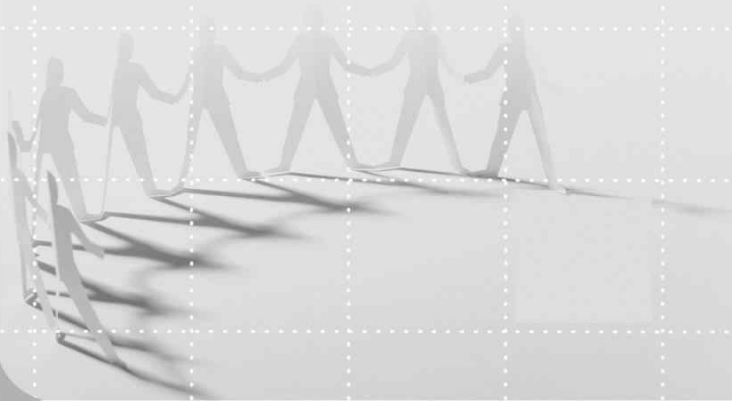
제1절 산재보험 적용 및 가입 .....	81
1. 당연적용 .....	81
2. 임의가입 .....	85
제2절 '19년 주요 추진 실적 .....	89

## 제2장 보험료 징수 / 91

제1절 산재보험료율 .....	91
1.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92
2. 개별실적요율 .....	94
3. 산재예방요율 .....	95

# Contents

제2절 보험료 징수제도 .....	96
1. 보험료 신고·납부(징수)제도 개요(~'10년) .....	96
2. 보험료 부과고지제도 개요('11년~) .....	97
3. 보험료 공제제도 .....	100
4. 보험료 경감제도 .....	100
5. 가산금 및 연체금 .....	101
6. 급여징수제도 .....	102
7. 보험사무대행기관 .....	103
제3절 '19년 주요 추진 실적 .....	105
제3장 요양 및 보상 / 107	
제1절 산재보험급여 .....	107
1. 요양급여 .....	107
2. 휴업급여 .....	111
3. 장해급여 .....	113
4. 상병보상연금 .....	116
5. 유족급여 .....	118
6. 장해·유족 특별급여 .....	121



7. 장의비 .....	121
8. 간병급여 .....	122
9. 직업재활급여 .....	123
10. 진폐연금 .....	124
제2절 보험급여 산정 및 지급 특례 .....	127
1.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 .....	127
2. 최저임금액 적용 .....	129
3.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산정 특례 .....	130
4. 평균임금 증감제도 .....	131
5. 진폐증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	132
6. 중·소기업 사업주의 평균 임금 .....	133
제3절 요양급여 산정 .....	135
1. 진료비·약제비 .....	136
2. 요양급여 산정기준 .....	140
3. 간병료 .....	143
제4절 요양·보상관리 .....	145
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	145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	147



# Contents

3. 진폐재해자 요양·보상 관리 .....	150
4.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당연지정제 .....	151
5. 의료기관 평가 .....	153
6.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제 .....	155
7.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 운영 .....	157
<b>제5절 '19년 주요 추진 실적 .....</b>	<b>159</b>
1. 업무상질병 업무처리 지침 제정 및 개정 .....	159
2. 재해조사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	160
3.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비 부담 완화방안 합의 .....	160
4. 장애등급 판정체계 개선 추진 .....	161
5.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강화 .....	161
6. 보험급여 수급권 및 지급서비스 강화 .....	162
<b>제4장 재활·복지사업 / 161</b>	
<b>제1절 재활 사업 .....</b>	<b>163</b>
1. 맞춤형통합서비스 .....	164
2.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	166
3. 재활스포츠 지원 .....	167



4. 심리상담서비스 .....	168
5. 희망찾기프로그램 .....	169
6. 사회적응프로그램 .....	171
7. 취미활동반 지원 .....	172
8. 산재노동자 멘토링프로그램 .....	173
9. 직업훈련 지원 .....	174
10. 직장복귀지원 .....	178
11.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	183
12. 산재근로자 재취업서비스 지원 .....	184
제2절 산재복지사업 .....	187
1.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187
2. 산재장학사업 .....	188
3.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	190
제3절 '19년 주요 추진 실적 .....	191
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상승 .....	191
2.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92
3. 공공·민간 취업전문기관연계 강화로 산재근로자 재취업 지원 내실화	189

# Contents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 / 193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업 내용 .....	193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개요 .....	193
2. 기금사업 내용 .....	194
제2절 '19년 주요 추진 실적 .....	196
1. 수입·지출 결산 .....	196
2. 재무 결산 현황 .....	199
3. 법정책임준비금 확보 .....	200

## 제6장 행정구제제도 / 203

제1절 산재보험 관련 행정구제 절차 .....	204
1. 심사와 재심사 청구 .....	204
2. 행정소송 .....	207



### 제3편 산재보험 통계

#### 통계 이용자를 위한 일러두기 / 209

\* 산재보험 실적분석 통계용어 해설 ..... 211

#### 제1장 적 용 / 213

1-1. 사업종류별(중분류) 적용 현황 ..... 216  
 1-2. 연도별·사업종류별(대분류) 적용 현황 ..... 220  
 1-3. 연도별·사업규모별 적용 현황 ..... 221

#### 제2장 징 수 / 220

2-1. 사업종류별(중분류) 징수 현황 ..... 223  
 2-2. 계정별·사업종류별(중분류) 징수 현황 ..... 227  
 2-3. 연도별·사업종류별(대분류) 징수 현황 ..... 233  
 2-4. 연도별·사업규모별 징수 현황 .....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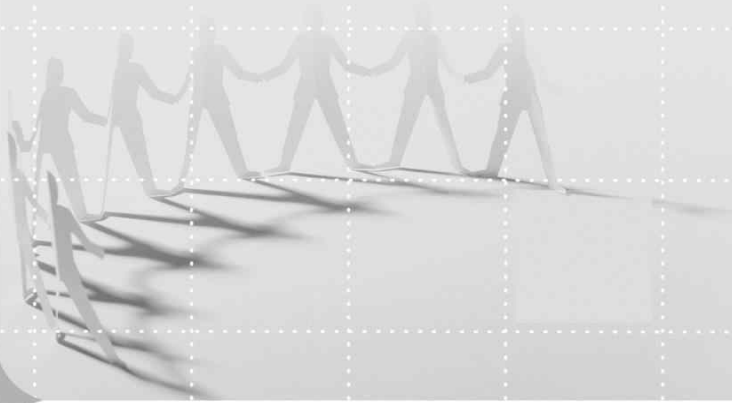
# Contents

## 제3장 요약 / 241

3-1. 의료기관등급별 요양환자 현황 .....	243
3-2. 연도별·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	244
3-3. 연도별 진폐 요양환자 현황 .....	245
3-4. 의료기관등급별 진료비(세부 항목) 지급 현황 .....	246
3-5. 연도별·의료기관등급별 진료비 지급 현황 .....	248
3-6. 이종요양비 지급 현황 .....	249

## 제4장 보 상 / 251

4-1. 사업종류별(중분류) 보험급여 지급 현황 .....	252
4-2. 사업종류별(중분류)·급여종류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	256
4-3.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	268
4-4. 연도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	280
4-5. 연도별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 지급 현황 .....	282
4-6. 연도별·급여종류별 지급 현황 .....	290
4-7. 연도별·사업종류별(대분류) 지급 현황 .....	298



4-8. 연도별·사업규모별 지급 현황 .....	306
4-9. 외국인근로자 보험급여 지급 현황 .....	308
4-10. 주요 질병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	310
4-11.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	311
4-12.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 현황 .....	312
4-13. 사업종류별(중분류)·연금종류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	316
4-14. 연도별·급여종류별 연금 지급 현황 .....	322
4-15. 연도별·장해등급별(1-14급) 장해급여 지급 현황 .....	324
4-16. 연도별·장해등급별(1-7급)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	326
4-17. 연도별 유족급여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	328
4-18. 성별·연령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	330
4-19. 성별·사업종류별(중분류) 보험급여 지급현황 .....	336
4-20. 연령별·사업종류별(대분류) 보험급여 지급현황 .....	342

## 제5장 산재기금 재정수지 / 345

5-1. 연도별 산재기금 수입의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10년) ..	346
5-1-1. 연도별 산재기금 수입의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11년~'19년)	350

# Contents

5-2. 산재기금 예산항목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10년) .....	352
5-2-1. 산재기금 예산항목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11년~'18)	364
5-3. 연도별 산재기금 수지 현황 .....	369

## 제6장 행정구제 / 373

6-1. 연도별 심사청구 결정 현황 .....	374
6-2. 연도별 재심사청구 재결 현황 .....	376
6-3. 연도별 소송 현황 .....	378

## 제7장 산재보험 병원시설 / 382

7-1. 병원별·요양기간별 환자 현황 .....	384
7-2. 연도별·병원별 환자 진료 현황(1일 평균) .....	385
7-3. 연도별 진폐 진료 현황 .....	389
7-3-1.진폐정밀진단 실시 현황(입원 실인원) .....	389
7-3-2.진폐진료 현황(입원환자) .....	389
7-4. 연도별·병원별 작업환경측정 실시 현황 .....	390
7-5.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현황 .....	391
7-6. 연도별 직업재활훈련사업 실시 현황 .....	393



## 부 록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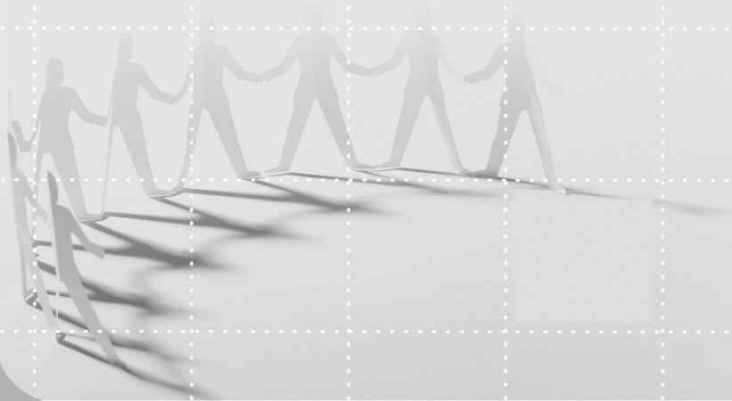
1. 산재보험법령 개정 연혁 .....	397
2. 보험료징수법령 개정 연혁 .....	420
3. 산재보험 사업종류별·규모별 적용 확대 연혁 .....	427
4. 산재보험료율 변동 현황 .....	432
5.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 연혁 .....	442
6. 산재보험 정책연구용역 현황 .....	450
7. 산재보험 관련 고시 현황 .....	474
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479
9. 주요 외국 산재보험제도 현황 .....	531
10. (구)한국산재의료원 연혁 .....	534
11.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535



# Contents

## 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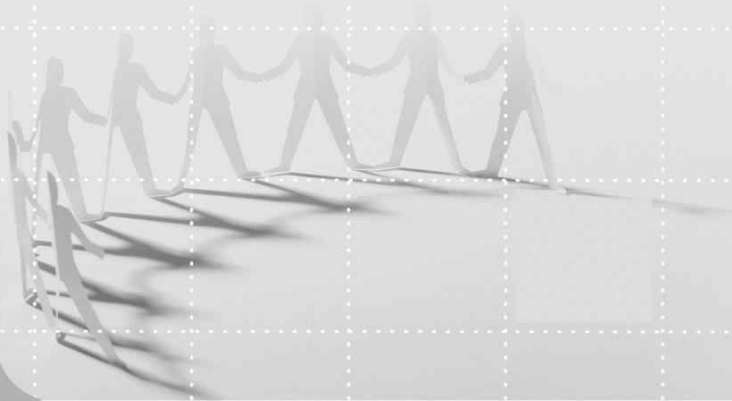
<표 1-1-1>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	30
<표 1-1-2> 재활·복지사업 체계 .....	33
<표 1-3-1> 산재보험 시설 현황 .....	48
<표 2-1-1>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현황 .....	82
<표 2-1-2> 사업종류별 당연적용 대상 .....	83
<표 2-1-3> 사업종류별 당연적용 현황 .....	83
<표 2-1-4>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 .....	86
<표 2-1-5> 해외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신규가입 현황 .....	88
<표 2-2-1> '1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93
<표 2-2-2>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현황 .....	94
<표 2-2-3> 사업규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 .....	95
<표 2-2-4> 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인하율 .....	95
<표 2-2-5> 산재예방요율 적용현황 .....	95
<표 2-2-6>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 .....	99
<표 2-2-7>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 .....	99



<표 2-2-8> 산재보험료 공제 현황 .....	100
<표 2-2-9> 산재보험료 가산금 징수 현황 .....	101
<표 2-2-10> 산재보험료 연체금 징수 현황 .....	102
<표 2-2-11> 산재보험급여 징수 현황 .....	103
<표 2-2-12> 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 현황 .....	104
<표 2-3-1> 산재보험 요양 환자 현황 .....	110
<표 2-3-2> 요양급여 지급 현황 .....	110
<표 2-3-3> 휴업급여 지급 현황 .....	112
<표 2-3-4> 장해급여 지급 기준 .....	114
<표 2-3-5> 장해급여 지급 현황 .....	116
<표 2-3-6> 상병보상연금 지급 현황 .....	118
<표 2-3-7> 유족급여 지급 기준 .....	119
<표 2-3-8> 유족급여 지급 현황 .....	120
<표 2-3-9> 장의비 고시금액('19년 적용금액) .....	122
<표 2-3-10> 장의비 지급 현황 .....	122
<표 2-3-11> 간병급여 지급 현황 .....	123
<표 2-3-12> 직업재활급여 지급 현황 .....	124
<표 2-3-13> 진폐장해연금 지급기준 .....	125
<표 2-3-14> 진폐연금 지급 현황 .....	126
<표 2-3-15> 최저·최고 보상기준 고시금액 .....	128

# Contents

<표 2-3-16> 최저·최고 보상기준금액 지급 현황 .....	128
<표 2-3-17> 최저임금액 고시금액 .....	129
<표 2-3-18> 최저임금액이 적용된 보험급여 지급 현황 .....	129
<표 2-3-19>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 현황 .....	130
<표 2-3-20> 평균임금 증감제 관련 고시금액 .....	131
<표 2-3-21>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된 보험급여 지급 현황 .....	132
<표 2-3-22> 중·소기업 사업주 평균임금 고시 금액 .....	133
<표 2-3-23>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 현황 .....	134
<표 2-3-24> 요양급여 종류별 지급 현황 .....	135
<표 2-3-25> 의료기관 등급별 행위진료 가산율 .....	136
<표 2-3-26> 진료비·약제비 관련 행정구제 신청 현황('18.1.1~12.31) ...	137
<표 2-3-27> 진료비 현지조사 현황 .....	139
<표 2-3-28> 진료비 행정처분 및 처벌 현황 .....	139
<표 2-3-29> 건강보험수가 내용과 다른 산재보험 수가 항목 .....	141
<표 2-3-30> 건강보험수가 외 산재보험에서 비용이 인정되는 항목 .....	142
<표 2-3-31> 간병료 고시금액 .....	144
<표 2-3-32> 간병료 지급현황 .....	144
<표 2-3-33> '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149
<표 2-3-34> '19년 지역별 질병별 업무상 질병 판정 현황 .....	149
<표 2-3-35> 진폐장해판정자 현황 .....	150



<표 2-3-36> 요양기관별 진폐환자 현황('19년) .....	151
<표 2-3-37> 진폐 합병증별 요양승인 현황('19년) .....	151
<표 2-3-38> 산재보험 의료기관 현황 .....	152
<표 2-3-39> 6대 병원의 산재 요양환자 현황('19년) .....	153
<표 2-3-40> 요양기관에 대한 만족도 .....	154
<표 2-3-41> '19년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제재조치 .....	154
<표 2-3-42> 평가도구 및 인증기준 .....	156
<표 2-3-43> 부정수급 적발실적 목표 초과 달성 .....	158
<표 2-3-44> 부정수급 조사현황 .....	158
<표 2-3-45>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	158
<표 2-4-1>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현황 .....	165
<표 2-4-2> 사회복지기간 및 직업복귀율 현황 .....	165
<표 2-4-3>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진료비, 약제비) 지원 현황 .....	167
<표 2-4-4> 신규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의 재요양률 현황 .....	167
<표 2-4-5> 재활스포츠 지원 현황 .....	168
<표 2-4-6>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현황 .....	168
<표 2-4-7> 희망찾기프로그램 회기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 .....	169
<표 2-4-8> 희망찾기프로그램 수행 현황 .....	170
<표 2-4-9>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 현황 .....	172
<표 2-4-10> 취미활동반 지원 현황 .....	173

# Contents

<표 2-4-11> 멘토링프로그램 지원 현황 .....	173
<표 2-4-12> 직업훈련지원 변경 내용 .....	175
<표 2-4-13> 직업훈련비용·수당 지원 현황 .....	178
<표 2-4-14> 연도별·성별 원직복귀율 현황 .....	178
<표 2-4-15>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현황 .....	181
<표 2-4-16> 대체인력 지원사업 현황 .....	182
<표 2-4-17>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지원 현황 .....	182
<표 2-4-18> 창업지원(점포임대) 현황 .....	184
<표 2-4-19> 연도별 재취업 서비스 지원 현황 .....	184
<표 2-4-20> 생활안정자금 용자 기준 .....	187
<표 2-4-21> 생활안정자금 용자 현황 .....	188
<표 2-4-22> 장학금 지급 현황 .....	189
<표 2-4-23> 대학학자금 용자 현황 .....	190
<표 2-4-24> 사회복귀기간 및 직업복귀율 현황 .....	191
<표 2-4-25> 재취업서비스 제공 현황('19년) .....	192
<표 2-5-1> 수입·지출 계획 및 결산 현황('18년) .....	196
<표 2-5-2> 산재기금 수입 결산 현황 .....	197
<표 2-5-3> 산재기금 지출 결산 현황 .....	198
<표 2-5-4> 재무 결산 현황 .....	199
<표 2-5-5> 산재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	201
<표 2-6-1> 심사청구 결정 현황 .....	205
<표 2-6-2> 재심사청구 재결 현황 .....	206
<표 2-6-3> 행정소송 판결 현황 .....	207



## 그림 목 차

<그림 1-1-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 추이 .....	25
<그림 1-1-2> 산재보험료 징수액 추이 .....	26
<그림 1-1-3>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추이 .....	31
<그림 1-2-1> 산재보험 관장 고용노동부 기구표 .....	36
<그림 1-2-2> 근로복지공단 본부 기구표 .....	39
<그림 1-2-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조직도 .....	41
<그림 1-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조직도 .....	42
<그림 1-2-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조직도 .....	45
<그림 1-3-1> 인천병원 조직도 .....	50
<그림 1-3-2> 안산병원 조직도 .....	53
<그림 1-3-3> 창원병원 조직도 .....	55
<그림 1-3-4> 대구병원 조직도 .....	56
<그림 1-3-5> 순천병원 조직도 .....	58
<그림 1-3-6> 대전병원 조직도 .....	60
<그림 1-3-7> 태백병원 조직도 .....	62

# Contents

<그림 1-3-8> 동해병원 조직도 .....	64
<그림 1-3-9> 정선병원 조직도 .....	66
<그림 1-3-10> 경기요양병원 조직도 .....	67
<그림 1-3-11> 근로복지연구원 조직도 .....	71
<그림 1-3-12> 재활공학연구소 조직도 .....	74
<그림 1-3-13> 직업환경연구원 조직도 .....	76
<그림 1-3-14> 인재개발원 조직도 .....	77
<그림 2-3-1> 권역별 인증 의료기관 현황 .....	155
<그림 2-3-2>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156
<그림 2-3-3>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및 신고 홍보 사례 .....	158
<그림 2-5-1> 산재기금 사업체계도 .....	195
<그림 2-6-1>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도 .....	203





# 제 1 편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관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생성 및 발전

제2장 산재보험제도 관리조직

제3장 산재보험 시설





##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sup>1)</sup>의 생성 및 발전

### 제1절 산재보험제도 생성

우리나라는 19세기 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이후 광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사업자의 자의적 규율·판단에 의하여 보상수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꾸준히 늘어나자, 일제하인 '38년 「조선 광업령」이 개정되면서 「조선광부 부조규칙」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광산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었다.

「조선광부 부조규칙」은 광업권자로 하여금 광부의 업무상 부상·질병·폐질·사망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으며, 당시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부조 제도로서 미군정 시대까지 유지되다가 '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그간 연혁을 살펴보면 '45.8.15.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하에서 노동부가 설치되고, 각 도에 노동국을 두어 「근로자 단결권에 대한 법령」,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최고노동시간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비록 재해보상에 관한 구체적 법령은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단체협약에 의한 재해보상을 정책적으로 장려하였다.

1) 이하 본서에서는 모두 약칭인 '산재보험제도'로 표기하였다.

'48.7.17. 제정된 헌법에서는 제17조에 근로의 권리, 제18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과 이익분배 균점권 등을 규정하고 제19조에 근로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규정하였으나, 미군정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재해보상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중인 '53.5.10. 부산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함께 개별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생활보장을 위한 종합 입법으로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는데,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재해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는 요양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 신체의 장애에 대해 장애등급(제1~10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0~1,000일분의 장애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 및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재해보상을 규정한 것은 아주 획기적이었으나 사업주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대형사고가 나면 복구비, 보상비 등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 재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일시적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 30조로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초안을 만들어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10.8.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고 '63.11.5. 법안 공포 후 '64.7.1.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산재보험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보험제도가 생성되었고, 그 후 50년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을 담당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sup>2)</sup> 개정 연혁

### 1. 제정 법률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체계를 달리하는 산재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라 '63.11.5. 제정, '64.7.1.부터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보험 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당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광업과 제조업으로 하되, 도입 첫해인 '64년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토록 하였다.

둘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11일 이상 요양 필요시 지급)·휴업급여(평균 임금의 60% 지급)·장해급여(장해등급 제1급~제10급에게 1,000일분~50일분 지급)·유족급여(1,000일분 지급)·장의비(90일분 지급) 및 일시급여(1,000일분 지급)<sup>3)</sup> 총 6가지를 두었다.

넷째,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산재보험법은 42차(타법에 의한 개정 포함)에 걸쳐 개정되면서 보험수혜자 확대, 적절한 보상 수준 정립, 보험급여 종류 확대 등을 이루어왔다.

2) 이하 본서에서는 모두 약칭인 '산재보험법'로 표기하였다.

3) '64년 산재보험법 도입 당시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일시급여를 행하고 모든 보험급여를 종료하는 일시보상제도를 시행하였으나, '82년 일시보상제도를 폐지하고 상병보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64년 법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에만 적용하던 산재보험을 '00년부터는 농·임·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2018년 7월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되었으며, 일반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법 제정 당시 1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하던 것을 '82년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였으며, 보험급여 종류도 처음에는 6가지로 출발하였으나, '00년에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급여를, '08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사회·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

## 2. 개정(주요내용) 연혁

### 가. 제1차 개정('70.12.31. 법률 제2271호)

'70.12.31. 공포되고 '71.1.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급여는 8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장해등급을 제1급~제14급 체계로 개편하고 급여수준도 1,340일분~50일분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제1급~제3급의 장해급여(240일분~188일분) 및 유족급여(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유족 1인당 100분의 5 추가)에 선택적 연금제를 도입하였다.

넷째, 일시급여는 요양 2년 경과 시 1,340일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71.11.17. 개정·시행된 대통령령은 '72.1.1.부터 상시근로자를 3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나. 제5차 개정('77.12.19. 법률 제3026호)

'77.12.19. 공포·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보상기준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제1급~제3급(279일분~219일분)의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유족 1인당 100분의 5 추가) 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다. 제7차 개정('81.12.17. 법률 제3467호)

'81.12.17. 공포되고, '82.1.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 인정하였다.

둘째, 제1급~제3급의 장해보상연금 수준(313일분~245일분) 및 유족보상연금 수준(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유족 1인당 100분의 5 추가)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등급 제4급~제7급에 대해서 선택적 연금제(213일분~131일분)를 신설하였다.

'82.6.14. 개정·시행된 대통령령은 '82.7.1.부터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제8차 개정('82.12.31. 법률 제3631호)

'82.12.31. 공포되고, '83.1.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병보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일시급여 제도를 폐지하였다.

셋째, 장애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였다.

마. 제10차 개정('86.5.9. 법률 제3818호)

'86.5.9. 공포되고, '86.7.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보험사업 목적에 재해예방사업과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다.

둘째, 개별실적요율의 증감 폭을 30%에서 40%로 확대하였다.



'87.5.15. 공포·시행된 대통령령은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바. 제11차 개정('89.4.1. 법률 제4111호)

'89.4.1. 공포·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휴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인상하였다.

셋째, 장해보상일시금은 10%, 연금은 5% 인상하고 제1급~제3급의 경우 연금을 지급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넷째, 유족보상일시금을 인상(1,000일본→1,300일본)하였다.

다섯째, 장의비를 인상(90일본→120일본)하였고, 상병보상연금 수준도 5% 인상하였다.

사. 제13차 개정('94.12.22. 법률 제4826호)

'94.12.22. 공포되고, '95.5.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였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사업을 위탁하였다.

아. 제18차 개정('99.12.31. 법률 제6100호)

'99.12.31. 공포되고 '00.7.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보상기준금액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65세 이상 고령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5%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신 반액일시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간병급여를 신설하였다.

여섯째, 산재보험사업의 목적에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추가하였다.

자. 제26차 개정('07.12.14. 법률 제8694호. '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 '08.7.1. 노동부령 제304호)

그동안 법령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보상수준·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각계로부터 신속 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라는 측면과 보험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제기된 다양한 비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04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05년 말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나, 노동계 및 산재 단체의 반발 등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협의를 위해 '06.5.4.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형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06.5.23. 노사정 각 3인과 공익 8인(위원장 포함) 등 총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어 11월 말까지 6개월 간, 40여회의 실무회의, 간사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많은 진통과 격론 끝에 '06.12.13. 마침내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5개 분야, 42개 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중 산재보험법령 개정, 운영개선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은 재정·징수 분야의 책임준비금제도 개선 등 5개 과제 10개 항목, 요양·재활 분야의 요양신청제도 개선 등 6개 과제 16개 항목, 보험급여체계 분야의 휴업급여제도 개선 등 8개 과제 14개 항목, 관리·운영체계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등 5개 과제 10개 항목 등 50개 항목이었다.

그리고 논의 기간과 의제 성격을 고려하여 노조전임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등 9개 항목은 별도로 후속 논의키로 하였고, 출퇴근재해, 장해평가기준 등 12개 항목은 중장



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9개 항목이었다.

위와 같이 노사정위원회에서 '06.12.13. 합의·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마련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07.12.14. 공포 '08.7.1.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르도록 증감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셋째,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였다.

넷째,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우수한 의료기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섯째,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 취업 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해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함으로써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급제, 장애등급은 장애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애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위해 관절의 기능장애, 신경계통의 장애 등 장애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장애를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종결 후 장애급여를 받은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장애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객관성·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열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차차기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열한째, '00.7.1. 이전에 장애급여를 수령한 자 중 실제 간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00.7.1. 도입된 간병급여 제도상의 지급대상을 '치료종결되어 장애급여를 받은 자'에서 '00.7.1. 이전 장애급여를 수령한 자로 확대하여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차. 제30차 개정('09.1.7. 법률 제9338호)

'09.1.7. 공포·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에 상관없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여 왔으나,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 제31차 개정('09.10.9. 법률 제9794호)

'09.10.9. 공포되고, '10.4.10.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산재예방 및 보상 관련사항 심의에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타. 제32차 개정('10.1.27. 법률 제9988호)

'10.1.27. 공포·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통합됨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동 기관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이사장, 상임이사,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노사단체 및 임원추천위원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며,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로 하였다.

셋째, 허위·부정으로 진단·증명하여 지정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금지기간을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넷째, 상병보상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추가하고, 재요양 기간 중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지급 기준을 정하였다.

다섯째, 직업훈련 조기실시 촉진을 위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직업훈련 대상자에 포함하고, 훈련대상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요건을 개선하여 사업주가 다른 법률(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토록 하였다.

일곱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산재보험 의료기관·약국·보험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권 등 각종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다.

여덟째, 현재의 정원으로는 일부 전문분야 외에 복수의 다양한 의학 전문가 위원 확보가 어렵고,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세분화하여 진료하는 의료계 추세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수(60명→90명) 및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위원 수(50명→70명)를 확대하였다.

#### 파. 제34차 개정('10.5.20. 법률 제10305호)

'10.5.20. 공포되고, '10.11.2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둘째,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 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셋째,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 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넷째,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진폐판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섯째,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절한 요양을 제공하도록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및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 하여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를 정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 하였다.

여섯째,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곱째,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법령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 제37차 개정('12.12.18. 법률 제11569호)

'12.12.18. 공포·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편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였다.

거. 제37차 개정('15.1.20. 법률 제13045호)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 사업에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을 추가하였다.

너. 제39차 개정('16.12.27. 법률 제14499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였다.

더. 제40차 개정('18.1.1. 법률 제14933호)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외에도 실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재요양 이후 장애상태 악화로 장애연금 대상이 된 자의 소득단절 해소를 위해 이미 지급한 장애일시금을 조정함에 있어 해당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러. 제41차 개정('18.12.13. 법률 제15665호)

'18.6.12. 공포되고, '18.12.13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변경하였다.

둘째,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하였다.

셋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하였다.

넷째,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현행 19세 미만인 자녀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다섯째,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201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제도가 도입, 통합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금 부담기준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고, 징수업무 비율과 출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여덟째,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증원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면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홉째,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산재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였다.

열째,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들이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험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며. 제42차 개정('19.7.16. 법률 제16273호)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제3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sup>4)</sup> 개정 연혁

## 1. 제정 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64년에,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95년에 도입되었고, 이들 보험급여 업무는 별도의 체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사한 체계로 각각 운영<sup>5)</sup>하고 있어 행정의 비능률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별도의 법(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산재보험의 징수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보험료징수법」을 제정(법률 제7047호, '03.12.31.)하였으며, '05.1.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통합된 법률에 의해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하였고, 둘째, 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 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연체금 기산 시기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미납 발생 경우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넷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대상을 종전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에서 개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이하 본 서에서는 모두 약칭인 ‘보험료징수법’으로 표기하였다.

5) '99.10.1.부터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되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징수업무를 같이 수행해 오고 있다.



## 2. 개정(주요내용) 연혁

보험료징수법은 시행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26차(타법에 의한 개정 포함)에 걸쳐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령(타법 개정 제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차 개정('05.12.7. 법률 제7706호)

'05.12.7.(일부개정) 개정·공포, '06.1.1. 시행된 법령은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이 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통합되고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정하였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를 규정하였다.

### 나. 3차 개정('06.12.28. 법률 제8117호)

'06.12.28. 개정·공포, '07.3.29. 시행된 법령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건설회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국내 건설사가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경우,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둘째,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확정보험료의 과소 신고로 사업주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까지만 소급징수하고 그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토록 하였다.

넷째,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및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무역을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2년 이상 동안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업주가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여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 이 반환금을 사업주가 미납하고 있는 보험료 및 징수금(연체금·가산금 등) 등에 충당하는 우선순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과 관련되는 보험의 미납·체납 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산재보험 급여액의 징수금, 보험료의 순위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중·소규모 건설업의 정산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분할 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 다. 6차 개정('07.12.27. 법률 제8812호)

'06.12.13.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산재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07.12.27. 개정·공포, '08.7.1. 시행된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 12월 말에 고시하는 체제는 기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하였다.

둘째, 업종별 편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위험부담의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특정 사업종류의 최고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산재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게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11차 개정('09.12.30. 법률 제9896호)

'09.12.30. 개정·공포, '11.1.1. 시행된 법령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 총액에서 보수로 변경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대 사회보험의 도입과정에서 제도 간 상호 연계 없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보험가입자가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 기준인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하였다.

둘째,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를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500만원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한 자와 1년에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마. 12차 개정('10.1.27. 법률 제9989호)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제로 인한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수행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채납관리)를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통일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은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 납부방식은 자진신고납부(연)에서 월별 부과지로 각각 변경하였다.

#### 바. 18차 개정('11.7.21. 법률 제10894호)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 사. 20차 개정('12.2.1. 법률 제11269호)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산정 단위를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장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매년 2월 말에서 매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였다.

아. 22차 개정('13.6.4. 법률 제11863호)

산업현장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하는 산재예방요율제도를 신설하였다.

자. 23차 개정('14.3.24. 법률 제12526호)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지방세 등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허용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하였다.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 소액이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며, 미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타 사회보험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한편, 보험사무 대행업무 수행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세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 등이 수행하는 보험사무 대행을 개인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차. 24차 개정('16.12.27. 법률 제14495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적용되던 이용한도액<sup>6)</sup>을 폐지하여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던 사업주에 대한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적용되던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하였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 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보험료를 체납할 때 부과되던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월 단위 연체금 산정에서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연체금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였다.<sup>7)</sup>

6) 자진신고사업장은 1억 2천만원, 부과지사업장은 월 1천만원

7) 관련규정인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의 시행일은 2017.6.28. 이고, 제25조(연체금의 징수)의 개정 규정은 2017.12.28.

카. 25차 개정('17.10.24. 법률 제14932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규정하였다.

타. 26차 개정('19.1.15. 법률 제16268호)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며,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4절 주요 사업 개요

### 1. 적용·징수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한정하였고, 적용근로자수도 64개 사업장의 8만 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적용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18.7.1. 이후에는 농업, 임업(별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등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건설공사로 확대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아니나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00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05년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을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 사업을 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의 기회를 열어주었으며, 농업, 임업(별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였다. '18년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을 '자동차정비업과 1차금속제품제조업 등 7개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였으며, '18.12월에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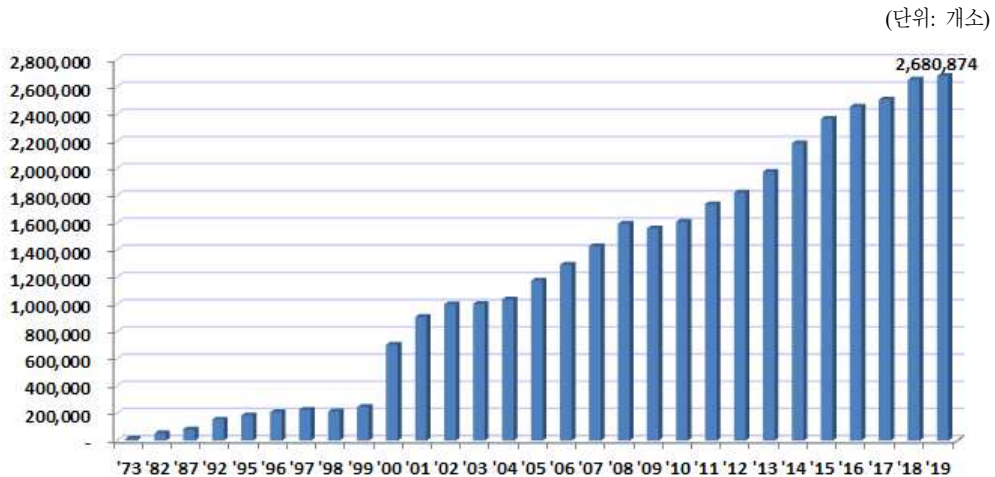
'08년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차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을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09년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는 100㎡ 초과, 대수선공사는 200㎡ 초과 시 당연 적용사업으로 확대하였고, '09.7월에는 건설기계사업을 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까지 산재보험 임의가입 범위를 확대하였다. '12.5월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에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2개 직종을 추가하였고,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확대하였으며, '12.11월에는 예술인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확대하였다. '16.7월에는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19.1.1.부터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이 지난 현재, 산재보험은 그 적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sup>8)</sup>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19년 말 현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약 268만개, 적용근로자수는 1,873만 명에 달하며, 이는 산재보험 실시 (64개소, 82천명) 이후 적용사업장은 약 41,469배, 적용근로자수는 227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1-1-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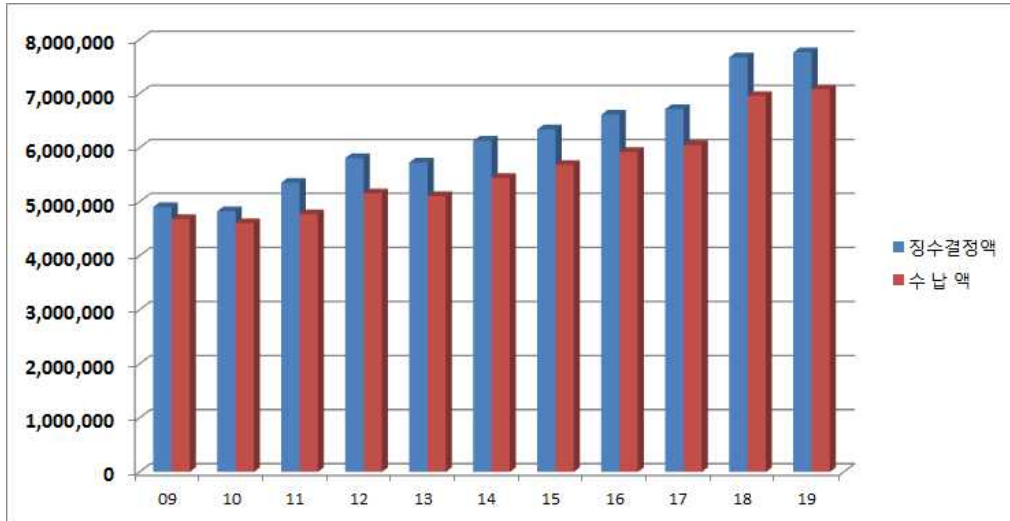


지난 50년간 보험료 수납액도 IMF 금융 위기 기간 등 몇 차례 예외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64년의 수납액이 75,279천원에 불과하였으나 '19년에는 7조793억원에 달하여 많은 증가세를 보여 왔다.

8)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64년부터 '19년 현재까지 산재보험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확대과정은 부록편 <1. 산재보험 사업종류별·규모별 적용 확대 연혁>에 나와 있다.

<그림 1-1-2> 산재보험료 징수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이와 같이 산재보험 수납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근로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수준도 대폭 상승하였으며, 수차례 법령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1년 징수통합 이후 부과고지제도 안정화와 더불어 일반사업장의 적용근로자수 및 보수상승률이 증가하고, 보험료 부과징수기관(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간 유기적 업무수행 등 징수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으로 보험료 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04년부터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 신고가 가능해졌고, '06년 4월부터는 자동계좌이체를 실시하고, '19년 11월부터는 자동카드납부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공제혜택도 부여하였다. 또한 보험료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01년 10월 엘지카드를 시작으로, 카드사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각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대한 업종별 단일 보험료 부담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의 불공평성을 완화하고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유인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을 감안하여<sup>9)</sup> 보험료율을 조정해 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시행하였다. 시행 초기  $\pm 30\%$ 로 증감폭을 한정하였으나, '86년도에  $\pm 40\%$ 로 확대하고, '96년부터는  $\pm 50\%$ 로 또다시 확대되었다. '11년부터는 사업 규모에 따라  $\pm 20\% \sim \pm 50\%$ 까지 차등하여 적용하였으나 '19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pm 20\%$ 까지 단일 증감폭을 적용하였다.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부과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법정기한 내에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보험료의 5배 상한)시킴으로써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 제재를 가하여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 2. 요양·보상

산재보험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산재보험제도는 수차례 법령 개정과 요양·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를 확대하여 왔다.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63.11.5. 당시 ‘업무상 재해’의 개념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인정의 두 가지 요건 즉,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명문화하였고, 판례도 법률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성과

9) 산재발생률이 낮은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인하된다면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고 할 것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보험수지율 즉 ‘보험급여 총액/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해 주고 있다(제2편 제2장 제1절의 <2. 개별실적요율> 참고).



업무기인성의 2가지 요건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다가 '81.12.17. 산재보험법 제5차 개정 시 이를 수정하여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엄격한 요건주의에서 벗어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해석의 여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기준을 정한 각종의 예규<sup>10)</sup>를 통폐합하여 '82.8.27. 노동부 예규 제71호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95.4.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면서 시행중이던 예규(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94.7.21. 노동부예규 제247호)를 시행규칙으로 흡수하였다.

이후 '99.12.31.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면서 법 제4조 제1호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의 해당 여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부분임에도 법에서는 포괄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포괄위임 논란과 입법 기술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06.12.13.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원칙을 산재보험법에 명시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07.12.14. 산재보험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법 제5조 제1호에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sup>11)</sup>에 근거하여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그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10) 업무상 질병인정기준(1981.5.7. 노동부예규 제28호), 기숙사·합숙소·기타 사업주가 제공한 일체의 시설에서 취업시간 이외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업무상 인정여부 판정(1981.7.11. 노동부 예규 제 48호), 고혈압근로자 관리기준(1981.6.22. 안전1455.5~13127), 고혈압환자에 대한 기준 등등 업무 취업요령(1978.6.2. 보상145.6~13425), 직업성난청의 인정 및 보상기준(1981.7.11. 노동부예규 제45호) 등
- 11) 업무상 재해 인정의 일반적 기준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작업 중, 작업 준비 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후 '17.10.24.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법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산재보험급여도 산재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만 지급되었다. 이후 '83년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 개시 후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상병보상연금을 도입, '00년에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급여를 도입, '08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사회·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 '10년에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폐유족연금, 진폐보상연금을 도입하여 '19년 현재 10가지의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다(표1-1-1 참고).

보험급여 종류의 확대와 더불어 보험급여액 산정에 있어서도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급여수급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재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73년에 도입하였으며, 사회보험급여의 사회적 최저기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77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도입하였다.

또한 '95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액 또는 1일 보험급여액으로 하였고, '00년에는 보험급여 수급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도입하였다.

'08.7.1.부터는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하는 특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12.12.18. 부터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편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였다.

'16.12.27. 부터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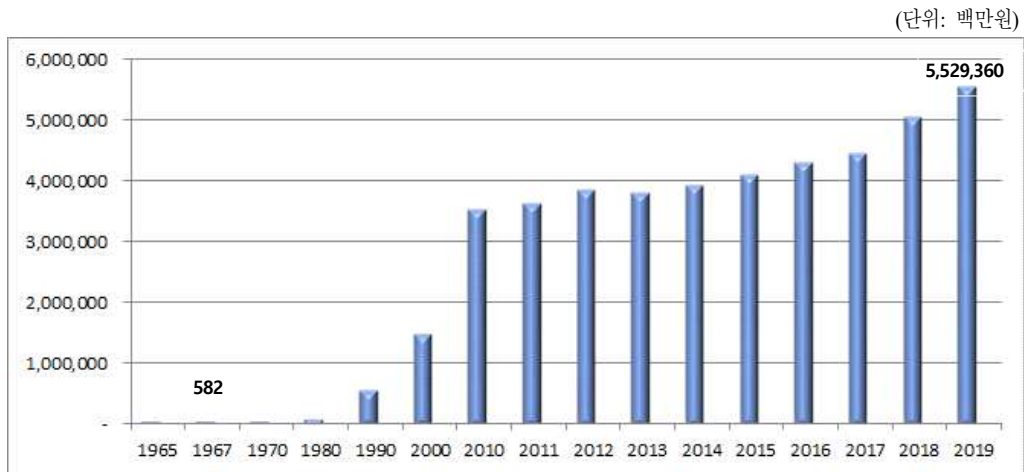
'18.12.13. 부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연령범위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하였으며,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표 1-1-1>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구 분	지 급 요 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신청 절차
보 험 급 여	요양 급여	◦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요양 ◦ 지정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 치료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휴업 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 평균임금의 70% 지급 - 최고보상기준 1일 214,402원의 70% -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상병 보상 연금	◦ 2년이상 요양중인 재해자 중 중중요양상태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 급여	◦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연금: 1급(329일)~7급(138일) - 일시금: 1급(1,474일)~14급(55일) ※ 1~3급은 연금만 지급(4년분 선급),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 지급
	유족 급여	◦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가산금액(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 급여	◦ 치료종결 후 간병(상시, 수시)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 수시간병 1일당 27,450원
	직업 재활 급여	◦ 장해1급~12급 장해급여를 받은 자 또는 요양중으로서 장해1급 ~12급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 (근로자 지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 (사업주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직업 재활 비용	◦ 직업훈련비용: 정부지원승인 훈련비(일부 훈련은 1인당 600만원 이내) ◦ 직장복귀지원금: 300,000원 ~600,000원(월) ◦ 직장적응훈련비: 450,000원(월) ◦ 재활운동비: 150,000원(월)	
장의 비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최고 15,554,290원 - 최저 11,097,760원	
진폐 연금	◦ 진폐재해자에 대하여 진폐보상 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지급 다만, 요양중 재해자는 제외	◦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최저임금 60%) + 장해연금(연 24~132일분) 지급 ◦ 진폐유족연금: 진폐보상연금 수준으로 지급	◦ 진폐재해자가 진폐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위와 같이 산재보험급여 종류 확대와 함께 경제 발전에 따른 사업장 및 근로자수의 증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급속히 증가되어 왔으며, '19년 말 기준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5,529,360백만원으로 '67년 582백만원에 비해 9,501배나 증가하였다.

<그림 1-1-3>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추이



### 3. 재활·복지

산재보험은 '64년에 도입된 이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그동안 급여수준 인상에만 치중하여 제도 전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00년 시행된 법률에 명시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재활·복지정책은 산재근로자의 단기적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복지적인 측면 외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기보다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정책은 안산과 광주훈련원 등 직업훈련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용자사업을 하는 등 단순 복지사업 위주로 전개하였으나, '98년 근로복지공단 내 재활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재활·복지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을 마련하였고, '01년부터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06년부터 '17년까지는 4차에 걸쳐 3년 단위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현재 재활사업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18년부터는 5년 단위('22년까지)의 제5차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생애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현행 재활·복지사업의 체계는 크게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산재복지사업의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의료재활은 산재근로자가 신체의 기능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이를 육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직업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해당 산재근로자의 신체 상태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8개 재활전문센터와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심리재활은 산재근로자들이 가지는 자기행동제한, 신체 부상에 따른 불안 및 욕구불만 등을 제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로는 재활스포츠, 심리상담, 희망찾기, 사회적응프로그램, 취미활동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직업재활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즉, '원직장복귀, 재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대체인력지원사업, 직장복귀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sup>12)</sup>

넷째, 산재복지사업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근로자 자녀들에게 일반교육 및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산재근로자 가족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12) 직업재활사업은 도입된 이후 예산사업으로 수행되다가, 직업훈련사업의 일부와 직장복귀지원사업 전체가 '08년 7월 1일부터 '직업재활급여'라는 명칭으로 법정 급여화 되었다.



&lt;표 1-1-2&gt; 재활·복지사업 체계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의료 재활	전문재활치료	공단 직영병원 8개 재활전문센터 및 111개 재활인증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
	합병증 등 예방 관리제	치료종결 이후 업무상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방지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사회 심리 재활	재활스포츠	- 대상 : 장애가 예상되는 통원요양환자 및 산재장애인 - 내용 : 스포츠활동에 대해 3개월간 월10만원 이내의 수강료 지원(특수재활스포츠: 인당 최고60만원, 1개월 한도)
	심리상담	요양 중 심리안정·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개별 심리상담
	희망찾기 프로그램	-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환자 - 내용 :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초기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불안 해소 및 심리 안정을 지원하여 조속한 사회 및 직업복귀를 촉진
	사회적응 프로그램	- 대상 :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및 통원요양 중인 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내용 :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자기관리능력, 지역 사회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
	진폐환자 취미활동반	진폐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취미활동 지원(월 5만원이내의 실비 지원)
	산재노동자 멘토링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직업·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노동자(멘토)가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멘티)에게 멘토링하여 멘티의 자신감과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원활한 직업·사회복귀를 지원(멘토에게 1회당 수당 7만원~14만원 지급)
직업 재활	직업훈련지원	- 대상 :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애인 * 직업재활급여 대상 : 제1급~제12급(장애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및 통원요양중인 자 * 예산사업 대상 : 제1급~제12급(장애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 내용 : 훈련비(12개월 범위내 2회까지 연 600만원 한도), 훈련수당(훈련시간·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
	원직장복귀 지원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 장애급여자(제1급~제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10.04.28. 이후 요양 중 포함) * 최대 12개월까지/제1급~제3급 월 60만원, 제4급~제9급 월 45만원, 제10급~제12급 월 30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 원직장에 복귀한 장애급여자(제1급~제12급)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최대 3개월까지 월 45만원이내 실비지원, 10.04.28. 이후 요양 중 포함) * '18.12.13. 이후 요양중부터 직장적응훈련 실시 가능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장애급여자(제1급~제12급)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p>위해 재활동동을 실시하고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최대 3개월까지 월 15만원이내 실비지원, 10.04.28.이후 요양중 포함) ※ 단, '10.04.27.이전 종결자는 장해등급 제1급~제9급으로 한정</p> <p>&lt;대체인력지원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20인 미만)</li> <li>* (산재근로자) 장해등급판정자 또는 2개월(60일) 이상 요양자, (대체인력) 재해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30일 이상 고용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필수가입)</li> <li>- 금액/기간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50% 범위내(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li> </ul> <p>&lt;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요양중인 산재근로자</li> <li>- 내용 :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직장복귀소견서 발급,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신체기능향상, 모의 작업훈련, 사업장 훈련지도 등” 직업능력 강화프로그램 제공</li> </ul>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으로 직업훈련 수료자·진폐장해인·창업업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종사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고용한 유급근로자의 30%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하는 조직</li> <li>- 내용 : 1.5억원 이내의 점포를 공단명의로 임차하여 최장 6년간 연리 2%로 지원</li> </ul>
산재 복지 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의 자로서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제1급~제9급 산재장해인, 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최저임금 이하), 산재 창업지원사업 확정자</li> <li>- 내용 : 혼례비·의료비·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원, 1세대 당 2,000만원 한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2%</li> </ul>
	산재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제1급~제7급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li> <li>- 내용 : 고등학교 등록금 등 지원</li> </ul>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제1급~제9급 산재장해인,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li> <li>- 내용 : 1인당 해당 학기 실제 납부등록금을 산재근로자 1가구당 2,000만원 한도 이내, 거치기간(이율 연1%, 대부일~졸업 후 1년), 상환기간(이율 연2%, 4년간 매월균등 분할상환)</li> <li>※ 15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사업 중복으로 중단</li> </ul>



## 산재보험제도 관리조직

### 제1절 산재보험 운영기관

#### 1. 고용노동부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산재보험을 관장한 최초 중앙행정기관은 노동청 직업안정국 내의 산재보장과이다. 여기에 8명의 직원들이 관리계, 보상계, 보험계를 구성하고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노동청장 직속으로 감찰관 2명이 배치되어 보험 업무를 감찰하였다. 이후 '81년 4월 정부조직 개편 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산재보험제도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업무의 증가와 함께 행정기구 확대, 인력 증원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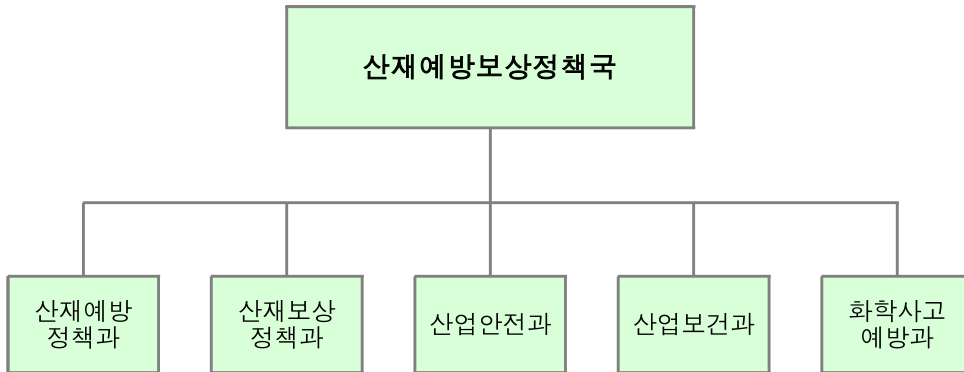
또한 초창기 산재보험 업무는 중앙행정기관과 더불어 서울, 부산, 장성,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7개 지역에 설치된 산재보험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산재보험사무소는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보험급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등 전반적인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63년 6월에는 인천, 청주, 춘천, 마산에, '68년 6월에는 영등포, 영주, 영월, 울산, 청주에 산재보험사무소가 추가 설치되었으며, '73년에는 노동청 지방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점차 확대되었다.

이후 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던 산재보험 업무는 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 경제 성장에 따른 재정규모의 확대 등으로 운영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94년 12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95.5.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탁 수행해 오고 있다.

'18년말 기준으로 산재보험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내 산재보상정책과<sup>13)</sup>에서 담당하고 있고<sup>14)</sup>, 산재보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sup>15)</sup>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 등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재결을 위해 행정심판기구로서 고용노동부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sup>16)</sup>를 두고 있다.

<그림 1-2-1> 산재보험 관장 고용노동부 기구표



- 13) '산재보상정책과' 업무 내용 : 산재보험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산재보험 제도의 연구 및 개선, 산재보험 급여기준 연구 및 개선,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적용·징수에 관한 관리 및 지도·감독, 산재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보험시설 지도·감독 등
- 14) '11.3.2.에는 산재예방보상정책관내 산재보상정책과로 직제가 개편되었으며, 최근 '13.3.23.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이 국장으로 분리·신설되었고, '13.9.23. 과 업무분장을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하였다.
- 15) '10.4.10.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 16) 제2편 제6장 제2절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참고

## 2.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77년 6월에 설립된 근로복지공사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서, 산재보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5.5.1. 발족하였다('94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산재보험에 관한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개별 법률로 되어 있던 「산재보험특별회계법」, 「산재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공사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통합·정비하였다.

2008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1차 발표('08.8.11.)에 따라 보상과 치료의 연계로 산재전문 및 재활특화병원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구)한국산재의료원(17)을 2010년 4월 28일자로 통합하였다. 또한 2차 발표('08.8.26.)로 그 동안 3개 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2011년 1월 1일자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고지·수납 및 체납관리)하였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본부를 비롯하여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와 54개 지사, 6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개 인재개발원, 1개 콜센터, 10개 병원, 2개 연구원, 1개 연구소로 조직되어 업무상 재해 판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 산재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료·재활의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부과지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건강보험공단 징수), 부과지제도 적용이 곤란한 건설업·별목업 등에 대해 자진신고·납부방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근로복지사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실업 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17) '94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95.5.1부터 근로복지공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의 개편이 예정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발족에 따른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공사는 '95.4.7.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보험시설·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사의 재출연 기관으로서 (재)산재의료관리원을 설립하였으며, 근로복지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던 13개 보험시설과 이에 속한 일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산재의료관리원으로 포괄 이전하였다. 이후 '08.7.1.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한국산재의료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 1953. 05. 10 근로기준법 제정(사업주의 개별보상책임제 시행)
- 1963. 11. 05 산재보험법 제정 공포(법률 제1438호)
- 1964. 06. 09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정 공포
- 1964. 07. 01 산재보험법령 시행(산재보험제도 실시)
- 1976. 12. 12 근로복지공사법 공포(법률 제2913호)
- 1977. 02. 15 근로복지공사법 시행령 공포
- 1977. 06. 02 근로복지공사 설립
- 1994. 12. 22 산재보험법 개정(법률 제4826호)
- 1995. 04. 07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설립
- 1995. 05. 01 근로복지공단 설립(법률 제4826호)
- 1998. 04. 15 실업자대부사업 수행
- 1998. 07. 01 금융보험업 산재보험 적용확대, 임금채권보장사업 수행
- 1999. 10. 01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 수탁
- 2000. 07. 01 산재보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 2001. 07. 15 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선포
- 2002. 01. 0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수행
- 2004. 01. 30 산재·고용보험 인터넷 토털서비스 시행
- 2005. 01. 01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 업무 수행
- 2005. 10. 04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2006. 08. 01 고객지원센터 개소
- 2008. 01. 01 진폐근로자 보호업무 수행
- 2008. 07. 01 노·사·정 합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시행
- 2010. 04. 28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 2010. 12. 01 퇴직연금사업 수행
- 2011. 01. 01 고용·산재보험 징수업무 이관(건강보험공단)
- 2012. 04. 15 근로복지공단 대구산재병원 개원
- 2014. 03. 25 근로복지공단 본부 울산 이전
- 2017. 01. 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수행
- 2018. 01. 01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

<그림 1-2-2> 근로복지공단 본부 기구표(4이사, 감사, 3본부, 1단, 10실·국, 2위원회)



## 제2절 권리구제기관

###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단 소속기관에서 처분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에 따라 제기된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08.7.1. 이전에는 공단 본부 산재심사실에서 사건담당자가 단독 심리 및 결정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 결정에 공정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산재심사실 심사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06년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산재보험발전위원회」('04~'05년까지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심사청구 사건 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단 소속 직원의 단독 심리 및 결정 형태를 위원회 체제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06.12.13.).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에 따라 산재보험법령을 개정('08.7.1. 시행)하여 공단 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의료계, 법조계, 학계, 노동 분야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공단에 제기된 심사청구 사건을 심리·의결하고, 공단은 그 결과에 따라 심사 결정함으로써 청구된 사건의 심리·결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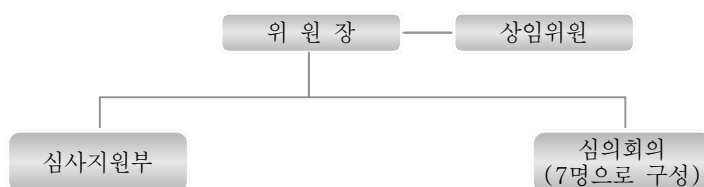
동 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은 상임위원, 148명은 비상임위원이고, 전체 위원수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된다. '19년말 현재 129명의 위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

심의회의는 위원장(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반으로 의결하게 된다.



심사위원회 설치 이후 '08.7.22.에 최초 심의회의를 개최하였고, '19년도는 총 284회(주당 4~6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심의대상 건수 9,689건(이월 458포함) 중 9,110건(94%)을 심의하였다.

<그림 1-2-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조직도



##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거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동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 가능)는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는「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이 '63.12.16. 공포되면서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의 재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65.3.12. 발족된 기구로서<sup>18)</sup>, 원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08.7.1.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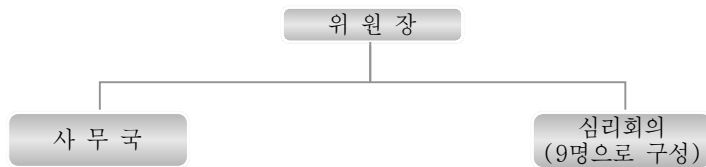
설치 초기에 재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되었고, '99년에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인노무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15인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였다. 이후 재심사 청구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결기간도 장기화됨에 따라 '06.12.13.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08.7.1.부터 60명 이내로 대폭 확대되었다.

18) '94.12.22.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은 폐지되고 대신 산재보험법 제8장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 1명은 당연직위원(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으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반으로 의결하게 된다.

<그림 1-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조직도



### 제3절 산재보험 심의기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10.4.10. 변경)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산재보험법 개정('09.10.9, 법률 제9794호)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였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산업재해 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산재 예방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라 동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8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심의사항)>

-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산재보험법 제9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정책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의 심의사항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전문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는 산재보험의 재정·적용·징수·급여·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는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그동안 업무상 질병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작업환경, 업무내용, 재해발생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자문을 받거나 신종 직업병 등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산업의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발생 빈도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업무상 사고에 비해 발생원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객관화가 곤란하여 요양결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빈발하였고, 공단의 전문성 및 지사 간 판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되어왔다.

이에 따라 '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노사단체 추천위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자는 데에 합의하였고, 산재보험법령의 개정을 거쳐 '08년 7월 동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단위(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로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각 운영지원부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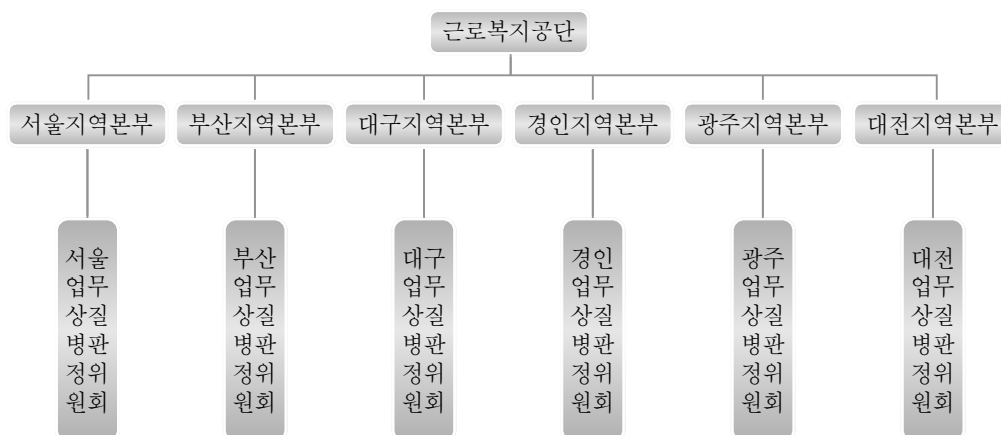
공단 소속 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으면 해당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판정위원회에서는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소음성난청, 석면 폐증, 전문조사를 거친 광업 종사경력자의 COPD 또는 특별진찰결과 진단기준에 미달하는 COPD 등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0인 이내로 하되, 이 중 2/3는 노·사단체가 추천한 자로 구성된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 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기사 자격을 가지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심의회회는 위원장 외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참석·과반수 찬성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다.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림 1-2-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조직도







## 산재보험 시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으로 정하고, 요양 및 재활, 직업병 연구 및 예방사업,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관 및 연구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시설로 설립된 일반요양 및 진폐전문 요양시설, 척손환자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 10개 병원 및 2개 의원, 부설 케어센터와 연구소 각각 2개소를 운영 중이다.

<표 1-3-1> 산재보험 시설 현황

구분	명칭	설립일자	규모	진료과목	주요 기능
의료 시설	인천병원	'83. 2.28	349병상	16개	산재환자 요양 전문
	안산병원	'85. 5.21	449병상	16개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 전문
	창원병원	'79.11.27	269병상	15개	산재환자 요양 전문
	대구병원	'12. 4. 5	213병상	6개	산재환자 요양 전문
	순천병원	'85. 5.24	295병상	13개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 전문
	대전병원	'91. 7.23	294병상	15개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 전문
	태백병원	'77. 6. 2	395병상	14개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 전문
	동해병원	'83. 5. 3	311병상	9개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 전문
	정선병원	'88.11.30	187병상	3개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 전문
	서울의원 (외래재활센터)	'19. 4.22	-	1개	도심권 전문재활서비스 제공
대전의원 (근로자건강센터)	'19. 8.20	-	1개	직업병 예방치료	
요양 시설	경기요양병원	'85. 6.13	160병상	4개	산재환자 및 척손환자요양 전문
연구 시설	재활공학연구소	'94. 8.31	보장구제작 및 연구실	-	의지, 보장구에 대한 연구, 제작, 보급
	직업환경연구원	'06. 4. 3	발병기전연구부 업무관련성평가부	-	직업성 폐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 및 역학조사 사업
복지 시설	경기요양병원 부설 케어센터	'07.10.22	100실 (1인1실)	-	산재장해인에게 전문 복지 및 간병 서비스 제공
	태백병원 부설 케어센터	'08. 4. 1	100실 (2인1실)	-	고령·무의탁 진폐장해인 등에게 전문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 제1절 병원 시설

### 1. 인천병원

####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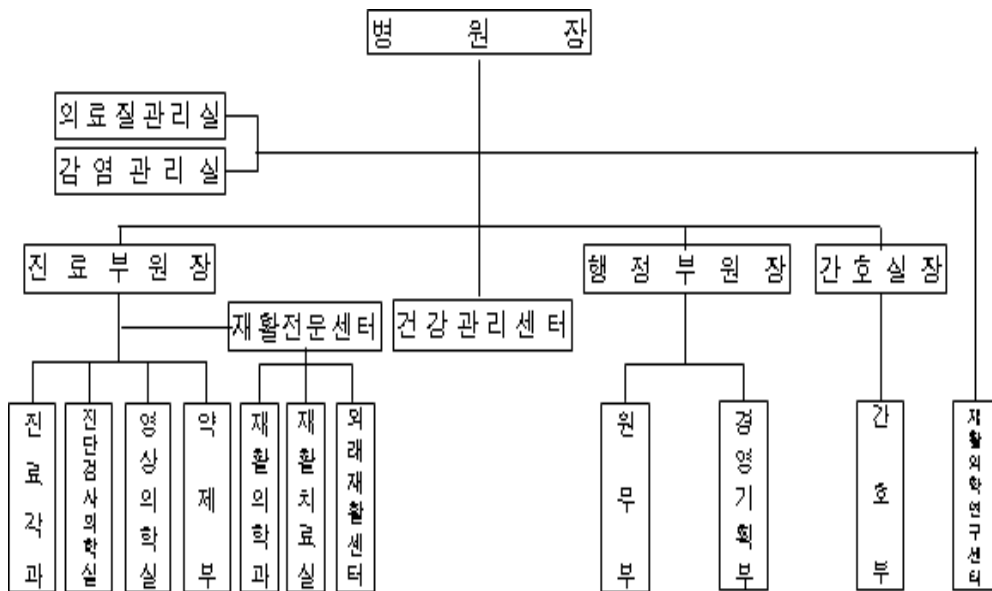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에 위치한 인천병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중환자 및 특수직업병환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산업의학연구, 산하 병원의 인력 및 의료기술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16개 진료과, 349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병원은 '06년 재활전문센터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수중운동재활관을 개소하여 재활치료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07년에는 산재전문병원으로 전환하면서 미세접합센터 개소 및 척추질환 등 산재 다빈도상병에 대한 진료 특화 등을 추진하면서 산재보험 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72.	산업재활원 신축개원(200병상)
1983. 2.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신축, 개원(18개과 진료과, 300병상)
1995. 4.	(재)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으로 재출범
1996. 2.	산업재활원과 중앙병원 통합(700병상)
2001. 2.	(재)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으로 명칭변경
2002. 2.	종합전산망 완비 및 최첨단 MRI 도입
2004. 1.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PACS) 완비
2006. 6.	재활전문센터 설치운영 및 야외운동재활센터 개소
2007.11.	수중운동재활관 개소
2008. 7.	한국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으로 재출범
2007. 8.	산재전문병원으로 전환
2007. 8.	외국인산재근로자 전문병동 개소(58병상)
2010. 4.	근로복지공단과 통합, 인천산재병원으로 명칭변경
2014. 7.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으로 명칭변경

- 2014. 8. EMR(전자의무기록) 도입
- 2014.12. 병원급에서 종합병원으로 전환조정
- 2017. 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 2017. 7.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 2018.1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획득

<그림 1-3-1> 인천병원 조직도<sup>19)</sup>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322,837	267,153	43,733	6,067	1,371	4,513
입원	108,203	99,096	8,088	290	710	19
외래	214,634	168,057	35,645	5,777	661	4,494

19)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등 16개 진료과가 있다.



### 다. 산업보건사업 실적('19년)

(단위 : 명, 개소)

구분	건강진단				보건관리 대행	작업환경 측정
	계	일반검진	특수검진	채용신검 등		
실적	36,101	16,993	11,288	7,820	8,130	218

## 2. 안산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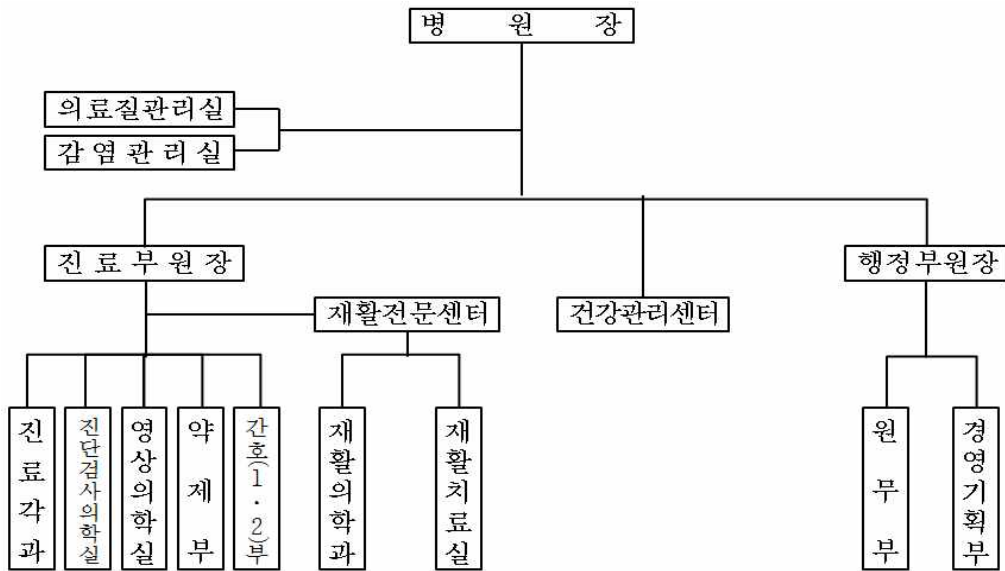
### 가. 개요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에 위치한 안산병원은 '85. 5. 21. 100병상 규모의 6개 진료과, 반월병원으로 개원하였고, 2012년 9월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착공하여 2014년 1월 8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16개 진료과, 449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본관과 재활전문센터, 검진센터가 확장 신축되어 안산시민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형 진단장비인 독일 지멘스사의 MRI와 최첨단 MDCT 촬영장치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안산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안산시 주민의 의료제공과 시화지역 공업단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환의 치료에 주력하고 있으며, 안산시로부터 외국인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을 지정받아 외국인 근로자의 진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업보건사업으로 근로자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등으로 직업병 예방 및 치료는 물론 '08.12.22. 척추전문센터를 개소하여 디스크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요추불안정증, 척추골절 등의 척추손상 환자들에게 재활전문센터와 연계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 1985. 5. 반월병원 신축개원(6개진료과,100병상 규모)
- 1986. 4. 건강관리센터 개설
- 1992. 7. 병원 5층 개축 및 6층 증축공사로 200병상으로 확충, 소아과 개설
- 1994. 2. 안산중앙병원으로 명칭 변경, 종합병원으로 승격(허가병상 206병상)
- 1995. 4. 근로복지공사 안산중앙병원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으로 명칭변경
- 1998. 8. 인턴수련병원 지정
- 2001. 9.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
- 2002. 5. 진폐전문병동(75병상)준공 및 본관병동 34병상 증축
- 2003. 2.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 2004. 3. 지상 3층, 지하 2층 200병상 규모 진폐전문병동 신축공사 기공식
- 2005. 5. 14개진료과 변경(정신과 개설)
- 2006. 1. 진폐전문병동 190병상 개설
- 2006. 3. 허가병상 485병상으로 조정(신경과 개설)
- 2006. 4.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개소
- 2007.12.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병동 개소(5실 30병상) 재활의학과 개설
- 2008. 8. 한국산재의료원 안산중앙병원으로 재출범
- 2008.10. 재활전문센터 개소
- 2008.12. 척추전문센터 개소
- 2009.12. 재활전문 의료기관 인증
- 2010. 1. 소방재난본부 MOU 체결, 원격진료가능
- 2010. 4. 근로복지공단과 통합, 안산산재병원으로 명칭변경
- 2011. 6.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사업수행기관 인증
- 2012. 9. 리모델링 착공(250병상으로 조정)
- 2014. 7.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으로 명칭 변경
- 2016. 6. 경희분한방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 2016. 7. 우성재활요양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 2016.10.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 2017. 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 2017.10.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획득

<그림 1-3-2> 안산병원 조직도<sup>20)</sup>

##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315,757	187,389	103,337	15,465	3,307	6,259
입원	143,556	122,814	16,747	2,327	1,614	54
외래	172,201	64,575	86,590	13,138	1,693	6,205

## 다. 산업보건사업 실적('19년)

(단위 : 명, 개소)

구분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계	일반검진	특수검진	채용신검 등		
실적	49,764	31,685	8,825	9,254	11,448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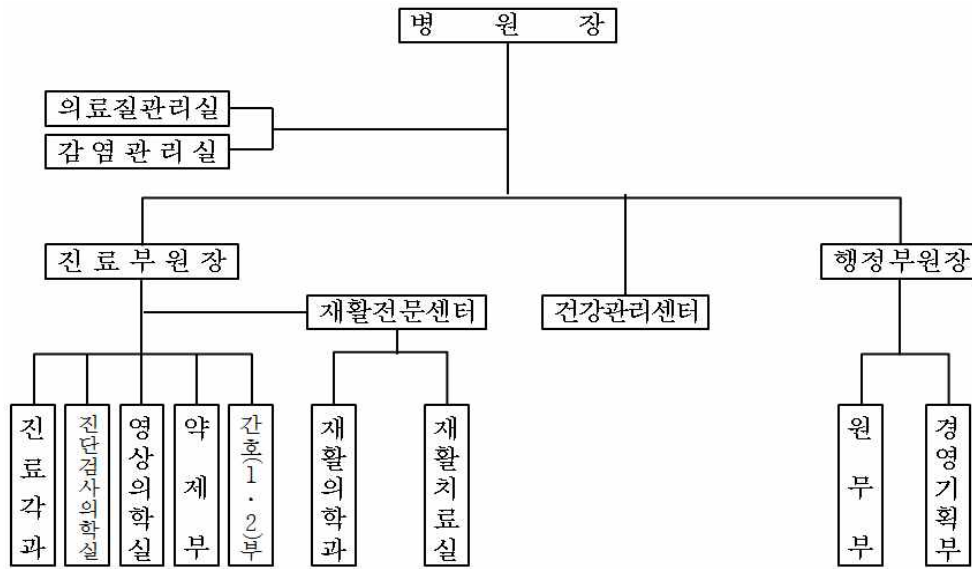
20)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등 16개 진료과가 있다.

### 3. 창원병원

#### 가. 개 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에 위치한 창원병원은공단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07년 지역 내 최고의 재활전문센터 개소와 근골격계전문 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경남권의 산재거점병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현재 15개 진료과, 269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1979.11. 15개 진료과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창원산재병원 개원
- 1982. 2. 창원병원으로 명칭변경
- 1993. 4. 신관병동 200병상 준공
- 1994. 4. 본관 병동 개보수 완료로 400병상 허가, 종합건강진단센터 개설
- 1995. 4. 근로복지공사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으로 이관
- 1999. 5. 한방의원 개설(임대운영)
- 2003. 4.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PACS) 완비
- 2004. 3. 건강관리센터 증축
- 2005. 9. 재활 물리치료실 증축, Web 의료영상저장전달 시스템(PACS) 구축
- 2006. 1. 종합건강센터 증축, 의료기관 최초의 원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2007.12. 재활전문센터 개소로 통합 재활치료 시스템 구축
- 2008. 7. 한국산재의료원 창원병원으로 명칭 변경
- 2010. 4. 근로복지공단과 통합, 창원산재병원으로 명칭변경
- 2013.12.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완공
- 2014. 7.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명칭 변경
- 2015. 3. EMR(전자의무기록) 도입
- 2016.10. 장애인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 2017. 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그림 1-3-3> 창원병원 조직도<sup>21)</sup>

##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260,435	148,737	90,971	8,109	4,724	7,894
입원	83,021	59,828	17,860	2,710	2,382	241
외래	177,414	88,909	73,111	5,399	2,342	7,653

## 다. 산업보건사업 실적('19년)

(단위 : 명, 개소)

구분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계	일반검진	특수검진	채용신검 등		
실적	52,363	23,868	14,481	14,014	9,814	637

21)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등 15개 진료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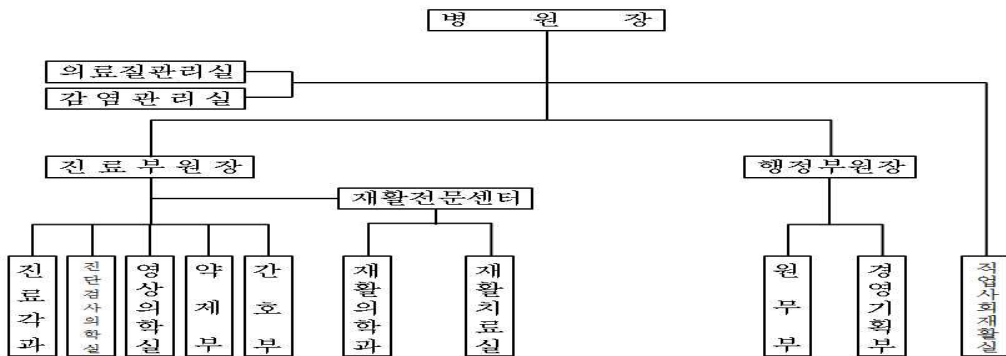
#### 4. 대구병원

##### 가. 개요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15에 위치한 대구병원은 '04년 7월 기획예산처에 건립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06년 3월 경제성 및 정책 타당성을 인정받아 '11년 12월에 준공되었다. 대구병원은 급성기 치료 후 산재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의 최소화와 신속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12년 4월 개원하였다. 현재 6개 진료과, 213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2003. 3. 대구지역 노동단체 산재병원 건립요청
- 2004. 5. 기초조사연구 및 계획안 수립(보건사회연구원)
- 2004.11. KDI,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 2006. 3. 경제성 및 정책 타당성 인정 통보(KDI)
- 2009.12. 착공 및 기공식 개최
- 2012. 4. 개원(250병상)
- 2014. 7.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으로 명칭변경
- 2014.12.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1주기) 획득
- 2015. 1. 보건복지부 재활전문병원 지정
- 2016 9. 재활의학연구센터 개소
- 2017. 4.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 2018.11.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2주기) 획득
- 2019. 1. 업무관련성평가 특별진찰 신규사업 추진
- 2019. 8. 공상경찰관 의료재활 관련 대구지방경찰청과 MOU체결

<그림 1-3-4> 대구병원 조직도 22)



22)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6개 진료과가 있다.





##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 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129,085	71,652	48,288	3,582	2,467	3,096
입 원	65,714	41,078	21,690	1,609	1,337	-
의 래	63,371	30,574	26,598	1,973	1,130	3,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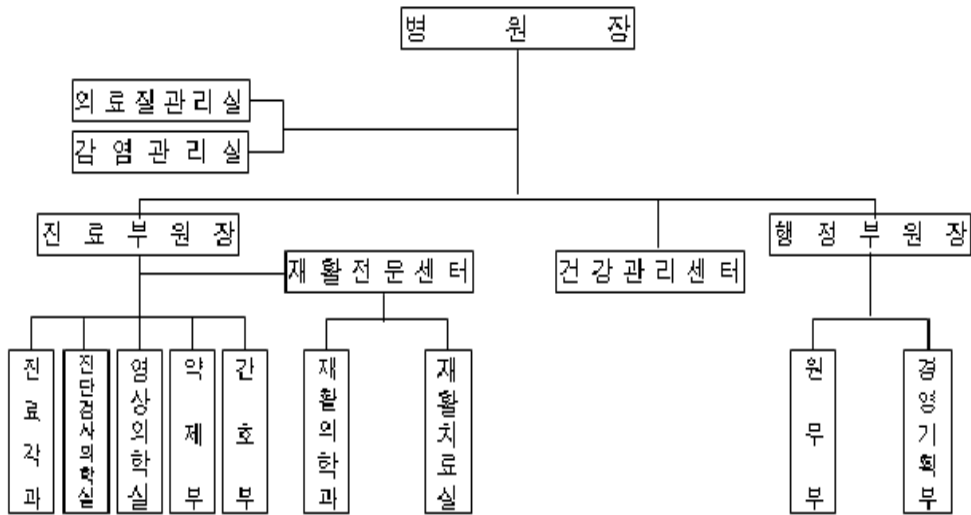
## 5. 순천병원

### 가. 개 요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에 위치한 순천병원은 여천, 광양 공업단지 및 화순지역 탄광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동부권 최고의 재활의학과 및 재활전문센터를 갖추고 산재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진료과, 295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1985. 5. 근로복지공사 순천병원으로 200병상 규모로 개원
- 1989. 9. 70병상 규모 2병동 증축
- 1995. 4. 근로복지공사에서 순천병원으로 이관 250병상 허가
- 1996. 8. 비뇨기과, 흉부외과 신설
- 1996. 8. 최신형 전신용 컴퓨터 단층촬영장치(WCT) 도입
- 2000. 4.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 개원 양·한방협진체계 구축(50병상)
- 2008.10. 재활전문센터 개소
- 2010. 4. 근로복지공단과 통합, 순천산재병원으로 명칭변경
- 2014. 7.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으로 조정
- 2015. 9.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 2016. 8.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획득
- 2016.10. 장애인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 2017. 6.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그림 1-3-5> 순천병원 조직도<sup>23)</sup>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171,860	86,347	59,096	9,459	3,747	13,211
입원	83,080	58,845	20,009	2,417	1,802	7
외래	88,780	27,502	39,087	7,042	1,945	13,204

다. 산업보건사업 실적('19년)

(단위 : 명, 개소)

구분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계	일반검진	특수검진	채용신검 등		
실적	42,908	23,118	17,052	2,738	10,810	573

23)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예방의학과, 치과 등 13개 진료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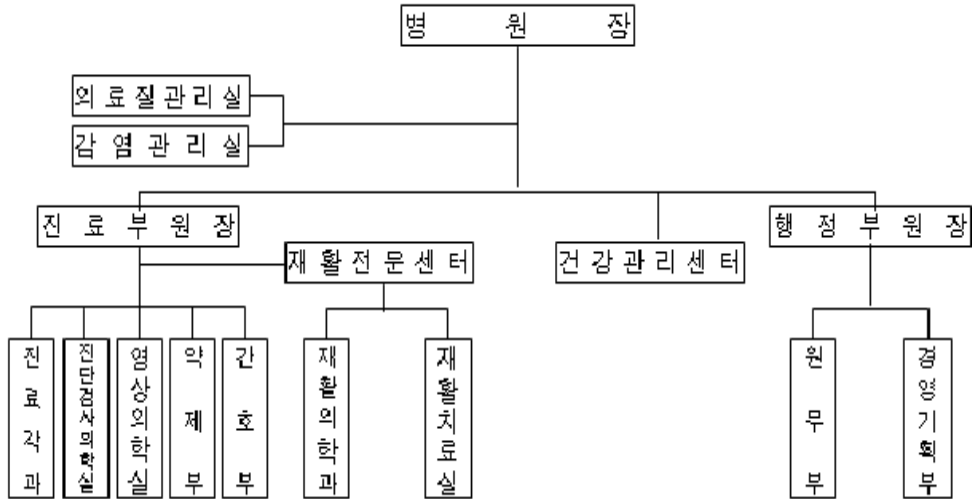
## 6. 대전병원

### 가. 개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에 위치한 대전병원은 대전·충남 중부권역 지역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근로자 건강진단 및 유해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보건 사업 수행을 통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06년 재활전문센터 개소를 통한 재활전문화와 '09. 1월 관절전문센터 개소를 통하여 관절분야 특화를 추진함으로써 산재근로자들에게 급성기 치료에서부터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종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5개 진료과, 294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1991. 7. 250병상 10개 진료과 대전재활병원으로 개원
- 1992. 1. 대전중앙병원으로 명칭 변경, 종합병원으로 승격 및 전공의 수련병원 자격 취득
- 1993. 3. 건강관리센터 및 종합건강진단 센터 개설
- 1994. 4. 재활병동 증설
- 1995. 4. 근로복지공사에서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으로 이관 및 300병상 증설
- 1999. 5. 한방병원개설로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 2001. 1. 충남대학병원과 모자병원체결
- 2002. 2. 허가병상 450병상으로 증설
- 2003. 1. 최신형 MRI도입, 근골격계질환 진단 전문기관 지정
- 2006.10. 재활전문센터 개소
- 2008. 7. 특수법인 한국산재의료원 대전중앙병원 사명변경
- 2009. 1. 산재전문병원으로 전환
- 2009. 1. 관절전문센터 개소
- 2010. 4. 근로복지공단과 통합, 대전산재병원으로 명칭변경
- 2013. 4. 진폐요양의료기관으로 지정
- 2013. 9. 종합병원급으로 의료기관 종별 변경(허가병원 299병상)
- 2014. 5. 근로자건강센터 오픈
- 2014. 7.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으로 명칭 변경
- 2015. 9.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 2016. 8.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획득
- 2016.10. 장애진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 2017. 6.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그림 1-3-6> 대전병원 조직도<sup>24)</sup>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240,075	152,121	55,107	21,971	3,184	7,692
입원	86,905	64,220	15,129	5,766	1,782	8
외래	153,170	87,901	39,978	16,205	1,402	7,684

다. 산업보건사업 실적('19년)

(단위 : 명, 개소)

구분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계	일반검진	특수검진	채용신검 등		
실적	60,844	26,852	22,899	11,093	8,693	204

24)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15개 진료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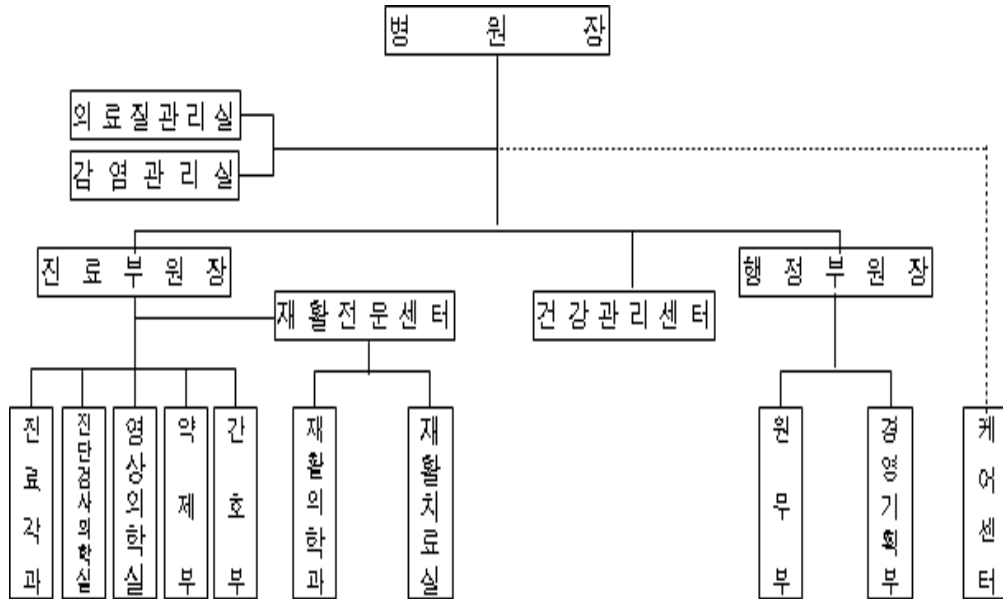
## 7. 태백병원

### 가. 개 요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에 위치한 태백병원은 광산이 밀집한 산재 다발지역인 태백 지역의 산재근로자 및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 병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06년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요양시설을 구비하였으며, '09년 재활전문센터 개소와 더불어 호흡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산재환자의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현재 14개 진료과 395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1936. 4. 삼척탄좌개발주식회사 부속병원으로 개원
- 1950.11.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부속병원으로 이관
- 1975. 1. (재)한국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으로 이관(180병상)
- 1977. 6. 정부투자기관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으로 이관
- 1988.10. 장성병원 및 규폐센터 증·개축(380병상)
- 1995. 4. 근로복지공사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 장성병원으로 이관
- 1997. 3. (재)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명칭변경
- 2006. 3. 대규모 시설보수 및 확충공사 완료(105억원 투입)
- 2008. 7. 한국산재의료원 “태백중앙병원”으로 명칭 변경
- 2009. 8. 재활전문센터 개소(허가병상 585병상)
- 2010. 4.. 근로복지공단과 통합, 태백산재병원으로 명칭변경
- 2014. 7.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으로 조정
- 2016.12.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획득

<그림 1-3-7> 태백병원 조직도<sup>25)</sup>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254,716	124,811	99,489	13,748	5,797	10,871
입원	115,551	87,487	21,717	3,106	3,077	164
외래	139,165	37,324	77,772	10,642	2,720	10,707

다. 산업보건사업 실적('19년)

(단위 : 명, 개소)

구분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계	일반검진	특수검진	채용신검 등		
실적	29,044	22,594	944	5,506	-	-

25)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등 14개 진료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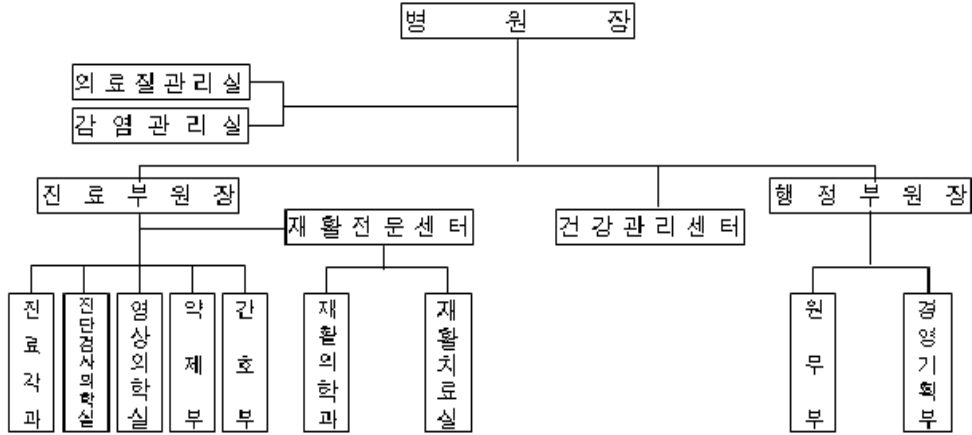
## 8. 동해병원

### 가. 개요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에 위치한 동해병원은 강원영동 남부, 태백지역 근로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진폐환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04년 진폐전문병동 신축과 '09년 재활전문센터 개소를 통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최상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9개 진료과 311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1983. 5. 5개 진료과, 270병상 규모의 광산근로자를 위한 진폐전문요양병원으로 개원
- 1984. 8. 결핵과 개설, 진폐정밀진단 실시
- 1984. 9. 진폐연구소 설치, 운영(부설)
- 1995. 4. 근로복지공사 동해병원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으로 변경
- 2003. 1. 처방전달시스템(OCS) 구축
- 2004. 9. 진폐전문병동 완공
- 2005. 3. 영상전달시스템(PACS)구축
- 2005. 9. 외과계열 진료 개시,
- 2010. 4. 근로복지공단과 통합, 동해산재병원으로 명칭변경
- 2014. 7.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으로 명칭 변경
- 2016. 08. 전자의무기록(EMR)도입
- 2016. 10.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운영
- 2017. 03. 소아청소년과 폐과

<그림 1-3-8> 동해병원 조직도<sup>26)</sup>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199,821	107,686	69,972	8,508	5,396	8,259
입원	94,754	77,395	12,553	2,034	2,706	66
외래	105,067	30,291	57,419	6,474	2,690	8,193

다. 산업보건사업 실적('19년)

(단위 : 명, 개소)

구분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계	일반검진	특수검진	채용신검 등		
실적	60,658	33,252	22,836	4,570	6,442	581

26)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9개 진료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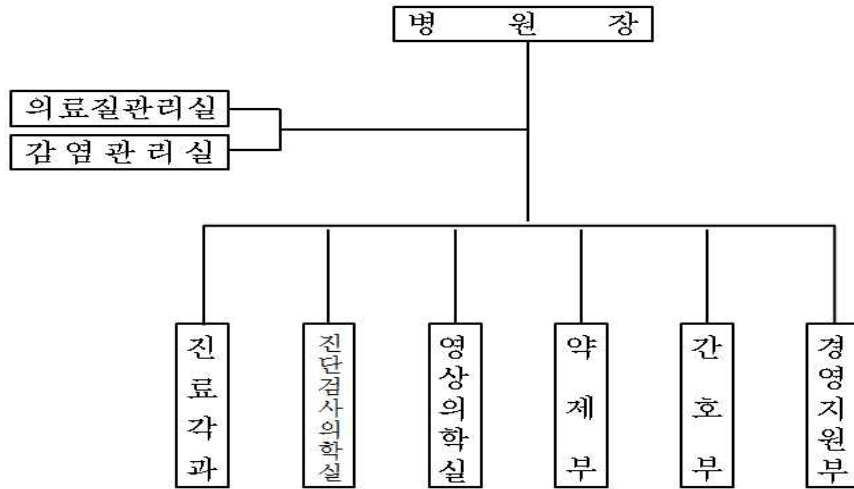
## 9. 정선병원

### 가. 개 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에 위치한 정선병원은 광산근로자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는 진폐증의 조기 발견과 효율적인 요양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현재 3개 진료과, 187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1988.11. 진폐전문병원으로 개원(150병상 4개 진료과)
- 1989.11. 가정의학과 개설
- 1990. 5. 전문내과 개설
- 1995. 4. 근로복지공사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으로 법인 변경
- 1997. 4. 복지관 개관
- 1997.12. 산업의학과 개설
- 2001.11. 생활관 개관
- 2002. 3. 소아과 개설
- 2003. 5. 장례예식장 신축
- 2005. 9. 응급실 상시 진료 실시
- 2007. 8. 병원 개보수공사 완료
- 2010. 4. 근로복지공단과 통합, 정선산재병원으로 명칭변경
- 2014. 7.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으로 명칭 변경

<그림 1-3-9> 정선병원 조직도<sup>27)</sup>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90,159	64,803	19,277	1,546	716	3,817
입원	60,867	58,870	1,278	370	339	10
외래	29,292	5,933	17,999	1,176	377	3,807

다. 산업보건사업 실적('19년)

(단위 : 명, 개소)

구분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계	일반검진	특수검진	채용신검 등		
실적	3,461	1,517	-	1,944	-	-

27) 내과, 영상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등 3개 진료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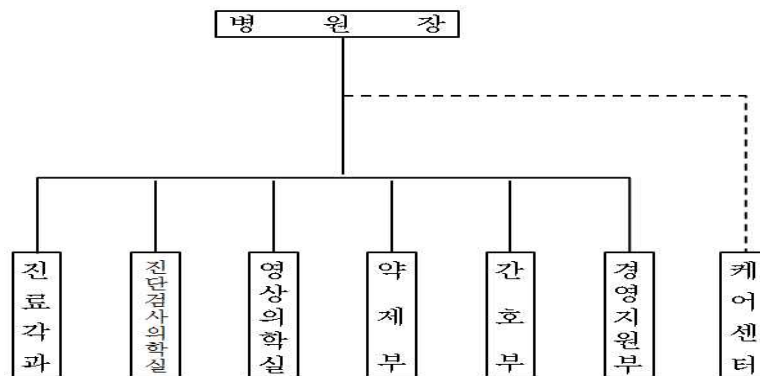
## 10. 경기요양병원

## 가. 개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에 위치한 경기요양병원은 대지 2만 4천여평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150병상 규모의 산재환자 요양 및 휴양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05년에 170여 병상 규모의 척추손상센터로 개편되어 신체마비 및 하지절단환자들의 전문 요양기관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시설 노후화에 따라 '08. 6월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10년에 신축병원으로 증축 이전하였고, 현재 4개 진료과목, 16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1985. 6. 화성요양원 개원(산재환자 요·휴양 의료기관, 의원급 150병상)
- 1993. 5. 기능개편(척추손상센터, 100병상)
- 1995. 4. 근로복지공사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으로 법인 변경
- 1996.10. 경기요양병원으로 명칭변경, 병원급 의료기관 승격(3개 진료과 허가 병상 110병상)
- 2005. 3. 174병상으로 허가병상 조정
- 2009.12. 신축 이전에 따른 182병상으로 허가병상 조정
- 2010. 4. 근로복지공단과 통합, 경기산재요양병원으로 명칭변경
- 2013. 3.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1주기) 획득
- 2014. 7.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
- 2017. 6.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2주기) 획득

&lt;그림 1-3-10&gt; 경기요양병원 조직도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계	64,597	56,354	5,827	59	111	2,246
입원	52,753	52,753	-	-	-	-
외래	11,844	3,601	5,827	59	111	2,246

다. 산업보건사업 실적('19년)

(단위 : 명, 개소)

구분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계	일반검진	특수검진	채용신검 등		
실적	35	35	-	-	-	-

11. 서울의원(외래재활센터)

가. 개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의원은 도심권 산재환자의 전문 산재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외래재활센터로서 '19.4월 개소하였으며, 산재환자 맞춤형 의료·사회심리·직업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조기 직업복귀에 기여하고 있다.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외래	4,113	3,877	233	-	-	3



## 12. 대전의원(근로자건강센터)

### 가. 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의원은 국내 최초 직업병 예방치료 기능을 위해 기존 직업병 상담기능을 수행하던 대전 근로자건강센터에 진료기능을 갖춘 형태로 '19.8월 개소하였으며, 직업병 예방상담 및 유소견자 조기 치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나. 진료 현황('19년)

(단위 : 명)

구 분	합계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기타
의 레	367	-	363	2	-	2

## 제2절 케어센터

### 1. 경기요양병원 부설 케어센터

#### 가. 개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케어센터는 가정간병이 어려운 중증의 산재장해인과 그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07.10.22에 개소한 국내 최초 산재전문 복지시설이다.

센터 내 간호사실 및 처치실, 물리·작업치료실, 생활보조원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 시설 등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인 1실로 사용 가능한 100실의 수용규모를 갖추고 있다.

## 나. 입소 현황

케어센터 입소 대상은 입소일 현재 60세 이상인 제1급~제3급의 산재장해인이다. 다만 60세 미만인 제1급~제3급의 산재장해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료는 장해 1등급(상시)의 경우 월 41,170원, 장해 1등급(수시) 및 장해 2등급은 월 27,450원, 장해 3등급은 월 548,000원이며, 이용료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한 고시금액 즉 현행 간병급여 수준이다. '19년 기준 일평균 92명이 입소하였다.

## 2. 태백병원 부설 케어센터

### 가. 개요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태백병원 부설 케어센터는 고령·무의탁 진폐재해인에게 전문적인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에 안락하게 요양할 수 있는 생활공간과 휴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08.4.1. 진폐전문 요양시설로 개소되었다.

센터 내 처치실, 물리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시설, 노래방 등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2인 1실로 사용 가능한 100실의 수용규모를 갖추고 있다.

### 나. 입소 현황

케어센터에 입소가 가능한 자는 산재보상보험법상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폐장해인 및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및 진폐 의급자)이다. 월 입소료는 280,700원으로 센터장이 산정한 직전년도 입소비를 기준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등락률 총지수(전년비)를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물가가 하락할 경우 직전년도 입소비로 한다. '19년말 기준 일평균 76명이 입소하였다.

## 제3절 연구기관

### 1. 근로복지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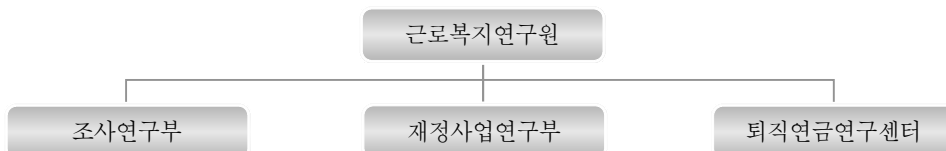
#### 가. 개요

근로복지연구원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06년에 산재보험 전문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조사연구부와 재정사업연구부, 퇴직연금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재보험 재정·제도·재활·요양·보상, 퇴직연금, 의료경영 등 근로복지공단 수행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전문통계분석, 산재보험 경제활동조사,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006. 3. 2. 산재보험연구센터 개소
- 2007. 1. 1. 통계분석팀 연구센터 편제(증설)
- 2008. 1. 1. 노동보험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10. 4.28. 산재보험연구센터로 명칭 변경
- 2014. 2. 1.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로 명칭 변경
- 2016. 1. 1. 근로복지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그림 1-3-11> 근로복지연구원 조직도



\* 퇴직연금연구센터(임시조직) 운영기간 : '15. 5. 15. ~ '20. 12. 31.

나. 연구 및 정책지원 현황

구분	내용
연구 수행 및 정책지원 업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과제 수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산재보험 장해급여 현황 고찰」 등 22개 연구과제</li> </ul> </li> <li>○ 정책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및 실무 자료 제공 : 「외국의 정신질환 인정현황」 등 68건</li> </ul> </li> <li>○ 전문통계분석 등 자료 제공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 통합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등 12개</li> </ul> </li> <li>○ 전문자료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전문지「근로복지포럼」 발간 (연 2회)</li> <li>- 해외동향 전파를 위한「글로벌 트렌드」 발간 (격월 1회)</li> </ul> </li> <li>○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포럼 및 통일사회보험 포럼 운영 : 총 4회 개최</li> </ul>
주요 조사연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고용보험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직업재활 코디네이터 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복귀 재활계획 추천 시스템 및 VR기반 직업능력 강화 훈련·평가 시스템 개발</li> </ul> </li> <li>○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 요양종결자의 직업복귀 실태를 파악하여 산재보험 정책에 활용한 횡단자료 구축</li> </ul> </li> <li>○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정책에 따른 민간 퇴직연금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퇴직연금의 투명성 제고</li> </ul> </li> <li>○ 산재보험 재정추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상태 점검과 장기 재정추계 모형의 개선</li> </ul> </li> </ul>

2. 재활공학연구소

가. 개요

재활공학연구소는 첨단공학과 임상의학을 연계하여 산재 장애인의 재활과정에 소요되는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치료·훈련기법을 연구 개발, 이를 보급함으로써 산재 장애인의 신체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활공학연구소의 초기 모태는 '72년 당시 노동청 소속이었던 인천 국립재활원 의지공장을 모태로 하여 장애근로자를 위한 의지 및 보장구를 제작·보급하였는데, '91년에 개설된 대전중앙병원 내 의지·보장구센터의 연구 개발 기능과 통합하여 '94년 재활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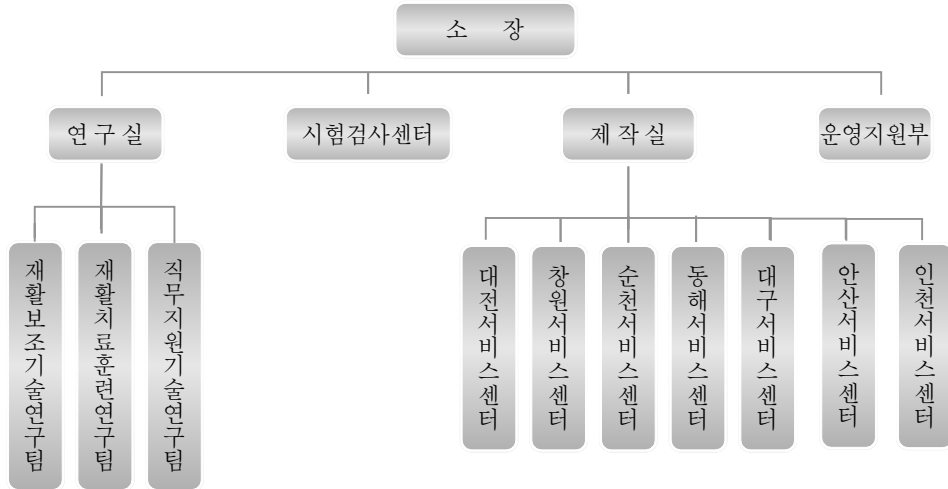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이후 '95년에 산재의료관리원으로 이관된 후 '02년에 재활공학 연구소가 되었다.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실된 작업 능력을 최대한 복원시켜 원직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 보조기구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한 상용화 그리고 전국 7개 산재병원과 연계된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가화된 직무지원기기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1994. 1.10 '재활공학연구센터'로 설립
- 1998.12. 1 세계 두 번째로 국산 인공지능의지 개발 상품화 실현
- 1999. 1.31 산업자원부로부터 국제표준화(ISO-TC 173) 한국 간사기관으로 지정
- 2001. 8.23 전국 순회 의지/보조기/휠체어 이동 서비스 버스운행 개시
- 2001. 9.30 국내 최초 수/전동 전환형 휠체어 개발 성공
- 2002. 2.21 '재활공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 2002.10.30 대전, 창원, 순천, 동해 4개 지역에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설치
- 2003.12. 1 보건복지부로부터 차세대 휴먼텍 '동작회복 신기술연구센터'로 지정
- 2005. 9. 1 산업자원부 고령친화사업기반조성사업 품질관리기반구축부분 담당지정
- 2007. 1.31 산업자원부로부터 국제표준화[ISO TC-168] 간사기관으로 추가지정
- 2007.12.28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가공인 의료기기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대상 복지용구 시험검사기관 지정
- 2008. 7. 1 한국산재의료원 재활공학연구소 재출범
- 2010. 4.28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로 법인 변경
- 2011. 8.17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지정
- 2014. 2.17 재활공학연구소 신청사 준공 및 이전 완료
- 2018. 5.14 안산, 인천, 대구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추가 설치

<그림 1-3-12> 재활공학연구소 조직도



나. 연구 현황

구 분	내 용
연구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산 위주 국내시장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국산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하지의족, 상지의수, 전동휠체어 등)</li> <li>- 재활의학과 임상과 연계한 과학적 재활치료·훈련기법 연구 및 보급</li> <li>- 연구성과 산재보험 급여품목 반영 및 국산화 수입대체 : 209개 품목</li> </ul>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등록(101건): 의족용 무릎관절기구, 전동기립형휠체어, 웨어러블보행보조 로봇, 지면순응형 인공발, 대퇴의지용 미용커버 디자인 등 다수</li> <li>- 의장등록(27건): 근전전동의수의 엄지기반 손동작 제어시스템 등</li> <li>- 실용신안/상표등록(6건): 체어형 모노스키의 충격흡수장치 등</li> </ul>
재활보조기구 공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 7개 권역서비스센터 및 1개 순회 이동서비스팀 운영</li> <li>- 연평균 약 11,771건 공급('17년 11,211건, '18년 11,907건, '19년 12,195건.)</li> </ul>
연구과제 수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까지 총 927개 연구과제 수행</li> <li>* 자체 K-Leg 대퇴의지 제품화 628개 과제, 대책(외부) 환자 맞춤형 골유착 임플란트 개발을 통한 골지각형 의수 개발 등 299개 과제 수행</li> </ul>



### 3. 직업환경연구원

#### 가. 개 요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내에 위치한 직업환경 연구원은 직업성 폐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및 진폐 사망 여부 자문 등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안산중앙병원 부설로 '06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발 및 업무상 질병 발병기전연구, 유해인자 노출평가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업무상질병 전문조사<sup>28)</sup> 및 진폐사망여부 자문조사<sup>29)</sup> 등 폐질환 관련 산재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의학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 2006. 4. 3. 안산중앙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설립
- 2006. 6.22.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직업성 폐질환 연구용 시료은행 설치
- 2007. 8. 6.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설치
- 2008. 4. 1.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파견수련 실시
- 2012. 1. 1.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자문 실시
- 2012. 7. 1. 호흡기계 질병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전담
- 2013. 1. 1. 기관독립(이사장 직속 본부 조직)
- 2014.11.17. 연구소 이전(안산병원 →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 2016. 1. 1. 본부 소속에서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19. 1. 1. 직업환경연구원 기관 명칭 변경
- 2019. 5. 1. 백혈병 및 피부질환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 역학조사 추가 수행

28) 업무상질병 전문조사는 직업성 암 등 업무상질병 여부 판단이 어려운 질병에 대하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비롯한 전문분야별 연구원 등이 현장 조사, 측정, 분석 등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9) 진폐사망여부 자문조사는 광산 등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직업력, 진료기록, 요양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으로 '12.1.1.부터 수행하였다.

<그림 1-3-13> 직업환경연구원 조직도



나. 연구 현황

구 분	내 용
연구과제 수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관련 천식(work-related asthma)에 대한 업무관련성전문조사 및 산업재해보상 사례분석</li> <li>○ 사망한 진폐증 환자의 증례 분석을 통한 진폐증에서 발생한 보통간질폐렴의 특성</li> <li>○ 잠복결핵감염 양성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신청자에서 활동성 폐결핵 발병률</li> <li>○ 실리카 나노입자의 제조방법에 따른 폐 세포 독성평가</li> <li>○ 석면 노출에 따른 폐조직 내 석면 분석에 관한 고찰</li> <li>○ 항만 하역 노동자의 분진 노출 특성</li> <li>○ 지하철 배수펌프장 라돈관리를 위한 라돈농도 및 환기율 평가</li> <li>○ 용접과 ITO 제조공정에서 NRD 샘플러를 이용한 금속 나노입자 노출평가</li> <li>○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 여과 측정법에대한 비교</li> <li>○ 국내 비파괴검사 업종에 대한 현황과악 연구</li> </ul>

## 제4절 교육기관

### 1.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 가. 개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산재·고용보험 전문 교육인프라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한 기관으로 '11.1월부터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120,601㎡의 부지 규모에 연면적 16,670㎡의 교육·숙박 각 1동(지하 1층, 지상 4층)을 갖추었으며, 1일 최대 교육동 1,200명, 숙박동 300명의 수용이 가능하다.

인재개발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업무 숙련도 향상 및 대국민 공개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함은 물론, 연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006. 2. 근로복지공단 교육연수프로젝트팀 구성 및 건립 준비
- 2008. 7.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착공
- 2010. 12.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준공
- 2011. 1.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개원

<그림 1-3-14> 인재개발원 조직도



나. 운영 현황

1) 시설운영 현황('19년)

구 분	입소인원(명)	시설이용률(%)	임대수익(백만원)
계	40,159	55.18	158
내 부	28,460	46.16	-
외 부	11,699	9.02	158

2) 중소기업 시설이용 현황('19년)

구 분	사업장(건)	입소인원(명)
계	88	5,515

# 제2편

## 산재보험제도 운영

제1장 산재보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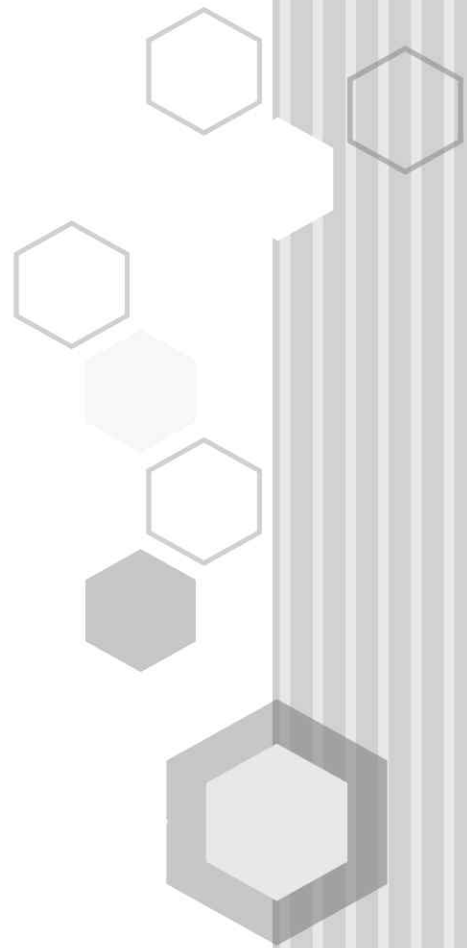
제2장 보험료 징수

제3장 요양 및 보상

제4장 재활·복지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

제6장 행정구체제도









## 산재보험 적용

### 제1절 산재보험 적용 및 가입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당연적용)해야 하는 강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 1. 당연적용

당연적용 사업이란 사업이 개시되어 산재보험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아래 적용제외사업은 제외)은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해당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용제외사업>

- ①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② 가구내 고용활동
- ③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표 2-1-1>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당연적용	2,457,225	18,432	2,507,364	18,560	2,654,107	19,073	2,680,874	18,725

가. 사업종류별 적용 현황

산재보험법 도입 당시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8.7.1.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lt;표 2-1-2&gt; 사업종류별 당연적용 대상

사업종류	규 모	적용일
금융·보험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사업 (수렵업 제외), 별목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당연적용에 해당하는 날
임업(별목업 제외), 어업, 농업, 수렵업	1인 이상 (농업, 임업(별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건설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 ('18.7.1. 공사금액 및 연면적에 따른 적용제외 기준 폐지)	공사착공일

&lt;표 2-1-3&gt; 사업종류별 적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18년		'19년				증감률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구성비	근로자	구성비	사업장	근로자
합 계	2,654,107	19,073,438	2,680,874	100	18,725,160	100	1.0	-1.8
금융 및 보험업	41,968	778,105	42,320	1.6	777,764	4.2	0.8	-0.0
광 업	1,078	11,697	1,082	0.0	11,108	0.1	0.4	-5.0
제 조 업	379,387	4,152,058	386,119	14.4	4,045,048	21.6	1.8	-2.6
전기·가스/상수도 사업	2,493	76,967	2,814	0.1	76,687	0.4	12.9	-0.4
건 설 업	441,758	2,943,742	378,343	14.1	2,487,807	13.3	-14.4	-15.5
운수·창고 및 통신업	77,160	873,232	81,424	3.0	910,585	4.9	5.5	4.3
임 업	12,105	89,751	12,289	0.5	91,682	0.5	1.5	2.2
어 업	1,748	5,416	1,858	0.1	5,121	0.0	6.3	-5.4
농 업	17,449	83,540	18,785	0.7	79,482	0.4	7.7	-4.9
기타의 사업	1,678,961	10,058,930	1,755,840	65.5	10,239,876	54.7	4.6	1.8

#### 나.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용 특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sup>30)</sup>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작업을 하는 현장실습생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9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적용 특례

산재보험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급여 수급자를 근로자로 보아 당연적용하여 왔으나, 법제처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07.1.)을 하였다. 이에 산재보험법은 '08.7.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적용하고 있다.

####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02.5.6.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08.7.1.부터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하였고, '12.5.1부터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16.7.1.에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1.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를 직접운전하는 사람까지 적용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다만 그 근로자성 여부에서 기인한 특수성으로 인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직종은 다음과 같다.

3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직업계고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선도대학 등을 포함한 모든 현장실습생을 말한다(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 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직종>**

-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커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2. 임의 가입

임의적용 사업은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가입 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당연적용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가.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종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05.1.1.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09.7.1.시행),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12.5.1.시행), 예술인('12.11.18.시행), 대리운전업자와 비전속대리운전기사('16.7.1.시행), 1차급속 제조업 등 8개 업종('18.1.1.시행),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4개 업종('18.12.11.)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부터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업종 제한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주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범위>**

-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sup>31)</sup>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표 2-1-4>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17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률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중소기업 사업주(전체)	21,692	20,965	25,041	24,249	31,568	30,664	26.1	26.5	
근로자 있는 사업주	16,375	15,648	18,382	17,590	21,152	20,248	15.1	15.1	
근로자 없는 사업주	소계	5,317	5,317	6,659	6,659	10,416	10,416	56.4	56.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주	102	102	158	158	253	253	60.1	60.1
	화물운송차주	1,516	1,516	1,933	1,933	2,393	2,393	23.8	23.8
	건설기계사업주	1,950	1,950	1,637	1,637	1,343	1,343	-18.0	-18.0

31) 관련 내용은 본 편의 제3장 제2절 <6. 중·소기업 사업주의 평균임금>에 나와 있다.

구 분	'17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률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퀵서비스업자	1,167	1,167	1,846	1,846	2,536	2,536	37.4	37.4
예술인	578	578	647	647	2,025	2,025	213.0	213.0
대리운전기사	4	4	4	4	7	7	75.0	75.0
1차금속제조 등 7개 업종 제조업자	-	-	400	400	903	903	125.8	125.8
자동차정비업자	-	-	31	31	64	64	106.5	106.5
도소매업자	-	-	3	3	538	538	-	-
음식점업자	-	-	-	-	280	280	-	-
기타개인서비스업자	-	-	-	-	74	74	-	-

※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18.1.1. 이전 사업주까지만 표시

#### 나. 해외파견 근로자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의 경우 숙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해 사업주가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는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을 행할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함)에 해당 해외파견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인 경우에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파견자 보험료징수 시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 2-1-5> 해외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17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률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해외파견 근로자	14,598	4,591	14,661	4,870	15,539	5,051	5.9	3.7

#### 다. 산재보험관리기구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근로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시장·창고부문의 산재보험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2.1.1.부터 하역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항운노조), 사업주·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사무를 하는 경우 공단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보아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절 '19년 주요 추진 실적

### 1.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강구

'08.7.1.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였고, '12. 5. 1.에는 업무특성상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2개 직종(택배기사, 킷서비스기사)을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고용형태 다양화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산재보험 보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12년 연구용역을 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식 등의 검토에 이어 '13년에는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인적 종속성 등이 확인되는 8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14년 상반기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방안 검토를 위해 8개 직종에 대해 세부 종사 실태를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노사정 논의기구(산재보험 50주년 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해 직종별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및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과 전속 대리운전기사를 특수형태근로자 특례 직종으로 추가 확대하되,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주 특례 방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15년에는 3개 직종(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종사자에 대한 소득 실태 확인과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전속성 판단 기준 마련 등 세부 적용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련 업계 및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6년 기존 6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차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킷서비스기사)에 3개 직종(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 확대 적용하였다.

'19.1.1.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27종의 건설기계조종사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 확대 적용하였다.



## 보험료 징수

산재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조달된다<sup>32)</sup>. 즉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용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sup>33)</sup>, 이를 통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은 물론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써, 사업주에게는 법적·금전적 위험 부담을 분산시켜주고 재해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1절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sup>34)</sup>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cdot \text{산재보험료} = \text{보수총액} \times (\text{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text{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우리나라는 현재 위와 같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실적요율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32) 보험료에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산재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33)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보험화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부담의 책임이 없으며,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34)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19년도 1.5/1,000)

## 1.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보험급여 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며, 산재보험 급여액·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정해진다.

이러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과 부가보험료율(15%)로 구성된다.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고, ‘추가지출률’은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부가보험료율’은 산재예방·재해근로자 복지 등의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 사업에 균등하게 사용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이 포함되며, 각각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보험급여 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하여 결정된다.

보험료 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전년도 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19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총 35개 업종에 대해 평균 15.0/1000의 요율로 고시되었다.

'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lt;표 2-2-1&gt; '1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b>1. 광업</b>		<b>5. 운수·창고 및 통신업</b>	
석탄광업 및 채석업	225	철도·궤도, 삭도 및 항공운수업	8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7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b>2. 제조업</b>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b>6. 임 업</b>	72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b>7. 어 업</b>	28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0	<b>8. 농 업</b>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b>9. 기타의 사업</b>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3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 제조업	7	기타의 각종사업	9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1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
금속제련업	10	교육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8
<b>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b>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b>4. 건 설 업</b>	36	사업서비스업	8
		<b>0. 금융 및 보험업</b>	6
		* 해외파견자: 15/1,000	

※ 2019년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1.5/1,000 별도

## 2.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사업종류별로 적용된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더라도 재해가 많은 사업장이 있고 적은 사업장이 있으므로, 업종 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면 재해가 적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불만을 갖게 되고, 재해가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64년도부터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인상·인하해 주고 있다.<sup>35)</sup>

현재 개별실적요율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의 사업, 즉 산재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에서 ①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②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표2-2-2>참고), 보험수지율에 따라 당해 업종 산재보험료율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다음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인상·인하해 주고 있다.<sup>36)</sup> '19년도에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통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사업장수는 52,215개소이며, 인상된 사업장수는 3,661개소이다.

<표 2-2-2>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사업종류수	61	62	60	58	58	58	58	51	46	35
보험료율 (%)	최저	6	6	6	6	6	7	7	7	6
	평균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6.5	15.0
	최고	360	354	354	340	340	340	340	323	225
전체 적용 사업장수	1,317,681	1,363,807	1,478,102	1,619,141	1,709,873	1,829,639	1,947,458	1,924,177	2,031,581	2,126,842
개별요율 적용 사업장수	37,716	60,619	66,328	70,980	75,058	80,968	166,251	166,407	172,113	56,558

35) '69년에는 ±30%범위 내에서 인상·인하해 주었다가, '86년도부터는 ±40, 그리고 '96년부터는 ±50%로 확대하였다. '11년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20%~±50%까지 차등적용다가 '19년부터 사업규모 상관없이 ±20%까지 단일 증감폭을 적용하였다

36)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따른 증감비율), 수지율 : 과거 3년간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

&lt;표 2-2-3&gt; 사업규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

보험수지율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
수지율이 75% 이하인 경우	2.3%~20% 인하
수지율이 75%초과~85%까지인 경우	0
수지율이 85% 초과인 경우	2.3%~20% 인상

### 3. 산재예방요율

산재예방요율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로 '14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재예방요율의 적용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가 없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임업·위생및유사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사업주 재해 예방교육 이수 후 산재예방계획을 수립,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 실시하는 등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최대 30%까지 인하하고 있다. '19년도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통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사업장 수는 45,121개소이다.

&lt;표 2-2-4&gt; 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인하율

재해예방활동	인하율
사업주 교육	$\frac{\text{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365} \times \frac{10}{100}$
위험성 평가	$\frac{\text{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365} \times \frac{20}{100}$
근로시간 단축	$\frac{\text{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수}}{365} \times \frac{10}{100}$

\* 사업주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중복 실시한 경우 인하율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교육 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인하율에 합산하여 인하함.

&lt;표 2-2-5&gt; 산재예방요율 적용현황

구분	계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적용사업장수	45,121개소	35,044개소	10,077개소

## 제2절 보험료 징수제도

### 1. 보험료 신고·납부(징수)제도 개요(~'10년)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사업주이며, 자진 신고·납부('11년도부터는 건설업 및 별목업에 한함)를 원칙으로 한다.

산재보험료의 납부는 산재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추정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선납(개산보험료)하고 사후에 정확한 보험료를 확정(확정보험료)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보험료 간 차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그 초과금액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일 10만분의 11.8이었으나 '11.4.1.부터 연 3.7%, '12.3.1.부터 연 4.0%, '13.3.1.부터 연 3.4%, '14.3.14부터 연 2.9%, '15.3.6.부터 연 2.5%, '16.3.7.부터 연 1.8%, '17.3.15.부터 1.6%, '18.3.19.부터 1.8%, '19.3.20.부터 2.1%로 변경)을 가산한 금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분기별로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 시에는 해당된 각 분기의 중간 월 1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중간납)하여야 한다.



### 가.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는 매 보험년도 초에 미리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의미하며,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그 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보수총액<sup>37)</sup>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년도의 3월31일까지(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 나.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는 매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미지급 보수액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주는 다음 보험년도 3월31일(보험관계가 보험년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고, 부족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보험료 부과·고지제도 개요('11년~)

그동안 각 사회보험별로 상이하게 운영된 보험료의 부과체제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11년부터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변경되고 기존의 자진신고·납부에서 월별부과 고지로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11.1월부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며, 다만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 등의 파악이 어려워 월별 부과·고지 제도 적용이 곤란한 업종 즉, 건설업·별목업 등은 기존의 자진 신고·납부 방식을 유지하여 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보험료산정·고지·수납)

37)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란 사업주가 보험년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가.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월별보험료의 정산 및 당해연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 보수총액과 상이한 경우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와 사업주가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월별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충당·반환한다.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초로 당해연도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당해연도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한다.

### 나.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11.1월부터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 고용종료, 전보, 휴직, 정보변경시 가입정보 및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임의가입)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미신고자를 발굴하기 위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타 사회보험 부과자료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미신고자를 구축하고 가입안내 등 가입촉진활동을 통하여 '19년말 14,014,5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하였다.

### 다. 보험료 징수(납부) 현황<sup>38)</sup>

'19년도 보험료 징수결정액은 전년도보다 1.4% 증가하였고, 보험료 수납액도 전년도보다 1.8% 증가하였다. 이 중 '08.7.1.부터 새로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의 경우 12,97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전체 수납액의 0.18%를 차지하고 있다.

38) 일반적으로 보험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순수 보험료와 기타징수금(가산금+연체금+급여징수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나, <표2-2-6>와 <표2-2-7>는 순수 보험료 징수현황만 집계한 것이며, 기타징수금 징수 현황은 본 절의 <5. 가산금 및 연체금>과 <6. 급여징수제도>에 나와 있다.

<표 2-2-6>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sup>1)</sup>

(단위 : 백만원, %, %p)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
전체	7,595,598	7,698,142	1.4	6,926,236	7,048,660	1.8	91.2	91.6	0.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3,809	14,778	7.0	12,348	12,974	5.1	89.4	87.8	-1.6

1) 순수 보험료만 집계한 것이며, 기타징수금(가산금+연체금+급여징수금), 이월보험료는 제외함

업종별 징수결정액은 기타의 사업 2,423,970백만원(34.4%), 건설업 2,076,157백만원(29.5%), 제조업 1,851,267백만원(26.3%) 순이며, 업종별 수납률은 건설업이 93.4%로 가장 높고, 어업이 87.4%로 가장 낮았다.

<표 2-2-7>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sup>1)</sup>

(단위 : 백만원, %, %p)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
합계	7,595,597	7,698,142	1.4	6,926,236	7,048,660	1.8	91.2	91.6	0.4
금융·보험업	208,172	250,702	20.4	192,041	231,601	20.6	92.3	92.4	0.1
광업	62,500	44,013	-29.6	56,240	39,639	-29.5	90.0	90.1	0.1
제조업	2,262,747	2,055,966	-9.1	2,028,397	1,851,267	-8.7	89.6	90.0	0.4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35,421	43,607	23.1	32,642	40,294	23.4	92.2	92.4	0.2
건설업	2,130,976	2,223,208	4.3	1,989,111	2,076,157	4.4	93.3	93.4	0.1
운수·창고 및 통신업	383,441	371,227	-3.2	347,641	337,734	-2.8	90.7	91.0	0.3
임업	27,662	21,691	-21.6	25,066	19,380	-22.7	90.6	89.3	-1.4
어업	3,926	3,593	-8.5	3,334	3,142	-5.8	84.9	87.4	2.9
농업	29,679	28,324	-4.6	26,625	25,476	-4.3	89.7	89.9	0.2
기타의 사업	2,451,075	2,655,811	8.4	2,225,140	2,423,970	8.9	90.8	91.3	0.6

1) 순수 보험료만 집계한 것이며, 기타징수금(가산금+연체금+급여징수금), 이월보험료는 제외함

\* 사업종류별 전체 보험료(순수 보험료+기타 징수금) 징수 현황은 제3편 제2장의 &lt;2-3&gt; 통계표 참고.

### 3. 보험료 공제제도

산재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전액 선납하는 사업주와 분할 납부하는 사업주 간 재정적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일시 납부를 촉진하여 보험재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사업주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 내(당해 보험년도 3월31일 까지, 연도 중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산재정보통신망(<http://total.kcomwel.or.kr>)을 이용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거나(5천원 공제)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250원 공제)에도 보험료의 일정액을 공제해 준다.

'19년 보험료 징수결정액의 28,597백만원이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해 공제되었다.

<표 2-2-8> 산재보험료 공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23,575	17,102	18,513	21,084	24,927	28,597	14.7
일시납 3%	20,718	14,168	15,322	17,942	21,489	25,062	16.6
자동계좌이체	1,782	1,962	2,182	2,057	2,296	2,382	3.7
전자신고	1,075	972	1,009	1,085	1,142	1,153	1.0

### 4. 보험료 경감제도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화재, 폭발 및 전화 등)가 있는 경우,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이를 경감<sup>39)</sup>해 주는 제도가 '06.12.28.부터 시행되고 있다. '08년도에는 태안에서 허베이스피릿호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12백만원, '16년도에는 개성공단 조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39) 경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

사업장 148개소에 대하여 532백만원, '19년도에는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126개소에 대하여 147백만원의 보험료를 경감한 바 있다.

한편, 징수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11.1.1~'15.12.31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임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2013년까지는 임금총액의 115를 초과, 2014년의 경우 임금총액의 120을 초과, 2015년의 경우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 해당 연도 보험료 등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sup>40)</sup>

## 5. 가산금 및 연체금

### 가. 가산금

가산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확정보험료에 대한 성실 신고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가산금 징수결정액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이거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천재지변,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되며, 확정보험료에 대한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액에 대한 가산금의 50/100을 경감해 준다.

'19년에는 전년대비 가산금 부과액이 16.2%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12.7% 증가하였다.

<표 2-2-9> 산재보험료 가산금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p)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
가산금	7,871	9,144	16.2	4,782	5,388	12.7	60.8	58.9	-1.9

※ 이월가산금 제외

40)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중이 120%('14년), 125%('15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경감률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경감률 산출비율=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20(1.25)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나. 연체금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 등’)을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날부터는 매 1일 경과할 때마다 1/3,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되 체납된 보험료 등의 90/1,000를 넘지 못한다.

<표 2-2-10> 산재보험료 연체금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p)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
연체금	36,910	39,223	6.3	17,255	20,796	20.5	46.7	53.0	6.3

※ 이월연체금 제외

## 6. 급여징수제도

법정기한 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함으로써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를 급여징수제도라 한다.

이는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하여 보험사업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70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급여징수제도 대상 및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보험급여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lt;징수대상 및 보험급여액의 범위&gt;

- ① 법정 기한 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특별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제외)의 50%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위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급여청구가 발생한 보험급여액(특별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제외)의 10%(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lt;표 2-2-11&gt; 산재보험급여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p)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급여징수액	31,289	15,148	-51.6	8,025	4,495	-44.0	25.6	29.7	4.1

※ 이월급여징수금 제외

## 7.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규모기업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71년에 도입되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보험관계성립·변경·소멸신고 등 사업주가 공단에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19년 말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전년보다 532개소가 증가한 4,409개소이며, 그 중 72.5%가 서울·경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의 형태별로는 개인세무사가 53.3%, 노무세무법인 3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중 26%가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표 2-2-12> 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비율	
인 가 기 관 수	합 계	2,542	2,936	3,319	3,877	4,409	100.0	
	기 관 형 태 별	경영자협회	14	12	12	10	10	0.2
		상공회의소	20	14	12	10	9	0.2
		노무·세무회계 법인	1,022	1,136	1,293	1,514	1,616	38.3
		공인노무사	152	187	227	243	273	6.2
		세무사	1,275	1,526	1,711	2,024	2,349	53.3
		업종 연합회	28	29	31	37	38	0.9
		기타	31	32	33	39	38	0.9
		지 역 별	서울·인천·경기	1,807	2,106	2,398	2,791	3,198
	강원		36	37	39	46	49	1.1
	부산·경남		236	251	287	321	356	8.1
	광주·전남		80	97	108	142	162	3.7
	대구·경북		170	186	199	231	249	5.6
	대전·충남		110	140	156	197	232	5.3
	전북		57	65	69	83	82	1.9
	충북		40	46	54	52	62	1.4
	제주		6	8	9	14	19	0.4



### 제3절 '19년 주요 추진 실적

산재보험은 매년 사업종류별로 구분해서 산재보험료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러한 사업종류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재분류하여 재해위험성 및 산업활동이 유사하나 달리 분류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우선 통합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45개에서 35개로 대폭 축소하여 사업종류간 사회보험 연대를 강화하였다.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매년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산재보험료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또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사업주의 산재예방노력을 유인하는 특례제도(개별실적요율제)를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보험료 할증에 따른 산재발생 은폐 우려도 있어 '19년부터 상시 30명(건설업 총공사실적 60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 할인·할증폭을 최대 20%까지로 낮췄다.

이에 따라 대기업 할인액 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료 납부 부담이 경감되고, 산재 발생 시 보험료 할증 부담 완화로 재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사업주의 조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세 사업장 및 취약 노동계층 산업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험 업종 추가 등 50인 미만 사업장 예방요율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산재 예방 노력과 연관성이 낮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 해소를 위해 모든 업무상 질병을 보험수지율 산정 시 제외하였다.

'19년에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온라인 납부 채널을 확대하였다. 건설업 사업장을 위해 10개 시중카드사 참여를 통한 분할납부 보험료 신용카드 자동

이체 제도를 신규 도입(11월)하였으며, 타행 이체 수수료 부담 해소를 위한 가상계좌 납부 은행에 농협(5월)을 추가로 확대하여 고객의 납부 편의가 향상되었다.

또한 보험사무대행제도를 활용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편의 제고를 통해 소규모 사업주 행정처리 부담 완화 및 노동자 고용안정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소규모 건설공사('18. 7월) 전면 확대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건설업 사업주를 위한 보험사무대행서비스 수혜를 확대하는 등 '19년말 현재 소규모 사업장 약 70만개소와 노동자 약 383만명이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요양 및 보상

### 제1절 산재보험급여

####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sup>41)</sup>, 이를 치유할 때까지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현물로 지급한다.

즉, 치료를 위해 요양한 기간 동안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 등을 통해 보상받게 되며, 위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물급여인 요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 자비로 실시한 요양에 대해 직접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양비)<sup>42)</sup>,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41)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되는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고,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는 치료기간이 3일 이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42) 다만 근로자가 자비로 치료한 후 현금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 수가와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수가 차이만큼의 요양비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
-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지나 보조기 구입비용, 간병 및 이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최초 요양 승인 여부 결정 전,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법정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성립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
- 추가상병이나 재요양 승인 여부 결정 전,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
- 재해 발생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없거나, 특수치료가 필요한 상병 상태로 인하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를 한 경우

#### 가.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 수준

요양급여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병치료에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의학적 조치가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학회 등에서 공인되지 않은 특수요법 및 신요법, 연구 목적의 진료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양급여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산재근로자가 위와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요양을 받는 경우, 각 의료기관 또는 산재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할 요양급여의 수준은「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8조, 같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위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해 그 지급수준이 결정 된다<sup>43)</sup>.

43) 요양급여 산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의 제3절 <2.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다루고 있다.



#### 나.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실시하는 요양을 재요양이라 한다.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초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둘째,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셋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넷째,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이다.

#### 다. 치료종결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계속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 종결을 하게 된다.

이때 치료 종결은 근로복지공단 각지사별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sup>44)</sup>에서 심의 후 결정하며, 근로자의 상병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의학적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결정되면 당해 산재근로자의 치료는 종결되고, 요양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남아있는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가 지급된다.

44)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공단 각지사별로 설치되어 있다.

라. 요양환자 및 요양급여 지급 현황

'19도 말 현재 요양환자는 44,566명으로 전년보다 7.6%가 증가하였고, 그 중 치료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요양환자가 24.3%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2년 이상 장기 요양환자 비율은 19.4%이다.

<표 2-3-1> 산재보험 요양 환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요양환자(전체)			입원 환자		통원 환자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18년	'19년
합 계	41,424	44,566	7.6	8,790	8,790	32,634	35,769
요양기간 6월 미만	21,938	22,728	3.6	3,040	2,858	18,898	19,870
6월 ~ 1년	7,365	8,480	15.1	1,010	1,118	6,355	7,362
1년 ~ 2년	3,801	4,726	24.3	889	1,022	2,912	3,704
2년 ~ 3년	1,480	1,680	13.5	453	489	1,027	1,191
3년 ~ 5년	1,359	1,480	8.9	576	539	783	941
5년 ~ 10년	1,713	1,725	0.7	943	909	770	816
10년 이상	3,768	3,747	-0.6	1,879	1,862	1,889	1,885

요양급여는 225,665명에게 1,085,076백만원이 지급되었고, 전년도에 비해 수급자수는 8.8%, 요양급여는 6.9%가 증가되었다.

<표 2-3-2> 요양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p)

구분	수급자			지급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요양급여	207,456	225,665	8.8	1,015,138	1,085,076	6.9
비율 <sup>1)</sup>	-	-	-	20.7	19.6	

1) 해당 연도 전체 보험급여 지급금액('19년: 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



##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sup>45)</sup>, 평균임금<sup>46)</sup>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단기소득보장급여이다.

### 가. 휴업급여 지급 수준

휴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1일 휴업급여)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지급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수준을 달리한다.

첫째, 평균임금의 70%가 당해연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sup>47)</sup>의 80%보다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이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또한 위의 모든 경우에 대해 산정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90%,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거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둘째, 재요양 기간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재요양 당시 소득이 없거나, 새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로 지급된다. 따라서 재요양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저소득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업급여 지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5)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6)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개념으로서,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출하고 진폐증 등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업무상질병 이환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한다.

47)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 제2절의 <1.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나와 있다.

셋째,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서 매년 4%p씩 감액하여 지급하고, 65세 이후부터는 20%p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단 61세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간은 이를 감액하지 못하며, 61세 이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표 2-3-3> 휴업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수급자			지급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휴업급여	125,162	137,309	9.71	1,107,405	1,319,085	19.11
비율 <sup>1)</sup>		-		22.00	23.86	

1) 해당 연도 전체 보험급여 지급금액('18년: 5,033,901백만원, '19년: 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

#### 나. 부분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에 취업이 가능한 산재근로자가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08.7.1.부터 시행되고 있다.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라도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상병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 조기 직업복귀가 느려지고 상대적으로 요양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요양기간동안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해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부분휴업급여는 휴업급여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서 '요양 기간 중 취업하여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해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인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과 '1일 휴업급여액'에 '8시간(법정근로시간) 대비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인 『미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을 합하여 지급된다.

다만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가 취업한 경우,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하여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전부가 지급되며<sup>48)</sup>, 고령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고령자 감액비율<sup>49)</sup>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급된다.



###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sup>50)</sup>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장해<sup>51)</sup>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장해급여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그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이때 장해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22개 부위로 나누고, 각 부위에 있어서 기능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 관점에서 26종의 계열로 세분한 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165종의 유형적인 신체 장애를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 후 일정 범위로 함께 묶어 같은 등급으로 정한다. 현행 장해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 가. 장해급여 지급 수준 및 방법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고, 장해등급에 따라 그 지급 방법을 달리한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산재장해인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산재장해인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산재장해인에게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첫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연금수급권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48)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은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거나 적용이 제외되므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9)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 산정 시에는 고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액 적용자의 경우에는 기준 최저임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감액을 고려한 금액을 적용하여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한다.

50)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1)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둘째, 연금수급권자 중 생계대책 등을 위해 연금의 일부를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다.<sup>52)</sup> 이때 나머지 1/2은 선지급 기간 동안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다.<sup>53)</sup>

<표 2-3-4> 장해급여 지급 기준

장 해 등 급	연금 <sup>54)</sup>	일시금 <sup>55)</sup>	선급금 <sup>56)</sup>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1,474일분	연금 지급 대상이나, 선급금 신청 시 연금의 4년분까지는 해당 금액의 50%를 일시에 지급 가능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나, 연금을 선택하면서 선급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의 2년분까지는 해당금액의 50%를 일시에 지급 가능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52) 다만 선지급 연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53) 장해연금 선급금 지급 범위에 있어서 '08.7.1.법령 개정 이전에는 선지급을 신청한 기간에 지급할 연금의 10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선급기간이 지난 후부터 100%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 하였다.

54) 장해보상연금은 '연금 지급당시의 평균임금 × 해당 장해등급의 연금일수'로 산정되며, 이 금액의 1/12을 매월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55) 위 표에 1~3급까지 표시된 일시금 수준은 예외적으로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의 지급금액을 의미한다.

56) 선급금은 '(선급금 지급 당시 평균임금 × 해당 장해등급의 연금일수 × 선급기간 × 1/2) - (선지급 연금액 × 2/100)'로 산정되며 일시에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 나.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연금수급권자가 일시금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유족은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sup>57)</sup>, 이는 연금을 지급받다가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최소한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81.12.17. 법 개정 시 처음 도입되었다. 이때 연금수급권 소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망한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연금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이를 위해 출국한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 장애등급 재판정에 따른 급여 지급

장해급여는 요양종결 후 남은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치유 당시의 장해 상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복 또는 악화되는 경우에도 판정 당시의 등급에 따라 그대로 지급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를 도입('08.7.1.)<sup>58)</sup>하였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sup>59)</sup>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이 변경될 경우, 연금으로 청구하면 재판정 진찰일(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57)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면 일수가 구해지는데, 이 일수가 <표 2-3-4>의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는 경우,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58)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08.7.1.이후 치유된 자(재요양자 포함)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해급호 해당자이다.

59)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이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판정을 이행한날 전날까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연금이 지급되고, 일시금으로 청구하면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표 2-3-5> 장애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수급자			지급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합계	85,610	90,940	6.23	1,831,448	1,968,160	7.46
연금	52,178	52,879	1.34	1,273,609	1,331,728	4.56
일시금	33,467	38,097	13.83	557,839	636,432	14.09
비율 <sup>1)</sup>	-	-		36.38	35.59	

- 1) 연금, 일시금 수급자수에는 중복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수 합계와 차이가 있음.
- 2) 해당 연도 전체 보험급여 지급금액('18년: 5,033,901백만원, '19년: 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 (진폐보상연금은 미포함)

#### 4.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경과 하도록 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sup>60)</sup> 이는 장기 요양 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요양에 따른 부대비용 지출 등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보다 보상수준을 높여 지급하고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그 지급 수준을 달리하며, 제1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329일분(평균임금의 90.1%)이, 제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91일분(평균임금의 79.7%)이, 제3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57일분(평균임금의 70.4%)이 지급된다<sup>61)</sup>.

60)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제3급까지 해당되어야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2년 이상 장기 요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중증요양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이 산정되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근로자가 받던 상병보상연금에서 매년 4%p가, 65세 이후에는 20%p가 감액 지급된다<sup>62)</sup>.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않아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이때 장해등급 제4급~제7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인 제1급~제3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급~제3급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라도 재요양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바로 상병보상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상병보상연금도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재요양 당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새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한다.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 변동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14. 11월)

61) ’08.7.1. 이전에는 평균임금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나(즉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08.7.1. 시행 산재보험법에 의해 상병보상연금이 일단위로 지급됨에 따라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진단서가 발급된 날)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62) 상병보상연금 고령자 감액제도는 ’99.12.31.법 개정 시 도입되어 ’01.1.1.이전 재해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고령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상병보상연금액의 7%를 감액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08.7.1. 법 개정 시 본문의 내용과 같이 개정되었다.

<표 2-3-6> 상병보상연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p)

구분	수급자			지급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합 계	4,192	3,943	-5.94	154,101	148,720	-3.49
1급	2,306	2,240	-2.86	86,305	88,133	2.12
2급	658	607	-7.75	20,717	19,864	-4.12
3급	1,262	1,117	-11.49	47,078	40,723	-13.50
비율 <sup>1)</sup>	-	-		3.06	2.69	

1) 해당 연도 전체 보험급여 지급금액('18년: 5,033,901백만원, '19년: 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

## 5.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사망 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던 유족에게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상하고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 가. 유족급여 수급자격자 및 수급권자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인 자녀, 19세 미만인 손자녀 그리고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 제3급) 이상의 남편,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연령에 관계없이 수급 자격을 가진다. 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가장 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된다.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는 기본적으로 부양이 비부양에 우선하며, 배우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혈족에 대해서는 방계보다 직계를, 존속보다 비속을, 촌수 근친 우선으로 하여 정해진다.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
- ②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
- ③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 ④ 형제자매

동일 순위 내에서도 양부모가 실부모에 우선하며, 위와 같은 일반적인 수급권자 순위 및 결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망 근로자가 유언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이 우선 적용된다.

#### 나. 유족급여 지급 수준 및 방법

연금은 기본적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된다. 즉 <표2-3-7>과 같이 기본금액에 가산금액(연금수급권자 및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데, 그 가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20%를 넘지 못한다(즉, 유족보상연금의 최고상한선은 급여기초연액의 67%이다).

<표 2-3-7> 유족급여 지급 기준

구 분		급여액	* 가산금액
연금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47%	-
	1인	52%	5%
	2인	57%	10%
	3인	62%	15%
	4인	67%	20%
일 시 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첫째,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시금으로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연금은 해당 유족보상연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둘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때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한 유족에 대한 수급권의 순위는 언급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순위와 동일하다.

#### 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 및 차액 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데 사망하거나 재혼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경우 및 장애인이었던 자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 상실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상실된다.

위와 같이 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며, 수급자격자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조정된 연금액은 조정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장애보상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수급권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연금 수급권자는 최소한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장받게 된다. 즉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고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순위는 수급권 순위대로 적용된다.

<표 2-3-8> 유족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수급자			지급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합 계	27,686	28,990	4.71	635,696	684,159	7.62
연 금	27,080	28,376	4.79	512,509	560,520	9.37
일시금	1,191	1,145	-3.86	123,187	123,639	0.37
비 율 <sup>2)</sup>	-	-	-	12.63	12.37	-

1) 연금, 일시금 수급자수에는 중복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수 합계와 차이가 있음.

2) 해당연도 전체 보험급여 지급금액('18년: 5,033,901백만원, '19년: 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산재유족연금은 미포함)



## 6. 장애·유족 특별급여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업주와 합의하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이를 갈음하여 유족 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의 민사배상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유족특별급여라 한다.

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중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장애특별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유족 및 장애특별급여액은 라이프니츠계수를 적용한 민사배상액 수준으로 지급되고, 이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사이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지급된 특별급여액은 모두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되며, 보험가입자는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7.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급여로서, 실비지급의 성격을 지니므로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유족이 아니라도 실제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급여징수<sup>63)</sup>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장의비 수급권자가 장제를 행한 유족인 경우에는 실제 장제 비용에 상관없이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자간 임금 수준의 차이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의비의 최고수준과

63)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특별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제외)의 50%(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불가)를 징수하고,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50%미만인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급여청구가 발생한 보험급여액(특별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제외)의 10%(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초과 불가)를 징수하고 있다.

최저수준을 고시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각각 최고 및 최저수준으로 고시된 금액을 해당 장의비로 지급한다.

<표 2-3-9> 장의비 고시금액('19년 적용금액)

구분	고시 금액	비 고
최고 금액	15,554,290	전년도 1인당 평균장의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 30일분
최저 금액	11,097,760	전년도 1인당 평균장의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 30일분

만약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였을 때에는 실제 장제에 소요된 비용만을 장의비로 지급한다.

<표 2-3-10> 장의비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수급자			지급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장의비	2,565	2,470	-3.70	32,268	31,838	-1.33
비율 <sup>1)</sup>	-	-		0.64	0.58	

1) 해당 연도 전체 보험급여 지급금액('18년: 5,033,901백만원, '19년: 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

## 8.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증상의 고정으로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00년 7월에 도입되었다.

간병급여에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가 있다.

상시간병급여는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고, 다른 부위에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수시간병급여는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 ② 장애등급 제1급(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급된다.<sup>64)</sup>

상시 간병급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 수준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19년 상시 간병급여 기준 금액은 41,170원, 수시 간병급여 기준 금액은 27,450원이다. 다만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이 들지 않거나 실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된다.

<표 2-3-11> 간병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수급자			지급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합 계	5,365	5273	-1.71	54,966	53,633	-2.43
상시간병	878	817	-6.95	11,899	10,838	-8.92
수시간병	4,547	4497	-1.10	43,067	42,795	-0.63
비 율 <sup>1)</sup>	-	-		1.09	0.97	

1) 해당 연도 전체 보험급여 지급금액('18년: 5,033,901백만원, '19년: 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  
※ 수급자수 합계는 상시간병 수급자수와 수시간병 수급자수의 단순 합이 아님(등급변동 가능)

## 9. 직업재활급여<sup>65)</sup>

직업재활급여는 그동안 예산사업으로 수행해 오던 직업훈련지원사업, 원직장복귀 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요양과 재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급여화한 것이다.

64) '08.7.1. 이전 종결자의 경우에도 '08.7.1. 개정 법령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간병급여 지급 기준의 형평성 논란 및 중복문제의 논란이 있었던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허약한 경우” 를 간병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5)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편의 제4장 제3절 <1. 직업재활급여의 도입>에 나와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이 주로 현금보상 위주의 예산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08.7.1.부터 재활사업 일부를 보험급여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및 원직장 복귀 등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12> 직업재활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수급자수			금 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직업재활급여	3,042	3,688	21.24%	14,828	23,108	55.84%

## 10. 진폐연금

### 가.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장해급여의 일환으로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정법('10.5.20.)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장해급여의 체계로 보상을 하였으나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일시금(제5급~제13급)을 받은 근로자와 진폐의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 '06.12.13.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시에 진폐제도개선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07.11월부터 '08.10.1까지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진폐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10.5.20. 개정법률 공포 후 '10.11.21.자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1)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수준 및 방법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형평성을 추구하였다.

특히, 진폐장해연금의 경우 심폐기능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간 크지 않고, 변동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지급 단계를 단순화 하였다.

※ 기존 3, 5, 7, 9, 11, 13급(6단계) → 개정 1~3급, 5~7급, 9~13급(3단계)

<표 2-3-13> 진폐장해연금 지급 기준

(평균임금 기준)

진폐장해등급	진폐장해연금
1급, 3급	132일분
5급, 7급	72일분
9급, 11급, 13급	24일분

### 2) 진폐보상연금의 차액 일시금 및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제도는 일반장해등급 체계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모든 진폐장해등급에 대하여 연금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진폐근로자의 생존시의 삶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 등으로 인한 연금수급권이 소멸할 경우 차액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일반적인 장해등급 재판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나.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진폐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유족연금의 체계와 같다.

#### 1) 유족급여 지급수준 및 방법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

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일반적인 유족연금자의 보상 체계와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2)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의 상실 및 차액 일시금

진폐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은 일반적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의 상실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진폐보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의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액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표 2-3-14> 진폐연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수급자			지급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합 계	12,040	12,340	2.49	188,051	215,580	14.64
진폐보상연금	10,883	11,002	1.09	167,309	189,565	13.30
진폐유족연금	1,157	1,338	15.64	20,742	26,015	25.42
비 율 <sup>1)</sup>	-	-		3.74	3.90	

1) 해당 연도 전체 보험급여 지급금액('18년: 5,033,901백만원, '19년: 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



## 제2절 보험급여 산정 및 지급 특례

산재보험은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에 지급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정률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개념으로서,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출한다('08.7.1.).<sup>66)</sup>

또한 정률보상방식이란 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로기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실손해액을 산출하여 배상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에 산재보험은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의 적용(전액 또는 일부), 평균임금 증감제도, 직업병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도 등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 1.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

사회보험급여는 사회적으로 최저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면서, 그 보장수준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 급여 수급자 간 형평을 잃지 않고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up>66)</sup> 다만,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 계약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적용이 제외된다('08.7.1.).

산재보험급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완장치로 최저 보상 기준금액('77)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 간 평균임금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급여의 격차에 대한 보완장치로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00)을 두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모두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67)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8배 수준의 임금액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고, 1/2배 수준의 임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며('08.7.1. 시행)68), 이들 기준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만약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 기준금액에 못 미치거나 최고 보상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그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게 된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산재보험급여 중 유족급여, 장애급여의 산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평균임금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모든 보험급여에 적용된다.

<표 2-3-15> 최저·최고 보상기준 고시금액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최저 기준금액(원)	51,746	53,275	55,210	57,135	66,800
최고 기준금액(원)	186,286	191,793	198,757	205,686	214,402

<표 2-3-16> 최저·최고 보상기준금액 지급 현황69)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비율 <sup>1)</sup>
최저보상기준 금액 적용	수급자	11,904	11,675	13,104	17,462	5.45
	지급액	105,554	106,470	122,962	189,069	3.42
최고보상기준 금액 적용	수급자	13,106	12,930	13,380	13,790	4.31
	지급액	450,414	126,619	483,656	508,823	9.20

1) '19년 전체 수급자(320,184명) 및 보험급여 지급금액(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

- 67)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68) '08.7.1. 법령 개정 전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각각 최근 3년간 전체근로자의 임금수준 등과 최저임금액의 전년 대비 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하였으나, 그 금액이 산정 방법과 적정성에 논란이 있어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다.
- 69) 최저 보상기준 금액 적용 보험급여 지급 현황의 대상은 유족급여, 장애급여이며, 최고 보상기준금액 적용 보험급여 지급 현황의 대상은 평균임금을 이용하여 산정되는 모든 보험급여(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애급여)이다.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산정에 활용된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는 <표2-3-17> 참고.



## 2. 최저임금액 적용

최저임금액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먼저 휴업급여의 경우, 1일 휴업급여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액으로 하여 지급하며('00),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근거로 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한다('08.7.1.). 또한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의 경우엔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취업하지 않고 있어 대상 임금이 없다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액으로 하여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며, 재요양을 거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때 재요양 당시 취업하지 않고 있어 대상 임금이 없다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한다.

<표 2-3-17> 최저임금액 고시금액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최저임금액(1일, 원) <sup>1)</sup>	44,640	48,240	51,760	60,240	68,720

1)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산재보험법 제54조제2항 참조)

<표 2-3-18> 최저임금액이 적용된 보험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비율 <sup>1)</sup>
수급자	37,613	41,295	43,610	57,055	72,623	22.68
지급액	160,915	191,192	217,823	335,442	483,782	8.75

1) '19년 전체 수급자(320,184명) 및 보험급여 지급금액(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

### 3.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산정 특례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생활급여를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반 산재근로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수준보다 상향 지급하고 있다('08.7.1.)<sup>70)</sup>.

먼저 휴업급여의 경우,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지급률을 평균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액으로 하여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액이 휴업급여액보다 적으면 휴업급여액을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하여 지급한다.<sup>71)</sup>

<표 2-3-19>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 지급)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지급	'평균임금의 90%' 지급	'최저임금액' 지급	
'18	수급자	-	-	56,262	851
	지급액	-	-	317,210	18,232
'19	수급자	-	-	71,734	944
	지급액	-	-	461,061	22,689

70) '08.7.1. 법령 개정 전에는 1일 휴업급여액 즉,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였다.

71)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수준이 평균임금의 90%로 상향됨에 따라 상병상태가 중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이 휴업급여보다 낮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4. 평균임금 증감제도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급여를 장기간 지급받는 연금수급권자 등의 경우, 최초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그대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면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이러한 격차를 보전하여 보험급여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73년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하되, 증감 기준 시점에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 처리하고, 60세에 도달한 수급권자의 경우('13년 이후에는 61세, 이후 매 5년 단위로 1세를 추가하여 '33년 이후에는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증감 처리한다('08.7.1.)<sup>72)</sup>. 이때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증감률

$$\text{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frac{\text{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text{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 소비자물가변동률

$$\text{소비자물가 변동률} = \frac{\text{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12}$$

<표 2-3-20> 평균임금 증감제 관련 고시금액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소비자 물가 변동률	적용 기간
1.0424(4.24% 증가)	1.0165(1.65% 증가)	'19.1.1. ~ 12.31.

72) '08.7.1. 법령 개정 전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의 통상 임금 변동률을, 연금수급자, 퇴직근로자, 휴·폐업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월정액급여변동률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였다.

## 5. 진폐증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진폐증 등 직업병에 걸린 산재근로자의 경우 잠복기간과 확진 판단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특성으로 인해 질병이 진단될 시점에는 이미 노동능력의 약화로 임금소득이 감소되어 평균임금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낮아지게 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일반적인 평균임금과 달리 산정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sup>73)</sup>.

이때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직업병이란 진폐증, 소음성 난청 등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된다.

특례 임금은 사업장의 가동 여부에 따라 다른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가동 중이라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산정특례임금이 되고, 해당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되었다면 ‘휴업 또는 폐업된 날을 기준으로 그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임금이 특례임금이 된다.

<표 2-3-21>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된 보험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비율 <sup>1)</sup>
전 체	수급자	4,736	5,111	5,805	6,950	8,172	4.9
	지급액	126,588	138,025	163,307	258,174	272,080	
진폐증	수급자	3,900	3,835	3,827	3,888	3,889	
	지급액	93,421	92,058	92,405	145,796	118,975	
소음성 난청	수급자	52	112	367	1,002	1,615	
	지급액	1,466	3,165	11,661	35,283	56,417	
기 타	수급자	784	1,164	1,611	2,060	2,668	
	지급액	31,700	42,802	59,242	77,095	96,688	

1) '19년 전체 보험급여 지급금액(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

73) '83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진폐증에만 적용하다가 '89년에 진폐 등의 질병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구체적인 적용 질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나와 있다.



## 6. 중·소기업 사업주의 평균임금

본 편의 제1장 제1절 <2. 임의가입>에서 설명하였듯이,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근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2년도에는 임금수준이 총 10개 등급이었으나 '16년도부터 12개 등급으로 확대되었다.

보험가입 시 선택한 임금수준은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해당 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보험료 신고·납부 시에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표 2-3-22> 중·소기업 사업주 평균임금 고시 금액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004,000	66,800
2등급	2,406,540	80,218
3등급	2,809,080	93,636
4등급	3,211,620	107,054
5등급	3,614,160	120,472
6등급	4,016,700	133,890
7등급	4,419,240	147,308
8등급	4,821,780	160,726
9등급	5,224,320	174,144
10등급	5,626,860	187,562
11등급	6,029,400	200,980
12등급	6,432,060	214,402

<표 2-3-23>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비율 <sup>1)</sup>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전체	339	3,187	365	3,971	389	4,317	453	4,874	485	5,306	0.1
1등급	72	465	79	537	82	633	83	607	96	790	
2등급	27	280	30	391	27	365	37	326	47	362	
3등급	39	447	49	380	57	576	62	636	61	663	
4등급	22	175	20	161	26	196	29	305	40	324	
5등급	33	355	27	373	37	415	44	523	52	548	
6등급	26	167	36	291	33	327	40	340	40	387	
7등급	41	349	40	479	37	295	41	536	36	395	
8등급	28	329	35	648	32	547	34	571	30	329	
9등급	13	131	13	275	17	663	24	301	28	398	
10등급	30	350	23	268	26	177	32	333	31	596	
11등급	4	108	4	50	4	49	8	93	9	201	
12등급	4	32	9	119	11	74	19	304	15	313	

1) '19년 전체 보험급여 지급금액(5,529,360백만원)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임.



### 제3절 요양급여 산정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실시함으로써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비로 요양하거나, 비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요양한 경우, 의지 기타 보철구 구입비용, 간병료, 이송료 등은 산재근로자의 요양비 청구에 의해 직접 그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요양급여는 실제 비용의 지급대상에 따라 크게 진료비(의료기관에 지급), 약제비(약국에 지급), 요양비(산재환자에게 지급)로 구성된다.

'19년도 전체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로 전년보다 0.6%p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진료비는 4.2% 증가, 약제비는 3.33% 증가, 요양비는 13.8% 증가하였다.

<표 2-3-24> 요양급여 종류별 지급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수급자 <sup>2)</sup>			지급액		
	'18년	'19년	증감률	'18년	'19년	증감률
요양급여 전체	207,456	225,665	8.8	1,015,138	1,085,076	6.9
진료비	150,516	158,273	5.2	713,038	742,743	4.2
약제비	65,755	68,625	4.4	13,471	13,921	3.3
요양비 <sup>1)</sup>	154,316	167,114	8.3	288,628	328,413	13.8

1) 요양비 : 진료비성 요양비 + 간병료 + 이송료 + 재활보조기구

2) 진료비와 약제비 수급자수는 의료기관, 약국을 통해 현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수임

## 1. 진료비·약제비

### 가. 비용범위 및 성격

진료비와 약제비란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한 현물급여 즉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비용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진료비 진료항목은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처방전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요양장기, 특수장비(CT, MRI, PET),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식대, 확인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행위진료료는 양방의 경우 투약 및 처방전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특수장비 등이 해당 되고, 한방의 경우 시술 및 처치료(침술, 구술, 부항술, 처치료), 검사료(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 정신요법료 등이 해당된다.

진료비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르되, 산재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 기준이 위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일반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에 따라 산정·지급하며<sup>74)</sup> 위 행위진료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급별로 비율을 달리 가산하여 산정·지급한다.

<표 2-3-25> 의료기관 등급별 행위진료 가산율

구 분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산정방법	적용 가산율
상급종합병원	30%	건강보험 + 15%	45%
종합병원	25%	건강보험 + 12%	37%
병 원	20%	건강보험 + 1%	21%
의 원	15%	건강보험과 동일	15%

74)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 제4항





진료비와 약제비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해당하며, 양도 또는 민사 소송법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 등 강제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양비는 보험급여로서 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나. 진료비·약제비 심사

의료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진료비 및 약제비가 청구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진찰·약제·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산재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인지를 심사한 후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진료비 및 약제비의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 내용은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sup>75)</sup>

<표 2-3-26> 진료비·약제비 관련 행정구제 신청 현황('19.1.1.~12.31.)

구분		심사	
		건수	내역서
행정구제 신청건수		324	473
결정 및 판결	취소	101	108
	기각	184	275
	각하	32	83
	기타	7	7

75) 산재보험법 제103조의 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지급결정도 '08.7.1.부터 행정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제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정·부당하게 청구함에 따라 보험재정의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매년 근로복지공단이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선정기준, 현지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정기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

- ① 산재근로자 1명당 1일 평균진료비가 「의료법」 제3조제2항76)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별 평균보다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 ② 산재근로자에 대한 진료비의 평균 지급일수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별 평균보다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 ③ 진료비 조정률이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별 평균보다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 ④ 그 밖에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 <수시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

- ①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진료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장이 현지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
- ②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진료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언론보도나 진료비 부정부당청구신고 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9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년대비 지적금액은 1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당청구는 18.6% 감소한 반면 허위청구는 27.1% 증가하였으며, 행정처분 의료기관은 66개소로 20.5% 감소하였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진료제한 2개소, 개선명령 64개소였다.

76) 「의료법」 제3조 제2항 :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lt;표 2-3-27&gt; 진료비 현지조사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년대비 증감률	
조사대상기관		227	169	213	169	131	98	△25.2	
적발 기관	계	기관수	220	160	213	166	120	95	△20.8
		금액	2,017	945	938	698	690	572	△17.1
	부정 청구	기관수	101	49	44	40	30	26	△13.3
		금액	48	66	23	33	12	15	25.0
	부당 청구	기관수	218	160	205	166	120	95	△20
		금액	1,970	879	916	632	667	542	△18.7

&lt;표 2-3-28&gt; 진료비 행정처분 및 처벌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년대비 증감률
적발기관		218	160	205	166	120	95	△20.8
행정 처분	계	97	71	115	119	83	66	△20.5
	지정취소	0	0	0	0	0	0	-
	진료제한 10개월	0	0	0	0	0	0	-
	진료제한 9개월	0	0	0	0	0	0	-
	진료제한 8개월	0	0	0	0	0	0	-
	진료제한 7개월	1	0	0	0	0	0	-
	진료제한 6개월	1	0	0	0	0	0	-
	진료제한 5개월	0	1	1	0	0	0	-
	진료제한 4개월	1	0	0	0	0	0	-
	진료제한 3개월	2	0	0	1	2	2	100
	개선명령	92	70	114	118	81	64	△21.0
과징금	1	0	0	0	1	1	-	
형사 처벌	0	0	0	1	0	0	-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해 현재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보험조사협의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보험사기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 등 요양급여의 부정·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처분 등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산재근로자의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 2. 요양급여 산정기준

의료기관, 약국, 산재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약제비, 요양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산정·지급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한 사항이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위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산재환자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수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sup>77)</sup>

77) 「요양급여 산정기준」(’19.12.27. 일부개정)은 본서 부록편에 수록되어 있다.



<표 2-3-29> 건강보험수가 내용과 다른 산재보험 수가 항목

구 분	세부내용	비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4조)	해당 요양기관의 종별 가산율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산정 (1~15%)	<표2-3-25> 참고												
입원료(제5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입원료 체감기간을 완화하거나 배제하고, 입원료를 가산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산재보험</th> <th>건강보험</th> </tr> </thead> <tbody> <tr> <td>상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td> <td>입원료 100% + 병원관리료(35%) 추가</td> <td>· 1~15일 : 100% · 16~30일 : 90%</td> </tr> <tr> <td>종합병원</td> <td>입원료의 100%산정</td> <td>· 31일 초과 : 85%</td> </tr> <tr> <td>병원</td> <td>· 1~50일 : 100% · 51~150일 : 90% · 150일 초과 : 85%</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산재보험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료 100% + 병원관리료(35%) 추가	· 1~15일 : 100% · 16~30일 : 90%	종합병원	입원료의 100%산정	· 31일 초과 : 85%	병원	· 1~50일 : 100% · 51~150일 : 90% · 150일 초과 : 85%	
	구 분		산재보험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료 100% + 병원관리료(35%) 추가	· 1~15일 : 100% · 16~30일 : 90%										
종합병원	입원료의 100%산정	· 31일 초과 : 85%												
병원	· 1~50일 : 100% · 51~150일 : 90% · 150일 초과 : 85%													
응급의료관리료(제6조)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													
이송료(제7조)	구급차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 비용을 이송치료 기준에 따라 금액지급													
물리치료(제8조)	건강보험 기준(외래 1일1회, 입원 2회)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													
의약품관리료(제8조의2)	입원투약일수에 따라 1일당으로 인정(건강보험은 체감률 적용)													
MRI(제9조)	MRI 검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													
가정산소치료(제9조의2)	진폐 등의 상병 및 요양특성을 고려하여 동맥혈가스검사 실시조건 완화(수면시 또는 일상생활 활동 시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 인정)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 시 전기요금 등 부대비용 인정(월 3만원)													
초음파검사(제9조의3)	건강보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 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손상 및 질환에 1인 1회 인정하 며, 장해상태 또는 상병상태 확인 필요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 는 경우 추가 인정													
관절가동검사(제9조의4)	건강보험 기준(월1회) 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병변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검사를 실시한 경우 상지, 하지, 수부로 나누어 각각 비용 산정													
치과임플란트(제9조의5)	건강보험 기준(65세 이상, 1인당 2개) 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상병에 대한 임플란트는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하나, 1치당 1개로 제한하며, 다만 치과외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보청기(제9조의6)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 산재근로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청기를 인정함.													

제  
3  
장

<표 2-3-30> 건강보험수가 외 산재보험에서 비용이 인정되는 항목('19년 기준)

구분	세부내용	비고
치과보철(별표 제1절)	주조금관 등 12종	
재활보조기구(별표 제2절)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92개 품목, 산재보험 별도 인정 23개 품목으로 총 115종, 수리료 별도 인정 138개 품목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별표 제7절)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21종 인정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별표 제9절)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 인정 (급성기 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30% 이상으로 사용 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 인정)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별표 제10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품목별 지급원칙·대상(용도)에 맞게 처방·검수한 경우 모든 재활보조 기구에 대하여 인정 (단, 목발, 지팡이, 휠자팡이, 집뇨기,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는 제외)	
이송료(별표 제11절)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택시비는 100분의 50% 등) 숙박비 및 식대는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1박당 상한액 범위 내 실비, 식비 1일당 20,000원)	
치료보조기구(별표 제12절)	통원요양중인 산재근로자의 요양지원을 위하여 이동형 산소 치료기 (산소절약기 부착, 미부착), 의료용 흡입기, 의료용흡입기, 자가도뇨기구, 할로베스트, 팔걸이, 쇄골밴드, 8자형 밴드, 석고신발 등 10종 인정	
한방첩약 및 탕전료(별표 제13절)	첩약(1첩당 : 6,690원), 한방탕전료(1첩당 : 670원) 인정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별표 제14절)	본진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의 의뢰에 의하여 전신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지급(전신해부 행위료 500,000원, 해부소견서 300,000원)	
재활치료료(별표 제15절)	산재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위해 재활수가 시범사업을 거쳐 치료효과가 확인된 재활치료 및 검사료 인정 - 전문재활치료료: 언어치료(36,540원) 전산화인지재활치료(17,630원) 중식치료(5,750원~11,520원) 도수치료(25,000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42,030원) - 검사료: 언어전반진단검사(40,190원) 발음검사(28,180원) 발성검사(56,260원) 체온열검사(33,270원),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9,850원),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9,260원), 연하장애 임상평가(9,850원) 기본진료료: 재활팀회의료 최초(30,150원) 2회치부터(20,100원)	
냉각부하검사료(별표 제16절)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 냉각부하검사(50,000원)	
처치료(별표 제17절)	사망진단 후 병실 등에서 사망한 환자에게 사후처치를 시행한 경우 산정(사후처치료 20,000원)	
예방접종비용(별표 제18절)	만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	

### 3. 간병료

간병은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은 물론 생존이 불가하여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일상생활이 불편한 환자의 도움을 주는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의학적 지식을 요하는데 반해 간병은 반드시 의학적 지식을 요하지는 않는다.

간병의 범위는 요양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3등급)하여 제공하며,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중환자실, 회복실 또는 폐쇄병동 입원기간, 완화의료(호스피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직접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 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형제자매)과 전문간병인(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간병료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간병을 한 경우의 간병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진료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고 산재근로자의 가족에 의하거나 산재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타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간병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 <간병의 범위>

- ①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②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③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④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⑤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⑥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⑦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⑧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⑨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⑩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표 2-3-31> 간병료 고시금액('14.8.1.개정)

(단위: 원)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의료기관(4등급이상)	73,140 (82,190)	61,950 (71,000)	50,760 (59,810)
의료기관(4등급미만)	72,140 (80,670)	60,950 (69,480)	49,760 (58,290)
근로자 지정(가족)	57,360 (61,750)	47,800 (51,460)	38,240 (41,170)
근로자 지정(전문간병인)	67,140	55,950	44,760

<표 2-3-32> 간병료 지급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14	'15	'16	'17	'18	'19
수급자수	14,147	14,197	13,997	13,288	13,979	14,061
건 수	60,705	60,823	61,079	58,485	58,447	59,357
지급액	87,940	89,355	89,209	87,144	86,799	88,881





## 제4절 요양·보상관리

### 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산업 환경의 변화,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그 기준을 변경해 왔다.

'08년 산재보험법 개정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업무관련성 평가 등의 업무절차와 인정기준에 내재된 문제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10.11월부터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및 질병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논의를 통해 '11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절차 등을 개선하여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고, '12년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을 위하여 연구용역 실시, 전문가 소위원회 운영, 산재보험제도개선 T/F 논의 등을 거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마련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안에 대하여 '13년 2월 정책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하여 '13.7.1.부터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을 종전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해요인 35종을 인정기준에 추가하였고, 직업성 암 유해요인 확대에 맞추어 직업성 암의 종류도 종전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였다.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하였고,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새로이 인정기준에 추가하였다.

특히,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에서는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였고,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13.7.1. 시행)

-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기준에 업무시간 개념 도입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 판단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 증가함을 고려하여 종합 판단
- 근골격계질병 인정기준 관련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취지 명시
- 직업성 암 관련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류 추가하고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 추가 (9종류 물질, 9종류 암 → 23종류 물질, 21종류 암)
- 인정범위 확대 관련
  - 호흡기계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 등 직업적 유해 요인 35종 추가
  - 직업적 유해요인과 질병의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질병명 명시
-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포괄규정 마련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제34조 3항 관련)에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진단방법과 절차, 판정기준 등이 미비하여 레이노증후군의 업무상 질병 판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진단기준, 요양 및 장애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15.11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16.3.22. 고객응대업무 등 감정노동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인정기준에 새로이 추가하여,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18.1.1. 만성과로의 인정기준과 진폐근로자의 합병증 인정기준을 개선하였다. 만성과로의 경우 과로기준시간을 3단계로 확대하고, 교대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명시하였으며,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시간 산출 시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토록 하였고, 진폐근로자의 원발성 폐암을 모든 업종에 대하여 합병증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직업성 암 유해요인 중 '석면, 벤젠, 도장작업, 6가 크롬'의 노출 기준 등의 인정기준을 개선하였고, 업무상 질병의 보호대상에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유산·사산 등을 포함한다는 표현을 부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18.12.11.부터 시행하였다.

'19.1.15.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산업현장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조사팀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성 재해에 대하여는 공단 지사에서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판정위원회에서는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소음성난청, 석면폐증, 전문조사를 거친 광업 종사경력자의 COPD 또는 특별진찰결과 진단기준에 미달하는 COPD 등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08.7.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변경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판정이 좀 더 객관화되고 공정성도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에 대한 불승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판정위원회별 인정비율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지역간 판정편차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10.11월부터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및 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논의를 통해 '11년(23차 회의)에 질병판정 절차와 관련하여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의 표결권을 제한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병별(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내과계질환 구분)로 전문가를 구분하여 심의에 참여하고, 그 밖의 업무상 질병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토록 하였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인 이내로 하되, 이 중 2/3는 노·사단체가 추천한 자로 구성되고, 심의회의는 위원장 외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 참석·과반수 찬성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다.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하거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참여 확대 및 판정위원회 위원장 민간인 참여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상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17.12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 주당 회의개최 수 확대 및 회당 심의건수 축소 등을 추진하여 주당 3.4회 회의 개최, 회당 10.5건을 심의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향상하였고, '18.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판정위원회 위원수를 180명까지 확대하였다.

'19.8월 그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던 정신질환(‘자살’ 제외)을 지역 판정위원회로 분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 근로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19년 현재 판정위원회 위원은 총 610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47명, 부산 107명, 대구 65명, 경인 108명, 광주 101명, 대전 82명이 위촉되어 있고, 회의개최는 1년간 총 1,517회가 개최되었으며 주당 서울·부산·경인지역이 5.9회~6.8회, 대구·광주·대전은 2.4~4.8회가 개최되었다.



&lt;표 2-3-33&gt; '19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1,517	354	308	123	319	247	166

'19년 판정위원회에 접수되어 판정된 건은 총 14,206건이고, 심의 결과 인정 건수는 9,173건, 불인정 건수는 5,033건으로서 심의건수 중 64.6%가 인정되었다.

심의대상 질병에 대한 연도별 인정률을 보면, '12년 38.9%에서 '13년 44.1%, '14년 45.1%로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15년 44.9%, '16년 44.1%로 소폭 감소한 후 '17년 52.9%, '18년 63.0%, '19년 64.6%로 상승하였다. 업무상질병은 상대적으로 잠복기가 길고 업무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우나, '17년 업무상질병 판단 시 추정의 원칙 적용강화, '18년 뇌심혈관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 개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종사자 직업성 암 등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과 '19년 근골격계 6대 다빈도상병 재해조사 요령(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등) 마련 등이 인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t;표 2-3-34&gt; '19년 지역별 질병별 업무상 질병 판정 현황

※ 결재완료일 기준, (단위 : 건,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전체 질병	계	14,206	3,205	3,235	1,178	3,074	1,857	1,657
	인정 (일부포함)	9,173	2,086	2,109	746	1,777	1,403	1,052
		64.6	65.1	65.2	63.3	57.8	75.6	63.5
	불인정	5,033	1,119	1,126	432	1,297	454	605
	35.4	34.9	34.8	36.7	42.2	24.4	36.5	
뇌심 혈관	계	3,077	789	553	259	860	280	336
	인정 (일부포함)	1,265	387	195	93	350	95	145
		41.1	49.0	35.3	35.9	40.7	33.9	43.2
	불인정	1,812	402	358	166	510	185	191
	58.9	51.0	64.7	64.1	59.3	66.1	56.8	
근골 격계	계	9,524	1,336	2,549	840	2,071	1,502	1,226
	인정 (일부포함)	6,844	937	1,845	602	1,349	1,255	856
		71.9	70.1	72.4	71.7	65.1	83.6	69.8
	불인정	2,680	399	704	238	722	247	370
	28.1	29.9	27.6	28.3	34.9	16.4	30.2	
기타	계	1,605	1,080	133	79	143	75	95
	인정 (일부포함)	1,064	762	69	51	78	53	51
		66.3	70.6	51.9	64.6	54.5	70.7	53.7
	불인정	541	318	64	28	65	22	44
	33.7	29.4	48.1	35.4	45.5	29.3	46.3	

### 3. 진폐재해자 요양·보상 관리

'01.9월 “진폐환자 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이후 진폐재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왔으나, 요양환자 중심의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져 진폐단체 등에서는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재해자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반면, 일부 합병증은 일정기간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휴업급여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이 이루어져 요양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07.11월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협, 고용노동부)하여 15차례의 논의를 거쳐 진폐재해자에 대하여는 합병증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등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 및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진폐판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진폐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요양과 소득 보상을 분리하여 진폐재해자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진폐 요양보상체계 개편 내용>

- ① 진폐보상연금(요양여부와 무관하게 장해등급을 판정 받은 자에게 지급) 도입  
- 진폐보상연금 = 기초연금(최저임금 60%) + 진폐장해연금(3단계)
- ② 유족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연금 폐지→진폐유족연금 지급(생전 지급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
- ③ 기존 합병증 등에 대해서는 치료보장(요양급여 지급)
- ④ 통원중심의 요양(입·통원기준 및 표준진료지침 마련)

<표 2-3-35> 진폐장해판정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
'14년	2,043	85	84	254	85	783	752
'15년	2,339	98	74	263	172	817	915
'16년	2,141	97	96	299	94	739	816
'17년	2,239	105	97	315	99	807	816
'18년	2,030	67	96	247	109	742	769
'19년	2,579	129	135	363	122	878	952



&lt;표 2-3-36&gt; 요양기간별 진폐환자 현황('19년)

(단위: 명)

계	6월미만	6월~1년	1~2년	2~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2,468	61	76	111	143	260	556	1,261

&lt;표 2-3-37&gt; 진폐 합병증별 요양승인 현황('19년)

(단위: 명)

계	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원발성 폐암	폐기종	폐성심	기관지 확장증	미코박 테리아	F3
344	44	48	16	9	72	47	0	27	7	74

#### 4.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당연지정제

##### 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해자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 역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아야 하는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되,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은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간 지정취소 처분 또는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둘째, 인력·시설·장비, 진료과목,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기준 등과 관련하여 점수화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각 항목별로 배점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의료기관이 받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때 점수화되는 구성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은 병원 및 보건의료원, 한방병원,

의원 및 보건소,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첫째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표 2-3-38> 산재보험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비율 <sup>1)</sup>	
합계	5,759	5,443	5,131	5,053	5,088	5,277	100	
의과	소계	4,427	4,249	4,024	4,006	3,967	4,021	76.2
	상급종합병원	48	49	49	49	48	49	1.0
	종합병원	273	280	277	288	300	302	5.7
	병원	1,311	1,286	1,273	1,291	1,307	1,364	25.8
	의원	2,795	2,634	2,425	2,378	2,322	2,306	43.7
	치과	소계	545	446	392	363	367	381
	치과병원	49	44	41	45	46	51	1.0
치과 의원	496	402	351	318	326	330	6.2	15
	한방	소계	787	748	715	684	744	875
	병원	117	129	132	140	151	188	3.6

1) '19년 전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이렇게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된 이후에도 인력, 시설, 의료서비스,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08.7.1. 시행)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sup>78)</sup>

아울러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를 유도함과 동시에 산재환자의 관행적인 요양을 방지하기 위해 주치의에게 3개월(장기 요양자는 1년) 단위로 산재환자의 상병상태, 진료계획, 증상고정여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진료계획을 수립·제출하게 함으로써('08.7.1.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78)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 제4절의 <5.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나와 있다.



#### 나. 상급종합병원 당연지정제

산재근로자에 대한 전문 치료와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도 '08.7.1.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 되도록 하였다.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08년 7월부터 새롭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6개 기관이며, 상급종합병원 당연지정제 도입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중증수술 및 급성기환자,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표 2-3-39> 6대 병원의 산재 요양환자 현황('19년)

(19.12.31.기준 / 단위 : 명)

의료기관명	계	서울성모 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아산 병원	서울대 병원	삼성서울 병원	분당서울대 병원
계	558	185	59	90	66	95	63
입원	24	2	7	7	2	4	2
통원	534	183	52	83	64	91	61

#### 5. 의료기관 평가

'06년 12월 노사정 합의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촉진을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및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08년 7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명문화하고 매년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9년에는 30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평균점수는 82.6점으로 '18(71.5점)대비 11.1점 상승하였다. 평가영역별 분석결과 의료서비스 경험 90.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산재요양 기록의 충실성 89.9점, 산재기록의 충실성 89.9점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19년 92.1점으로 전년 91.9점 대비 0.2점 상승하였고, '13년 평가에서 신설된공단직원의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86.1점으로 전년 86.6점 대비 0.5점 감소하였다.

<표 2-3-40> 요양기관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종합점수	61.8	67.0	73.5	72.3	71.5	82.6
환자만족도	88.5	85.6	90.8	91.3	91.9	92.1
공단직원만족도*	81.7	82.2	85.2	85.5	86.6	86.1

'19년 의료기관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5%를 임의선정하여 평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정 평가소견으로 확인되었다.

<표 2-3-41> '19년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제재조치

구분	대상	우대·제재조치
최우수 기관	상위 5% (1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종별가산율 10% 추가 가산 지급</li> <li>· 진료비 정기 현지조사 면제</li> <li>· 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화면 게시(홍보)</li> <li>· 홍보물(X배너) 제작 배부</li> </ul>
우수기관	상위 6~10% (총1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종별가산율 5% 추가 가산 지급</li> </ul>
부진기관	하위 5% (1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평가 재평가, 진료비 현지조사 실시, 개선명령</li> </ul>

## 6.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제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에게 최상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평가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한 의료기관으로 '06년 12월 노사정위원회의 산재근로자 재활치료 활성화 추진 합의에 따라 도입되었다.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도입을 위해 고용노동부<sup>79)</sup> 및 근로복지공단<sup>80)</sup>은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구)한국산재의료원 5개 병원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재활인증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재활수가를 개발·보완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대한재활의학회는 산재근로자의 장애 최소화를 통한 사회복지 촉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09.11.27.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15개소가 인증되어 '09.12.1.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9년말 기준 111개소의 재활인증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2-3-1> 권역별 인증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선정기관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선정기관
계	111	
서울지역	21	
부산지역	18	
대구지역	15	
경인지역	22	
광주지역	23	
대전지역	12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79) 산재보험 의료재활항목 수가개발 보완 및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고려대 산학협력단),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수가 개발방안 연구(한국노동연구원)  
 8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전달현황 조사(서울대 산학협력단),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시설현황 조사(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인력·시설·장비부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부문, 기타부문 등 평가결과가 총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집중재활환자관리료(입원 24,120원, 통원 11,310원)를 지급 및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종별가산을 5~10%를 추가 인정하고, 시범실시 재활수가('10년~'11년 26개 항목, '12년 29개 항목, '18년~'19년 30개 항목)를 별도 인정하며, 재활치료 대상자의 전원 또는 전과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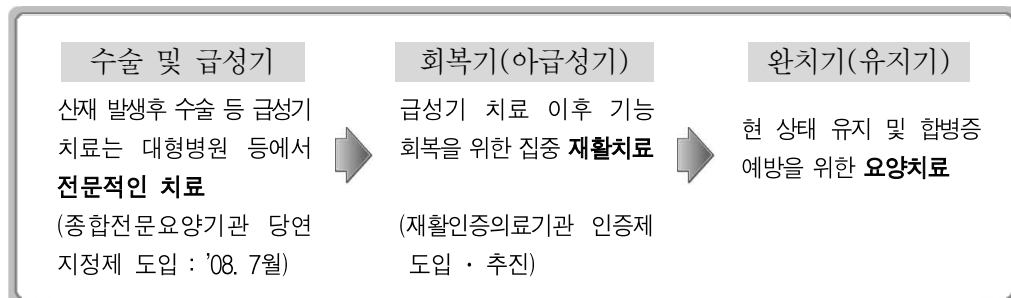
재활치료 대상자 요건으로는 뇌혈관계 질환자는 발병일 또는 수술 후부터 6개월 이내 요양자, 척추질환자는 발병일 또는 수술 후부터 3개월 이내 요양자, 견관절·주관절·완관·수부·고관절·슬관절·족관절·족부질환자는 발병일 또는 수술 후부터 3개월 이내 요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2-3-42> 평가도구 및 인증기준

평가 부문	평가부문	적합기준
인력부문	전문의 및 간호사인력	필수 충족
시설 및 장비부문	구비 및 충족	시설필수구비, 장비85점이상
의료재활부문	팀회의 등 실시여부	85점 이상
기타부문(우대권고사항 충족 시 가산)	시설구비 및 운영	운영 및 구비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로 승인된 산재근로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진료계획서 및 전원 요양신청서 처리 시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집중재활치료 대상자가 재활치료 후 통원 또는 종결한 실적과 치료효과에 따른 기능 호전정도 평가 등 주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활인증기관의 집중재활치료 실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림 2-3-2>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7.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 운영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증가에 따라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07년 7월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했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08년 9월 『산재보험 위험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9년 1월 임시조직인 『보험조사팀』을 설치·운영하다가 '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는 정규직제인 『보험조사부』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8년 1월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10년 이후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 운영에 따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조직적·능동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해졌고, 조사의 전문성이 강화<sup>81)</sup>됨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실적이 향상되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사업주 및 산재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컸다.

또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고위험·취약분야를 가려낼 수 있도록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구축·고도화<sup>82)</sup>하여 기획조사에 활용함으로써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sup>83)</sup>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산재보험 부정수급 전담조직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활동에 그치지 않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sup>84)</sup>과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sup>85)</sup> 운영을 통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81) 보험범죄아카데미 참석(연 2회), 조사전문가 초빙 전문교육(연 1회), 진료기록 분석 도입, 보험조사전문가 영입(5명), 검·경·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참석,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제작·배부 및 사례전과 교육 실시

82) 부정수급 시나리오 225개 등록 및 산재보험 부정수급 시나리오 공모 등을 통해 복합시나리오 추가 개발

8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과 협력체계 구축,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직원 1명 파견

84) 산재보험 부정수급 인식전환을 위한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 광고와 버스, 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홍수매체 활용(4월, 9월), 부정수급사례집 제작 및 배포

8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및 불법의료기관 신고센터 대표전화(052-704-7474)를 통한 신고 강화

제도의 법제화<sup>86)</sup>를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제보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표 2-3-43> 부정수급 적발실적 목표 초과 달성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조사건수	493건	538건	436건	486건
적발금액	428억원	447억원	452억원	380억원

<표 2-3-44> 2019년 부정수급 조사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접수	진행	종결			적발금액
			소계	적발	내부종결	
합계	814	328	486	202	284	38,025
신고	488	210	278	122	156	18,792
기획	249	77	172	60	112	12,559
합동·인지 등	77	41	36	20	16	6,673

<그림 2-3-3>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및 신고 홍보 사례



<표 2-3-45>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지급액	212	163	119	128
지급건수	75	52	65	88

<sup>86)</sup> '10.5.20.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신설 및 '10.11.24. 시행규칙 신설



## 제5절 '19년 주요 추진 실적

### 1.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지침 제정 및 개정

'06.9.27.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실무지침' 시행이후 조사 내용이나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실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질병 유형별로 업무관련 위험요인을 명시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조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14.9.24.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다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평가하는 등 제한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정노동스트레스 평가표"를 작성하여 스트레스 요인과 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조직적 요인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16.3.24. 1차 개정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별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을 객관화하고,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재해조사계획 자문제도를 도입하여 재해조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19.5.8. 2차 개정하였다.

한편 '08.3.4. '석면관련 질환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하였으나 지침이 현실적인 처리방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석면폐증 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업무 처리방법을 구체화 하였고, 석면폐증에 걸렸는지 여부, 요양급여 지급대상 및 장해정도를 석면심사회의를 통해 평가하고, 컴퓨터단층촬영(CT)을 보완 기준 마련 등 내실 있는 판정을 위하여 '16.11.17.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하였다.

'18.7.9.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종사자의 직업성 암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기존에는 재해조사와 역학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토록 하였으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상병(현재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여 처리기간 단축 및 재해노동자의 입증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19.2.28.부터 국제암연구소, 국·내외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에서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①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②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③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④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조혈기계질환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생략범위를 확대하였다.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6대 상병에 대한

업무상질병 판정 신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판정사례 분석 및 문헌 검토 등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단명·직종·유효기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한 요양결정이 가능하도록 '19.7.1.부터 재해조사 요령을 마련·시행하였다.

## 2. 재해조사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작업환경 측정이나 새로운 유해요인 확인 등 전문적인 업무관련성 조사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 재해근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자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되어 신규 유해물질과 질병이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재해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3.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보고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사례 등을 분석하여 질병별 조사 및 판정의 착안사항 등을 정리한 「업무상 질병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실무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질병 유형별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라 체계적인 재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13.4월 업무상질병 및 재해조사 관련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를 '19.3월 직업성 암, 사인미상, 정신질병 3개 분과로 확대개편하고 위원수를 확대하여 역학(전문)조사 필요성 및 재해조사 계획 및 방향정립을 위한 자문을 실시토록 하여 재해조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간공학 산업위생 전공자 채용 확대, 질병유형별 재해조사 표준화 및 전산화 등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담당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재해조사 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재해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내자격 인증 교육과정(산재보험 CIE 2급 및 3급)을 '15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15년 79명(2급 39명, 3급 40명), '16년 84명(2급 40명, 3급 44명), '17년 77명(2급 39명, 3급 38명), '18년 68명(2급 20명, 3급 48명), '19년 74명(2급 29명, 3급 45명) 총 38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 3.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비 부담 완화방안 협의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지속적인 부담전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및 고충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진료비 부담전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거듭한 결과,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후유증상 진료비에 대해 산재 종결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 그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5. 4.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근로자가 산재요양 종결 후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이득금 회수를 중단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진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 4. 장애등급 판정체계 개선 추진

'13년 시범실시 된 전문진단제도, 자문의사회의 중심 장애심사 등은 '13.12월 보상업무처리규정 개정을 거쳐 '14.1월 전면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지사 단위 장애심사를 8개 권역별 심사체계로 개편하고자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실시('14.8~12월)하였고, 장애판정 권역별 통합심사 전면 실시에 앞서 운영상황을 피드백 하였다.

2개 지역 시범운영 실시 주요내용은 임의성이 높고 고위험 장애유형(중추신경 손상 등에 따른 제9급 이상, 관절기능장애 제10급 이상, 권역을 달리한 전원자, 장애급여 2회 이상 수령자 등)를 통합심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인력을 활용한 의료분석 강화 및 전문적인 장애심사를 하는 것이었으며 실시상황을 점검한 후, 장애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을 제정, '15.2.27.부터 '19년 현재 11개 권역별로 장애판정 통합심사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한편, 눈(안과)·입(치과)·흉복부장기(내과 및 비뇨의학과) 장애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19년도부터 전국단위 전담심사기관을 도입하였다.

#### 5.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강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합동조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고 검찰청에서 후원하는 보험범죄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최근의 보험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수사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조사전문성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19.5월 부정수급 연대책임자 및 공모자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연대책임자 및 공모자에 대한 부정수급 업무를 표준화하였다

## 6. 보험급여 수급권 및 지급서비스 강화

기존 유족연금 수급권에 대해 처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남편은 60세 이상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남편의 연령제한(만 60세 이상)을 폐지하여, 연령과 상관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자녀, 손자녀 등의 유족급여 수급자격이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고등학교 재학 중 18세에 도달할 경우 수급자격 상실로 인해 학업 및 생계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자녀 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2.12.18.)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이후 '18.12.13. 부터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연령범위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산재보험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급여만 지급이 허용되어 원천적 압류가 방지되는 '희망지킴이 통장'을 '11년 도입한 이후 '15년도에 기존 3개 은행(우리, 국민, 하나)에서 4개 은행(우리, 국민, 하나, BNK경남)으로 압류방지 통장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였다.

한편, '11.11월 하나은행·하나SK카드와 제휴하여 다양하고 실속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를 출시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연금수급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마음 희망드림 가족캠프행사('12~'17)」를 개최하여 연금수급자와 가족간 유대강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그 자녀에게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산재보험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급여만 지급이 허용되어 원천적 압류가 방지되는 '희망지킴이 통장'을 '11년 도입한 이후 '15년도에 기존 3개 은행(우리, 국민, 하나)에서 4개 은행(우리, 국민, 하나, BNK경남)으로 압류방지 통장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였으며, 2019.03.20.부터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한편, '11.11월 하나은행·하나SK카드와 제휴하여 다양하고 실속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를 출시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연금수급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마음 희망드림 가족캠프행사('12~'17)」를 개최하여 연금수급자와 가족간 유대강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그 자녀에게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금수급자 전용카드 발급과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기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연금수급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14)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금수급자에게 건강검진권을 지원('15~'18)하여 복리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재활·복지사업

재활·복지사업은 산재보험제도가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뿐만 아니라, 치료 종결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이들의 장기적인 생활안정까지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즉 재활·복지사업의 기본 방향은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재도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산재근로자가 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구성원과 통합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활·복지사업은 산재근로자가 직업 및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제도 및 사업들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재활사업으로 맞춤형통합서비스,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재활스포츠 지원,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 취미활동지원, 직업훈련지원, 원직장복귀지원(사업주 지원-대체인력지원사업, 직장복귀지원사업,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등), 취업알선지원,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복지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산재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제1절 재활사업

### 1. 맞춤형통합서비스

산재보험제도는 '64년 도입된 이후, 산재환자에 대한 현금보상 위주의 급여 관리와 문서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재환자들의 욕구는 계속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재활서비스, 의료기관 관리 등 산재환자의 요양 전반에 걸친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취약하여 요양환자의 증가, 요양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졌으며, 보험급여 지급액도 급증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재해 발생 시부터 요양·재활에 이르기까지 현장 면담 실시, 요양정보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일련의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를 '05년 10월부터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산재환자는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조기에 직업·사회복귀를 하고,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하여 적정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산재보험 서비스가 선진화되고, 산재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 시행에 따른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객 입장에서 상담이 늦게 이루어지고, 급여지급 위주의 정형화된 서비스로 산재근로자의 욕구변화 등에 미흡하며, 서비스 단계별로 3개 팀원이 동일 환자 1명을 상대하는 시스템에 따라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09년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산재보상 맞춤형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1년 5월부터 재활을 강화하여 '맞춤형통합서비스'로 개편하였다.

맞춤형통합서비스란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근로자에 대해 요양초기단계에서부터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내·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고 사회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업무프로세스를 말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담부서인 소속기관 ‘보상부’를 ‘재활보상부’로 변경하고, 조직을 3팀(재해상담팀, 요양지원팀, 재활서비스팀)에서 2팀(재해상담팀, 요양재활팀)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직업복귀에 취약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자를 장애예상지수(중등도지수)와 사업장특성 정보를 활용하여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요양과 재활의 지원상담이 분리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합하여 통합상담체제로 운영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잡코디네이터 및 심리상담 전담자들을 지정·운영하였다.

이러한 산재보험 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담당자 1인이 고객의 욕구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등으로 잡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있다.

'19년도 최초상담건수는 117,3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47건(10.2%)이 증가하였고, 맞춤형통합서비스 수혜율은 95.0%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였다.

<표 2-4-1>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건,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률
최초요양 결정건수	97,829	97,775	114,340	123,474	7.99
최초 상담건수	92,418	88,613	106,453	117,300	10.19
맞춤형통합서비스 수혜율	94.5	90.6	93.1	95.0	1.9

맞춤형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사회복귀기간은 다소 늦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표 2-4-2> 사회복귀기간 및 직업복귀율 현황

(단위: 일,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사회복귀기간(일)	160.5	163.1	165.2	169.0	161.5	163.0
직업복귀율(%)	52.5	56.8	61.9	63.5	65.3	68.5
원직복귀율(%)	40.2	39.7	41.4	41.6	42.5	43.4

## 2.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

산재근로자는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그 상병 또는 장애의 특성 등에 따라 동통 등의 증상이 남아 있거나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이나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이다 (\*14.5.1.부터 무장해자 중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의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신규 지정됨).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증상이 고정된 산재장애인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간 중 요양급여로 지급되는 진료와는 구별된다. 즉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인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이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가 관리상병 이외에 다른 상병으로 재요양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재요양과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장애급여청구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에 의해 대상자가 결정되고, 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는 재해의 치유 이후에도 합병증이 빈발하는 눈의 장애에 따른 후유증상 등 10종 44개 상병군<sup>87)</sup>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인 진료비와 약제비는 진료를 행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19년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신규결정자수는 16,857명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전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비용 수급자수는 41,506명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지급금액은 55,65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다.

87) 10종 : 눈의 장애, 귀의 장애, 코의 장애, 입의 장애, 두부·안면부·경부 흉터장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 흉복부장기 장애,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애, 팔·다리의 장애, 무장해자



&lt;표 2-4-3&gt;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진료비, 약제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신규 대상자수	19,920	20,046	16,326	15,156	16,857
수급자수	41,051	41,550	41,426	39,775	41,506
지원금액	44,054	44,396	48,419	49,527	55,653

또한 신규 발급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치료종결 후 재요양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요양자수는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lt;표 2-4-4&gt; 신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의 재요양률 현황

(단위 : 명, %, %p)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률
전년도 신규 대상자수	19,920	20,046	16,326	15,156	16,857	↑1,701
재요양자수	449	432	436	447	427	↓20
재요양률 <sup>1)</sup>	2.3	2.2	2.2	2.7	2.8	↑0.1

1) 전년도 신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중 당해연도 재요양 승인자 비율임

### 3. 재활스포츠 지원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상병 및 장애부위에 대해 그 운동범위와 가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치료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장애예상자 또는 장애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요양종결 후 6개월 이내의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종목은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7종목 및 이 종목이 포함된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반 재활 스포츠와 '11년 시범사업 이후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3종목의 특수 재활 스포츠이다.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는 일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3개월 한도로 지원하며, 특수 재활 스포츠는 1인당 최고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은 '19년 2,272명에게 총 50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4-5> 재활스포츠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	2,234	546	1,989	461	1,866	421	1,609	368	2,273	408	2,272	503
일반스포츠	1,957	404	1,770	348	1,691	332	1,478	300	2,203	396	2,209	471
특수재활스포츠	277	142	219	113	175	89	131	68	70	12	63	32

- 1)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이 시작된 '01년도부터 '19년까지의 누계치임
- 2) 스포츠기관에서 2개 이상의 지원종목을 묶어 1개의 패키지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를 1개 종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 4. 심리상담서비스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근로자들은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단에서는 개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다차원심리검사(L형)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상태에 따라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차원심리검사(L형)은 산재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산재사고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공단 및 외부기관의 사회심리재활서비스(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는 검사태도척도(비일관성, 긍정인상, 부정인상)와 임상척도(분노, 불안, 우울, 신체화, 사회적지지 결여)를 측정할 수 있는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상태가 경증인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심리상담가를 통하여 기초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고, 심리상태가 중증인 산재근로자는 외부의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가를 통하여 최대 10회기의 집중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표 2-4-6>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다차원심리검사	11,141	11,312	11,646	7,542	8,564	6,768
기초심리상담	4,123	2,670	4,614	2,333	2,288	1,557
집중심리상담	290	408	364	355	524	374





## 5. 희망찾기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심리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을 요양 중에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08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09년도에 정식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심리상담 등과 같은 개별상담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던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활동(집단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집단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기관<sup>88)</sup>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여금 희망찾기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 위탁기관으로 본다. 최대 8회기에 걸친 다양한 소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4, 6, 8회기로 구분하여 맞춤형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2-4-7> 희망찾기프로그램 회기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

구 분	4회기	6~8회기	공 통
대 상 자	입원환자 또는 재해발생 후 6개월 이내 환자 2명 이상	통원환자 50%이상	가족 및 간병인 포함 참여 가능(참관인 자격)
인원편성	3~5명 (최소인원 3명)	6~10명 (최소인원 6명)	가족포함 15명 이내
프로그램 내용	표준모델 단축형으로 진행	표준모델 반영	소속 지사 담당자가 요양·보상·재할 사업 소개, 설문조사 실시

88)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지정받거나 신고한 기관, 산재근로자를 위해 설립된 단체·협회, 전문 상담센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를 얻은 기관, 한국폴리텍대학, 고용노동부지정 훈련법인, 대학 등의 사회교육기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여금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희망찾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는 강의비, 홍보비, 장소대여비, 소모품비 (교재비, 재료비 및 다과비), 참가자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19년의 경우 요양 중인 산재환자 2,192명에 대해 1,010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2-4-8> 희망찾기프로그램 수행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명)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운영반 수	532	465	469	469	477	450
지원 금액	1,300	1,058	1,047	1,049	1,063	1,010
수강 인원	2,809	2,334	2,442	2,373	2,382	2,192

## 6. 사회적응프로그램

산재근로자들은 장기간의 병상생활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하여 직업 및 사회복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재활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재활사업 프로그램만으로는 다양한 산재근로자의 재활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이러한 취지하에 도입된 사업으로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구성한 프로그램 내용들을 가지고 위탁기관 공모에 참여하며<sup>89)</sup>,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 수행비용이 지급된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업무상 재해로 장애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1~14급)로서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와 통원요양 중인 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유형 중에서 선택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유형	프로그램 구성 내용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표준형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성</li> </ul>			
	목표	회기	기간	구조
	표준형	24회기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1회기</li> <li>자기관리능력: 6회기</li> <li>사회적응능력: 6회기</li> <li>직업적응능력: 10회기</li> <li>종결: 1회기</li> </ul>
단축형	16회기	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1회기</li> <li>자기관리능력: 5회기</li> <li>사회적응능력: 3회기</li> <li>직업적응능력: 6회기</li> <li>종결: 1회기</li> </ul>	
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li> <li>- 최소 운영기준 및 세부 목표별 프로그램 유형을 참고하여 구성</li> </ul>			
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표준형 프로그램을 일부 혼합시킨 프로그램으로 구성</li> <li>- 공단 프로그램을 일부 포함한 자체 프로그램 구성</li> <li>- 최소 운영기준 및 세부 목표별 프로그램 유형을 참고하여 구성</li> </ul>			
4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표준형 프로그램 중 24회기 전체 포함하여 기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li> <li>- 공단 프로그램 중 24회기를 중심으로 하고 기관 자체 프로그램을 가미</li> <li>- 자체 프로그램 구성 시 최소 운영기준 및 세부 목표별 프로그램 유형을 참고하여 구성</li> </ul>			
세부 목표	주요 내용			
자기관리능력 향상	산재노동자의 정신적 능력을 회복시키고자 장애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자존감 및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직업에 재복귀할 수 있는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응능력 향상	장애로 인한 소외감을 줄이고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을 지각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증진 및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고 가족관계를 강화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적응능력 향상	산재노동자의 강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생활의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지원한다.			

89)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지정받거나 신고한 기관, 산재근로자를 위해 설립된 단체·협회, 전문 상담센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를 얻은 기관, 한국폴리텍대학, 고용노동부지정 훈련법인, 대학 등의 사회교육기관으로 한다.

'19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기관은 15개소이며, 참여인원은 270명이었다.

<표 2-4-9>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 현황

(단위 : 개소, 개, 백만원, 명)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위탁 기관	23	18	20	16	13	15
지원 금액	298	287	30	260	225	238
수강 인원	339	297	338	276	243	270
수강 인원	373	339	297	338	276	243

## 7. 취미활동반 지원

취미활동지원 사업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 활동반을 개설·운영토록 권장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으로 위축되어 있는 산재환자가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취미 활동반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시설 중 월평균 10인 이상 특수직업병이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곳이어야 하며<sup>90)</sup>, 1인당 월 50,000원 이내의 재료비, 다과비 등을 지원하며, 강사비는 취미활동반 1인당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취미활동 참여자의 능력 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작품전시회, 병원별 취미활동반 합동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원금이 1인당 30,000원 범위에서 실비용으로 지원된다.

'19년 진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미활동반 운영기관은 11개 기관이며 취미활동반 운영반 수는 32개, 참여인원은 824명이었다.

90) 다만, 취미활동반을 개설·운영하고 있던 의료기관의 월평균 환자수가 10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개설된 취미활동반 외에 새로운 취미활동반을 개설할 수 없다.



&lt;표 2-4-10&gt; 취미활동반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개, 명,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계)
의료기관	16	15	13	12	12	11	304
취미활동반	46	43	51	40	40	32	1057
참여 인원	1,124	1,034	1,105	927	939	824	25,087
지원 금액	286	229	236	244	212	207	3,335

## 8. 산재노동자 멘토링프로그램<sup>91)</sup>

산재노동자 멘토링프로그램은 직업 및 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 선경험자를 멘토로 선발하여 산재노동자의 심리적 불안 해소와 자신감 회복 및 재할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3년 도입되었다.

멘토는 내일찾기서비스 또는 사례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산재단체 등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멘토로 추천받은 산재노동자 등을 선발하며, 지원유형으로는 개별상담, 집단활동프로그램, 강의, 작업능력평가 동행 등이 있다.

'19년 활동횟수는 1,815회, 예산집행액은 223백만원이다.

&lt;표 2-4-11&gt; 멘토링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 회,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계
활동횟수	1,713	2,458	2,138	2,316	1,815	12,318
지원금액	275	283	241	261	223	2,041

91) 산재노동자 멘토링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예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를 멘토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9. 직업훈련 지원<sup>92)</sup>

직업훈련 지원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동안 직업훈련은 안산과 광주에 재활훈련원을 개설하고 직접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07년 동 훈련원을 폐쇄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해 오고 있다.

'08년 7월부터는 직업훈련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등급 제1급~제9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에 대해서는 직업재활급여로 직업훈련을 시행하였으며, '10년 4월부터 장애등급 제1급~제12급 및 치유 후에 장애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요양 중인 자로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사업으로 지원되어 오던 직업훈련지원 내용도 다소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93)</sup>

92) 직업훈련사업은 '98년부터 예산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08.7.1. 직업재활급여의 도입으로 보험급여화 되어 현재는 급여사업과 예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음.

93)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되기 전 직업훈련지원은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 제1급~제14급이 지원대상이었음.



&lt;표 2-4-12&gt; 직업훈련지원 변경 내용

구 분	치유일	장해등급	신청기한	제외대상
직업재활 업무처리규정 (급여·예산)	'10.4.28 이후	제1급~제12급 * 요양중인자는 치유후 제1급~12급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	장해등급판정일로 부터 1년 이내(급여) 장해등급판정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3년 이내(예산)	
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규정 (급여)	'10.4.28 이후	제1급~제12급 * 제10~12급은 '10.4.28이 후 치유되어 새로 장해급 여를 받은자(요양중인자 는 치유후 제1급~12급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	장해등급판정일로 부터 1년 이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예산)		제1급~제12급	장해등급판정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3년 이내	「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 규정」 또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의거 1회이상 직업훈련지원 받은 자
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규정(급여)	'08.7.1 ~ '10.4.27	제1급~제9급	장해등급판정일로 부터 1년 이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예산)		제10급~제12급	장해등급판정일로 부터 1년 이내	

※ 직업재활급여업무처리규정(급여)과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예산) 통합 운영('13.2.8)

#### 가. 직업훈련비용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지원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하며, 신청 횟수는 2회, 총 직업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sup>94)</sup>

직업훈련지원 예산사업은 ① '08.6.30. 이전 요양종결 한 장해급여자 중 제1급~제12

94)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이란 결정된 장해등급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안 날을 말하고, 직업훈련 2회의 신청기한도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

급에 해당하는 자와 ② '08.7.1. 이후 요양종결 한 장애급여자 중 제10급~12급에 해당하는 자<sup>95)</sup>, ③ '10.4.28. 이후 요양종결 한 장애급여자 중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자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자)로 한다.

직업훈련지원은 미취업 상태이고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직업훈련 지원 대상자가 훈련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청자의 직업재활지원 내용 및 직업평가<sup>96)</sup> 결과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직업훈련 신청자의 장애상태, 직업평가 결과가 신청된 직업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직업재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여 훈련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훈련직종 및 과정은「자격기본법」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 직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이며, 인터넷 원격 직업훈련은 직업재활급여에 한해 인정되어오다가, '09.7.1. 이후 예산사업으로 확대 하였다.

산재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으로 지급되는데 훈련생 선발 과정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훈련기관으로 인정 되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후 훈련생의 출석률 등을 확인한 뒤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18.5.8.부터 '19.12.31.까지 훈련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산재직업훈련 『취업활성화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훈련기관 참여율과 산재 직업훈련 설발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은 정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기관에 장애등급, 취업성공 여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95) 직업재활급여가 도입('08.7.1.)되면서 '08.7.1. 이후 요양종결한 장애급여자 중 제1급~제9급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재활급여 지급대상자가 되어 예산사업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08.6.30. 이전 요양종결한 장애급여자 중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09.6.30.까지만 한시적으로 예산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96) 직업평가란 훈련대상자가 신청한 직업훈련기관, 훈련 직종 또는 훈련 기간이 그 훈련대상자의 장애상태, 직업재활 욕구, 직업재활 계획 및 재취업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개요

## ① 산재노동자의 장애등급별 훈련비 가산율과 취업성공비

구분	1~3급	4~7급	8~9급	10~12급
훈련비 가산율	50%	40%	20%	-
취업성공비	7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 ② 성과평가(모집률 50점 + 취업률 50점)에 따른 훈련비 가산율

구분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이상	60점 이상
훈련비 가산율	40%	30%	20%	10%

## 나. 직업훈련수당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역(歷)에 따라 정해진 달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에게만 지급되며, 기준수당인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시간·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훈련 직종 또는 훈련 과정의 직업훈련 기간 또는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주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이며,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예산사업은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훈련의 경우, 1일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날의 일수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예산사업은 50%)를 지급하고,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의 50%(예산사업은 40%)를 지급하며, 2시간 미만의 훈련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9년 직업훈련지원사업은 2,764명을 선발하여 총 1,998명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이 중 1,204명이 직업에 복귀하였다.

<표 2-4-13> 직업훈련비용·수당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계1)
선발 인원	2,212	2,294	2,206	1,694	2,485	2,764	13,655
중도 탈락	138	160	160	97	121	117	793
수료 인원	1,707	1,560	1,434	1,597	898	1,998	9,194
취업자	924	850	805	917	530	1,204	5,230
직업복귀율	54.1	54.5	56.1	57.4	59.0	60.3	56.9
지원 금액	10,825	9,694	10,315	9,633	10,904	19,802	71,173

1) 직업재활급여 및 예산사업 실적을 합한 누계치임

## 10. 직장복귀지원<sup>97)</sup>

직장복귀지원사업은 장애급여자의 원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03년 7월에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가 '06년 9월에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급여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개정되면서 장애급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비'와 '직장적응훈련비' 지원사업이 추가되었다.

<표 2-4-14> 연도별 성별 원직복귀율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전체(%)	41.4	41.6	42.5	43.4
남	39.3	41.3	41.7	42.0
여	49.6	42.7	45.2	47.5

### 가. 직장복귀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은 장애급여자(장애 제1급~제12급 및 요양 중 원직장복귀자 포함,

97)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08.7.1. '직업재활급여'라는 명칭으로 보험급여화 되었다.



단, '10.4.28. 이전에는 장애 제1급~제9급에 한정)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한다.<sup>98)</sup> 금액은 월 30만원(제10급~제12급)부터 월 60만원(제1급~제3급)까지(최대 12개월)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제한된다.

- 『고용보험법』 제23조, 제27조, 제3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sup>99)</sup>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장애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애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그동안 예산사업으로 지원되어 오던 위 지원금은 직업재활급여('08.7.1 이후 요양종결한 장애급여자를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로 전환된 이후에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

직장적응훈련비는 원직장에 복귀한 장애급여자(장애 제1급~제12급 및 요양 중 원직장복귀자 포함, 단, '10.4.28. 이전에는 장애 제1급~제9급에 한정)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자체시설 또는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되며, '18.12.13이후 요양종결일 이후 실시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 부터 실시하고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98) 장애급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지원금은 지급된다.

99) 단, '10.4.28.이후 장애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직접(현장) 훈련 기준 및 내용 >

- ❖ (훈련기준) 훈련기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훈련횟수를 정하고, 항목(직무적응훈련, 관계적응훈련) 간에는 동일 날짜에 중복하여 훈련은 제한(추가인정 적응훈련은 중복 가능)
  - 훈련종류별 훈련시간은 회당 4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관계적응훈련, 추가인정적응훈련’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실시하되,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 추가 지급

❖ (훈련 종류 및 횟수)

항목	항목별 훈련종류 및 내용	훈련기간별 훈련횟수	
		1~2개월차	3개월차
직무 적응훈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내에서 본래의 자기 업무수행(자체 훈련시설 또는 타 사업장 활용 가능)</li> </ul> </li> <li>• 직무전환에 필요한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내에서 타 직무수행(자체 훈련시설이나 타 사업장 활용 가능)</li> </ul> </li> </ul>	주 1회 이상 (월 50만원)	주 2회 이상 (월 50만원)
관계 적응훈련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관리자, 상급자 포함) 상담, 사업장 멘토 상담</li> <li>• 공단 지원 프로그램(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li> <li>• 동료와의 간담회 또는 야유회</li> </ul>	회당 10만원 (월 1회에 한정)	
추가인정 적응훈련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의 의료기관 방문 주치의 면담</li> <li>• 근로자지원프로그램(직무스트레스, 건강문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병원 전문의(직업환경의)에 의한 교육, 외부기관 교육</li> </ul> </li> <li>•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병원 전문의(직업환경의)에 의한 교육, 관련 사이버 교육, 외부기관(안전보건공단 등) 교육</li> </ul> </li> </ul>	회당 5만원 (월 최대 3회만 인정)	

※ 각 훈련종류별 상세 훈련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매뉴얼 마련하여 사업주 제공 예정  
- 매뉴얼 마련 시 각 훈련종류별 훈련 증빙 방법 명시

재활운동비는 원직장에 복귀한 장애급여자(장애 제1급~제12급 및 요양 중 원직장 복귀자 포함, 단, '10.4.28. 전에는 장애 제1급~제9급에 한정)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능력 향상’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제한된다.

그동안 예산사업으로 지원해 오던 위 지원금은 출석률을 파악하여 50% 이상 출석한 경우에는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직업재활급여('08.7.1. 이후 요양종결 한 장해급여자를 고용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로 전환된 이후에는 출석률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전액 지급한다.

'19년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인원은 1,515명으로 전년 1,606명 대비 6.0% 감소하였고, 직장적응훈련비의 지원인원은 '18년 전무하다 사업장내 현장훈련까지 지원하는 산재근로자직장적응훈련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19년 32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4-15>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 체 <sup>1)</sup>	1,998	6,195	1,703	5,072	1,699	5,437	1,618	5,079	1,549	4,856	8,567	26,639
직장복귀지원금	1,948	6,190	1,606	5,051	1,655	5,430	1,606	5,077	1,515	4,835	8,330	26,583
직장적응훈련	1	1	47	18	4	3	0	0	32	19	84	41
재할운동지원	49	4	50	3	40	4	12	2	2	1	153	14

#### 다. 대체인력 지원사업

2016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다.

- (사업개시) 2016.1.1.
-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2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산재근로자) 장해판정자 또는 요양 2개월 이상자로서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 (대체인력) 재해일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 제외대상:
  - (사업장) 산재보험료 체납(체납보험료 완납시 지급가능)/타법령에 의한 지원금 이중지급/지급기간내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경영상의 필요 등)
  - (대체인력)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미가입자, 건설일용근로자 및 불법외국인 근로자 등
- (지원기간 및 금액) 대체인력 임금의 50% 범위 내(월 60만원 이내/최대 6개월)
- (청구 및 지급)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 사업장 관할(본사 포함) 또는 요양종결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청구

'19년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지원인원 1,267명, 예산 27억 전액을 지원하였다.

<표 2-4-16> 대체인력 지원사업 현황('16.1.1.시행)

(단위 : 명, 백만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	1,078	1,927	1,165	2,400	1,219	2,658	1,267	2,700	4,729	9,685

라.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12년 4월부터 작업능력평가를 통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제도를, 도입하였고, '13년 7월부터는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도입 하였으며, 그동안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다가 '17.10.18.부터 시범재활수가로 운영하고 있다.

작업능력평가는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 산재근로자의 현재 상병상태,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직업복귀소견서를 무료로 발급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평가 결과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기능 향상훈련, 모의 작업훈련, 사업장 훈련지도 등 작업프로그램을 1일 4시간의범위 내에서 12주까지 제공하여 무료로 직장 복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7개소(안산·인천·창원·대구·순천·대전·동해)의 재활전문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작업능력평가는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며,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은 작업능력평가 결과 직무수행이 어렵고 프로그램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17.10.18. 이후 재활수가로 운영하고 있다.

'19년에는 작업능력평가는 958명,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은 1,52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총 6,713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표 2-4-17>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 <sup>1)</sup>		'17 <sup>1)</sup>		'18		'19		누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 체	815	1,267	917	1,285	689	1,302	945	1,302	1,305	4,827	2,482	6,713	7,153	16,696
작업능력평가	600	312	688	343	503	272	645	272	746	579	958	1,036	4,140	2,814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215	955	229	942	186	1,030	300	1,030	559	4,248	1,524	5,677	3,013	13,882

1) '17.10.17까지 예산사업 지원실적으로 17.10.18부터 재활수가 지원실적 포함



## 11.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들의 자립기반 구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창업희망자에게 6년간 연 2%의 저리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지원 가능 점포는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내인 점포이며, 월세를 근로자(점포운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월세가 월 250만원 이내인 점포로 제한된다.

또한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된 자로서 그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에서 사업자금(15백만원 한도)으로 용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 재활훈련원 수료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훈련 수료자,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2년 이상 종사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및 진폐장해인(의증자 포함,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고용한 유급근로자의 30%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다만 훈련공과 및 훈련과정, 취득자격증 등이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이 제한된다.

-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 중이거나 자영업을 운영(배우자 포함) 또는 직업생활을 하는 자
- 공단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생업·영업자금 대부(용자), 자영업점포지원 또는 영업소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접대부를 고용하는 주점업, 무도학원,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성인오락실 등 사치향락성 업종, 사채, 철학관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 및 점포가 아닌 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 우리나라 국적(영주권을 취득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 포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 대상선정을 위한 배점이 60점 미만인 자
- 기타 점포가 아닌 나대지를 임대하거나 가건물(미등기 건물) 등에서 점포를 운영하려는 경우
- 점포 지원자의 처 및 직계가족 소유의 점포

다만, 지원인원 미달 및 창업성공률 저조로 '19년부터 신규지원은 중단되고, 기존 점포운영자의 점포 이전 및 보증금 상환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19년에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존 운영자는 4명이며, 총200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표 2-4-18> 창업지원(점포임대)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계 <sup>1)</sup>
점포수	29	30	13	15	22	0(4)	1,585
지원금액	1,960	2,206	1,040	740	1,405	0(200)	92,728

1) 창업지원사업이 시작된 '00년부터 '18년까지의 신규 지원한 누계치임('19년도는 신규지원중단)

## 12. 산재근로자 재취업서비스 지원

재취업서비스 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 구직등록,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과 공공·민간취업알선기관 연계 및 취업설명회 개최와 채용박람회 참여 등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에게 빠른 재취업과 안정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지난 '19.1월 재취업서비스 전담조직인 권역별 재활지원팀 8개소(100)를 개소·운영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재취업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활지원팀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복귀를 준비하는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표 2-4-19> 연도별 재취업서비스 지원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지원 인원	7,022	5,732	6,848	11,802
재취업률(%)	19.1	20.0	32.8	44.8

100)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지역본부와 원주, 수원지사에 설치





### 가.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 구직등록

구직을 원하는 모든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워크넷에 구직등록, 취업알선, 유효한 구인 정보 검색과 통계 등 활용으로 직·간접적인 취업알선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장해등급 13급~14급자와 무장해자를 대상으로 공단이 위탁계약한 민간취업알선기관에 직업소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내일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그 비용을 공단이 지급한다.

####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지원 제외

- 건설 일용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
- 사업자 등록중인 자(임대사업자는 제외) 및 타 사업장에 취업중인 자
-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사업에 이미 참여중인 자
- 입원 요양중인 자
- 외국인 근로자(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 다. 취업성공패키지(장애인) 추천·연계

만18세~69세이하 산재장해인중 등록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추천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만35세~69세이하의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자는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I, II에 추천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 (사업개시) 2018.1.1.
-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 1급에서 12급자
  - (등록장애인) 만18세~69세 이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추천·연계
  - (비등록장애인) 만35세~69세 이하 비등록장애인(산재장해자)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추천·연계

#### 라. 취업설명회 개최와 취업박람회 지원

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취업 면접요령과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타기관 등 지역별 취업박람회 개최시 창구를 마련하여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취업알선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민간기관에 산재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취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보다 빠른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고 있으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재근로자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 제2절 산재복지사업

### 1.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은 산재근로자와 유족에게 가정유지에 소요되는 각종 애경사 비용 등을 필요한 시기에 쉽게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87년에 도입되었다.

용자대상은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의 자로서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1순위자, 상병 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의 산재장해인<sup>101)</sup>,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근로자 본인,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 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sup>102)</sup>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용자가 가능하다.

세대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2%, 연리 2.0%, 1년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조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비용별 용자한도는 다음과 같다.<sup>103)</sup>

<표 2-4-20> 생활안정자금 용자 기준

의 료 비	혼 려 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101) 제1급~제3급 산재장해인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그 가족(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1순위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102)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에 따른 창업지원결정자만 해당

103) 의료비는 본인부담진료비에 한하며, 차량구입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의한 해당 차량가격(단, 차량 구입시 휠체어 탑재장치 등 장애인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가격을 차량가격에 합산하여 산정)에 대해 용자 한도 내에서 대부된다.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은 그동안 전년도 재산세 과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용자 신청을 제한하였으나, '14년부터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재산세 제한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고소득 자에 대한 용자는 사회 취약계층의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용자하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17.3.1부터 일정 소득금액(3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은 용자를 제한하였다.

2019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산재장해인과 유족 등은 1,462명이며, 총 13,251 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표 2-4-21> 생활안정자금 용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계 <sup>2)</sup>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 체	1,969	19,147	1,765	16,388	1,742	16,498	1,433	13,272	1,462	13,251	39,219	338,838
의료비	352	1,309	376	1,297	372	1,315	336	1,237	371	1,315	-	-
혼례비	201	1,862	200	1,867	195	1,850	150	1,374	140	1,285	-	-
장례비	33	308	26	241	29	241	29	234	23	189	-	-
차량구입비	769	9,016	607	7,331	589	7,139	457	5,481	491	5,873	-	-
주택이전비	498	5,472	457	4,741	464	5,036	373	4,061	360	3,870	-	-
사업자금	30	384	17	203	9	101	29	360	6	74	-	-
취업안정자금	86	796	82	708	84	812	59	525	71	645	-	-

1) 통계시스템 상 '05년까지는 통합 관리되다가, '06년부터 구분하여 관리됨  
 2)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이 시작된 '87년부터 '19년까지의 누계치임

## 2. 산재장학사업

산재장학사업은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83년 시작된 이래, 장학금 지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가구당에 대한 지급



제한도 폐지하였으며, 중학교 의무교육제로 인해 현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은 △산재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제1~7급 산재장해인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정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등교육시설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여야 하며, 산재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연간 1인당 500만원 금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학년 초에 등록금 내역을 통보받아 분기별로 해당 학교의 지정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한다.

장학생 선발 시에는 그동안 재산제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월보험급여 수령액이 260만원인 경우 신청을 제한하였으나,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하여 '14년 이를 폐지하였다. 다만 수혜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월보험급여 수령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기준(△1순위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2순위 처음 신청한 세대의 사망근로자 자녀 △3순위 처음 신청한 세대의 장해(폐질) 상위등급 근로자 자녀 △4순위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근로자의 자녀 △5순위 산재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6순위 장해 또는 폐질 상위등급 근로자의 배우자 △7순위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근로자의 배우자 순)에 따라 선정한다.

'19년에 2,200명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사업이 시작된 이래 '19년까지 모두 13만 1백여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표 2-4-22>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계 <sup>1)</sup>
인원	3,142	2,728	2,522	2,529	2,200	130,135
지급 금액	4,743	4,149	3,848	3,792	2,630	126,569

1) 산재장학사업이 시작된 '83년부터 '18년까지의 누계치임

### 3. 대학학자금 용자사업(2015년 사업폐지)

대학학자금 용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대학학자금을 용자하여 줌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이들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7년에 시작된 이래, 학자금 용자 대상 및 용자 한도를 확대해 왔으며, 폐지 직전 학자금 용자 대상은 산재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9급 근로자, 5년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판정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중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sup>104)</sup>이었다.

용자금액은 산재근로자 1가구당 2,000만원 한도(생활안정자금 포함) 내에서 당해연도 학기당 실납부등록금이 용자신청 가능하며, 졸업 후 1년 거치(연 1%, 군복무 기간은 연장 가능) 4년 분할상환(연 3%)을 조건으로 용자되었다.

<표 2-4-23> 대학학자금 용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누계 <sup>1)</sup>
인원	1,961	1,654	1,619	1,176	711	628	22,234
대부 금액	5,947	5,086	5,081	3,348	2,010	1,878	57,752

1) 대학학자금 용자사업이 시작된 '97년부터 '14년까지의 누계치임

104) 대학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외국대학의 대학생은 제외된다.

### 제3절 '19년 주요 추진 실적

#### 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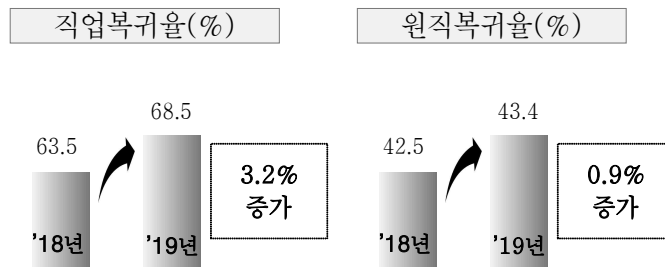
대체인력 지원제도, 직업훈련 취업역량 강화 및 재할지원팀 신설, 취업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산재근로자 맞춤 일자리 제공 등의 직업복귀율 제고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산재요양종결자 수는 93,006명으로 전년도 84,011명 대비 8,995명(10.7%) 증가하였고, 직업복귀자 수는 63,721명으로 전년도 54,817명 대비 8,904명(16.2%) 상승하여, '19년도 직업복귀율은 68.5%로 전년보다 3.2%p 향상되었다.

<표 2-4-24> 사회복귀기간 및 직업복귀율 현황

(단위 : 일,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직업복귀율(%)	52.5	55.5	61.9	63.5	65.3	68.5
원직복귀율(%)	40.2	39.4	41.4	41.6	42.5	43.4



## 2. 권역별 재활지원팀 신설·운영으로 산재근로자 재취업 활성화

’19.1월 권역별 재활지원팀 8개소 신설로 재활전문가를 통한 재취업서비스를 전담·운영하여 재취업 지원 인원은 11,802명, 재취업자는 5,292명으로 서비스 제공전 대비 재취업률 44.8%를 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지원팀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산재근로자의 재취업률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다.

공공 취업지원 전문기관(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센터, 고용센터 등), 지자체, 민간취업알선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로 지역적 고용시장 상황과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빠른 직업복귀를 도모하고 있으며, 산재근로자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직기회 확대를 위한 취업설명회·채용박람회 및 워크넷 구직등록 등 재취업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2-4-25> 재취업서비스 제공 현황(’19년)

(단위: 건, %)

구분	소계	취업알선				
		워크넷 등록	고용 서비스	취업성공패 키지	취업 설명회	지역 사회
’18년도	6,848	4,050	964	140	1,536	158
’19년도	11,802	4,257	2,780	360	3,819	586
증감	4,954	207	1,816	220	2,283	428
증감률	72.3	5.1	188.4	157.1	148.6	270.9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운용

###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사업 내용

####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개요

##### 가. 설치 목적 및 연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 '64. 1. 1.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설치
- '82. 7. 1. 적립금을 기금체도로 전환하고, 기금 설치
- '94. 1. 1. 기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적립금 설치
- '95. 5. 1.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 계정 설치 ('95.4.30.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폐지)
- '02. 3. 1.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
- '05. 1. 1. 적립금 계정 폐지하고, 기금으로 통합 운용

### 나. 재원의 조성 및 관리주체

산재기금의 재원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기타수익금으로 조달한다. 동 기금의 관리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2. 기금사업 내용

산재기금은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근로복지공단예의 출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예의 출연,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예의 출연,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한다.



<그림 2-5-1> 산재기금 사업체계도



제 4 장

## 제2절 '19년 주요 추진 실적

### 1. 수입·지출 결산

'19년 산재기금 수입 규모는 계획액(15조 1,137억원) 대비 4조 4,561억원 감소한 10조 6,576억원, 지출 규모는 계획액(15조 1,378억원) 대비 4조 4,801억원인데,

순수입은 8조 673억원, 순지출은 6조 4,496억원으로 수지차는 1조 6,176억원이 발생하였고, 적립금은 19조 5,089억원으로 전년(17조 8,913억원) 대비 9.0%가 증가하였다.

<표 2-5-1> 수입·지출 계획 및 결산 현황('19년)

(단위 : 억원)

구분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증감	전년 대비 실적 증감
수입(순수입)	151,138(84,486)	106,576(80,673)	△44,561(△3,813)	△1,208(722)
지출(순지출)	151,378(64,556)	106,576(64,496)	△44,801(△60)	△1,208(4,987)
수지차	19,930	16,176	△3,754	△4,266
적립금	198,843	195,089	△3,754	16,176

- 1) 순수입 : 총 수입액에 기금예탁원금 회수, 여유자금회수액을 제외한 금액  
 2) 순지출 : 총 지출액에 여유자금운용액을 제외한 금액

#### 가. 수입

총수입은 10조 6,576억원으로 당초계획 15조 1,138억원보다 4조 4,561억원 감소하였고, 순수입은 8조 673억원으로 당초계획 8조 4,486억원보다 3,813억원 감소하였다.

주요 수납내역은 사회보장기여금(보험료) 7조 5,458억원, 재산수입 2,551억원, 경상이전수입(가산금, 연체금 등) 1,006억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2억원, 용자원금회수 1,345억원, 정부내부수입 231억원, 여유자금 회수 2조 1,904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사회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등 항목에서 1,089억원이 발생하였다.

미수납액은 사회보장기여금, 경상이전수입 등 항목에서 1조 5,014억원이 발생하였고, 사유별로는 납기미도래 4,075억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4,389억원, 압류·체납 처분 절차 진행 6,576억원 등이었다.

<표 2-5-2> 산재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5,113,770	12,267,975	10,657,638	108,913	1,501,424	86.9
<b>【순수입】</b>	8,067,258	9,670,015	8,067,258	108,913	1,501,424	83.4
사회보장기여금	7,708,058	8,750,080	7,545,812	75,422	1,128,846	86.2
재산수입	340,137	255,081	255,081	0	0	100
- 관유물대여료	782	974	974	0	0	10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39,355	254,108	254,108	0	0	100
경상이전수입	181,318	506,642	100,575	33,490	372,576	19.9
- 벌금	23	35	35	0	0	100
- 가산금	7,809	18,691	6,460	1,408	10,823	34.6
- 기타경상이전수입	173,486	487,915	94,080	32,082	361,753	19.3
채화및용역판매수입	11,004	8,216	8,213	0	2	100
관유물매각대	5,145	0	0	0	0	0
용자및전대차권원금회수	173,962	134,496	134,496	0	0	100
- 통화금융기관용자원금회수	0	0	0	0	0	0
-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173,962	134,496	134,496	0	0	1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28,980	423,080	423,080	0	0	100
- 일반회계전입금	15,500	15,500	15,500	0	0	100
- 기금예탁원금 회수	400,000	400,000	400,000	0	0	100
- 기금예탁이자수입	13,480	7,580	7,580	0	0	1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6,265,166	2,190,380	2,190,380	0	0	100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26,493	47,356	47,356	0	0	1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72	0	0	0	0	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6,237,601	2,143,024	2,143,024	0	0	100

※ 반올림 처리에 따라 단수 차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지출

총지출은 10조 6,576억원으로 당초계획 15조 1,138억원보다 4조 4,561억원 감소하였고, 순지출은 6조 4,496억원으로 당초계획(6조 4,556억원)보다 60억원 감소하였다.

지출내역은 사업비 6조 760억원(산재보험사업 5조 7,124억원, 산재예방사업 3,635억원), 기금운영비 3,736억원, 정부내부지출 4,000억원, 여유자금 운용 3조 8,080억원이었다.

불용액 60억원의 주요내역은 산재보험사업 11억원, 산재예방사업 47억원, 고용노동행정지원 2억원이었다.

<표 2-5-3> 산재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월액	계획현액(A)	지출액(B)	불용액	집행률(A/B)
	계획액	증감액					
합 계	15,113,770	0	0	15,113,770	10,657,638	5,998	70.5
<b>【순지출】</b>	5,976,888	478,736	0	6,455,624	6,449,626	5,998	99.9
산재보험	5,240,914	472,683	0	5,713,597	5,712,477	1,120	100.0
- 산재보험급여	5,069,964	459,402	0	5,529,366	5,529,360	6	100.0
-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74,007	8,539	0	82,546	81,585	961	98.8
- 연구기관및케어센터지원	8,900	0	0	8,900	8,900	0	100.0
- 산재근로자요양관리	10,206	0	0	10,206	10,202	4	100.0
- 산재의료사업지원	16,004	0	0	16,004	16,004	0	100.0
- 산재보험시설	2,446	0	0	2,446	2,446	0	100.0
-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4,149	2,064	0	16,213	16,194	19	99.9
-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	15,026	318	0	15,344	15,344	0	100.0
- 산재근로자 적용부과지원	16,649	2,360	0	19,009	18,991	18	99.9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3,563	0	0	13,563	13,451	112	99.2
산재예방	364,384	3,822	0	368,206	363,523	4,683	98.7
- 클린사업장조성	76,855	0	0	76,855	75,140	1,715	97.8
- 산재예방시설용자	106,654	0	0	106,654	106,654	0	100.0
- 업종별재해예방	47,955	0	0	47,955	46,958	997	97.9
- 안전인증및안전검사	6,011	0	0	6,011	5,787	224	96.3



구 분	예산액		이월액	계획현액(A)	지출액(B)	불용액	집행률(A/B)
	계획액	증감액					
- 유해작업환경개선	54,916	0	0	54,916	54,493	423	99.2
- 근로자건강보호	22,743	3,822	0	26,565	26,082	483	98.2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169	0	0	169	166	3	98.2
- 안전보건문화정착	29,124	0	0	29,124	28,560	564	98.1
- 산재예방시설건설	8,873	0	0	8,873	8,791	82	99.1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5,019	0	0	5,019	4,993	26	99.5
-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6,065	0	0	6,065	5,899	166	97.3
고용노동행정지원	371,590	2,231	0	373,821	373,626	195	99.9
<b>【여유자금 계】</b>	9,136,882	-478,736	0	8,658,146	4,208,012	0	48.6
기금간거래(예탁금)	400,000	0	0	400,000	400,000	0	100.0
여유자금운용	8,736,882	-478,736	0	8,258,146	3,808,012	0	46.1

※ 반올림 처리에 따라 단수 차이 발생할 수 있음

## 2. 재무 결산 현황

### 가. 재정상태 분석

자산은 '19년말 20조 7,263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조 3,6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치차 발생에 따른 장기투자증권 1조 2,899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18년말 4조 5,254억원으로 전년말보다 2,145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 비유동부채(법정책임준비금) 1,84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순자산은 '18년말 16조 2,009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조 1,507억원 증가하였다.

<표 2-5-4> 재무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년대비 증감률	
재정 상태	자산	148,752	168,644	193,615	207,263	235,152	13.5
	부채	39,536	40,861	43,109	45,254	52,094	15.1
	순자산	109,216	127,783	150,506	162,009	183,058	13.0

※ 재정상태 : '14년-'18년은 재정상태표 내용임

### 3. 법정책임준비금 확보

#### 가. 법정책임준비금 현황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 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제99조 제1항).

'08.7.1. 이전 책임준비금의 적립규모는 “당해연도 지급결정한 연금 총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다음년도 예상 보험급여에 3/12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08.7.1. 이후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0조)

'03년부터 '05년까지 기간 동안 산재기금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립금의 감소 및 책임준비금의 미충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와 함께 매년 연금수급자의 누증 및 연금급여 지출의 지속적 증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산재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 및 적용누락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수납률 향상 등 산재기금의 수입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요양·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합리화 노력을 병행하였고, '06년 12월에는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정운용 방식은 매년 보험급여 지출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 둘째, 향후 연금급여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장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셋째, 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은 연차적으로 확대(향후 10년 이내에 기금지출총액의 3%), 넷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존의 “당해연도 연금지급액 6년분과 다음년도 보험급여의 1/4의 합”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총액” 수준으로 변경하며, 변경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적립금은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보험급여 등의 지출이 합리화 되어 '06년부터 산재기금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08년 7월 산재보험법상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시행되면서 이후 법정책임준비금을 충족하게 되었다.





또한, 현행 책임준비금 관련 규정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급여 증가추세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3년 주기로 재정수지분석을 실시하여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sup>105)</sup>

<표 2-5-5> 산재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년대비 증감률
재정 수지	순수입	66,350	71,135	72,895	79,951	80,673	0.9
	순지출	49,727	51,473	53,078	59,509	64,496	8.3
	수지	16,623	19,662	19,817	20,442	16,176	△20.8
보험료율		1.70	1.70	1.70	1.80	1.65	△8.3
적립금	법정책임 준비금	39,332	40,721	42,745	44,585	50,643	13.6
	적립금	118,991	138,653	158,470	178,912	195,088	12.9
	적립률	302.5	340.4	370.7	401.3	385.2	△4.0
	과부족	79,659	97,932	115,725	134,327	144,445	7.5

#### 나. 향후 과제

중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지출의 합리화 노력과 함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하여 적용대상 사업장의 가입촉진 및 납부제도 홍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보험료 수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출의 합리화를 위하여 세출구조 조정 및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고, 세대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보험료율 상승을 억제하면서 연금부채 대비 일정 비율을 적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105)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초과적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12.4.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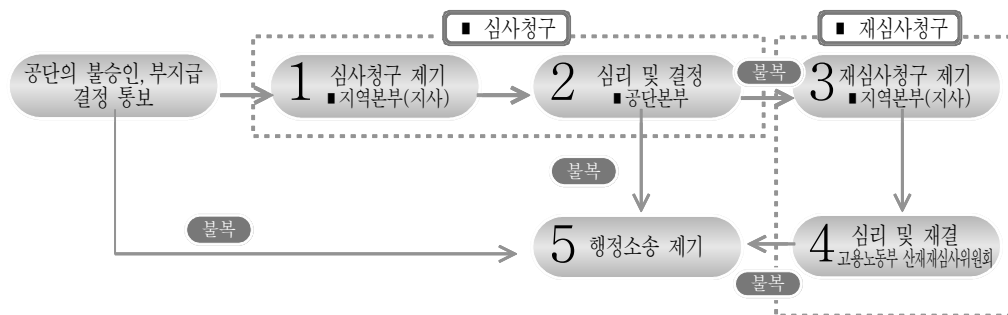
## 행정구제제도

우리나라의 권리구제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에 의한 구제 절차로서의 행정심판과 사법부를 통한 구제 절차로서의 행정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임의 절차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가 존재한다.

산재보험법에서도 제정 당시부터 전문지식의 활용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절차로서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행정구제절차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되며,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산재심사실에서,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심리·결정한다.

<그림 2-6-1>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도



## 제1절 산재보험 관련 행정구제 절차

### 1. 심사와 재심사청구

#### 가. 심사청구

산재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뿐만 아니라 진료비·약제비에 관한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료 부과처분 등 적용·징수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에 별도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 결정 등을 행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sup>106)</sup>,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된 심사청구서에 대한 심리·결정은 공단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산재심사실에서 담당하고, 산재심사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 결정을 하며,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가 결정된 경우
- 진폐 및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sup>106)</sup> 적용·징수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심사 결정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9년 심사청구 현황을 보면 청구건수는 '18년 8,845건 대비 2,416건 증가한 11,261건 이고, 취소율은 휴업급여에서, 기각률은 유족급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1> 심사청구 결정 현황

(2019.12.31. 현재, 단위: 건, %)

구 분	청구 건수	결 정 내 용					취소율	
		계	취 소	기 각	각 하	취 하		
'19년	합 계	11,261	10,685	1,690	8,650	137	208	15.8
	요양급여	5,673	5,350	815	4,377	58	100	15.2
	휴업급여	461	485	97	335	4	49	20.0
	장해급여	3,339	3,165	587	2,526	20	32	18.5
	유족급여	320	310	25	278	5	2	8.1
	기타급여	1,468	1,375	166	1,134	50	25	12.1
'18년	합 계	8,845	9,017	1,535	7,256	93	133	17.0
	요양급여	4,552	4,573	834	3,618	40	81	18.2
	휴업급여	444	455	84	360	8	3	18.5
	장해급여	2,634	2,734	486	2,196	22	30	17.8
	유족급여	251	245	26	212	4	3	10.6
	기타급여	964	1010	105	870	19	16	10.4

#### 나.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심사 청구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공단 소속기관은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재심사청구를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표 2-6-2> 재심사청구 재결 현황

(단위: 건, %)

구 분	청구 건수	결 정 내 용				취소율	
		계	취 소	기 각	각 하		
'19년	합 계	4,492	3,462	525	2,880	57	15.2
	요양급여	2,600	2,010	171	1,803	36	8.5
	휴업급여	102	94	11	82	1	11.7
	장해급여	827	670	67	596	7	10
	유족급여	341	279	20	255	4	7.2
	기타급여	622	409	256	144	9	62.6
'18년	합 계	3,503	3,273	836	2,400	37	25.54
	요양급여	1,823	1,645	171	1,455	19	10.40
	휴업급여	283	255	33	220	2	12.94
	장해급여	83	75	14	60	1	18.67
	유족급여	755	678	81	585	12	11.95
	기타급여	559	620	537	80	3	86.61

#### 다. 청구의 효과, 결정 및 재결의 효력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보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다.

그리고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2. 행정소송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 결정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재심사청구, 행정심판 외에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표 2-6-3> 행정소송 판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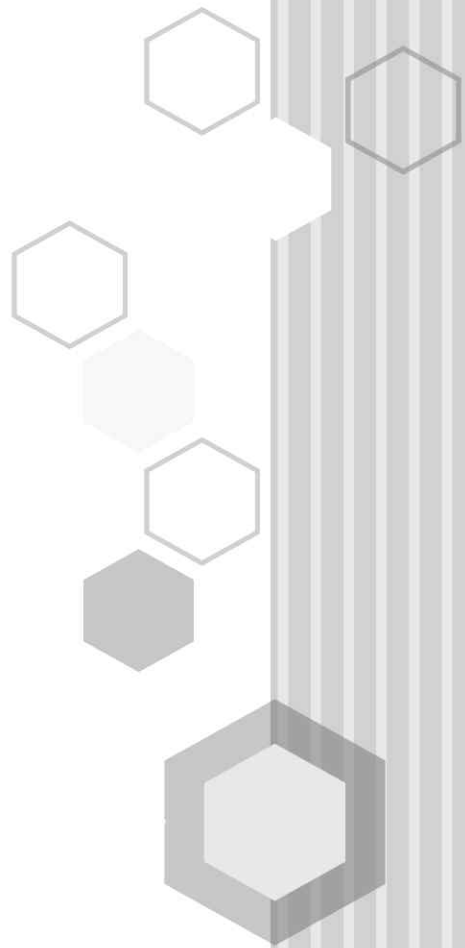
(단위: 건, %)

급 여 별	접수 건수	판 결 내 용					계류 중	취소율	
		계	승 소	패 소	일부승소	취하 등			
'19	합 계	4,089	1,938	661	244	32	1,001	2,151	12.6
	요양급여	1,439	602	327	78	18	179	837	13.0
	휴업급여	57	25	17	0	3	5	32	0
	장해급여	1,553	941	123	96	4	718	612	10.2
	유족급여	707	230	146	45	0	39	477	19.6
	기타급여	80	39	11	6	0	22	41	15.4
	보험료 기타	253	101	37	19	7	38	152	18.8
'18	합 계	4,202	2,412	729	344	44	1,295	1,790	14.3
	요양급여	1,480	734	356	112	25	241	746	15.3
	휴업급여	62	27	14	3	1	9	35	11.1
	장해급여	1,606	1,143	91	89	10	953	463	7.8
	유족급여	757	377	221	109	1	46	380	28.9
	기타급여	85	31	9	8	0	14	54	25.8
	보험료 기타	212	100	38	23	7	32	112	23.0

# 제3편

## 산재보험 통계

- 제1장 적 용
- 제2장 징 수
- 제3장 요 양
- 제4장 보 상
- 제5장 산재기금 재정수지
- 제6장 행정구제
- 제7장 산재보험 병원시설







### 통계 이용자를 위한 일러두기

1. 본 편에 수록된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으로 생성되는 행정통계 자료를 집계한 것입니다.
2. 본 편에서 사용한 사업종류 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3. 통계표 중 전호의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호에서 정정된 것이니 최근호의 수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4. 통계표 중 보험급여 지급지수는 세목별로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세목별 합이 집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통계표 중 징수분야 통계는 08년도부터 현년도 결정·수납된 금액만을 통계에 포함하였습니다.
6. 통계표 중 『-』 표시는 ‘0’을, 공백은 통계 작성 이전 이거나 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7. 본 책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의 ‘알림마당>자료마당>통계자료’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보도자료,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조사연구부 (02-2670-0455)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편 산재보험 통계

---



## < 산재보험 실적분석 통계용어 해설 >

### 【 가입·납부 】

○ 가입사업장수	<p>산업·고용보험(이하 보험사업)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를 말한다.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사업이다.</p>
○ 가입근로자수	<p>보험사업 가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p> <p>※ 상시근로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보험연도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math display="block">= \left( \frac{\text{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text{전년도의 조업 개월수}} \right)</math> </li> <li>·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math display="block">= \left( \frac{\text{전년도 공사실적액} \times \text{전년도 노무비율}}{\text{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times \text{조업 개월수}} \right)</math> </li> <li>·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math display="block">= \text{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math> </li> </ul>
○ 사업종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사업의 적용업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 분류를 의미하며,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li> </ul> <p>※ 2019 산재보험료율표 : 10개 산업, 35 사업종류로 분류됨</p>
○ 사업장규모 (규모) 구분	<p>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구분을 의미한다.</p>
○ 건설공사 일괄 적용	<p>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 개별공사 단위로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사무에 대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p>



<p>○ 보험료</p>	<p>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 납부 방법이 다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고지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1. 1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사업장</li> <li>※ 자진신고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산재보험 가입사업장</li> </ul> </li> <li>· 자진신고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3월말까지 개산 및 확정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하는 사업장</li> <li>※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 별목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li> </ul> </li> </ul>
<p>○ 기타징수금</p>	<p>가산금,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금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법정기한내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징수해야 할 금액 외에 그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li> <li>· 연체금 :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등의 90/1000을 넘지 못한다.</li> <li>· 급여징수금 : 법정기한내에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li> </ul>
<p>○ 징수결정액</p>	<p>보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된 금액 중에서 감액, 충당액, 3%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p>
<p>○ 수납률</p>	<p>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납률 = <math>(\frac{\text{수납액}}{\text{징수결정액}}) \times 100</math></li> </ul>



○ 수지율	<p>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 수입은 정수결정액 또는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출은 보험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지율(정수결정액 기준) = <math>(\frac{\text{보험급여지급액}}{\text{정수결정액}}) \times 100</math></li> <li>· 수지율(수납액 기준) = <math>(\frac{\text{보험급여지급액}}{\text{수납액}}) \times 100</math></li> </ul>
-------	--

**【 산재보험급여 】**

○ 수급자	<p>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수급자수는 세목별로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세목별 합이 합계와 다를 수 있다.</p> <p>※ 수급자수는 보험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년도 재해자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수급자수에 포함한다.</p>
○ 지급건수	<p>산재보험 보험급여가 지급된 지급회수의 합을 의미한다</p>
○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	<p>·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 = <math>\text{보험급여지급액} \div \text{수급자수}</math></p>
○ 보험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이나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li> <li>· 휴업급여 : 업무상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li> <li>·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그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보험급여</li> </ul>

<p>○ 보험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등급(14등급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지급형태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이 있다.</li> <li>·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li> <li>·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li> <li>·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li> <li>·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험급여로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비롯하여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있다</li> <li>· 진폐연금 :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장해등급을 판정 받거나, 사망한 경우 기초연금(최저임금의 60%)과 장해등급별 장해(유족)연금(24일~132일분)을 합하여 지급</li> </ul>
<p>○ 진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평균진료비 = 진료비지급액 ÷ 진료비수급자수</li> <li>· 1인1일평균진료비 = 진료비지급액 ÷ 진료비수급자수 ÷ 진료비지급일수</li> </ul>
<p>○ 약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평균약제비 = 약제비 지급총액 ÷ 약제비 수급자</li> </ul>



# 제1장 적 용

1-1. 사업종류별(중분류) 적용 현황

(연도 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사 업 종 류	'18		'19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전 산 업	2,654,107	19,073,438	2,680,874	1,919,553	18,725,160	4,831,579
금 용 보 험 업	41,968	778,105	42,320	1,696	777,764	7,675
금 용 보 험 업	41,968	778,105	42,320	1,696	777,764	7,675
광 업	1,078	11,697	1,082	170	11,108	627
석탄광업 및 채석업	70	3,016	61	49	2,710	147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 광업	1,008	8,681	1,021	121	8,398	480
계 조 업	379,387	4,152,058	108,487	12,575	1,613,840	55,953
식 료 품 제 조 업	26,859	305,672	28,538	3,973	316,021	19,657
섬유및섬유제품제조업(갑)	15,898	88,923	-	-	-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1,560	63,822	-	-	-	-
펄프·지류 제조업	4,922	55,910	-	-	-	-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8,555	111,142	18,768	1,563	108,148	3,674
화 학 제 품 제 조 업	35,203	403,273	-	-	-	-
의약품·화장품 향료· 담배 제조업	2,684	79,549	2,839	306	84,431	2,004
고 무 제 품 제 조 업	3,910	64,608	-	-	-	-
유 리 제 조 업	1,976	26,830	-	-	-	-
도자기·기타요업제품· 시멘트 제조업	3,988	55,835	-	-	-	-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122,564	941,907	-	-	-	-
금 속 제 련 업	268	41,076	268	18	41,402	215



구 분 사 업 종 류	'18		'19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신규		신규
도 금 업	6,759	67,272	-	-	-	-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49,465	926,360	50,318	4,804	906,585	20,262
선 박 건 조 및 수 리 업	7,407	169,455	7,351	1,884	143,999	10,056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33,423	493,835	-	-	-	-
수 제 품 제 조 업	6,282	37,118	-	-	-	-
기 타 제 조 업	16,383	104,564	-	-	-	-
섬유/섬유제품제조(을)	10,420	101,711	-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 조 업	406	13,196	405	27	13,254	85
<b>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b>	<b>2,493</b>	<b>76,967</b>	<b>2,814</b>	<b>434</b>	<b>76,687</b>	<b>1,206</b>
전 기 · 가 스 · 증 기 및 수 도 사 업	2,493	76,967	2,814	434	76,687	1,206
<b>건 설 업</b>	<b>441,758</b>	<b>2,943,742</b>	<b>378,343</b>	<b>1,539,319</b>	<b>2,487,807</b>	<b>3,460,925</b>
건 설 업	441,758	2,943,742	378,343	1,539,319	2,487,807	3,460,925
<b>운수·창고 및 통신업</b>	<b>77,160</b>	<b>873,232</b>	<b>6,286</b>	<b>505</b>	<b>226,500</b>	<b>43,026</b>
철도·궤도·삭도 및 항 공 운 수 업	555	104,542	631	136	137,481	38,853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 퀵 서비스 업	30,579	338,136	-	-	-	-
수 상 운 수 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11,517	136,891	-	-	-	-
운 수 관 련 서 비 스 업	25,217	160,141	-	-	-	-
창 고 업	3,585	44,317	-	-	-	-
통 신 업	5,707	89,205	5,655	369	89,019	4,173

사 업 종 류	구 분	'18		'19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신규		신규
업	업	12,105	89,751	12,289	13,450	91,682	61,084
업	업	12,105	89,751	12,289	13,450	91,682	61,084
어	업	1,748	5,416	1,858	264	5,121	546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1,748	5,416	1,858	264	5,121	546
농	업	17,449	83,540	18,785	6,181	79,482	14,927
농	업	17,449	83,540	18,785	6,181	79,482	14,927
기 타 의 사 업		1,678,787	10,037,693	1,619,041	282,233	9,264,311	907,638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17,982	826,378	-	-	-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14,980	122,488	-	-	-	-
기 타 의 각 종 사 업		462,270	2,150,360	489,687	101,550	2,114,879	234,023
전 문 기 술 서 비 스 업		140,428	1,133,497	149,894	21,230	1,183,803	62,780
보 건 및 사 회 복 지 사 업		149,944	1,550,008	153,232	15,261	1,634,003	97,427
교 육 서 비 스 업		54,305	325,317	57,351	10,480	328,578	23,996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511,314	2,050,786	527,998	76,010	2,049,430	172,069
부 동 산 업 및 임 대 업		51,677	129,366	54,647	8,589	129,014	14,332
오 락 · 문 화 및 문 동 관 련 사 업		39,795	274,751	44,458	10,939	283,475	25,472
국 가 및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사 업		32,434	475,963	31,554	17,395	514,653	137,080
사 업 서 비 스 업		98,788	952,942	105,169	20,061	979,025	137,305
해 외 파 견 사 업		4,870	45,837	5,051	718	47,451	3,154

구 분 사 업 종 류	'18		'19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신규		신규
<b>계 조 업</b>			<b>277,632</b>	<b>28,147</b>	<b>2,431,208</b>	<b>91,700</b>
섬유및섬유제품제조업	-	-	26,227	2,663	179,174	7,75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16,790	1,872	116,466	5,186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	-	39,225	3,424	452,800	11,975
유리·도자기·시멘트제조업	-	-	5,998	439	81,079	1,876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	-	165,675	17,341	1,462,709	58,563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	-	23,717	2,408	138,980	6,349
<b>운수창고통신업</b>			<b>75,138</b>	<b>14,462</b>	<b>684,085</b>	<b>55,025</b>
육상 및 수상운수업	-	-	34,041	8,803	348,821	20,252
창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	-	41,097	5,659	335,264	34,773
<b>기 타 의 사 업</b>	<b>174</b>	<b>21,237</b>	<b>136,799</b>	<b>20,117</b>	<b>975,565</b>	<b>131,247</b>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136,623	20,115	953,987	130,893
주 한 미 군	174	21,237	176	2	21,578	354

1-2. 연도별·사업종류별(대분류) 적용 현황

(연도 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합 계	사업장	1,825,296	1,977,057	2,187,391	2,367,186	2,457,225	2,507,364	2,654,107	2,680,874
	근로자	15,548,423	15,449,228	17,062,308	17,968,931	18,431,716	18,560,142	19,073,438	18,275,160
금 보 험	사업장	38,939	39,447	38,596	39,789	41,419	40,892	41,968	42,320
	근로자	658,854	652,452	681,236	705,629	761,187	764,141	778,105	777,764
광 업	사업장	1,070	1,090	1,107	1,108	1,105	1,054	1,078	1,082
	근로자	13,122	11,647	11,715	11,615	11,153	11,199	11,697	11,108
제 조 업	사업장	309,036	328,073	342,700	361,493	375,634	368,305	379,387	386,119
	근로자	3,778,916	3,776,613	3,967,908	4,161,536	4,236,653	4,149,966	4,152,058	4,045,048
전 기 수 도 업	사업장	1,637	1,763	1,817	2,091	2,363	2,272	2,493	2,814
	근로자	56,446	61,143	55,445	64,244	72,940	75,496	76,967	76,687
건 설 업	사업장	217,136	216,320	329,061	380,944	333,201	397,405	441,758	378,343
	근로자	2,786,587	2,566,832	3,249,687	3,358,813	3,152,859	3,046,523	2,943,742	2,487,807
운 창 통 신 업	사업장	54,389	57,965	60,394	65,650	71,860	71,532	77,160	81,424
	근로자	810,173	774,041	776,341	805,403	836,471	838,006	873,232	910,585
입 업	사업장	11,717	11,373	11,674	12,366	12,422	11,740	12,105	12,289
	근로자	73,759	74,389	77,486	86,565	93,493	82,773	89,751	91,682
어 업	사업장	1,189	1,345	1,468	1,613	1,734	1,633	1,748	1,858
	근로자	4,117	4,342	5,943	5,357	5,591	5,289	5,416	5,121
농 업	사업장	7,398	8,841	10,871	12,350	14,954	15,452	17,449	18,785
	근로자	46,489	50,634	61,681	68,697	80,990	76,033	83,540	79,482
기 타 의 사	사업장	1,182,785	1,310,840	1,389,703	1,489,782	1,602,533	1,597,079	1,678,961	1,755,840
	근로자	7,319,960	7,477,135	8,174,866	8,701,072	9,180,379	9,510,716	10,058,930	10,239,876



## 1-3. 연도별·사업규모별 적용 현황

(연도 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합 계	사업장	1,825,296	1,977,057	2,187,391	2,367,186	2,457,225	2,507,364	2,654,107	2,680,874
	근로자	15,548,423	15,449,228	17,062,308	17,968,931	18,431,716	18,560,142	19,073,438	18,725,160
건설업	사업장	217,136	216,320	329,061	380,944	333,201	397,405	441,758	378,343
	근로자	2,786,587	2,566,832	3,249,687	3,358,813	3,152,859	3,046,523	2,943,742	2,487,807
5인 미만	사업장	1,139,010	1,272,254	1,328,657	1,412,389	1,512,694	1,486,100	1,568,076	1,663,308
	근로자	1,876,801	1,989,844	2,137,820	2,260,124	2,390,290	2,442,268	2,586,986	2,615,908
5 ~ 9인	사업장	227,749	239,361	264,235	295,493	321,118	326,881	335,836	327,527
	근로자	1,476,426	1,554,389	1,728,623	1,925,195	2,091,294	2,126,646	2,188,830	2,127,377
10 ~ 29인	사업장	172,811	179,794	192,280	201,601	211,115	216,305	225,496	228,686
	근로자	2,775,979	2,881,922	3,077,295	3,220,086	3,372,224	3,448,571	3,589,010	3,643,270
30 ~ 49인	사업장	34,268	34,822	36,920	38,886	40,303	41,244	42,025	41,912
	근로자	1,287,203	1,305,596	1,385,294	1,459,320	1,513,513	1,545,923	1,575,937	1,569,923
50 ~ 99인	사업장	20,949	21,142	22,191	23,216	23,721	24,169	25,200	25,338
	근로자	1,430,376	1,438,238	1,509,542	1,585,810	1,615,424	1,645,712	1,713,252	1,721,960
100 ~ 299인	사업장	10,967	10,998	11,544	12,013	12,320	12,448	10,098	12,699
	근로자	1,706,976	1,721,141	1,809,989	1,886,080	1,943,853	1,957,262	1,369,814	2,010,027
300 ~ 499인	사업장	1,308	1,285	1,352	1,432	1,502	1,568	1,608	1,672
	근로자	491,547	481,763	506,354	535,946	562,057	586,849	605,187	630,474
500 ~ 999인	사업장	718	697	748	785	818	814	895	916
	근로자	490,145	471,811	508,764	523,600	552,577	548,273	606,163	626,148
1000인 이상	사업장	380	384	403	427	433	430	459	473
	근로자	1,226,383	1,037,692	1,148,940	1,213,957	1,237,625	1,212,115	1,255,128	1,292,266



## 제 2 장    징    수



## 2-1. 사업종류별(중분류) 징수 현황

(연도 말 현재)

(단위 : 원, %)

사업종류	구분	'18			'19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전사업		7,671,667,701,750	6,956,478,036,120	90.68	7,761,655,459,820	7,079,340,426,160	91.21
금융 및 보험업		208,196,080,340	192,053,779,720	92.25	250,734,356,855	231,619,083,270	92.38
금융 및 보험업		208,196,080,340	192,053,779,720	92.25	250,734,356,855	231,619,083,270	92.38
광업		62,851,712,730	56,323,231,460	89.61	44,384,891,350	39,722,152,540	89.49
석탄광업 및 채석업		42,483,372,700	38,562,393,430	90.77	26,165,460,830	23,838,661,030	91.11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 광업		20,368,340,030	17,760,838,030	87.20	18,219,430,520	15,883,491,510	87.18
제조업		2,275,904,886,298	2,032,505,145,853	89.31	2,065,863,099,060	1,855,384,554,728	89.81
식품제조업		158,872,618,665	143,022,395,200	90.02	165,470,272,980	149,522,945,762	90.3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84,862,471,890	75,398,045,360	88.85	63,759,779,220	56,926,045,670	89.28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67,865,294,820	58,783,666,036	86.62	84,307,059,510	74,849,077,020	88.78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43,620,773,320	39,246,905,210	89.97	37,049,887,240	33,508,430,734	90.44
신문·화폐발행출판업 및 인쇄업		36,499,816,654	32,746,291,904	89.72			

(단위 : 원, %)

사 업 종 류	구 분	'18			'19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283,824,255,260	256,759,849,481	90.46	260,257,838,430	236,224,351,730	90.77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 제조업		26,686,635,970	24,462,001,080	91.66	29,304,189,330	26,831,254,140	91.56
유리·도자기·시멘트제조업		62,940,049,570	57,348,573,190	91.12	42,203,282,230	38,581,410,860	91.42
금속제련업		25,897,400,940	23,797,802,970	91.89	32,951,657,580	30,375,854,400	92.18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983,513,463,649	877,919,489,900	89.26	842,463,402,190	757,755,406,738	89.95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276,194,532,230	252,046,651,874	91.26	314,966,264,580	288,603,788,105	91.63
선박 건조 및 수리업		126,392,967,150	102,994,285,822	81.49	123,346,756,160	99,707,467,140	80.84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87,867,218,510	77,985,572,486	88.75	57,039,732,770	50,679,308,899	88.8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867,387,670	9,993,615,340	91.96	12,742,976,840	11,819,213,530	92.75
<b>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b>		<b>35,424,623,080</b>	<b>32,644,435,310</b>	<b>92.15</b>	<b>43,621,134,500</b>	<b>40,306,004,640</b>	<b>92.40</b>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5,424,623,080	32,644,435,310	92.15	43,621,134,500	40,306,004,640	92.40
<b>건설업</b>		<b>2,176,063,921,520</b>	<b>2,008,710,691,300</b>	<b>92.31</b>	<b>2,263,258,917,860</b>	<b>2,096,156,582,031</b>	<b>92.62</b>
건설업		2,176,063,921,520	2,008,710,691,300	92.31	2,263,258,917,860	2,096,156,582,031	92.62



(단위 : 원, %)

사 업 종 류	구 분	'18			'19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운 송 · 창 고 및 통 신 업		387,038,294,180	348,647,877,949	90.08	373,160,458,740	338,459,363,302	90.70
철도·궤도·삭도 및 항공운수업		48,521,868,780	44,905,138,020	92.55	61,127,321,890	56,703,658,640	92.76
육 상 및 수 상 운 수 업		230,094,901,730	204,384,371,539	88.83	158,384,507,725	141,696,306,840	89.46
창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63,254,363,230	57,765,062,070	91.32	105,443,175,985	95,828,286,042	90.88
통 신 업		45,167,160,440	41,593,306,320	92.09	48,205,453,140	44,231,111,780	91.76
임 업		28,092,452,140	25,232,373,550	89.82	21,961,327,230	19,550,567,560	89.02
임 업		28,092,452,140	25,232,373,550	89.82	21,961,327,230	19,550,567,560	89.02
어 업		4,097,637,190	3,402,592,060	83.04	3,694,306,230	3,191,360,760	86.39
어 업		4,097,637,190	3,402,592,060	83.04	3,694,306,230	3,191,360,760	86.39
농 업		30,144,872,770	26,770,348,810	88.81	28,617,481,820	25,628,454,190	89.56
농 업		30,144,872,770	26,770,348,810	88.81	28,617,481,820	25,628,454,190	89.56
기 타 의 사 업		2,463,853,221,502	2,230,187,560,108	90.52	2,666,359,486,175	2,429,322,303,139	91.11
건물종합관리·위생 및 유수서비스업		291,130,647,460	265,530,961,522	91.21	248,465,851,300	227,652,141,526	91.62

(단위 : 원, %)

사 업 종 류	구 분	'18			'19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건설기계관리사업		1,952,450	91,080	4.66	1,345,130	0	0.00
기타의 각종사업		498,598,815,593	445,530,175,296	89.36	554,226,245,529	501,196,406,968	90.43
전문기술서비스업		349,671,243,705	317,899,412,388	90.91	396,219,627,264	361,655,386,334	91.2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02,373,318,365	277,189,463,408	91.67	336,769,201,495	310,035,191,721	92.06
교육서비스업		50,579,370,960	46,021,634,990	90.99	54,822,908,870	50,189,387,704	91.5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531,969,042,189	479,655,101,264	90.17	575,768,637,513	521,957,182,444	90.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596,519,510	30,124,463,500	87.07	35,786,913,580	31,246,860,400	87.31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71,404,750,190	64,970,055,090	90.99	73,621,152,610	67,424,835,792	91.5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05,891,837,560	100,203,367,180	94.63	136,653,461,800	129,701,558,170	94.91
사업서비스업		205,941,983,870	182,904,409,940	88.81	231,553,699,624	207,305,242,420	89.53
해의과건사업		18,655,565,080	17,169,064,530	92.03	18,780,908,270	17,294,196,110	92.08
주한미군		3,038,174,570	2,989,359,920	98.39	3,689,533,190	3,663,913,550	99.31



## 2-2. 계정별·사업종류별(중분류) 징수 현황

(연도 말 현재)

(단위 : 원)

사업종류	구분	합계	
		징수결정액	수납액
전 사업		7,761,655,459,820	7,079,340,426,160
금융 및 보험업		250,734,356,855	231,619,083,270
금융 및 보험업		250,734,356,855	231,619,083,270
광업		44,384,891,350	39,722,152,540
석탄광업 및 채석업		26,165,460,830	23,838,661,030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18,219,430,520	15,883,491,510
제조업		2,065,863,099,060	1,855,384,554,728
식료품제조업		165,470,272,980	149,522,945,762
섬유 및 섬유제품제조업		63,759,779,220	56,926,045,670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84,307,059,510	74,849,077,020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37,049,887,240	33,508,430,734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260,257,838,430	236,224,351,730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제조업		29,304,189,330	26,831,254,140
유리·도자기·시멘트제조업		42,203,282,230	38,581,410,860
금속제련업		32,951,657,580	30,375,854,400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842,463,402,190	757,755,406,738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제조업		314,966,264,580	288,603,788,105
선박 건조 및 수리업		123,346,756,160	99,707,467,140

(단위 : 원)

보 험 료		기 타 징 수 금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7,698,141,360,890	7,048,660,321,520	63,514,098,930	30,680,104,640
250,701,551,595	231,600,969,450	32,805,260	18,113,820
250,701,551,595	231,600,969,450	32,805,260	18,113,820
44,012,884,480	39,639,004,940	372,006,870	83,147,600
25,989,380,940	23,814,043,500	176,079,890	24,617,530
18,023,503,540	15,824,961,440	195,926,980	58,530,070
2,055,966,286,500	1,851,267,032,076	9,896,812,560	4,117,522,652
164,784,739,970	149,163,943,842	685,533,010	359,001,920
63,350,180,980	56,733,110,170	409,598,240	192,935,500
83,586,636,100	74,554,764,580	720,423,410	294,312,440
36,919,483,150	33,432,947,424	130,404,090	75,483,310
259,436,105,040	235,828,416,490	821,733,390	395,935,240
29,261,698,930	26,812,499,660	42,490,400	18,754,480
42,070,941,410	38,524,362,400	132,340,820	57,048,460
32,951,029,110	30,375,434,310	628,470	420,090
837,531,930,520	755,630,488,486	4,931,471,670	2,124,918,252
314,554,258,830	288,391,805,345	412,005,750	211,982,760
122,219,458,090	99,522,590,230	1,127,298,070	184,876,910

(단위 : 원)

사업종류	구분	합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57,039,732,770	50,679,308,89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742,976,840	11,819,213,530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43,621,134,500	40,306,004,6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3,621,134,500	40,306,004,640
<b>건설업</b>		<b>2,263,258,917,860</b>	<b>2,096,156,582,031</b>
건설업		2,263,258,917,860	2,096,156,582,031
<b>운송·창고 및 통신업</b>		<b>373,160,458,740</b>	<b>338,459,363,302</b>
철도·궤도·삭도 및 항공운수업		61,127,321,890	56,703,658,640
육상 및 수상운수업		158,384,507,725	141,696,306,840
창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105,443,175,985	95,828,286,042
통신업		48,205,453,140	44,231,111,780
<b>임업</b>		<b>21,961,327,230</b>	<b>19,550,567,560</b>
임업		21,961,327,230	19,550,567,560
<b>여업</b>		<b>3,694,306,230</b>	<b>3,191,360,760</b>
여업		3,694,306,230	3,191,360,760
<b>농업</b>		<b>28,617,481,820</b>	<b>25,628,454,190</b>
농업		28,617,481,820	25,628,454,190

(단위 : 원)

보 험 료		기 타 징 수 금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56,562,265,420	50,481,897,979	477,467,350	197,410,920
12,737,558,950	11,814,771,160	5,417,890	4,442,370
43,606,824,480	40,293,743,500	14,310,020	12,261,140
43,606,824,480	40,293,743,500	14,310,020	12,261,140
<b>2,223,207,592,240</b>	<b>2,076,157,259,154</b>	<b>40,051,325,620</b>	<b>19,999,322,877</b>
2,223,207,592,240	2,076,157,259,154	40,051,325,620	19,999,322,877
<b>371,227,092,310</b>	<b>337,733,977,132</b>	<b>1,933,366,430</b>	<b>725,386,170</b>
61,124,620,030	56,701,378,840	2,701,860	2,279,800
157,148,554,085	141,254,893,320	1,235,953,640	441,413,520
104,783,957,605	95,564,898,792	659,218,380	263,387,250
48,169,960,590	44,212,806,180	35,492,550	18,305,600
<b>21,690,765,620</b>	<b>19,379,948,330</b>	<b>270,561,610</b>	<b>170,619,230</b>
21,690,765,620	19,379,948,330	270,561,610	170,619,230
<b>3,592,712,160</b>	<b>3,141,949,020</b>	<b>101,594,070</b>	<b>49,411,740</b>
3,592,712,160	3,141,949,020	101,594,070	49,411,740
<b>28,324,310,250</b>	<b>25,476,274,530</b>	<b>293,171,570</b>	<b>152,179,660</b>
28,324,310,250	25,476,274,530	293,171,570	152,179,660

(단위 : 원)

사업종류	구분	합계	
		징수결정액	수납액
기타의사업		2,666,359,486,175	2,429,322,303,139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48,465,851,300	227,652,141,526
건설기계관리사업		1,345,130	0
기타의각종사업		554,226,245,529	501,196,406,968
전문기술서비스업		396,219,627,264	361,655,386,33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36,769,201,495	310,035,191,721
교육서비스업		54,822,908,870	50,189,387,70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75,768,637,513	521,957,182,4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786,913,580	31,246,860,40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73,621,152,610	67,424,835,79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36,653,461,800	129,701,558,170
사업서비스업		231,553,699,624	207,305,242,420
해의과건사업		18,780,908,270	17,294,196,110
주한미군		3,689,533,190	3,663,913,550

(단위 : 원)

보 험 료		기 타 징 수 금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2,655,811,341,255	2,423,970,163,388	10,548,144,920	5,352,139,751
247,791,967,450	227,332,708,984	673,883,850	319,432,542
0	0	1,345,130	0
549,361,090,072	498,629,106,381	4,865,155,457	2,567,300,587
395,523,457,984	361,256,092,834	696,169,280	399,293,500
336,110,114,365	309,559,498,160	659,087,130	475,693,561
54,646,898,660	50,108,807,400	176,010,210	80,580,304
573,723,006,000	520,953,076,569	2,045,631,513	1,004,105,875
35,545,948,220	31,141,248,870	240,965,360	105,611,530
73,409,679,010	67,293,832,410	211,473,600	131,003,382
136,638,119,290	129,691,020,890	15,342,510	10,537,280
230,621,967,324	207,064,806,110	931,732,300	240,436,310
18,749,561,090	17,276,052,630	31,347,180	18,143,480
3,689,531,790	3,663,912,150	1,400	1,400



## 2-3. 연도별·사업종류별(대분류) 징수 현황

(연도 말 현재)

구 분		'11	'12	'13	'14
합 계	징수결정액	5,351,919,180,330	5,807,774,826,450	5,724,813,042,580	6,126,635,786,370
	수 납 액	4,766,947,353,330	5,154,853,253,690	5,104,863,488,370	5,440,516,412,750
	불납결손액	293,436,300	416,493,600	1,911,189,230	3,376,321,930
	수 납 률	89.07	88.76	89.17	88.80
금융보험업	징수결정액	106,000,718,570	137,023,197,715	121,599,060,115	118,334,736,415
	수 납 액	97,146,549,221	126,827,552,965	112,670,200,762	109,361,968,800
	불납결손액	528,020	322,990	538,850	3,089,870
	수 납 률	91.65	92.56	92.66	92.42
광 업	징수결정액	72,364,281,860	72,448,543,200	72,626,926,530	69,725,550,380
	수 납 액	65,021,244,457	64,830,752,093	65,534,898,340	62,906,649,070
	불납결손액	1,913,200	5,084,510	5,077,290	12,736,980
	수 납 률	89.85	89.49	90.23	90.22
제 조 업	징수결정액	2,088,956,832,626	2,225,645,778,861	2,150,488,499,952	2,244,922,060,932
	수 납 액	1,842,535,568,075	1,978,280,473,823	1,904,559,234,274	1,987,910,818,588
	불납결손액	133,335,210	163,502,400	414,292,990	686,047,360
	수 납 률	88.20	88.89	88.56	88.55
전기·가스·수도업	징수결정액	24,006,751,870	26,098,929,170	24,423,881,500	23,692,476,650
	수 납 액	22,037,706,230	24,168,604,250	22,529,738,570	21,770,992,640
	불납결손액	0	37,430	17,070	31,350
	수 납 률	91.80	92.60	92.24	91.89
건 설 업	징수결정액	1,270,484,218,576	1,419,809,684,527	1,405,402,678,964	1,562,481,414,329
	수 납 액	1,144,741,373,366	1,231,512,433,724	1,245,823,793,430	1,374,385,821,887
	불납결손액	83,796,330	106,056,730	1,162,848,510	2,067,779,580
	수 납 률	90.10	86.74	88.65	87.96

※ '07년부터는 해당연도에 징수 결정된 금액만 통계에 산정(이월된 징수결정액 제외)

(단위 : 원, %)

'15	'16	'17	'18	'19
6,337,022,276,170	6,609,880,888,230	6,714,693,376,760	7,671,667,701,750	7,761,655,459,820
5,679,457,135,030	5,918,731,435,860	6,048,523,543,090	6,956,478,036,120	7,079,340,426,160
10,048,617,060	4,689,738,990	1,032,902,740	308,142,050	1,317,985,650
89.62	89.54	90.08	90.68	91.21
136,915,883,970	151,229,683,680	148,224,912,050	208,196,080,340	250,734,356,855
126,815,277,460	139,490,104,990	137,422,780,500	192,053,779,720	231,619,083,270
1,792,240	1,234,800	175,950	-	5,880
92.62	92.24	92.71	92.25	92.38
71,685,559,120	78,218,200,850	71,846,581,670	62,851,712,730	44,384,891,350
64,310,086,060	70,507,357,940	64,663,925,050	56,323,231,460	39,722,152,540
45,923,010	21,448,930	977,260	3,476,600	3,012,710
89.71	90.14	90.00	89.61	89.49
2,279,286,919,790	2,256,328,102,590	2,200,091,209,111	2,275,904,886,298	2,065,863,099,060
2,031,464,365,026	2,004,964,532,274	1,953,534,742,346	2,032,505,145,853	1,855,384,554,728
2,149,648,430	1,452,934,020	163,405,076	138,863,290	171,478,010
89.13	88.86	88.79	89.31	89.81
26,158,543,720	28,277,986,080	31,877,856,240	35,424,623,080	43,621,134,500
24,151,626,320	26,144,069,320	29,148,296,110	32,644,435,310	40,306,004,640
245,690	239,490	-	-	1,350
92.33	92.45	91.44	92.15	92.40
1,638,209,785,775	1,790,258,056,600	1,930,605,917,730	2,176,063,921,520	2,263,258,917,860
1,458,204,622,597	1,588,793,505,892	1,761,467,835,013	2,008,710,691,300	2,096,156,582,031
6,599,804,100	2,508,968,950	759,787,960	134,212,260	1,013,048,040
89.01	88.75	91.24	92.31	92.62

구 분		'11	'12	'13	'14
운수창고통신업	징수결정액	287,881,204,221	327,439,380,110	299,804,168,785	305,201,446,745
	수 납 액	256,539,064,145	294,391,333,502	269,006,480,626	272,587,519,669
	불납결손액	14,114,278	12,938,580	64,076,560	100,139,550
	수 납 률	89.11	89.91	89.73	89.31
임 업	징수결정액	37,585,842,080	34,543,703,680	48,330,481,240	55,501,811,660
	수 납 액	34,525,836,227	29,272,070,480	44,422,824,760	50,367,674,040
	불납결손액	717,320	6,415,870	12,447,430	25,355,200
	수 납 률	91.86	84.74	91.91	90.75
어 업	징수결정액	937,418,140	3,622,276,500	1,302,181,390	1,899,963,810
	수 납 액	655,016,880	2,924,202,350	1,072,328,300	1,488,018,550
	불납결손액	80,390	-	-	65,880
	수 납 률	69.87	80.73	82.35	78.32
농 업	징수결정액	18,159,198,760	27,217,999,710	22,697,527,740	24,435,941,270
	수 납 액	16,277,033,263	23,963,717,130	20,333,723,360	21,579,015,320
	불납결손액	2,209,760	326,020	1,294,780	2,686,030
	수 납 률	89.64	88.04	89.59	88.31
기타의 사업	징수결정액	1,445,542,713,627	1,939,223,539,959	1,578,137,636,364	1,720,440,384,179
	수 납 액	1,287,467,961,466	1,751,734,640,609	1,418,910,265,948	1,538,157,934,186
	불납결손액	56,739,000	88,876,024	250,595,750	478,390,130
	수 납 률	89.06	90.33	89.91	89.40

※ '07년부터는 해당연도에 징수 결정된 금액만 통계에 산정(이월된 징수결정액 제외)

(단위 : 원, %)

'15	'16	'17	'18	'19
320,055,961,040	338,740,764,362	327,439,380,110	387,038,294,180	373,160,458,740
286,936,270,781	304,843,197,362	294,391,333,502	348,647,877,949	338,459,363,302
167,021,060	88,472,360	12,938,580	2,545,920	13,145,530
89.65	89.99	89.91	90.08	90.70
55,236,721,260	56,924,774,340	34,543,703,680	28,092,452,140	21,961,327,230
51,161,797,811	53,522,208,510	29,272,070,480	25,232,373,550	19,550,567,560
34,008,880	8,605,670	6,415,870	-	1,257,700
92.62	94.02	84.74	89.82	89.02
2,296,401,650	3,141,726,470	3,622,276,500	4,097,637,190	3,694,306,230
1,814,898,700	2,425,386,570	2,924,202,350	3,402,592,060	3,191,360,760
816,940	153,170	-	-	-
79.03	77.20	80.73	83.04	86.39
27,325,859,770	30,596,589,740	27,217,999,710	30,144,872,770	28,617,481,820
24,430,560,040	27,140,438,090	23,963,717,130	26,770,348,810	25,628,454,190
7,981,850	6,353,760	326,020	71,100	95,480
89.40	88.70	88.04	88.81	89.56
1,779,850,640,075	1,876,165,003,518	1,939,223,539,959	2,463,853,221,502	2,666,359,486,175
1,610,167,630,235	1,700,900,634,912	1,751,734,640,609	2,230,187,560,108	2,429,322,303,139
1,041,374,860	601,327,840	88,876,024	28,972,880	115,940,950
90.47	90.66	90.33	90.52	91.11

## 2-4. 연도별·사업규모별 징수 현황

(연도 말 현재)

구 분		'11	'12	'13	'14
합 계	징수결정액	5,351,919,180,330	5,807,774,826,450	5,724,813,042,580	6,126,635,786,370
	수 납 액	4,766,947,353,330	5,154,853,253,690	5,104,863,488,370	5,440,516,412,750
	불납결손액	293,436,300	416,493,600	1,911,189,230	3,376,321,930
	수 납 률	89.07	88.76	89.17	88.80
건 설 업	징수결정액	1,270,484,218,576	1,419,809,684,527	1,405,402,678,964	1,562,480,079,849
	수 납 액	1,144,741,373,366	1,231,512,433,724	1,245,823,793,430	1,374,385,947,207
	불납결손액	83,796,330	106,056,730	1,162,848,510	2,067,779,580
	수 납 률	90.10	86.74	88.65	87.96
5인 미 만	징수결정액	512,637,759,996	606,749,983,044	510,955,533,554	546,103,224,110
	수 납 액	408,313,571,947	499,002,003,358	412,965,505,715	438,802,148,537
	불납결손액	75,609,742	85,795,080	170,124,430	246,846,740
	수 납 률	79.65	82.24	80.82	80.35
5 ~ 9인	징수결정액	408,703,720,920	434,117,309,075	443,969,679,665	485,519,759,183
	수 납 액	349,547,195,714	375,015,524,192	384,058,649,972	418,914,761,862
	불납결손액	36,150,288	75,231,020	155,482,590	219,461,950
	수 납 률	85.53	86.39	86.51	86.28
10 ~ 29인	징수결정액	821,161,078,998	825,520,686,241	852,844,128,132	919,996,792,605
	수 납 액	724,224,566,551	733,064,296,855	758,004,608,516	814,936,769,163
	불납결손액	73,069,150	97,809,810	206,579,080	362,586,950
	수 납 률	88.20	88.80	88.88	88.58
30 ~ 49인	징수결정액	348,982,880,899	352,374,626,010	364,365,773,630	396,653,491,103
	수 납 액	314,120,018,701	319,005,114,767	329,403,813,709	358,062,546,149
	불납결손액	15,807,120	18,775,180	70,457,600	110,525,100
	수 납 률	90.01	90.53	90.40	90.27

※ '07년부터는 해당연도에 징수 결정된 금액만 통계에 산정(이월된 징수결정액 제외)

(단위 : 원, %)

'15	'16	'17	'18	'19
6,337,022,276,170	6,609,880,888,230	6,714,693,376,760	7,671,667,701,750	7,761,655,459,820
5,679,457,135,030	5,918,731,435,860	6,048,523,543,090	6,956,478,036,120	7,079,340,426,160
10,048,617,060	4,689,738,990	1,032,902,740	308,142,050	1,317,985,650
89.62	89.54	90.08	90.68	91.21
1,638,203,919,625	1,790,258,056,600	1,930,605,917,730	2,176,063,921,520	2,263,258,917,860
1,458,199,265,377	1,588,793,505,892	1,761,467,835,013	2,008,710,691,300	2,096,156,582,031
6,599,804,100	2,508,968,950	759,787,960	134,212,260	1,013,048,040
89.01	88.75	91.24	92.31	92.62
549,821,614,182	575,339,781,633	589,502,551,674	670,068,301,401	640,963,317,527
455,412,168,828	481,593,269,752	488,947,226,402	565,025,547,774	548,354,592,484
787,724,280	588,846,460	78,291,374	51,346,760	105,621,920
82.83	83.71	82.94	84.32	85.55
514,017,305,450	539,807,968,797	538,580,645,446	593,681,776,425	530,900,072,735
449,667,595,886	474,251,564,463	470,981,927,352	524,301,053,730	472,850,408,499
509,028,080	372,596,760	50,106,906	26,013,790	30,389,320
87.48	87.86	87.45	88.31	89.07
943,439,694,960	916,425,164,960	900,148,924,640	1,000,272,477,609	962,598,868,410
845,560,589,069	823,679,480,916	807,100,244,913	901,202,134,858	872,250,718,276
1,178,390,840	387,798,780	71,163,590	41,723,790	68,182,050
89.63	89.88	89.66	90.10	90.61
406,151,296,840	409,704,358,146	405,347,885,520	448,598,953,570	401,888,976,880
368,870,095,610	371,420,566,647	367,465,579,600	407,928,515,685	367,778,613,720
287,077,780	180,747,970	23,248,280	10,233,940	35,063,890
90.82	90.66	90.65	90.93	91.51

구 분		'11	'12	'13	'14
50 ~ 99인	징수결정액	434,994,170,627	453,009,943,293	457,705,285,410	479,044,682,090
	수 납 액	396,169,698,700	414,579,171,924	416,777,912,648	435,215,234,482
	불납결손액	6,177,350	14,634,030	72,726,960	147,874,770
	수 납 률	91.07	91.52	91.06	90.85
100 ~ 299인	징수결정액	584,710,241,470	616,230,261,240	614,120,987,000	634,285,349,890
	수 납 액	535,506,911,574	564,692,377,430	564,440,918,960	580,981,603,520
	불납결손액	2,826,320	18,191,750	46,755,700	194,537,670
	수 납 률	91.59	91.64	91.91	91.60
300 ~ 499인	징수결정액	164,737,153,810	189,185,920,565	194,475,446,730	198,917,566,410
	수 납 액	151,529,670,520	174,911,802,150	179,133,460,570	182,725,919,120
	불납결손액	-	-	20,743,320	1,699,460
	수 납 률	91.98	92.45	92.11	91.86
500 ~ 999인	징수결정액	207,403,450,280	223,640,666,605	215,229,719,120	232,280,500,800
	수 납 액	189,896,181,253	205,579,544,940	198,145,216,100	213,879,436,320
	불납결손액	-	-	-	25,009,710
	수 납 률	91.56	91.92	92.06	92.08
1000 인 이상	징수결정액	598,104,504,754	687,135,745,850	665,743,810,375	671,354,340,330
	수 납 액	552,898,165,004	637,490,984,350	616,109,608,750	622,612,046,390
	불납결손액	-	-	5,471,040	-
	수 납 률	92.44	92.78	92.54	92.74

※ '07년부터는 해당연도에 징수 결정된 금액만 통계에 산정(이월된 징수결정액 제외)

(단위 : 원, %)

'15	'16	'17	'18	'19
494,142,778,303	507,802,619,187	498,990,305,690	551,061,822,235	506,381,964,620
450,007,137,730	461,374,802,330	453,141,643,720	501,091,788,062	462,004,106,440
385,890,980	324,409,910	24,878,160	29,679,370	33,247,880
91.07	90.86	90.81	90.93	91.24
650,724,128,640	666,812,829,552	654,974,067,930	752,572,985,760	735,035,026,605
597,960,025,160	607,684,011,010	596,629,691,440	685,189,770,171	672,269,082,950
271,473,500	303,772,230	21,789,940	11,818,900	29,807,330
91.89	91.13	91.09	91.05	91.46
208,426,298,540	225,730,361,645	223,441,426,030	267,265,091,030	278,244,176,560
191,611,846,750	207,950,843,380	204,981,126,940	245,520,969,410	256,440,799,550
6,278,090	8,363,910	3,636,530	3,112,140	1,876,700
91.93	92.12	91.74	91.86	92.16
252,822,018,330	261,486,242,630	268,039,714,570	314,526,259,590	343,524,941,945
233,286,216,080	240,373,682,570	246,200,809,630	289,225,690,370	317,766,546,760
22,949,410	5,705,500	-	1,100	748,520
92.27	91.93	91.85	91.96	92.50
679,273,221,300	716,513,505,080	705,061,937,530	897,556,112,610	1,098,859,196,678
628,882,194,540	661,609,708,900	651,607,458,080	828,281,874,760	1,013,468,975,450
-	8,528,520	-	-	-
92.58	92.34	92.42	92.28	92.23





## 제 3 장 요 양



## 3-1. 의료기관등급별 영양환자 현황

(‘19년 말 현재) (단위 : 명)

의료기관등급		구 분	계	6월 미만	6월~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 10년	10년 이상
전		체	44,566	22,728	8,480	4,726	1,680	1,480	1,725	3,747
의 과	소 계		43,826	22,199	8,366	4,668	1,664	1,468	1,716	3,745
	상급종합병원		6,597	1,253	1,280	1,080	438	507	605	1,434
	중 합 병 원		12,101	6,050	2,351	1,300	456	403	465	1,076
	병 원		14,138	8,606	2,635	1,175	331	258	270	863
	요 양 병 원		1,733	203	195	285	179	189	330	352
	의 원 (보건소포함)		9,025	5,987	1,835	790	246	104	43	20
	치 과 병 원		122	40	37	30	8	4	3	0
	치 과 의 원		110	60	33	8	6	3	0	0
한 의 과	소 계		685	482	108	58	15	11	9	2
	병 원		555	398	82	43	11	10	9	2
	의 원		130	84	26	15	4	1	0	0
기 타	기 타		55	47	6	0	1	1	0	0

3-2. 연도별·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19년 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합 계	6월미만	6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10	계	40,259	21,554	6,386	3,056	1,363	1,820	2,861	3,219
	입원	12,430	5,394	1,072	951	659	1,078	1,908	1,368
	통원	27,829	16,160	5,314	2,105	704	742	953	1,851
'11	계	36,736	20,049	5,550	2,718	1,018	1,473	2,605	3,323
	입원	10,690	4,443	900	822	473	895	1,763	1,394
	통원	26,046	15,606	4,650	1,896	545	578	842	1,929
'12	계	34,016	17,966	5,376	2,480	1,046	1,234	2,469	3,445
	입원	9,313	3,351	858	708	455	739	1,680	1,522
	통원	24,703	14,615	4,518	1,772	591	495	789	1,923
'13	계	34,413	17,997	5,634	2,699	1,010	1,135	2,383	3,555
	입원	9,089	3,112	852	805	422	630	1,628	1,640
	통원	25,324	14,885	4,782	1,894	588	505	755	1,915
'14	계	36,455	19,279	6,080	2,940	1,118	1,163	2,200	3,675
	입원	9,271	3,332	873	788	450	570	1,509	1,749
	통원	27,184	15,947	5,207	2,152	668	593	691	1,926
'15	계	37,065	19,691	6,232	3,013	1,116	1,202	2,031	3,780
	입원	9,155	3,283	898	822	429	583	1,313	1,827
	통원	27,910	16,408	5,334	2,191	687	619	718	1,953
'16	계	36,563	19,116	6,265	3,040	1,203	1,228	1,910	3,800
	입원	8,626	2,955	881	752	439	569	1,167	1,863
	통원	27,937	16,162	5,384	2,288	764	659	743	1,937
'17	계	35,604	18,230	6,105	3,202	1,243	1,278	1,780	3,766
	입원	8,095	2,602	807	767	405	559	1,053	1,902
	통원	27,509	15,628	5,298	2,435	838	719	727	1,864
'18	계	41,424	21,938	7,365	3,801	1,480	1,359	1,713	3,768
	입원	8,790	3,040	1,010	889	453	576	943	1,879
	통원	32,634	18,898	6,355	2,912	1,027	783	770	1,889
'19	계	44,566	22,728	8,480	4,726	1,680	1,480	1,725	3,747
	입원	8,797	2,858	1,118	1,022	489	539	909	1,862
	통원	35,769	19,870	7,362	3,704	1,191	941	816	1,885



## 3-3. 연도별 진폐 요양환자 현황

('19년 말 현재)

(단위 : 명)

연도별	병상수	진료구분		
		총계	입원	통원
'03	3,518	3,279	2,892	387
'04	3,779	3,319	2,944	375
'05	3,768	3,498	3,076	422
'06	4,267	3,602	3,093	509
'07	4,277	3,753	3,211	542
'08	4,765	3,740	3,192	548
'09	4,366	3,714	3,168	546
'10	4,151	3,391	2,855	536
'11	3,412	3,284	2,627	657
'12	3,435	3,253	2,515	738
'13	3,315	3,168	2,421	747
'14	2,716	3,079	2,294	785
'15	2,817	2,928	2,118	810
'16	2,992	2,865	1,993	872
'17	2,992	2,694	1,854	840
'18	2,992	2,541	1,731	810
'19	3,226	2,468	1,637	831

3-4. 의료기관등급별 진료비(세부 항목) 지급 현황

(‘19년 말 현재)

구 분		수급자수	지급건수	지급일수	지 급 총 액	
합	합 계	158,273	739,979	11,740,963	742,742,507,560	
	입 원	67,647	164,259	3,700,762	611,387,400,000	
	통 원	147,258	575,720	8,040,201	131,355,107,560	
양 방	상 급 중 병	소 계	43,852	155,319	1,557,301	228,422,170,120
		입 원	12,894	30,935	597,152	181,297,434,280
		통 원	38,624	124,384	960,149	47,124,735,840
	중 병	소 계	59,600	209,131	2,940,867	234,566,618,740
		입 원	23,842	43,479	1,030,167	203,652,290,460
		통 원	54,015	165,652	1,910,700	30,914,328,280
	병 원	소 계	58,872	239,134	4,437,947	219,383,650,830
		입 원	26,627	66,687	1,593,388	191,456,749,300
		통 원	52,792	172,447	2,844,559	27,926,901,530
	의 원	소 계	34,824	123,762	2,591,397	52,104,177,240
		입 원	12,362	19,969	408,839	29,897,472,570
		통 원	33,331	103,793	2,182,558	22,206,704,670
	치 병 의 과 원 원	소 계	703	2,857	22,711	1,153,656,210
		입 원	7	7	44	21,001,390
		통 원	702	2,850	22,667	1,132,654,820
	한 방	소 계	2,415	9,776	190,740	7,122,234,420
		입 원	1,114	3,182	71,172	5,062,452,000
		통 원	1,961	6,594	119,568	2,049,782,420

※ 세부항목(기본, 약가, 행위, 기타)의 합이 진료비 지급총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후 진료비 통계 동일)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기 본	약 가	행 위	기 타
4,692,794	63,261	369,644,670,174	33,705,541,741	245,764,460,171	93,580,688,740
9,037,909	165,206	333,085,762,533	29,366,099,121	183,967,020,856	64,920,360,052
892,007	16,337	36,558,907,641	4,339,442,620	61,797,439,315	28,660,328,688
5,208,934	146,678	116,917,056,347	8,582,035,296	64,646,503,556	38,239,818,922
14,060,604	303,603	106,656,357,170	5,785,704,025	47,873,471,036	20,945,744,481
1,220,089	49,081	10,260,699,177	2,796,331,271	16,773,032,520	17,294,074,441
3,935,682	79,761	113,760,658,057	14,318,228,238	76,042,857,943	30,436,805,499
8,541,745	197,689	106,400,488,298	13,120,933,986	60,482,995,843	23,639,353,212
572,329	16,180	7,360,169,759	1,197,294,252	15,559,862,100	6,797,452,287
3,726,451	49,434	106,167,634,319	9,306,338,577	83,059,769,050	20,847,289,432
7,190,324	120,157	97,733,638,009	9,075,014,130	66,009,109,040	18,635,650,603
528,999	9,818	8,433,996,310	231,324,447	17,050,660,010	2,211,638,829
1,496,215	20,107	29,511,043,616	1,434,532,475	18,693,105,198	2,466,021,810
2,418,498	73,128	19,579,739,889	1,332,908,618	7,658,416,717	1,326,529,508
666,248	10,175	9,931,303,727	101,623,857	11,034,688,481	1,139,492,302
1,641,047	50,797	57,922,024	1,373,244	80,356,982	1,013,998,695
3,000,199	477,304	3,250,540	1,278,582	9,724,489	6,735,508
1,613,468	49,969	54,671,484	94,662	70,632,493	1,007,263,187
2,945,025	37,288	3,230,355,811	63,033,911	3,241,867,442	576,754,382
4,544,391	71,130	2,712,288,627	50,259,780	1,933,303,731	366,346,740
1,045,274	17,143	518,067,184	12,774,131	1,308,563,711	210,407,642

3-5. 연도별·의료기관등급별 진료비 지급 현황

(‘19년 말 현재)

(단위: 명, 원)

구 분	'16		'17		'18		'19			
	수급자수	지 급 액	수급자수	지 급 액	수급자수	지 급 액	수급자수	지 급 액		
합 계	합 계	133,229	591,930,129,820	128,926	579,023,590,990	150,516	713,038,594,900	158,273	742,742,507,560	
	입 원	65,267	503,637,360,490	62,063	490,343,223,330	67,989	597,773,285,510	67,647	611,387,400,000	
	통 원	122,528	88,292,769,330	117,640	88,680,367,660	139,684	115,265,309,390	147,258	131,355,107,560	
양 방	상 급 중 병 원	소 계	29,084	153,390,288,140	29,067	153,368,883,510	35,759	209,950,692,180	43,852	228,422,170,120
		입 원	9,643	132,087,637,710	10,293	130,531,404,310	10,846	174,577,015,940	12,894	181,297,434,280
		통 원	25,664	21,302,650,430	24,527	22,837,479,200	31,450	35,373,676,240	38,624	47,124,735,840
	중 병 원	소 계	46,623	193,001,572,650	47,117	188,048,413,700	55,145	218,494,829,610	59,600	234,566,618,740
		입 원	23,065	172,749,782,960	22,113	167,160,736,240	23,475	192,366,253,850	23,842	203,652,290,460
		통 원	40,264	20,251,789,690	40,676	20,887,677,460	49,082	26,128,575,760	54,015	30,914,328,280
	병 원	소 계	51,225	191,122,381,640	49,508	185,413,239,990	58,157	220,541,858,000	58,872	219,383,650,830
		입 원	27,034	167,622,573,660	25,276	162,092,750,130	28,626	192,811,610,800	26,627	191,456,749,300
		통 원	45,311	23,499,807,980	43,910	23,320,489,860	51,827	27,730,247,200	52,792	27,926,901,530
	의 원	소 계	36,774	51,388,222,470	32,655	48,001,652,030	37,018	57,877,119,260	34,824	52,104,177,240
		입 원	14,008	29,630,877,890	12,440	28,064,000,460	14,006	34,410,823,430	12,362	29,897,472,570
		통 원	35,084	21,757,344,580	30,864	19,937,651,570	35,251	23,466,295,830	33,331	22,206,704,670
치 과 의 원	소 계	526	719,475,260	462	667,814,210	753	1,101,985,510	703	1,153,656,210	
	입 원	7	7,799,110	8	11,678,160	20	28,200,450	7	21,001,390	
	통 원	526	711,676,150	460	656,136,050	751	1,073,785,060	702	1,132,654,820	
한 방	소 계	1,063	2,308,189,660	1,364	3,523,587,550	1,892	5,072,110,340	2,415	7,112,234,420	
	입 원	410	1,538,689,160	668	2,482,654,030	897	3,579,381,040	1,114	5,062,452,000	
	통 원	865	769,500,500	1,063	1,040,933,520	1,568	1,492,729,300	1,961	2,049,782,420	





## 3-6. 이종요양비 지급 현황

(단위: 명, 건, 원)

구 분		'16	'17	'18	'19
합계	수급자수	136,810	147,783	154,316	167,114
	지급건수	723,027	734,597	793,091	768,502
	지 급 액	234,433,529,760	253,038,689,050	288,628,769,710	328,412,859,430
간병료	수급자수	13,997	13,288	13,979	14,061
	지급건수	61,079	58,485	58,447	59,357
	지 급 액	89,209,191,110	87,144,011,240	86,779,496,036	88,880,909,490
약및보조	수급자수	11,771	11,825	14,173	16,467
	지급건수	12,505	12,490	15,006	17,489
	지 급 액	3,953,480,592	3,978,920,099	4,605,890,498	5,163,042,133
이송료	수급자수	45,010	45,762	53,501	60,528
	지급건수	65,894	68,829	84,659	96,715
	지 급 액	10,609,416,978	10,744,334,259	11,476,975,701	13,116,916,696
진료료	수급자수	110,457	121,267	124,870	134,221
	지급건수	594,615	605,905	648,833	612,098
	지 급 액	130,661,441,080	151,171,423,452	185,879,488,145	221,251,991,111





## 제 4 장 보 상

4-1. 사업종류별(중분류) 보험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원)

사업종류	구 분	'18		'19	
		수급자수	지 급 액	수급자수	지 급 액
전 산 업		297,239	5,033,901,404,160	320,184	5,529,359,774,460
금 융 및 보 험 업		1,445	35,896,455,310	1,596	37,225,089,470
금 융 및 보 험 업		1,445	35,896,455,310	1,596	37,225,089,470
광 업		24,552	592,159,532,850	26,973	608,620,660,270
석 탄 광 업		21,472	529,133,781,630	23,668	542,302,761,030
금 속 및 비 금 속 광 업		1,099	23,932,993,000	1,182	23,436,569,170
채 석 업		527	11,301,876,040	551	10,987,594,190
석 회 석 광 업		694	11,873,223,650	841	14,639,017,710
제 염 업		3	72,333,520	2	52,324,870
기 타 광 업		616	12,732,558,830	589	13,590,351,330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		162	3,112,766,180	170	3,612,041,970
제 조 업		88,888	1,554,487,731,790	94,156	1,708,062,984,030
식 료 품 제 조 업		6,655	85,439,408,610	7,309	96,984,304,250
담 배 제 조 업		14	233,043,500	11	212,923,59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갑)		1,155	16,943,572,130	1,887	29,082,978,860
제 재 및 베 니 아 관 제 조 업		291	5,560,650,460	276	5,665,888,830
목 제 품 제 조 업 (19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2,768	37,838,566,970	3,321	49,917,476,290
펄 프 및 지 류 제 조 업		1,725	29,069,747,670	1,198	22,654,942,340
출 판 · 인 쇄 · 제 본 또는 인 쇄 물 가 공 업		970	14,565,730,880	1,100	15,727,864,460
인 쇄 업		239	5,283,716,820	232	5,359,082,990
경 인 쇄 업		8	220,434,640	9	222,570,010
화 학 제 품 제 조 업 (19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7,570	130,557,949,800	8,567	149,067,583,080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제조		492	6,657,787,030	597	8,399,521,750

(단위 : 명, 원)

사업종류	구 분	'18		'19	
		수급자수	지 급 액	수급자수	지 급 액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		39	927,861,120	44	979,450,230
고 무 제 품 제 조 업		1,910	30,847,403,120	1,466	25,824,960,070
도 자 기 제 품 제 조 업		185	4,149,902,050	170	3,842,832,260
유 리 제 조 업 (19 유라도자기시멘트제조업)		670	11,566,969,390	1,204	19,474,075,650
도자기·기타요업제품· 시멘트 제조업		1,735	29,922,262,910	1,422	26,886,990,920
시멘트 제조업		203	4,441,248,330	156	4,033,799,040
시멘트원료채굴 / 제조		48	1,771,086,770	47	1,688,033,050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 금속 제품 제조업		19,489	310,045,316,140	27,718	451,005,183,710
금속 제련업		499	13,811,098,320	592	15,228,196,670
금속재료품제조업		1,557	35,025,944,000	1,394	35,451,473,930
금속제품제조 / 가공		1,354	31,420,598,990	1,346	32,162,252,130
도 금 업		1,302	22,151,529,450	930	18,150,767,360
기계기구제조업		8,295	152,875,679,800	5,582	117,203,449,130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		2,910	43,903,888,910	3,870	60,054,867,190
전자제품제조업		1,287	28,856,270,150	999	24,716,636,340
선박건조및수리업		7,350	163,610,702,940	7,796	191,315,396,640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7,216	129,211,677,900	5,117	98,552,203,940
계량기·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		513	8,722,460,860	332	6,603,090,330
수제품제조업 (1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598	10,171,590,740	1,564	24,366,807,490
기 타 제 조 업		3,623	58,767,185,250	2,650	47,550,211,63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을)		3,399	79,294,249,420	2,817	71,909,935,440
금속제품제조/가공(을)		86	1,449,706,710	89	1,492,922,440
수송용기계제조업(을)		1,953	36,884,816,200	1,920	37,929,552,110

사업종류	구 분	'18		'19	
		수급자수	지 급 액	수급자수	지 급 액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676	7,928,913,220	303	4,429,760,770
제분또는인쇄물가공업		26	717,216,470	24	695,374,220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28	403,559,190	30	367,605,440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53	3,237,984,930	171	2,852,019,450
<b>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b>		<b>504</b>	<b>13,143,791,610</b>	<b>520</b>	<b>14,411,650,810</b>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504	13,143,791,610	520	14,411,650,810
<b>건 설 업</b>		<b>79,305</b>	<b>1,644,938,421,840</b>	<b>81,559</b>	<b>1,770,613,207,140</b>
일 반 건 설 공 사(갑)		78,735	1,623,110,085,770	80,993	1,748,164,418,740
중 건 설 공 사		251	9,423,328,110	245	9,770,562,720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23	796,876,160	22	821,362,710
일 반 건 설 공 사(을)		297	11,608,131,800	299	11,856,862,970
<b>운 송 · 창 고 및 통 신 업</b>		<b>15,161</b>	<b>247,482,273,190</b>	<b>17,065</b>	<b>281,085,727,500</b>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686	11,031,781,700	1,013	14,458,899,410
자 동 차 여 객 운 수 업 ( '19 육상및수상운수업)		6,372	99,887,406,530	7,981	122,431,987,170
소 형 자 동 차 운 수 업		349	7,844,915,990	348	8,003,889,320
화 물 자 동 차 운 수 업		1,055	24,061,091,140	957	23,647,709,270
수 상 운 수 업		3,443	46,679,425,370	2,281	35,992,943,970
항만하역화물취급사업		385	10,423,536,460	387	9,978,331,940
항 공 운 수 업		163	3,008,919,940	89	2,415,481,730
운 수 관 련 서 비 스 업 ( '19 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		1,096	15,878,229,060	2,648	36,403,571,210
창 고 업		626	8,239,807,540	437	6,906,404,970
통 신 업		786	18,621,957,490	839	19,394,823,690
소형화물운수택배퀵서비스업		216	1,805,201,970	103	1,451,684,820

※ 식료품제조업, 화물취급사업, 기타의 어업, 기계화농업의 경우 '12년 및 '13년 보험급여지급액이 없어 표에서 제외하였고,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의 경우 '12년 보험급여는 0원이나 '13년도에는 보험급여 지급금액이 발생하여 추가함



(단위 : 명, 원)

사업종류	구 분	'18		'19	
		수급자수	지 급 액	수급자수	지 급 액
<b>임</b>	<b>업</b>	<b>2,719</b>	<b>38,595,132,610</b>	<b>2,701</b>	<b>40,072,131,020</b>
임	업	2,505	35,178,832,370	2,488	36,611,482,020
기 타 의 임	업	214	3,416,300,240	213	3,460,649,000
<b>어</b>	<b>업</b>	<b>191</b>	<b>3,135,618,790</b>	<b>185</b>	<b>3,112,862,870</b>
어	업	164	2,736,991,330	162	2,734,586,940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27	398,627,460	23	378,275,930
<b>농</b>	<b>업</b>	<b>1,482</b>	<b>19,594,879,930</b>	<b>1,487</b>	<b>20,343,224,050</b>
농	업	1,482	19,594,879,930	1,487	20,343,224,050
<b>기 타 의 사 업</b>		<b>83,321</b>	<b>884,467,566,240</b>	<b>94,324</b>	<b>1,045,812,237,300</b>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9	434,991,920	28	450,717,160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9 건물종합관리와생및유사서비스업)		10,679	115,702,253,840	12,371	151,288,263,150
위생및유사서비스업		4,350	71,101,230,140	3,198	56,668,798,170
중 기 관 리 사 업		433	12,052,216,640	436	12,372,044,610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116	2,933,054,130	110	3,091,019,500
기 타 의 각 종 사 업		32,158	368,666,650,620	33,823	403,149,892,690
해 외 과 견 사 업		134	4,048,923,960	131	3,519,907,300
전문기술서비스업		2,190	32,735,726,100	2,587	36,346,061,17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398	53,214,038,120	9,080	72,345,537,670
교 육 서 비 스 업		1,563	10,323,200,520	1,529	12,828,896,980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3,454	123,668,953,380	15,210	152,446,749,430
부 동 산 업 및 임 대 업		453	4,595,033,890	509	4,819,563,200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1,885	17,668,152,070	2,213	21,983,765,020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		5,734	38,758,223,110	7,384	56,217,398,700
사 업 서 비 스 업		2,824	27,631,243,790	5,754	56,922,827,420
주 한 미 군		86	933,674,010	115	1,360,795,130

※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과 부동산업및임대업은 '11년부터, 소형화물운수·택배·퀵서비스업은 '12년부터,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과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은 '13년부터, 사업서비스업은 '18년부터 추가

4-2. 사업종류별(중분류)·급여종류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사업종류	구 분	총 계		요 양 급 여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전 산 업		320,184	5,529,359,774,460	225,665	1,085,076,361,740
금 용 및 보 험 업		1,596	37,225,089,470	903	5,706,976,080
금 용 및 보 험 업		1,596	37,225,089,470	903	5,706,976,080
광 업		26,973	608,620,660,270	12,005	90,276,548,280
석 탄 광 업		23,668	542,302,761,030	10,347	80,370,415,960
금 속 및 비 금 속 광 업		1,182	23,436,569,170	541	4,245,103,470
채 석 업		551	10,987,594,190	223	1,099,530,270
석 회 석 광 업		841	14,639,017,710	657	2,632,370,260
제 업 업		2	52,324,870	-	-
기 타 광 업		589	13,590,351,330	173	1,221,058,830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		170	3,612,041,970	71	708,069,490
계 조 업		94,156	1,708,062,984,030	62,521	312,458,207,230
식 료 품 제 조 업		7,309	96,984,304,250	5,413	22,871,558,610
담 배 제 조 업		11	212,923,590	2	1,749,90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갑)		1,887	29,082,978,860	1,386	6,712,591,500
제재및베니아판제조업		276	5,665,888,830	49	434,976,310
목 재 품 제 조 업 (19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3,321	49,917,476,290	2,523	11,740,232,150
펄프및지류제조업		1,198	22,654,942,340	628	3,978,179,240
출판인쇄·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1,100	15,727,864,460	881	3,684,261,580
인 쇄 업		232	5,359,082,990	32	268,509,780
경 인 쇄 업		9	222,570,010	3	11,604,550
화 학 제 품 제 조 업 (19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8,567	149,067,583,080	5,679	30,441,814,830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제조		597	8,399,521,750	464	1,680,100,030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		44	979,450,230	21	289,929,060
고 무 제 품 제 조 업		1,466	25,824,960,070	839	4,233,484,610
도 자 기 제 품 제 조 업		170	3,842,832,260	28	389,529,250
유 리 제 조 업 (19 유리도자기·시멘트제조업)		1,204	19,474,075,650	878	3,791,381,220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1,422	26,886,990,920	725	4,558,502,780
시 멘 트 제 조 업		156	4,033,799,040	35	218,610,970



(단위 : 명, 원)

휴 업 급 여		상 병 보 상 연 금		장 해 급 여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b>137,309</b>	<b>1,319,084,657,040</b>	<b>3,943</b>	<b>148,719,616,380</b>	<b>101,942</b>	<b>2,157,725,159,300</b>
<b>332</b>	<b>2,912,651,860</b>	<b>38</b>	<b>2,041,291,860</b>	<b>412</b>	<b>12,553,586,610</b>
332	2,912,651,860	38	2,041,291,860	412	12,553,586,610
<b>1,553</b>	<b>47,091,080,730</b>	<b>1,073</b>	<b>41,194,035,050</b>	<b>13,419</b>	<b>304,029,413,440</b>
1,232	42,283,836,230	993	38,439,919,810	11,959	271,640,553,470
27	689,735,710	56	1,940,027,710	467	10,112,239,810
14	286,723,940	6	195,208,440	329	6,897,591,230
255	3,325,203,050	3	78,035,290	274	6,164,812,720
-	-	-	-	1	21,931,450
21	338,504,150	11	369,758,490	322	7,618,269,910
4	167,077,650	5	171,085,310	83	1,574,014,850
<b>38,810</b>	<b>408,420,998,430</b>	<b>917</b>	<b>33,818,764,430</b>	<b>36,895</b>	<b>735,126,127,680</b>
3,662	26,924,253,970	51	1,465,939,680	2,292	35,127,961,300
-	-	-	-	8	180,090,110
1,071	8,475,600,800	10	330,387,230	592	9,900,974,490
5	50,736,810	7	287,447,600	205	4,085,176,200
1,824	14,903,103,310	15	572,849,490	1,161	18,496,910,430
268	3,038,911,450	10	278,041,820	604	12,138,749,920
553	4,024,267,050	9	401,109,740	260	5,080,752,750
4	37,762,840	4	171,991,830	180	4,039,345,500
1	12,956,310	-	-	7	187,989,900
3,786	33,986,314,490	65	2,626,715,580	3,265	60,889,459,640
285	2,187,915,750	3	129,788,590	155	2,824,443,410
1	17,270,340	3	119,175,740	27	401,292,720
513	4,958,173,590	12	362,403,800	687	12,774,428,050
3	98,240,190	11	521,020,030	110	1,941,316,280
603	4,807,403,610	12	415,019,960	358	6,849,682,150
237	2,903,184,740	18	570,736,670	640	12,887,176,260
9	122,417,670	-	-	95	2,464,141,020

사업종류	구 분	총 계		요 양 급 여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시멘트원료채굴 / 제조		47	1,688,033,050	9	135,498,720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27,718	451,005,183,710	22,050	106,976,815,030
금속제련업		592	15,228,196,670	334	2,706,358,420
금속재료품제조업		1,394	35,451,473,930	350	3,009,039,650
금속제품제조 / 가공		1,346	32,162,252,130	253	1,842,162,210
도금업		930	18,150,767,360	598	4,560,552,940
기계기구제조업		5,582	117,203,449,130	2,024	12,005,155,260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		3,870	60,054,867,190	3,067	14,132,396,020
전자제품제조업		999	24,716,636,340	319	2,653,980,880
선박건조및수리업		7,796	191,315,396,640	5,265	25,961,852,430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5,117	98,552,203,940	3,627	16,740,459,780
계량기·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		332	6,603,090,330	137	904,192,480
수제품제조업 (19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1,564	24,366,807,490	1,267	6,324,340,140
기타제조업		2,650	47,550,211,630	1,337	7,159,534,06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을)		2,817	71,909,935,440	1,665	8,779,232,240
금속제품제조 / 가공(을)		89	1,492,922,440	25	11,651,560
수송용기계제조업(을)		1,920	37,929,552,110	302	1,421,052,690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303	4,429,760,770	200	792,058,380
제분또는인쇄물가공업		24	695,374,220	2	121,013,360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30	367,605,440	11	53,597,700
코크연탄및석유장제품제조업		171	2,852,019,450	142	860,246,910
<b>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b>		<b>520</b>	<b>14,411,650,810</b>	<b>270</b>	<b>1,917,511,250</b>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520	14,411,650,810	270	1,917,511,250
<b>건 설 업</b>		<b>81,559</b>	<b>1,770,613,207,140</b>	<b>57,734</b>	<b>325,693,453,450</b>
일반건설공사(갑)		80,993	1,748,164,418,740	57,620	324,069,512,900
중 건설공사		245	9,770,562,720	51	855,445,790
철도또는케도신설공사		22	821,362,710	4	46,071,630
일반건설공사(을)		299	11,856,862,970	59	722,423,130
<b>운송·창고및통신업</b>		<b>17,065</b>	<b>281,085,727,500</b>	<b>11,476</b>	<b>61,361,759,120</b>
철도·케도및삭도운수업		1,013	14,458,899,410	710	2,230,207,060
자동차여객운수업 (19육상및수상운수업)		7,981	122,431,987,170	5,748	33,751,430,980
소형자동차운수업		348	8,003,889,320	72	1,007,427,430

(단위 : 명, 원)

휴 업 급 여		상 병 보 상 연 금		장 해 급 여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1	29,180,030	2	120,804,000	39	1,289,250,870
15,532	146,249,208,070	107	3,463,260,230	8,943	154,546,647,220
200	2,831,736,700	5	159,047,310	214	5,852,076,140
77	1,455,715,400	35	1,193,669,770	863	21,641,391,570
18	303,494,300	31	1,444,765,930	1,091	25,646,123,850
271	3,588,463,660	14	425,892,070	362	7,203,558,240
413	5,001,203,280	134	4,988,596,060	3,037	71,599,896,220
2,056	17,625,501,320	20	642,054,420	1,025	18,111,964,150
72	1,462,370,560	28	1,228,015,330	495	11,643,843,220
3,079	57,414,690,930	59	2,662,997,610	3,344	88,521,319,920
1,612	22,407,142,160	43	1,582,718,300	2,018	44,911,764,850
26	371,297,510	7	240,394,300	164	3,559,606,270
1,036	7,851,420,680	29	905,527,210	429	7,244,197,360
486	5,042,638,280	36	1,118,105,710	1,335	26,110,830,430
989	28,016,497,470	106	4,237,452,000	1,145	22,778,260,130
1	1,322,640	-	-	70	1,479,948,240
40	729,674,830	23	899,100,490	1,557	29,754,891,480
45	779,447,480	5	155,785,700	71	1,414,050,260
-	-	2	87,155,720	17	397,244,620
-	-	-	-	16	249,514,550
57	711,480,210	1	10,794,510	47	899,857,960
<b>97</b>	<b>714,183,970</b>	<b>11</b>	<b>619,432,140</b>	<b>155</b>	<b>5,289,663,710</b>
97	714,183,970	11	619,432,140	155	5,289,663,710
<b>39,436</b>	<b>460,723,452,670</b>	<b>1,003</b>	<b>41,061,898,870</b>	<b>28,517</b>	<b>718,938,322,840</b>
39,427	460,485,485,510	974	39,404,374,600	28,044	701,736,254,150
6	165,922,870	15	801,116,100	202	7,067,847,430
-	-	1	47,030,900	19	642,071,590
3	72,044,290	13	809,377,270	252	9,492,149,670
<b>7,652</b>	<b>63,816,759,550</b>	<b>214</b>	<b>7,305,116,090</b>	<b>4,603</b>	<b>93,277,091,880</b>
442	3,541,285,730	5	188,617,210	147	3,864,130,150
4,289	35,165,342,170	83	2,438,577,470	1,801	30,495,777,940
9	157,509,700	16	473,206,650	246	4,847,552,860

사업종류	구 분	총 계		요 양 급 여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화 물 자 동 차 운 수 업		957	23,647,709,270	269	2,322,795,650
수 상 운 수 업		2,281	35,992,943,970	1,543	7,412,007,550
항 만 하 역 화 물 취 급 사 업		387	9,978,331,940	86	967,107,550
항 공 운 수 업		89	2,415,481,730	36	266,818,960
운 수 관 련 서 비 스 업 (19 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		2,648	36,403,571,210	2,180	8,842,386,020
창 고 업		437	6,906,404,970	271	1,403,863,250
통 신 업		839	19,394,823,690	497	2,697,572,310
소형화물운수·택배·퀵서비스업		103	1,451,684,820	74	460,142,360
<b>임 업</b>		<b>2,701</b>	<b>40,072,131,020</b>	<b>2,060</b>	<b>8,375,612,920</b>
임 업		2,488	36,611,482,020	2,048	8,284,162,430
기 타 의 임 업		213	3,460,649,000	12	91,450,490
<b>어 업</b>		<b>185</b>	<b>3,112,862,870</b>	<b>114</b>	<b>692,002,840</b>
어 업		162	2,734,586,940	101	564,010,140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23	378,275,930	13	127,992,700
<b>농 업</b>		<b>1,487</b>	<b>20,343,224,050</b>	<b>1,191</b>	<b>6,042,438,150</b>
농 업		1,487	20,343,224,050	1,191	6,042,438,150
<b>기 타 의 사 업</b>		<b>94,324</b>	<b>1,045,812,237,300</b>	<b>77,659</b>	<b>272,551,852,420</b>
농 수 산 물 위 탁 관 매 업		28	450,717,160	2	135,980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9 건물종합관리위생및유사서비스업)		12,371	151,288,263,150	9,699	44,372,129,910
위 생 및 유 사 서 비 스 업		3,198	56,668,798,170	1,651	10,390,526,030
중 기 관 리 사 업		436	12,372,044,610	81	1,009,444,180
골프장및경마장 운영업		110	3,091,019,500	17	262,359,560
기 타 의 각 종 사 업		33,823	403,149,892,690	25,700	84,933,487,880
해 외 과 건 사 업		131	3,519,907,300	72	384,152,300
전 문 기 술 서 비 스 업		2,587	36,346,061,170	2,124	9,713,672,910
보 건 및 사 회 복 지 사 업		9,080	72,345,537,670	8,435	22,448,831,580
교 육 서 비 스 업		1,529	12,828,896,980	1,361	4,960,936,880
도 소 매 및 소 비 자 용 품 수 리 업		15,210	152,446,749,430	13,691	47,591,457,430
부 동 산 업 및 임 대 업		509	4,819,563,200	457	1,384,926,760
오 락 문 화 및 운 동 관 련 사 업		2,213	21,983,765,020	2,016	7,026,485,820
국 가 및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사 업 서 비 스 업		7,384	56,217,398,700	7,031	18,995,982,230
주 한 미 군		115	1,360,795,130	92	329,945,260



(단위 : 명, 원)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38	397,752,510	35	1,284,637,270	574	14,821,557,550
637	6,845,076,670	21	696,378,210	730	13,583,887,660
5	118,054,490	13	546,387,850	234	6,461,443,530
9	118,090,400	4	146,003,120	29	965,264,920
1,845	13,995,070,580	12	401,386,380	406	6,674,715,740
98	945,254,670	7	270,916,760	140	2,707,362,030
260	2,331,864,580	14	738,323,480	280	8,613,779,660
24	201,458,050	4	120,681,690	18	241,619,840
<b>1,367</b>	<b>14,192,520,440</b>	<b>18</b>	<b>645,284,230</b>	<b>623</b>	<b>11,116,959,200</b>
1,364	14,168,593,360	16	585,195,490	486	8,720,700,320
3	23,927,080	2	60,088,740	137	2,396,258,880
<b>77</b>	<b>725,525,710</b>	<b>4</b>	<b>112,079,170</b>	<b>61</b>	<b>998,428,560</b>
75	722,281,450	1	25,122,630	53	886,515,930
2	3,244,260	3	86,956,540	8	111,912,630
<b>792</b>	<b>5,977,071,560</b>	<b>13</b>	<b>434,116,860</b>	<b>317</b>	<b>4,810,481,740</b>
792	5,977,071,560	13	434,116,860	317	4,810,481,740
<b>47,315</b>	<b>314,510,412,120</b>	<b>653</b>	<b>21,487,597,680</b>	<b>16,958</b>	<b>271,585,083,640</b>
-	-	-	-	18	273,489,710
6,125	47,060,015,160	75	1,724,959,170	2,634	35,888,250,590
632	6,378,192,170	58	1,913,216,220	1,219	23,810,245,550
6	65,346,580	13	504,662,000	301	8,439,254,230
3	15,908,540	4	194,026,130	70	1,812,535,000
15,876	96,064,545,480	360	12,557,201,220	7,069	131,976,240,340
35	657,290,890	1	60,123,990	30	956,751,220
962	7,360,396,620	30	1,296,806,290	330	6,637,709,910
5,083	31,775,634,800	18	474,168,930	1,074	12,111,283,770
553	3,554,496,090	11	316,833,010	197	2,585,331,690
8,810	59,547,943,200	71	2,146,824,710	2,154	26,807,830,970
258	1,835,699,220	-	-	68	851,697,320
1,167	8,836,489,140	12	298,776,010	260	3,300,073,170
3,944	25,746,900,320	-	-	785	8,196,982,100
3,893	25,277,978,290	-	-	734	7,587,478,380
39	333,575,620	-	-	17	349,929,690

구분 사업종류	유족 급여		장해 특별 급여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b>전 산 업</b>	<b>30,328</b>	<b>710,174,239,720</b>	-	-
<b>금 용 및 보 험 업</b>	<b>396</b>	<b>13,062,309,120</b>	-	-
금 용 및 보 험 업	396	13,062,309,120	-	-
<b>광 업</b>	<b>5,823</b>	<b>118,806,307,440</b>	-	-
석 탄 광 업	5,074	103,631,209,530	-	-
금 속 및 비 금 속 광 업	350	6,151,484,780	-	-
채 석 업	113	2,367,123,490	-	-
석 회 석 광 업	67	2,130,760,360	-	-
제 염 업	1	20,346,720	-	-
기 타 광 업	173	3,627,839,630	-	-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	45	877,542,930	-	-
<b>계 조 업</b>	<b>7,541</b>	<b>186,449,447,560</b>	-	-
식 료 품 제 조 업	427	8,818,430,940	-	-
담 배 제 조 업	2	31,083,580	-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갑)	139	2,809,604,230	-	-
제재및베니아판제조업	43	697,522,220	-	-
목 재 품 제 조 업 (19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156	3,186,810,770	-	-
펄프 및 지류 제 조 업	134	2,770,927,980	-	-
출판인쇄·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85	2,188,010,110	-	-
인 쇄 업	39	726,686,790	-	-
경 인 쇄 업	-	-	-	-
화 학 제 품 제 조 업 (19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719	18,247,746,090	-	-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제조	40	1,387,855,860	-	-
코크스 및 석탄 가스 제조	8	126,391,090	-	-
고 무 제 품 제 조 업	134	3,106,837,510	-	-
도 자 기 제 품 제 조 업	48	835,179,410	-	-
유 리 제 조 업 (19 유리도자기시멘트제조업)	94	3,041,861,840	-	-
도자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276	5,336,978,860	-	-
시 멘 트 제 조 업	42	1,130,919,610	-	-



(단위 : 명, 원)

유족 특별급여		장 의 비		간 병 급 여		직업재활급여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	-	2,470	31,838,396,980	5,273	53,633,134,910	3,688	23,108,208,390
-	-	16	234,740,100	65	681,107,550	6	32,426,290
-	-	16	234,740,100	65	681,107,550	6	32,426,290
-	-	468	6,057,330,390	103	1,027,379,680	16	138,565,260
-	-	396	5,236,992,220	65	663,592,100	9	36,241,710
-	-	28	243,763,940	6	54,213,750	-	-
-	-	9	118,907,820	3	22,509,000	-	-
-	-	17	219,011,490	3	35,065,550	5	53,758,990
-	-	-	-	1	10,046,700	-	-
-	-	13	169,474,260	21	196,881,500	2	48,564,560
-	-	5	69,180,660	4	45,071,080	-	-
-	-	585	7,573,054,450	1,464	14,840,147,930	1,852	9,376,236,320
-	-	27	318,228,360	83	861,551,100	123	596,380,290
-	-	-	-	-	-	-	-
-	-	15	178,823,970	47	489,056,330	22	185,940,310
-	-	-	-	10	110,029,690	-	-
-	-	17	208,169,900	38	373,234,760	92	436,165,480
-	-	2	25,560,860	22	200,702,780	43	223,868,290
-	-	3	39,070,440	15	148,598,290	26	161,794,500
-	-	-	-	11	114,786,250	-	-
-	-	-	-	1	10,019,250	-	-
-	-	58	703,655,840	143	1,447,276,930	141	724,599,680
-	-	3	38,810,830	11	105,479,950	6	45,127,330
-	-	2	25,391,280	-	-	-	-
-	-	4	57,094,850	26	256,565,960	16	75,971,700
-	-	-	-	6	57,547,100	-	-
-	-	28	372,182,920	12	123,853,990	17	72,689,960
-	-	13	165,256,910	38	365,927,680	21	99,227,020
-	-	1	15,554,290	7	76,755,480	2	5,400,000

사업종류	유족급여		장해특별급여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시멘트원료채굴 / 제조	3	73,277,330	-	-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1,222	32,707,306,140	-	-
금속제련업	115	3,463,403,450	-	-
금속재료품제조업	312	7,443,557,580	-	-
금속제품제조 / 가공	109	2,301,829,000	-	-
도금업	110	2,018,470,000	-	-
기계기구제조업	901	20,397,556,930	-	-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	212	8,294,216,450	-	-
전자제품제조업	259	7,123,834,930	-	-
선박건조및수리업	464	14,350,895,980	-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376	10,884,091,730	-	-
계량기·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	57	1,341,801,990	-	-
수제품제조업 (19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69	1,667,155,630	-	-
기타제조업	354	6,741,318,540	-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을)	319	6,970,115,570	-	-
금속제품제조 / 가공(을)	-	-	-	-
수송용기계제조업(을)	202	4,653,551,600	-	-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56	1,109,323,730	-	-
제분또는인쇄물가공업	5	73,698,370	-	-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5	64,493,190	-	-
코크연탄및석유장제품제조업	12	326,702,530	-	-
<b>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b>	<b>144</b>	<b>5,428,107,530</b>	-	-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44	5,428,107,530	-	-
<b>건설업</b>	<b>7,229</b>	<b>190,015,326,470</b>	-	-
일반건설공사(갑)	7,191	188,961,269,570	-	-
중건설공사	18	587,797,750	-	-
철도또는케도신설공사	2	57,077,540	-	-
일반건설공사(을)	18	409,181,610	-	-
<b>운송·창고및통신업</b>	<b>2,370</b>	<b>46,900,785,000</b>	-	-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115	4,358,110,510	-	-
자동차여객운수업 (19육상및수상운수업)	1,034	17,004,964,910	-	-
소형자동차운수업	77	836,095,590	-	-





(단위 : 명, 원)

유족 특별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	-	-	-	4	40,022,100	-	-
-	-	238	3,098,732,120	134	1,302,945,980	507	2,660,268,920
-	-	5	72,496,440	12	124,387,850	6	18,690,360
-	-	12	160,301,820	53	499,988,770	9	47,809,370
-	-	2	27,307,410	58	596,569,430	-	-
-	-	2	22,404,890	12	127,680,030	30	203,745,530
-	-	8	96,209,310	221	2,252,919,290	192	861,912,780
-	-	48	654,761,560	39	395,594,760	46	198,378,510
-	-	3	36,044,060	50	520,374,030	6	48,173,330
-	-	34	470,116,680	101	1,072,551,220	199	860,971,870
-	-	20	267,574,410	80	850,990,230	196	907,462,480
-	-	1	14,531,690	13	114,667,120	11	56,598,970
-	-	13	163,846,310	19	178,196,810	11	32,123,350
-	-	10	122,621,660	81	805,264,540	74	449,898,410
-	-	12	161,602,780	67	678,729,390	39	288,045,860
-	-	-	-	-	-	-	-
-	-	2	30,624,280	42	440,656,740	-	-
-	-	2	26,078,580	8	80,961,950	12	72,054,690
-	-	-	-	1	16,262,150	-	-
-	-	-	-	-	-	-	-
-	-	-	-	-	-	5	42,937,330
-	-	<b>8</b>	<b>107,138,900</b>	<b>31</b>	<b>332,013,310</b>	<b>1</b>	<b>3,600,000</b>
-	-	8	107,138,900	31	332,013,310	1	3,600,000
-	-	<b>615</b>	<b>8,520,262,460</b>	<b>1,810</b>	<b>18,465,333,060</b>	<b>849</b>	<b>7,195,157,320</b>
-	-	613	8,489,153,880	1,751	17,823,210,810	849	7,195,157,320
-	-	1	15,554,290	26	276,878,490	-	-
-	-	-	-	3	29,111,050	-	-
-	-	1	15,554,290	30	336,132,710	-	-
-	-	<b>171</b>	<b>2,076,489,070</b>	<b>531</b>	<b>5,461,267,490</b>	<b>128</b>	<b>886,459,300</b>
-	-	7	100,976,050	8	100,267,600	19	75,305,100
-	-	106	1,243,208,020	192	1,907,491,580	52	425,194,100
-	-	4	44,056,860	64	638,040,230	-	-

사업종류	구분	유족 급여		장해 특별 급여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화물자동차운수업		241	3,704,837,670	-	-
수상운수업		344	6,679,327,890	-	-
항만하역화물취급사업		93	1,598,071,540	-	-
항공운수업		27	878,056,840	-	-
운수관련서비스업 (19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		206	5,603,458,830	-	-
창고업		76	1,402,663,730	-	-
통신업		137	4,430,846,200	-	-
소형화물운수택배서비스업		22	404,351,290	-	-
<b>업</b>		<b>296</b>	<b>5,142,689,570</b>	-	-
임업		227	4,363,184,460	-	-
기타의 임업		69	779,505,110	-	-
<b>어업</b>		<b>36</b>	<b>516,176,400</b>	-	-
어업		31	478,025,850	-	-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5	38,150,550	-	-
<b>농업</b>		<b>125</b>	<b>2,621,793,050</b>	-	-
농업		125	2,621,793,050	-	-
<b>기타의 사업</b>		<b>6,377</b>	<b>141,231,297,580</b>	-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9	156,256,920	-	-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건물종합관리및위생서비스업)		1,296	17,748,829,900	-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740	12,690,783,720	-	-
중기관리사업		111	1,907,111,690	-	-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34	686,421,530	-	-
기타의 각종 사업		2,880	66,945,424,790	-	-
해외파견사업		42	1,387,132,780	-	-
전문기술서비스업		298	10,419,502,140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54	4,308,222,330	-	-
교육서비스업		61	1,109,145,940	-	-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485	13,665,400,450	-	-
부동산업및임대업		23	625,792,030	-	-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67	2,240,583,350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		83	2,687,300,120	-	-
사업서비스업		89	4,327,381,270	-	-
주한미군		11	326,008,620	-	-



(단위 : 명, 원)

유족 특별 급여		장 의 비		간 병 급여		직업재활급여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	-	2	22,195,520	101	1,092,713,740	1	1,219,360
-	-	6	73,492,430	45	469,761,880	30	233,011,680
-	-	-	-	26	287,266,980	-	-
-	-	1	15,554,290	3	25,693,200	-	-
-	-	36	450,778,410	34	333,659,680	13	102,115,570
-	-	-	-	14	143,865,850	7	32,478,680
-	-	8	116,415,150	43	452,487,500	5	13,534,810
-	-	1	9,812,340	1	10,019,250	1	3,600,000
-	-	<b>20</b>	<b>263,252,650</b>	<b>28</b>	<b>272,322,670</b>	<b>11</b>	<b>63,489,340</b>
-	-	20	263,252,650	17	162,903,970	11	63,489,340
-	-	-	-	11	109,418,700	-	-
-	-	<b>2</b>	<b>24,237,760</b>	<b>4</b>	<b>44,412,430</b>	-	-
-	-	2	24,237,760	3	34,393,180	-	-
-	-	-	-	1	10,019,250	-	-
-	-	<b>10</b>	<b>123,518,740</b>	<b>16</b>	<b>176,582,550</b>	<b>21</b>	<b>157,221,400</b>
-	-	10	123,518,740	16	176,582,550	21	157,221,400
-	-	<b>575</b>	<b>6,858,372,460</b>	<b>1,222</b>	<b>12,332,568,240</b>	<b>804</b>	<b>5,255,053,160</b>
-	-	-	-	2	20,834,550	-	-
-	-	141	1,559,784,890	205	1,976,962,530	125	957,331,000
-	-	20	234,137,020	96	946,837,410	46	304,860,050
-	-	1	15,554,290	39	430,671,640	-	-
-	-	1	11,097,760	11	108,670,980	-	-
-	-	151	1,833,161,330	727	7,470,280,610	218	1,369,551,040
-	-	1	15,554,290	6	56,430,230	1	2,471,600
-	-	36	493,010,710	35	346,806,120	17	78,156,470
-	-	18	239,169,760	37	355,850,000	77	632,376,500
-	-	6	67,123,570	13	127,681,850	13	107,347,950
-	-	89	1,069,049,560	44	412,928,560	220	1,205,314,550
-	-	5	60,397,310	-	-	13	61,050,560
-	-	13	169,288,360	4	36,575,850	12	75,493,320
-	-	32	382,141,420	-	-	27	208,092,510
-	-	60	697,585,500	2	32,018,660	36	253,007,610
-	-	1	11,316,690	1	10,019,250	-	-

4-3.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단위 : 원)

사업종류	구분	수급자 1인 평균 보험급여	수급자 1인 평균 요양급여
<b>전 산 업</b>		<b>17,269,319</b>	<b>4,808,350</b>
<b>금 용 및 보 험 업</b>		<b>23,323,991</b>	<b>6,320,018</b>
금 용 및 보 험 업		23,323,991	6,320,018
<b>광 업</b>		<b>22,564,070</b>	<b>7,519,912</b>
석 탄 광 업		22,912,910	7,767,509
금 속 및 비 금 속 광 업		19,827,893	7,846,772
채 석 업		19,941,187	4,930,629
석 회 석 광 업		17,406,680	4,006,652
제 염 업		26,162,435	-
기 타 광 업		23,073,602	7,058,144
연 탄 및 응 집 고 체 연 료 생 산		21,247,306	9,972,810
<b>제 조 업</b>		<b>18,140,777</b>	<b>4,997,652</b>
식 료 품 제 조 업		13,269,162	4,225,302
담 배 제 조 업		19,356,690	874,950
섬유 또는 섬유 제품 제조 (갑)		15,412,283	4,843,140
제 재 및 베 니 아 판 제 조 업		20,528,583	8,877,068
목 재 품 제 조 업 ( ' 19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		15,030,857	4,653,283
펄 프 및 지 류 제 조 업		18,910,636	6,334,680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4,298,059	4,181,909
인 쇄 업		23,099,496	8,390,931
경 인 쇄 업		24,730,001	3,868,183
화 학 제 품 제 조 업 ( ' 19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		17,400,208	5,360,418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제조		14,069,551	3,620,905
코크스 및 석 탄 가 스 제 조		22,260,233	13,806,146
고 무 제 품 제 조 업		17,615,935	5,045,870
도 자 기 제 품 제 조 업		22,604,896	13,911,759
유 리 도 자 기 제 조 업 ( ' 19 유리·도자기·시멘트제조업 )		16,174,481	4,318,202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18,907,870	6,287,590
시 멘 트 제 조 업		25,857,686	6,246,028

(단위 : 원)

수 급 자 1인 평 균 휴 업 급 여	수 급 자 1인 평 균 상 병 보 상 연 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해 보 상 일 시 금
9,606,688	37,717,377	16,705,568
8,773,048	53,718,207	20,246,516
8,773,048	53,718,207	20,246,516
30,322,653	38,391,459	28,337,096
34,321,296	38,710,896	28,810,147
25,545,767	34,643,352	26,393,671
20,480,281	32,534,740	23,256,160
13,040,012	26,011,763	22,414,604
-	-	-
16,119,245	33,614,408	31,571,403
41,769,413	34,217,062	15,319,497
10,523,602	36,879,787	16,158,976
7,352,336	28,743,915	11,620,305
-	-	-
7,913,726	33,038,723	11,319,709
10,147,362	41,063,943	10,037,817
8,170,561	38,189,966	14,592,962
11,339,222	27,804,182	14,883,668
7,277,156	44,567,749	14,126,188
9,440,710	42,997,958	56,992,880
12,956,310	-	-
8,976,840	40,411,009	15,477,255
7,676,897	43,262,863	12,064,474
17,270,340	39,725,247	6,460,543
9,665,056	30,200,317	13,887,701
32,746,730	47,365,457	16,090,373
7,972,477	34,584,997	16,079,483
12,249,725	31,707,593	17,233,566
13,601,963	-	22,435,746

사업종류	구분	수급자 1인 평균	
		보험급여	요양급여
시멘트원료채굴 / 제조		35,915,597	15,055,413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		16,271,202	4,851,556
금속제품제조업		25,723,305	8,102,870
금속재료제품제조업		25,431,473	8,597,256
금속제품제조 / 가공		23,894,690	7,281,274
도금업		19,516,954	7,626,343
기계기구제조업		20,996,677	5,931,401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		15,518,054	4,607,889
전자제품제조업		24,741,378	8,319,689
선박건조및수리업		24,540,200	4,931,026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19,259,762	4,615,511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19,888,826	6,599,945
계량기·광학기계·		15,579,800	4,991,587
수정밀기구제조업		17,943,476	5,354,925
(‘1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25,527,134	5,272,812
기타제조업		16,774,409	466,062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을)		19,754,975	4,705,472
금속제품제조 /가공(을)		14,619,673	3,960,292
수송용기계제조업(을)		28,973,926	60,506,680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12,253,515	4,872,518
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16,678,476	6,058,077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b>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b>		<b>27,714,713</b>	<b>7,101,894</b>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27,714,713	7,101,894
<b>건설업</b>		<b>21,709,599</b>	<b>5,641,276</b>
일반건설공사(갑)		21,584,142	5,624,254
중건설공사		39,879,848	16,773,447
철도또는케도신설공사		37,334,669	11,517,908
일반건설공사(을)		39,655,060	12,244,460
<b>운송·창고및통신업</b>		<b>16,471,475</b>	<b>5,346,964</b>
철도케도및삭도운수업		14,273,346	3,141,137
자동차여객운수업		15,340,432	5,871,856
(‘19 육상및수상운수업)		22,999,682	13,992,048
소형자동차운수업			

(단위 : 원)

수 급 자 1인 평 균 휴 업 급 여	수 급 자 1인 평 균 상 병 보 상 연 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해 보 상 일 시 금
29,180,030	60,402,000	22,158,780
9,415,993	32,366,918	15,901,864
14,158,684	31,809,462	25,651,371
18,905,395	34,104,851	33,136,504
16,860,794	46,605,353	29,284,170
13,241,563	30,420,862	15,542,314
12,109,451	37,228,329	26,371,444
8,572,715	32,102,721	13,826,583
20,310,702	43,857,690	18,477,848
18,647,188	45,135,553	22,053,835
13,900,212	36,807,402	17,313,905
14,280,673	34,342,043	19,844,154
7,578,591	31,225,076	13,880,232
10,375,799	31,058,492	16,296,453
28,328,107	39,975,962	17,067,835
1,322,640	-	-
18,241,871	39,091,326	26,259,546
17,321,055	31,157,140	16,479,984
-	43,577,860	-
-	-	27,394,260
12,482,109	10,794,510	18,636,700
<b>7,362,721</b>	<b>56,312,013</b>	<b>15,638,552</b>
7,362,721	56,312,013	15,638,552
<b>11,682,814</b>	<b>40,939,082</b>	<b>19,615,999</b>
11,679,445	40,456,237	19,605,278
27,653,812	53,407,740	30,675,227
-	47,030,900	-
24,014,763	62,259,790	114,166,730
<b>8,339,880</b>	<b>34,136,056</b>	<b>12,985,347</b>
8,011,959	37,723,442	18,288,703
8,198,961	29,380,451	11,748,141
17,501,078	29,575,416	-

사업종류	구분	수급자 1인 평균	수급자 1인 평균
		보험급여	요양급여
화물자동차운수업		24,710,250	8,634,928
수상운수업		15,779,458	4,803,634
항만하역화물취급사업		25,783,803	11,245,437
항공운수업		27,140,244	7,411,638
운수관련서비스업 (19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		13,747,572	4,056,140
창고업		15,804,130	5,180,307
통신업		23,116,596	5,427,711
소형화물운수·택배·퀵서비스업		14,094,027	6,218,140
<b>업</b>	<b>업</b>	<b>14,836,035</b>	<b>4,065,832</b>
임업	업	14,715,226	4,045,001
기타의 임업	업	16,247,178	7,620,874
<b>어</b>	<b>업</b>	<b>16,826,286</b>	<b>6,070,200</b>
어업	업	16,880,166	5,584,259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업	16,446,780	9,845,592
<b>농</b>	<b>업</b>	<b>13,680,716</b>	<b>5,073,416</b>
농업	업	13,680,716	5,073,416
<b>기타의 사업</b>		<b>11,087,446</b>	<b>3,509,598</b>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6,097,041	67,990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9건물종합관리,위생및유사서비스업)		12,229,267	4,574,918
위생및유사서비스업		17,720,074	6,293,474
중기관리사업		28,376,249	12,462,274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28,100,177	15,432,915
기타의 각종사업		11,919,401	3,304,805
해외파견사업		26,869,521	5,335,449
전문기술서비스업		14,049,502	4,573,292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967,570	2,661,391
교육서비스업		8,390,384	3,645,068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0,022,797	3,476,113
부동산업및임대업		9,468,690	3,030,474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9,933,920	3,485,360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		7,613,407	2,701,747
사업서비스업		9,892,740	3,507,461
주한미군		11,833,001	3,586,362



(단위 : 원)

수 급 자 1인 평 균 휴 업 급 여	수 급 자 1인 평 균 상 병 보 상 연 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해 보 상 일 시 금
10,467,171	36,703,922	27,236,061
10,745,803	33,160,867	13,784,288
23,610,898	42,029,835	4,253,080
13,121,156	36,500,780	19,881,417
7,585,404	33,448,865	12,513,772
9,645,456	38,702,394	16,166,591
8,968,710	52,737,391	15,397,094
8,394,085	30,170,423	3,299,767
<b>10,382,239</b>	<b>35,849,124</b>	<b>16,913,754</b>
10,387,532	36,574,718	16,913,754
7,975,693	30,044,370	-
<b>9,422,412</b>	<b>28,019,793</b>	<b>11,149,042</b>
9,630,419	25,122,630	11,149,042
1,622,130	28,985,513	-
<b>7,546,808</b>	<b>33,393,605</b>	<b>13,104,045</b>
7,546,808	33,393,605	13,104,045
<b>6,647,161</b>	<b>32,905,969</b>	<b>10,957,890</b>
-	-	-
7,683,268	22,999,456	11,051,814
10,092,076	32,986,487	15,300,053
10,891,097	38,820,154	29,257,020
5,302,847	48,506,533	21,225,790
6,050,929	34,881,115	10,669,415
18,779,740	60,123,990	25,733,522
7,651,140	43,226,876	13,932,225
6,251,354	26,342,718	9,231,610
6,427,660	28,803,001	10,684,765
6,759,131	30,236,968	11,290,701
7,115,113	-	11,386,664
7,571,970	24,898,001	12,438,562
6,528,119	-	10,375,430
6,493,187	-	10,272,612
8,553,221	-	17,039,961

사업종류	구분	수급자 1인 평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b>전 산 업</b>		<b>23,816,722</b>	<b>107,981,988</b>
<b>금 용 및 보 험 업</b>		<b>33,638,770</b>	<b>78,870,315</b>
금 용 및 보 험 업		33,638,770	78,870,315
<b>광 업</b>		<b>21,317,237</b>	<b>108,271,679</b>
석 탄 광 업		21,272,753	108,698,932
금 속 및 비 금 속 광 업		20,459,074	85,178,532
채 석 업		20,809,129	140,949,120
석 회 석 광 업		22,579,223	97,531,512
제 업		21,931,450	-
기 타 광 업		23,190,739	145,947,328
연 탄 및 응 집 고 체 연 료 생 산		19,248,024	174,112,750
<b>제 조 업</b>		<b>21,856,996</b>	<b>100,546,000</b>
식 료 품 제 조 업		17,884,481	83,582,310
담 배 제 조 업		22,511,264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갑)		21,346,084	94,656,869
제 재 및 베 니 아 판 제 조 업		20,074,568	-
목 재 품 제 조 업 ( ' 19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		17,514,920	103,672,387
펄 프 및 지 류 제 조 업		21,652,849	78,312,000
출판·인쇄·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27,535,177	89,581,603
인 쇄 업		22,247,780	-
경 인 쇄 업		26,855,700	-
화 학 제 품 제 조 업 ( ' 19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		20,341,615	102,117,969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제조		23,293,297	49,453,930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		15,912,962	-
고 무 제 품 제 조 업		21,355,547	81,861,483
도 자 기 제 품 제 조 업		17,754,210	-
유 리 제 조 업 ( ' 19 유리·도자기·시멘트제조업 )		20,938,271	81,723,115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20,876,103	98,534,133
시 멘 트 제 조 업		26,132,914	-

(단위 : 원)

수급자 1인 평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1인 평균 장 의 비	수급자 1인 평균 간 병 급 여	수급자 1인 평균 직업재활급여
<b>19,739,344</b>	<b>12,890,039</b>	<b>10,171,275</b>	<b>6,265,783</b>
<b>32,587,294</b>	<b>14,671,256</b>	<b>10,478,578</b>	<b>5,404,382</b>
32,587,294	14,671,256	10,478,578	5,404,382
<b>17,065,563</b>	<b>12,943,014</b>	<b>9,974,560</b>	<b>8,660,329</b>
17,113,189	13,224,728	10,209,109	4,026,857
15,114,553	8,705,855	9,035,625	-
18,618,083	13,211,980	7,503,000	-
19,276,565	12,883,029	11,688,517	10,751,798
20,346,720	-	10,046,700	-
18,012,132	13,036,482	9,375,310	24,282,280
15,987,050	13,836,132	11,267,770	-
<b>21,674,890</b>	<b>12,945,392</b>	<b>10,136,713</b>	<b>5,062,763</b>
18,697,233	11,786,236	10,380,134	4,848,620
15,541,790	-	-	-
16,022,434	11,921,598	10,405,454	8,451,832
16,221,447	-	11,002,969	-
16,298,702	12,245,288	9,821,967	4,740,929
20,245,233	12,780,430	9,122,854	5,206,239
22,848,396	13,023,480	9,906,553	6,222,865
18,632,995	-	10,435,114	-
-	-	10,019,250	-
21,515,106	12,131,997	10,120,818	5,139,005
33,460,048	12,936,943	9,589,086	7,521,222
15,798,886	12,695,640	-	-
21,352,635	14,273,713	9,867,922	4,748,231
17,399,571	-	9,591,183	-
20,404,664	13,292,247	10,321,166	4,275,880
17,320,343	12,712,070	9,629,676	4,725,096
26,926,657	15,554,290	10,965,069	2,700,000

사업종류	구분	수급자 1인 평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시멘트원료채굴 / 제조		33,344,529	-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18,896,433	103,673,297
금속제련업		27,991,260	110,970,580
금속재료품제조업		24,806,888	115,095,922
금속제품제조 / 가공		23,501,688	122,545,350
도금업		22,114,150	-
기계기구제조업		23,437,737	46,279,056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업		21,569,956	114,167,911
전자제품제조업		23,691,436	-
선박건조및수리업		29,367,292	98,983,68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25,807,925	99,717,766
계량기·광학기계·타정밀기구제조업		21,800,340	-
수제품제조업('1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20,888,808	94,997,823
기타제조업		20,336,403	127,064,93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을)		20,532,063	128,807,370
금속제품제조 / 가공(을)		21,142,118	-
수송용기계제조업(을)		19,073,477	-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20,997,973	86,840,000
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23,367,331	-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14,808,019	-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9,633,911	-
<b>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b>		<b>39,127,799</b>	<b>157,660,417</b>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39,127,799	157,660,417
<b>건설업</b>		<b>29,209,781</b>	<b>135,321,485</b>
일반건설공사(갑)		29,005,550	134,895,962
중건설공사		35,054,381	278,722,600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33,793,242	-
일반건설공사(을)		37,362,482	-
<b>운송·창고및통신업</b>		<b>23,772,707</b>	<b>88,382,494</b>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34,617,742	115,980,480
자동차여객운수업('19 육상및수상운수업)		20,523,870	76,532,649
소형자동차운수업		19,705,499	86,840,000

(단위 : 원)

수급자 1인 평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1인 평균 장 의 비	수급자 1인 평균 간 병 급 여	수급자 1인 평균 직업재활급여
24,425,777	-	10,005,525	-
19,353,925	13,019,883	9,723,477	5,247,079
29,151,590	14,499,288	10,365,654	3,115,060
21,783,813	13,358,485	9,433,750	5,312,152
19,221,853	13,653,705	10,285,680	-
18,349,727	11,202,445	10,640,003	6,791,518
22,406,846	12,026,164	10,194,205	4,489,129
29,932,438	13,640,866	10,143,455	4,312,576
27,505,154	12,014,687	10,407,481	8,028,888
27,875,889	13,826,961	10,619,319	4,326,492
26,918,145	13,378,721	10,637,378	4,629,911
23,540,386	14,531,690	8,820,548	5,145,361
16,879,518	12,603,562	9,378,779	2,920,305
17,808,739	12,262,166	9,941,538	6,079,708
19,956,084	13,466,898	10,130,289	7,385,791
-	-	-	-
23,037,384	15,312,140	10,491,827	-
18,590,613	13,039,290	10,120,244	6,004,558
14,739,674	-	16,262,150	-
12,898,638	-	-	-
27,225,211	-	-	8,587,466
<b>35,142,740</b>	<b>13,392,363</b>	<b>10,710,107</b>	<b>3,600,000</b>
35,142,740	13,392,363	10,710,107	3,600,000
<b>20,581,550</b>	<b>13,854,085</b>	<b>10,201,841</b>	<b>8,474,861</b>
20,579,568	13,848,538	10,178,875	8,474,861
18,180,891	15,554,290	10,649,173	-
28,538,770	-	9,703,683	-
22,732,312	15,554,290	11,204,424	-
<b>17,383,038</b>	<b>12,143,211</b>	<b>10,284,873</b>	<b>6,925,463</b>
36,888,087	14,425,150	12,533,450	3,963,426
13,288,335	11,728,378	9,934,852	8,176,810
9,858,626	11,014,215	9,969,379	-

사업종류	구분	수급자 1인 평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1인 평균 유족보상일시금
	화물자동차운수업		25,798,996
수상운수업		21,769,225	81,657,270
항만하역화물취급사업		27,814,385	-
항공운수업		34,831,564	92,342,710
운수관련서비스업 (*19 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		23,819,618	115,795,829
창고업		20,606,984	-
통신업		36,283,470	278,722,600
소형화물운수·택배·퀵서비스업		15,448,036	73,157,500
<b>임업</b>		<b>18,847,694</b>	<b>103,346,750</b>
임업		20,054,676	103,346,750
기타의 임업		17,490,941	-
<b>어업</b>		<b>18,913,359</b>	<b>49,114,647</b>
어업		20,107,124	49,114,647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3,989,079	-
<b>농업</b>		<b>18,232,948</b>	<b>77,241,516</b>
농업		18,232,948	77,241,516
<b>기타의 사업</b>		<b>21,623,304</b>	<b>86,630,934</b>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5,193,873	-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9 건물종합관리,위생및유사서비스업)		16,508,958	67,475,463
위생및유사서비스업		20,835,977	117,154,297
중기관리사업		28,029,231	94,927,070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25,961,003	43,420,000
기타의 각종사업		22,837,475	99,455,318
해외파견사업		34,970,800	-
전문기술서비스업		29,870,316	80,014,706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0,731,789	129,297,005
교육서비스업		16,616,036	43,420,000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8,628,933	92,367,406
부동산업및임대업		18,423,407	43,420,000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14,502,533	89,937,30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 사업서비스업		14,396,135	65,726,484
주한미군		25,647,154	59,807,140

(단위 : 원)

수급자 1인 평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1인 평균 장 의 비	수급자 1인 평균 간 병 급 여	수급자 1인 평균 직업재활급여
15,140,840	11,097,760	10,818,948	1,219,360
18,520,988	12,248,738	10,439,153	7,767,056
17,183,565	-	11,048,730	-
29,100,523	15,554,290	8,564,400	-
19,627,012	12,521,623	9,813,520	7,855,044
18,456,102	-	10,276,132	4,639,811
30,530,321	14,551,894	10,522,965	2,706,962
15,771,133	9,812,340	10,019,250	3,600,000
<b>14,121,038</b>	<b>13,162,633</b>	<b>9,725,810</b>	<b>5,771,758</b>
14,998,725	13,162,633	9,582,586	5,771,758
11,297,176	-	9,947,155	-
<b>10,848,014</b>	<b>12,118,880</b>	<b>11,103,108</b>	<b>-</b>
11,402,824	12,118,880	11,464,393	-
7,630,110	-	10,019,250	-
<b>16,698,841</b>	<b>12,351,874</b>	<b>11,036,409</b>	<b>7,486,733</b>
16,698,841	12,351,874	11,036,409	7,486,733
<b>19,028,012</b>	<b>11,927,604</b>	<b>10,092,118</b>	<b>6,536,136</b>
17,361,880	-	10,417,275	-
11,248,099	11,062,304	9,643,720	7,658,648
16,310,011	11,706,851	9,862,890	6,627,392
16,325,988	15,554,290	11,042,863	-
18,911,810	11,097,760	9,879,180	-
21,007,011	12,140,141	10,275,489	6,282,344
33,026,971	15,554,290	9,405,038	2,471,600
32,718,895	13,694,742	9,908,746	4,597,439
19,766,817	13,287,209	9,617,568	8,212,682
17,470,917	11,187,262	9,821,681	8,257,535
21,581,611	12,011,793	9,384,740	5,478,703
25,320,523	12,079,462	-	4,696,197
23,461,437	13,022,182	9,143,963	6,291,110
16,544,860	11,941,919	-	7,707,130
24,812,089	11,626,425	16,009,330	7,027,989
24,200,135	11,316,690	10,019,250	-



## 4-4. 연도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건, 원, %)

연도	재해자수	수급자수	지급건수	보험급여지급액	증감률
'64	1,489		2,004		
'65	9,470		22,200		
'66	13,024		45,153		
'67	18,207		62,939	581,945,485	
'68	22,959		64,567	837,976,609	44.00
'69	32,229		79,428	1,306,542,681	55.92
'70	37,752		86,805	1,843,599,713	41.11
'71	44,545		93,154	2,539,336,601	37.74
'72	46,603		100,139	3,456,740,887	36.13
'73	59,367		113,903	4,368,090,297	26.36
'74	70,142		131,716	6,516,929,206	49.19
'75	80,570		163,343	10,380,390,721	59.28
'76	95,289		164,322	12,670,839,899	22.07
'77	118,011		227,727	21,618,770,449	70.62
'78	139,242		266,006	30,418,532,981	40.70
'79	130,307		301,672	53,976,684,427	77.45
'80	113,375		271,490	62,504,522,834	15.80
'81	117,938		283,548	76,219,581,029	21.94
'82	137,816		336,775	97,140,814,082	27.45
'83	156,972		388,439	117,610,686,323	21.07
'84	157,800		409,893	142,176,576,812	20.89
'85	141,809		483,336	185,998,958,370	30.82
'86	142,088		526,961	214,730,693,470	15.45
'87	142,596		576,945	241,255,121,540	12.35
'88	142,329		635,190	296,994,666,360	23.10
'89	134,127		677,484	369,305,325,880	24.35
'90	132,893		802,872	539,351,470,010	46.04



(단위 : 명, 건, 원, %)

연 도	재 해 자 수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보 험 급 여 지 급 액	증 감 률
'91	128,169		835,029	701,514,052,030	30.07
'92	107,435		932,395	931,564,168,860	32.79
'93	90,288		784,770	872,530,590,480	-6.34
'94	85,948		804,575	998,562,724,840	14.44
'95	78,034		826,651	1,133,577,490,290	13.52
'96	71,548		928,764	1,355,337,130,080	19.56
'97	66,770		956,763	1,556,041,967,620	14.81
'98	51,514	105,491	845,108	1,451,065,987,070	-6.75
'99	55,405	97,784	781,427	1,274,225,648,770	-12.19
'00	68,976	114,401	982,759	1,456,265,790,350	14.29
'01	81,434	143,216	1,505,803	1,744,560,198,260	19.8
'02	81,911	162,283	1,732,467	2,020,335,492,620	15.81
'03	94,924	180,441	2,008,450	2,481,814,399,410	22.84
'04	88,874	189,275	2,220,793	2,859,913,663,370	15.23
'05	85,411	196,515	2,261,110	3,025,771,182,820	5.8
'06	89,911	206,333	2,329,289	3,163,768,608,840	4.56
'07	90,147	211,284	2,326,079	3,242,275,650,040	2.48
'08	95,806	240,520	2,418,557	3,421,884,564,440	5.54
'09	97,821	252,035	2,514,642	3,463,140,599,840	1.21
'10	98,645	253,279	2,555,805	3,523,734,499,690	1.75
'11	93,292	278,585	2,962,027	3,625,397,179,300	2.89
'12	92,256	244,002	2,930,275	3,851,287,355,560	6.23
'13		245,399	3,033,432	3,795,434,385,050	-1.45
'14		252,106	3,161,941	3,926,559,373,920	3.5
'15		269,893	3,336,865	4,079,108,090,550	3.9
'16		269,510	3,373,121	4,280,054,633,240	4.9
'17		283,514	3,355,416	4,436,037,673,030	3.6
'18		297,239	3,643,929	5,033,901,404,160	13.48
'19		320,184	3,754,153	5,529,359,774,460	9.84

4-5. 연도별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 지급 현황

구분 급여종류	'75	'76	'77	'78	'79
수급자 1인당 보협급여	128,837	132,973	183,193	218,461	414,227
수급자 1인당 요양급여	64,566	63,718	86,222	83,327	153,506
수급자 1인당 휴업급여					
수급자 1인당 상해보상연금					
수급자 1인당 장해보상일시금	302,103	350,915	440,526	612,063	896,721
수급자 1인당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1인당 유족보상일시금	1,580,619	1,942,697	2,609,582	3,614,161	5,178,544
수급자 1인당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1인당 장비의	143,253	184,357	236,207	332,770	469,830
수급자 1인당 간병급여					

(단위 : 원)

'80	'81	'82	'83	'84	'85
551,308	646,245	704,859	749,246	892,475	1,311,616
213,880	244,374	287,759	293,053	348,725	587,921
1,252,555	1,545,078	1,687,315	1,931,734	2,102,695	2,331,307
6,433,215	8,021,139	9,014,046	10,019,559	10,779,489	11,654,172
583,369	706,245	818,633	910,226	981,508	1,055,786

구분 급여종류	'86	'87	'88	'89	'90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	1,511,251	1,691,879	2,086,677	2,753,400	4,058,539
수급자 1인당 요양급여	695,188	747,225	892,742	1,022,400	1,328,893
수급자 1인당 휴업급여					1,216,109
수급자 1인당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1인당 장해보상일시금	2,417,364	2,475,884	2,761,177	3,414,442	4,362,846
수급자 1인당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1인당 유족보상일시금	11,654,778	12,875,809	14,750,274	19,841,320	28,349,035
수급자 1인당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장의비	1,079,089	1,171,032	1,324,669	1,847,484	2,652,632
수급자 1인당 간병급여					

(단위 : 원)

'91	'92	'93	'94	'95	'96
5,473,352	8,670,956	9,663,860	7,280,064	8,690,213	10,417,096
1,527,280	2,475,999	1,545,144	1,783,963	2,103,054	3,075,590
1,687,207	2,193,119	2,689,113	3,134,309	3,837,092	4,624,149
5,570,724	7,033,577	7,835,280	8,601,002	9,537,475	10,528,790
36,442,439	42,745,867	45,618,621	50,041,447	54,564,723	64,284,444
3,414,646	4,030,165	4,318,540	4,731,402	5,102,660	5,994,309

구분 급여종류	'97	'98	'99	'00	'01
수급자 1인당 보협급당여	12,199,275	13,755,353	13,031,024	12,729,485	12,181,322
수급자 1인당 요양급당여	3,589,295	4,155,188	4,297,279	4,386,554	4,326,533
수급자 1인당 휴업급당여	5,184,625	5,420,721	5,029,837	5,285,490	5,353,104
수급자 1인당 상병보상연금		14,793,942	16,021,252	17,226,108	17,954,890
수급자 1인당 장해보상일시금	11,933,505	13,045,440	11,931,020	11,533,463	11,718,324
수급자 1인당 장해보상연금		16,601,550	16,024,801	16,313,340	16,122,015
수급자 1인당 유족보상일시금	69,948,144	69,949,143	71,088,108	63,683,725	50,307,478
수급자 1인당 유족보상연금		15,583,601	16,606,835	8,002,300	7,084,627
수급자의 장의당비	6,542,591	6,529,075	6,652,739	6,693,245	6,906,939
수급자 1인당 간병급당여				1,631,072	5,231,657

(단위 : 원)

'02	'03	'04	'05	'06	'07
12,449,459	13,754,160	15,109,833	15,397,151	15,333,314	15,345,581
4,361,042	4,652,299	5,011,415	4,812,857	4,808,797	4,766,774
5,980,299	6,874,038	7,743,762	7,744,177	7,023,075	6,491,556
19,109,734	20,033,749	21,756,719	23,635,098	24,519,604	26,053,687
12,369,091	13,210,891	13,699,482	15,145,927	15,557,991	14,425,219
16,925,611	16,819,302	17,679,895	18,567,000	19,302,885	20,618,506
54,225,513	57,758,640	60,926,729	64,204,796	67,673,544	69,542,243
8,029,185	8,894,216	9,639,656	10,669,163	11,786,033	13,532,185
7,337,222	7,763,741	8,205,532	8,612,564	9,086,493	9,402,136
6,750,695	7,333,379	8,028,281	8,370,625	8,834,724	9,442,612

구분 급여종류	'08	'09	'10	'11	'12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	14,227,027	13,740,713	13,912,462	13,013,612	15,783,835
수급자 1인당 요양급여	4,272,475	4,093,238	4,199,155	3,717,229	4,388,937
수급자 1인당 휴업급여	6,565,841	6,408,775	6,180,980	6,292,575	6,379,885
수급자 1인당 상병보상연금	27,319,823	29,080,844	28,346,871	29,423,508	33,114,691
수급자 1인당 장해보상일시금	16,257,287	15,402,206	14,849,827	14,795,670	15,020,679
수급자 1인당 장해보상연금	19,438,252	19,013,335	16,153,206	17,360,888	19,853,895
수급자 1인당 유족보상일시금	73,620,328	74,313,748	77,195,339	80,035,276	77,338,904
수급자 1인당 유족보상연금	13,178,454	13,611,529	13,919,125	14,313,740	15,328,287
수급자의 장비	9,689,302	9,848,974	10,246,741	10,477,476	10,708,658
수급자 1인당 간병급여	9,034,851	9,780,256	9,656,076	9,812,544	9,823,643
수급자 1인당 재활급여	899,102	2,534,097	2,553,771	2,868,747	3,565,297



(단위 : 원)

'13	'14	'15	'16	'17	'18	'19
15,466,381	15,575,030	15,113,797	15,880,875	15,646,627	16,935,535	17,269,319
4,417,084	4,393,370	4,229,199	4,512,945	4,317,864	4,893,271	4,808,350
6,563,010	7,031,400	7,354,117	7,840,664	8,300,482	8,847,775	9,606,688
32,198,716	32,921,220	33,499,210	34,218,603	34,690,801	36,760,647	37,717,377
15,107,101	14,614,130	14,434,367	15,326,174	15,775,506	16,668,336	16,705,568
18,773,538	19,601,272	20,290,022	20,888,500	21,550,740	22,849,597	23,816,722
84,891,226	89,003,170	95,176,275	101,001,387	108,672,858	103,339,873	107,981,988
15,621,134	16,330,140	16,875,260	17,367,557	17,985,784	18,884,831	19,739,344
11,013,284	11,284,740	11,703,867	12,143,042	12,511,615	12,579,950	12,890,039
10,130,917	9,963,710	10,442,820	10,244,532	10,198,265	10,245,353	10,171,275
4,242,579	3,965,170	3,975,738	4,267,896	4,536,042	4,874,323	6,265,78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10.5.20.) 및 시행(2010.11.21.)으로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 신설되어, 장해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각각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4-6. 연도별·급여종류별 지급 현황

급여종류		구 분	'75	'76	'77	'78	'79
		수급자수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총 계	수급자수						
	금 액	10,380,390,721	12,670,839,899	21,618,770,449	30,418,532,981	53,976,684,427	
요 급 양 여	수급자수						
	금 액	5,202,094,634	6,071,583,347	10,073,971,483	11,486,153,871	19,766,948,096	
휴 급 업 여	수급자수						
	금 액	1,480,053,030	1,970,664,439	3,203,258,669	5,442,044,271	9,116,230,914	
상 병 보 상 연 금	수급자수						
	금 액	3,041,933		4,110,034	22,908,021	22,801,627	
장 급 해 여	수급자수						
	금 액	1,961,701,678	2,740,051,944	4,996,238,471	7,968,107,938	15,468,446,838	
유 급 족 여	수급자수						
	금 액	1,590,102,839	1,723,172,325	3,063,649,342	5,041,755,085	8,813,882,449	
장 의 비	수급자수						
	금 액	143,396,607	165,367,844	277,542,550	457,558,792	788,374,503	
장 해 특 별 여 급	수급자수						
	금 액						
유 족 특 별 여 급	수급자수						
	금 액						
간 급 병 여	수급자수						
	금 액						
직 업 제 활 여 급	수급자수						
	금 액						

\*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82년 이전은 일시급여로 지급



(단위 : 명, 원)

'80	'81	'82	'83	'84	'85
62,504,522,834	76,219,581,029	97,140,814,082	117,610,686,323	142,176,576,812	185,998,958,370
23,976,324,307	28,504,497,981	39,303,812,927	45,886,619,811	54,972,604,743	82,362,445,220
11,043,836,392	13,796,225,364	18,454,076,924	23,575,556,294	29,263,664,922	34,428,055,490
23,545,930	15,258,400	8,940,065	44,252,412	560,276,208	702,251,910
18,629,254,318	22,876,424,745	26,799,624,763	32,584,493,550	38,187,044,918	45,869,887,760
8,105,851,190	10,138,719,291	11,528,965,424	14,217,753,590	17,583,313,019	20,741,446,080
725,710,697	888,456,248	1,045,393,979	1,284,329,544	1,609,673,002	1,872,965,110
			17,681,122		21,906,800

급여종류		구 분	'86	'87	'88	'89	'90
		수급자수					
총 계	수급자수						
	금 액	214,730,693,470	241,255,121,540	296,994,666,360	369,305,325,880	539,351,470,010	
요 양 급 여	수급자수						
	금 액	97,623,917,040	105,235,412,680	125,344,522,170	135,368,888,980	173,629,148,950	
휴 급 업 여	수급자수						
	금 액	40,298,225,540	47,121,646,090	62,395,766,230	98,037,280,220	156,025,610,540	
상 병 보 상 연 급	수급자수						
	금 액	949,273,040	1,569,449,700	3,033,384,890	5,266,330,080	7,495,873,440	
장 해 급 여	수급자수						
	금 액	52,382,133,650	61,494,363,420	72,635,058,760	89,392,735,730	126,318,416,250	
유 족 급 여	수급자수						
	금 액	21,432,320,670	23,691,260,440	30,837,245,230	37,696,616,210	69,510,799,460	
장 의 비	수급자수						
	금 액	1,929,410,710	2,142,989,210	2,748,689,080	3,543,474,650	6,371,621,370	
장 해 특 별 급 여	수급자수	1					
	금 액	45,524,130					
유 족 특 별 급 여	수급자수						
	금 액	69,888,690					
간 급 병 여	수급자수						
	금 액						
직 업 제 활 급 여	수급자수						
	금 액						



(단위 : 명, 원)

'91	'92	'93	'94	'95	'96
701,514,052,030	931,564,168,860	872,530,590,480	998,562,724,840	1,133,577,490,290	1,355,337,130,080
192,238,772,980	259,994,763,730	224,021,148,110	249,185,674,750	279,418,012,180	342,974,380,020
223,727,039,680	281,052,584,550	268,736,548,950	303,595,435,749	357,981,516,570	435,728,944,010
10,052,417,660	13,615,059,360	16,451,755,800	20,560,824,110	25,557,046,740	32,782,487,610
173,925,624,860	247,408,168,560	246,327,224,170	268,147,841,910	295,680,046,350	347,751,325,640
92,712,604,020	118,531,542,970	107,052,635,330	143,768,246,697	160,912,268,070	179,501,752,510
8,857,592,830	10,962,049,690	9,941,278,120	13,304,701,624	13,981,288,780	16,598,240,290
				47,311,600	

급여종류		구 분		'97	'98	'99	'00	'01
		수급자수	금 액					
총 계	수급자수		105,491	97,784	114,401	143,216		
	금 액	1,556,041,967,620	1,451,065,987,070	1,274,225,648,770	1,456,265,790,350	1,744,560,198,260		
요양급여	수급자수		91,372	83,470	96,922	123,994		
	금 액	396,735,529,740	379,667,868,090	358,693,869,610	425,153,541,450	536,464,184,410		
휴업급여	수급자수		73,769	67,078	79,929	98,318		
	금 액	478,644,576,740	399,881,199,450	337,391,379,040	422,463,935,740	526,306,466,240		
상병보상금	수급자수		3,501	3,875	4,161	4,498		
	금 액	41,182,224,620	51,793,589,800	62,082,349,770	71,677,836,050	80,761,096,480		
장해급여	수급자수		31,921	26,395	27,764	34,207		
	금 액	422,469,613,100	435,632,727,720	343,793,189,160	360,454,979,800	447,004,755,350		
유족급여	수급자수		2,565	2,395	2,802	3,497		
	금 액	198,638,429,080	168,701,571,740	157,741,932,640	159,257,446,790	134,575,838,820		
장 의 비	수급자수		2,357	2,183	2,566	2,643		
	금 액	18,371,594,340	15,389,030,270	14,522,928,550	17,174,865,850	18,255,039,250		
장해특별급여	수급자수							
	금 액							
유족특별급여	수급자수							
	금 액							
간병급여	수급자수				51	228		
	금 액				83,184,670	1,192,817,710		
직업재활급여	수급자수							
	금 액							



(단위 : 명, 원)

'02	'03	'04	'05	'06	'07
162,283	180,441	189,275	196,515	206,333	211,284
2,020,335,492,620	2,481,814,399,410	2,859,913,663,370	3,025,771,182,820	3,163,768,608,840	3,242,275,650,040
139,646	152,522	157,000	159,815	166,443	160,067
609,002,044,500	709,577,963,020	786,792,188,680	769,166,800,930	800,390,673,170	763,003,192,040
105,135	119,243	123,275	121,180	120,764	123,284
628,738,746,680	819,680,896,250	954,612,290,550	938,439,334,570	848,134,638,170	800,304,958,070
4,926	5,258	5,660	5,938	6,182	6,227
94,134,549,100	105,337,452,530	123,143,028,830	140,345,209,330	151,580,190,250	162,236,310,340
36,964	43,242	49,588	55,782	61,894	67,227
514,398,043,640	626,222,259,160	752,287,538,430	922,185,208,280	1,067,385,111,250	1,170,646,840,950
5,133	7,183	9,000	10,546	12,166	13,799
151,757,325,700	192,583,237,580	210,834,007,670	220,576,627,620	253,875,684,970	296,797,440,660
2,602	2,921	2,780	2,464	2,439	2,420
19,091,452,100	22,677,888,550	22,811,378,670	21,221,358,820	22,161,957,270	22,753,167,960
476	782	1,175	1,653	2,291	2,810
3,213,330,900	5,734,702,320	9,433,230,540	13,836,643,270	20,240,353,760	26,533,740,020

급여종류		구 분		'08	'09	'10	'11	'12
		수급자수	금 액					
총 계	수급자수	240,520	252,035	253,279	278,585	244,002		
	금 액	3,421,884,564,440	3,463,140,599,840	3,523,734,499,690	3,625,397,179,300	3,851,287,355,560		
요양급여	수급자수	190,119	195,486	182,545	204,873	163,597		
	금 액	812,278,614,230	800,170,699,180	766,534,793,410	761,559,783,060	718,016,983,380		
휴업급여	수급자수	120,699	122,656	121,836	114,406	113,507		
	금 액	792,490,461,760	786,074,733,050	753,065,870,600	719,908,309,510	724,161,626,100		
상병보상연	수급자수	6,448	6,532	6,451	5,875	5,895		
	금 액	176,158,221,240	189,956,073,200	182,865,664,190	172,863,111,890	195,211,104,890		
장해급여	수급자수	70,580	74,584	88,864	91,906	95,229		
	금 액	1,265,916,132,330	1,291,083,501,960	1,397,872,834,120	1,509,244,845,760	1,712,958,058,080		
유족급여	수급자수	15,394	16,727	18,130	19,410	20,764		
	금 액	317,714,466,930	332,550,256,350	352,125,096,850	376,251,232,980	407,497,865,540		
장 의 비	수급자수	2,428	2,230	2,199	2,130	2,172		
	금 액	23,525,624,130	21,963,211,010	22,532,583,180	22,317,024,210	23,259,205,560		
장해특별여	수급자수							
	금 액							
유족특별여	수급자수							
	금 액							
간병급여	수급자수	3,738	4,025	4,584	4,925	5,261		
	금 액	33,772,272,550	39,365,529,550	44,263,450,520	48,326,780,680	51,682,184,890		
직업재활여	수급자수	32	780	1,752	5,203	5,189		
	금 액	28,771,270	1,976,595,540	4,474,206,820	14,926,091,210	18,500,327,120		





(단위 : 명, 원)

'13	'14	'15	'16	'17	'18	'19
245,399	252,106	269,893	269,510	283,514	297,239	320,184
3,795,434,385,050	3,926,559,373,920	4,079,108,090,550	4,280,054,633,240	4,436,037,673,030	5,033,901,404,160	5,529,359,774,460
163,757	168,566	185,202	185,704	195,407	207,456	225,665
723,328,411,610	740,573,802,200	783,256,186,350	838,072,003,810	843,740,847,280	1,015,138,464,070	1,085,076,361,740
111,432	110,843	111,078	111,811	110,979	125,162	137,309
731,329,366,960	779,382,228,130	816,880,625,830	876,672,482,040	921,179,158,450	1,107,405,266,420	1,319,084,657,040
5,261	5,058	4,853	4,643	4,400	4,192	3,943
169,397,446,650	166,515,580,510	162,571,665,700	158,876,975,710	152,639,525,910	154,100,630,950	148,719,616,380
93,524	93,689	93,953	93,383	93,407	96,493	101,942
1,629,026,710,510	1,667,219,394,800	1,710,783,723,310	1,772,502,714,970	1,832,567,545,940	1,998,757,627,330	2,157,725,159,300
22,194	23,517	24,760	25,949	27,272	28,842	30,328
441,921,698,030	476,888,697,100	508,938,057,010	538,712,886,800	589,255,274,910	656,225,422,910	710,174,239,720
2,255	2,169	2,080	2,052	2,218	2,565	2,470
24,834,954,960	24,476,600,250	24,344,043,780	24,917,522,010	27,750,762,350	32,267,572,690	31,838,396,980
	-	-				
	-	-				
	-	1			1	
	-	90,242,130			212,408,300	
5,448	5,487	5,485	5,472	5,383	5,365	5,273
55,193,235,340	54,670,911,040	57,278,868,680	56,058,078,920	54,897,259,440	54,966,320,990	53,633,134,910
4,809	4,245	3,764	3,337	3,088	3,042	3,688
20,402,560,990	16,832,159,890	14,964,677,760	14,241,968,980	14,007,298,750	14,827,690,500	23,108,208,390

4-7. 연도별·사업종류별(대분류) 지급 현황

사업종류		구분		'75	'76	'77	'78	'79
		수급자수	금액					
총계	수급자수							
	금액	10,380,390,721	12,670,839,899	21,618,770,449	30,418,532,981	53,976,684,427		
금융및보험업	수급자수							
	금액							
광업	수급자수							
	금액	2,592,577,212	3,561,907,038	4,794,493,799	5,830,953,536	10,040,758,742		
제조업	수급자수							
	금액	4,202,862,723	5,136,424,394	9,632,205,524	13,209,918,917	23,704,054,428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수급자수							
	금액	111,562,927	103,897,880	185,173,543	317,155,689	365,068,780		
건설업	수급자수							
	금액	1,783,805,616	2,174,412,346	4,111,257,631	7,390,342,908	14,125,062,423		
운송·창고및통신업	수급자수							
	금액	1,576,378,771	1,619,333,857	2,754,975,112	3,368,912,885	5,159,134,522		
임업	수급자수							
	금액							
어업	수급자수							
	금액							
농업	수급자수							
	금액							
기타의사업	수급자수							
	금액	113,203,472	74,864,384	140,664,840	301,249,046	582,605,532		



(단위 : 명, 원)

'80	'81	'82	'83	'84	'85
62,504,522,834	76,219,581,029	97,140,814,082	117,610,686,323	142,176,576,812	185,998,958,370
12,690,983,082	18,364,291,283	22,860,695,606	24,703,295,787	27,539,531,602	38,340,809,358
26,348,342,378	31,118,678,373	39,201,120,438	48,486,945,475	58,780,912,702	74,241,505,104
428,451,874	738,211,091	794,371,507	950,719,871	670,996,554	827,730,630
15,622,901,236	17,179,874,581	23,575,673,953	30,805,306,241	39,282,336,826	52,698,953,287
6,432,817,595	7,525,382,228	9,156,877,040	10,448,372,670	12,376,233,564	15,593,938,832
981,026,669	1,293,143,473	1,552,075,538	2,216,046,279	3,526,565,564	4,296,021,159

사 업 종 류		구 분		'86	'87	'88	'89	'90
		수급자수	금 액					
총 계	수급자수							
	금 액	214,730,693,470	241,255,121,540	296,994,666,360	369,305,325,880	539,351,470,010		
금융및보험업	수급자수							
	금 액							
광 업	수급자수							
	금 액	48,007,276,098	50,104,175,180	57,765,655,380	72,393,158,650	98,653,017,280		
제 조 업	수급자수							
	금 액	84,705,264,309	101,559,862,220	128,743,829,860	158,577,420,080	217,153,231,700		
전기가스증기및 수도 사업	수급자수							
	금 액	1,170,841,600	974,974,210	1,172,887,920	1,043,886,290	1,660,367,970		
건 설 업	수급자수							
	금 액	58,405,807,530	62,390,104,950	74,826,059,800	97,991,287,740	160,535,091,410		
운송·창고및통신업	수급자수							
	금 액	16,663,566,433	19,360,279,550	24,486,101,110	26,718,094,450	40,821,047,800		
임 업	수급자수							
	금 액							
어 업	수급자수							
	금 액							
농 업	수급자수							
	금 액							
기타의사업	수급자수							
	금 액	5,777,937,500	6,865,725,430	10,000,132,290	12,581,478,670	20,528,713,850		



(단위 : 명, 원)

'91	'92	'93	'94	'95	'96
701,514,052,030	931,564,168,860	872,530,590,480	998,562,724,840	1,133,577,490,290	1,355,337,130,080
112,111,779,210	140,138,273,159	128,163,584,390	129,438,225,917	133,824,986,103	145,038,908,030
256,812,639,260	315,040,007,321	288,839,214,843	341,962,646,647	390,162,936,571	465,583,169,500
1,538,251,880	2,141,149,960	2,509,913,600	3,031,432,890	3,037,999,690	4,697,036,070
256,643,800,160	370,271,247,451	335,540,136,264	374,229,687,046	433,595,582,772	538,817,697,830
48,011,625,280	60,149,835,147	61,813,635,953	75,615,297,922	85,038,470,972	106,012,628,570
229,643,090	357,109,160	673,982,440	1,149,049,230	1,513,158,140	1,774,677,520
52,636,910	373,647,070	828,002,570	1,799,326,880	1,717,127,740	1,616,819,120
143,632,680	692,862,610	851,880,170	998,577,960	1,593,641,580	1,746,207,470
25,970,043,560	42,400,036,982	53,310,240,250	70,338,480,348	83,093,613,722	90,049,985,970

사 업 종 류	구 분	'97	'98	'99	'00	'01
	총 계	수급자수		105,491	97,784	114,401
	금 액	1,556,041,967,620	1,451,065,987,070	1,274,225,648,770	1,456,265,790,350	1,744,560,198,260
금융및보험업	수급자수		96	521	763	951
	금 액		802,159,960	8,050,462,810	9,401,877,130	10,884,282,840
광 업	수급자수		6,731	6,528	7,056	7,868
	금 액	155,979,759,180	152,365,857,220	153,109,149,114	163,470,592,348	176,479,421,450
제 조 업	수급자수		43,898	43,131	51,952	62,298
	금 액	521,646,804,980	470,647,038,620	434,490,556,050	538,234,648,454	653,054,995,540
전기가스증기및 수 도 사 업	수급자수		250	241	271	293
	금 액	3,546,472,360	4,119,481,910	4,748,114,590	4,939,875,470	4,965,770,300
건 설 업	수급자수		30,891	24,434	26,216	32,685
	금 액	630,830,768,550	583,648,429,810	452,859,439,482	479,138,222,288	553,584,935,740
운 송·창 고 및 통 신 업	수급자수		10,560	7,968	8,775	10,190
	금 액	123,650,893,250	108,005,671,990	85,707,337,220	92,452,098,810	108,854,058,680
임 업	수급자수		624	1,548	1,592	1,644
	금 액	2,313,315,330	3,239,637,630	6,640,800,084	8,555,935,460	11,360,789,980
어 업	수급자수		177	183	208	231
	금 액	1,829,468,600	1,944,678,040	1,753,537,730	3,449,983,920	2,532,568,370
농 업	수급자수		227	235	278	438
	금 액	2,194,391,720	2,277,828,720	2,325,588,760	1,844,915,100	3,130,305,690
기 타 의 사 업	수급자수		12,983	13,263	17,611	27,385
	금 액	114,050,093,650	124,015,203,170	124,540,662,930	154,777,641,370	219,713,069,670



(단위 : 명, 원)

'02	'03	'04	'05	'06	'07
162,283	180,441	189,275	196,515	206,333	211,284
2,020,335,492,620	2,481,814,399,410	2,859,913,663,370	3,025,771,182,820	3,163,768,608,840	3,242,275,650,040
1,063	1,137	1,129	1,214	1,279	1,286
12,695,490,480	14,433,130,300	16,048,830,782	17,796,403,330	20,485,883,220	22,492,913,990
8,444	9,874	12,086	13,132	12,834	13,348
193,623,067,630	225,961,733,360	258,864,228,770	286,209,439,330	297,099,423,780	310,030,810,940
68,100	74,775	77,731	80,482	82,170	83,527
744,220,865,170	925,528,573,720	1,079,369,005,104	1,169,330,578,170	1,186,432,563,020	1,165,054,645,162
324	346	373	391	396	386
5,807,234,770	6,670,267,600	7,367,915,160	7,616,195,940	8,763,759,540	8,598,887,520
40,276	45,481	45,784	44,147	45,949	47,817
661,881,265,180	824,271,621,140	932,667,715,380	919,954,664,270	946,684,000,650	993,949,900,390
10,309	11,101	11,221	11,352	12,110	11,855
118,053,269,150	136,065,227,720	150,973,044,740	158,922,390,770	174,246,947,260	177,540,164,180
1,453	1,380	1,610	1,875	2,105	2,342
10,627,088,110	12,265,923,140	16,059,345,820	19,426,846,430	22,208,231,100	25,214,472,192
275	300	229	144	115	155
3,290,497,440	3,367,116,500	3,695,159,990	2,257,276,530	1,767,210,060	1,804,363,730
502	581	606	720	838	872
3,738,918,490	5,077,664,170	6,300,918,180	6,784,278,440	8,408,388,200	9,451,955,080
31,653	35,598	38,672	43,266	48,895	49,912
266,397,796,200	328,173,141,760	388,567,499,444	437,473,109,610	497,672,202,010	528,137,536,856

사 업 종 류		구 분	'08	'09	'10	'11	'12
총 계	수급자수		240,520	252,035	253,279	278,585	244,002
	금 액		3,421,884,564,440	3,463,140,599,840	3,523,734,499,690	3,625,397,179,300	3,851,287,355,560
금융및보험업	수급자수		1,604	1,727	1,498	1,778	1,248
	금 액		23,481,156,310	23,667,416,600	23,363,442,190	23,691,452,460	26,284,226,550
광 업	수급자수		13,572	13,275	19,429	20,922	20,637
	금 액		320,860,676,855	323,329,252,640	319,586,041,530	363,900,330,480	368,260,641,450
제 조 업	수급자수		87,967	89,476	86,958	96,029	83,440
	금 액		1,207,371,568,054	1,200,628,820,240	1,232,024,106,100	1,260,697,068,620	1,302,738,641,5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수급자수		420	437	429	472	409
	금 액		9,888,135,090	9,569,830,050	9,829,154,010	10,095,544,840	11,578,683,370
건 설 업	수급자수		55,743	58,954	60,078	66,730	62,411
	금 액		1,058,406,130,076	1,082,600,674,550	1,102,852,303,560	1,127,985,602,650	1,285,842,983,340
운송·창고 및 통신업	수급자수		13,175	13,384	12,640	14,236	12,242
	금 액		182,937,038,944	177,810,896,840	178,882,417,140	182,368,217,670	190,790,358,530
임 업	수급자수		3,127	4,716	4,453	4,174	3,645
	금 액		30,725,208,490	40,120,327,680	41,622,036,810	40,063,754,640	39,926,919,190
어 업	수급자수		176	206	194	228	183
	금 액		2,174,129,680	2,265,076,470	2,273,981,210	2,260,376,310	2,025,062,360
농 업	수급자수		1,041	1,194	1,235	1,333	1,182
	금 액		10,618,574,330	10,404,896,420	11,451,484,500	11,596,460,360	12,094,441,940
기타의사업	수급자수		63,914	68,909	66,586	72,954	58,865
	금 액		575,421,946,611	592,743,408,350	601,849,532,640	602,738,371,270	611,745,397,330





(단위 : 명, 원)

'13	'14	'15	'16	'17	'18	'19
245,399	252,106	269,893	269,510	283,514	297,239	320,184
3,795,434,385,050	3,926,559,373,920	4,079,108,090,550	4,280,054,633,240	4,436,037,673,030	5,033,901,404,160	5,529,359,774,460
1,272	1,230	1,296	1,235	1,359	1,445	1,596
25,958,236,330	27,958,220,630	28,166,577,390	28,651,873,560	32,708,702,570	35,896,455,310	37,225,089,470
20,491	21,102	21,934	23,782	24,052	24,552	26,973
378,714,629,030	398,603,976,030	421,731,475,600	440,644,229,870	465,807,850,630	592,159,532,850	608,620,660,270
81,930	82,654	85,524	83,513	87,133	88,888	94,156
1,285,056,111,280	1,312,436,035,970	1,345,291,430,930	1,377,904,049,650	1,415,754,200,350	1,554,487,731,790	1,708,062,984,030
405	413	457	459	470	504	520
12,152,365,100	11,832,390,670	12,821,380,650	12,113,967,880	12,520,735,100	13,143,791,610	14,411,650,810
62,659	66,166	71,156	73,578	76,662	79,305	81,559
1,205,128,877,410	1,261,547,555,190	1,322,734,360,310	1,448,883,286,790	1,506,200,157,020	1,644,938,421,840	1,770,613,207,140
12,491	12,684	13,395	13,253	13,905	15,161	17,065
194,762,744,590	203,137,161,940	206,863,697,300	211,497,640,880	215,174,179,080	247,482,273,190	281,085,727,500
3,606	3,590	3,678	3,430	3,322	2,719	2,701
39,447,796,200	41,119,944,390	41,227,842,250	41,001,630,960	37,075,548,370	38,595,132,610	40,072,131,020
188	201	202	183	179	191	185
2,291,848,280	2,669,730,430	2,488,508,590	2,541,603,750	2,561,211,370	3,135,618,790	3,112,862,870
1,263	1,320	1,423	1,543	1,496	1,482	1,487
13,360,368,400	14,599,747,430	15,484,218,780	16,999,846,850	16,646,989,590	19,594,879,930	20,343,224,050
61,390	63,034	71,156	68,882	75,213	83,321	94,324
638,561,408,430	652,654,611,240	682,298,598,750	699,816,503,050	731,588,098,950	884,467,566,240	1,045,812,237,300

4-8. 연도별·사업규모별 지급 현황

구 분		'09	'10	'11	'12	'13
사업규모						
총 계	수 급 자 수	252,035	253,279	278,585	244,002	245,399
	금 액	3,463,140,599,840	3,523,734,499,690	3,625,397,179,300	3,851,287,355,560	3,795,434,385,050
건 설 업	수 급 자 수	58,954	60,078	66,730	62,411	62,659
	금 액	1,082,600,674,550	1,102,852,303,560	1,127,985,602,650	1,285,842,983,340	1,205,128,877,410
5 인 미 만	수 급 자 수	52,090	51,248	59,172	49,424	49,070
	금 액	505,113,226,370	512,055,457,110	542,655,658,370	532,578,720,450	534,725,421,420
5 ~ 29 인	수 급 자 수	65,592	65,250	73,185	61,984	62,575
	금 액	680,158,806,760	708,644,212,370	727,651,637,050	734,758,957,390	750,044,791,570
30 ~ 49 인	수 급 자 수	16,150	16,438	17,835	16,135	16,193
	금 액	183,481,612,780	189,474,290,240	190,399,746,730	201,224,346,810	200,989,348,240
50 ~ 99 인	수 급 자 수	15,985	17,506	18,778	15,903	16,146
	금 액	195,924,470,280	219,118,688,030	216,884,522,220	218,775,071,630	224,378,351,150
100 ~ 299 인	수 급 자 수	21,533	20,241	21,249	18,686	18,829
	금 액	298,706,765,340	284,470,821,400	282,564,600,430	293,261,526,360	295,977,009,720
300 ~ 499 인	수 급 자 수	5,950	6,640	7,087	7,092	7,276
	금 액	93,490,445,590	92,707,372,560	99,837,576,570	120,839,935,300	126,052,701,270
500 ~ 999 인	수 급 자 수	7,203	7,951	8,997	8,262	7,670
	금 액	136,118,968,850	120,822,604,750	135,318,016,020	125,650,193,710	129,759,617,360
1,000인 이상	수 급 자 수	16,756	17,077	18,399	16,699	16,507
	금 액	287,545,629,320	293,588,749,670	302,099,819,260	338,355,620,570	328,378,266,910



(단위 : 명, 원)

'14	'15	'16	'17	'18	'19
252,106	269,893	269,510	283,514	297,239	320,184
3,926,559,373,920	4,079,108,090,550	4,280,054,633,240	4,436,037,673,030	5,033,901,404,160	5,529,359,774,460
66,166	71,156	73,578	76,662	79,305	81,559
1,261,547,555,190	1,322,734,360,310	1,448,883,286,790	1,506,200,157,020	1,644,938,421,840	1,770,613,207,140
50,349	53,689	51,861	54,323	56,229	61,173
546,729,051,590	569,135,177,110	584,631,858,680	599,476,063,230	687,165,116,310	784,838,065,240
63,591	68,243	66,911	70,562	72,727	77,237
765,825,219,830	789,716,578,720	820,764,547,580	840,829,118,080	938,255,343,750	1,044,494,271,950
16,480	17,138	17,042	17,861	18,620	19,522
209,163,973,760	213,251,831,770	223,602,615,010	234,445,105,400	271,359,530,840	280,224,640,800
15,966	17,046	16,696	17,332	18,422	19,752
226,785,947,140	242,342,422,120	244,761,221,780	251,596,671,220	284,722,572,550	314,720,323,460
18,892	19,422	18,965	19,950	21,574	23,245
306,382,721,220	308,457,142,780	313,509,266,320	323,870,360,370	379,116,967,620	398,499,722,290
7,236	8,499	8,665	8,961	9,979	11,704
126,494,610,690	148,222,348,950	151,724,520,580	143,311,165,860	196,395,309,510	220,816,488,110
8,301	10,426	10,148	11,762	13,036	14,855
150,537,768,960	173,350,765,050	184,733,326,000	214,156,340,980	261,583,695,250	292,171,378,660
15,733	16,360	15,387	16,231	18,305	21,865
333,092,525,540	311,897,463,740	307,443,990,500	322,152,690,870	370,364,446,490	422,981,676,810

4-9. 외국인근로자 보험급여 지급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합 계	8,147	106,301,901,170	8,705	108,942,050,200	10,142	127,933,574,150	10,629	138,613,942,000	9,800	128,861,386,640
방글라데시	119	1,398,978,570	139	1,462,917,250	166	1,716,228,630	202	1,937,319,080	176	1,908,156,130
중 국	4,809	72,215,378,570	5,295	73,173,153,200	6,453	87,266,136,320	6,931	97,922,044,120	6,430	89,915,258,330
가 나	1	7,657,550	2	6,034,980	3	58,248,610	4	26,716,130	1	7,292,460
인 도	35	293,365,440	16	169,987,330	13	176,133,090	11	111,912,760	8	29,981,640
인도네시아	346	4,203,484,230	342	4,183,053,360	317	3,346,000,020	311	3,552,033,570	296	3,354,530,240
이 란	5	176,236,880	2	13,498,270	4	24,344,140	3	105,625,170	3	47,772,780
일 본	11	73,540,280	7	20,467,980	7	153,936,680	13	99,993,890	14	68,557,520
말레이시아	4	10,242,290	1	48,713,040	2	44,187,440	2	62,142,750	2	8,973,470
몽 골	277	3,278,343,360	246	2,127,229,920	214	2,474,330,830	205	1,768,455,250	170	1,977,649,160
모 로 코	2	2,399,600	-	-	1	1,630,090	1	10,565,570	2	11,669,790
미얀마	24	380,076,180	39	518,161,530	41	392,545,300	92	860,569,450	108	1,112,106,680
네 팔	96	1,238,198,300	119	1,248,554,330	171	1,734,782,040	223	2,086,028,110	245	2,852,271,810
나이지리아	13	136,807,340	7	134,861,940	6	140,883,360	3	46,418,390	6	85,240,250
파키스탄	215	1,793,254,820	227	2,118,990,240	237	2,015,031,610	207	2,256,834,510	177	1,574,834,680
페 루	1	4,250,730	-	-	-	-	1	95,279,180	-	-
필리핀	269	2,249,280,690	232	2,187,537,490	248	2,599,177,790	194	2,068,785,330	150	1,310,894,270
러시아	20	315,012,360	25	413,275,730	33	520,520,330	22	322,909,270	17	98,653,260
스리랑카	379	3,538,074,150	383	4,061,923,150	423	4,564,249,430	444	4,881,784,940	405	4,349,661,590
대만	39	277,256,150	33	241,670,880	28	280,983,050	24	327,234,810	35	274,947,910
태국	302	2,844,977,870	260	2,808,776,720	236	2,861,986,510	212	2,750,172,300	180	2,431,361,060
우즈베키스탄	249	2,852,820,610	268	2,995,855,230	368	4,600,833,930	398	4,586,870,760	384	4,437,324,890
베트남	797	7,843,127,160	866	8,811,510,590	919	9,665,906,840	831	9,517,364,780	643	8,995,708,510
기타	134	1,169,138,040	196	2,195,877,040	260	3,295,498,110	308	3,216,881,880	359	4,008,540,210



(단위 : 명, 원)

'14		'15		'16		'17		'18		'19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10,429	131,600,383,330	11,602	144,950,845,240	11,347	148,300,480,310	11,757	164,535,979,970	13,112	197,901,511,050	14,259	221,399,362,020
179	1,945,853,690	147	1,419,225,210	150	1,591,491,610	196	2,059,597,080	213	2,606,079,640	212	2,354,860,770
7,027	92,048,564,400	7,989	104,303,622,970	7,844	107,161,311,550	7,931	117,996,283,920	8,846	138,222,604,050	9,414	149,249,661,150
4	29,791,320	6	57,151,440	5	21,670,140	8	55,945,670	8	288,140,810	5	81,171,790
13	202,323,500	11	73,482,550	15	363,569,760	21	415,618,300	39	537,762,760	45	777,202,870
307	4,588,040,320	309	3,388,548,220	308	3,400,201,900	311	3,545,829,290	266	3,033,922,190	277	4,507,758,790
1	2,273,020	1	4,245,240	6	36,365,560	6	48,319,140	4	46,610,060	6	34,944,480
12	85,918,260	14	34,657,180	12	74,668,190	19	87,243,830	24	133,550,170	27	277,655,360
1	25,058,830	1	223,700	-	-	12	256,004,080	25	326,544,980	28	625,343,490
125	1,180,056,000	130	1,648,409,460	133	1,666,442,670	142	2,013,855,240	155	2,391,222,220	195	2,991,517,050
1	7,966,910	3	4,720,960	6	45,677,300	4	38,396,090	4	23,526,510	11	75,247,280
105	1,089,572,750	165	1,496,159,870	169	1,838,339,730	173	1,860,189,770	240	3,475,429,370	285	4,209,980,150
274	2,498,384,460	341	3,671,404,600	354	3,363,923,090	379	4,719,279,420	450	5,918,972,330	495	6,057,813,220
10	103,922,740	14	116,369,250	13	232,408,900	14	188,262,310	16	194,822,200	20	220,861,750
157	1,247,756,990	162	1,645,051,930	139	1,401,730,390	159	1,624,383,040	181	2,158,235,110	204	2,364,370,840
-	-	-	-	1	21,416,630	1	1,520,180	1	5,912,610	2	12,026,970
156	1,657,373,270	197	1,917,856,900	193	2,084,476,810	214	2,511,085,120	259	2,781,358,050	247	3,230,902,920
33	642,050,110	24	204,915,040	92	1,225,383,140	126	1,639,319,050	169	2,332,203,380	235	4,350,351,260
397	4,765,215,150	370	3,963,081,870	330	3,758,272,630	353	3,859,387,220	328	4,235,492,250	331	4,819,672,490
33	302,745,030	40	353,073,160	32	402,136,740	37	312,421,820	43	493,297,830	49	538,596,430
224	3,178,389,010	256	4,089,643,750	212	3,341,039,020	227	3,012,693,660	285	4,886,923,260	337	5,826,548,440
399	4,611,509,560	445	5,616,767,440	417	5,524,782,760	443	5,730,891,340	478	8,022,564,990	550	8,430,045,870
568	6,717,074,640	518	6,669,608,020	475	6,050,937,440	506	6,584,767,400	504	8,150,994,670	556	9,305,970,390
403	4,670,543,370	459	4,272,626,480	441	4,694,234,350	482	5,974,687,000	582	7,635,341,610	423	6,510,060,100

※ 국적변경 시 2개의 국적으로 각각 산정하므로, 수급자 국가별 합이 합계와 다를 수 있음

4-10. 주요 질병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명, 원)

연 도	구 분	진 폐	뇌·심혈관	CS2	근골격계
'07	수 급 자 수	12,359	10,630	849	14,994
	금 액	274,067,698,790	306,647,338,010	28,384,309,000	163,328,916,808
'08	수 급 자 수	12,607	11,482	843	15,144
	금 액	288,519,237,635	325,618,409,027	30,691,762,570	155,593,017,380
'09	수 급 자 수	12,452	11,983	848	13,722
	금 액	292,944,676,060	310,987,688,000	32,501,414,870	136,029,539,700
'10	수 급 자 수	16,083	11,576	826	10,917
	금 액	287,423,923,100	306,821,507,580	29,411,539,810	117,475,093,390
'11	수 급 자 수	17,869	11,980	838	10,177
	금 액	339,958,408,870	304,376,619,590	32,358,097,550	96,101,389,930
'12	수 급 자 수	18,196	11,109	832	7,083
	금 액	345,290,389,350	319,921,753,210	33,783,497,550	95,675,326,980
'13	수 급 자 수	18,167	11,313	824	7,372
	금 액	357,378,480,620	329,683,345,640	33,373,727,370	101,391,194,220
'14	수 급 자 수	18,374	11,610	814	7,436
	금 액	367,044,977,850	345,065,841,840	33,820,985,110	114,237,459,320
'15	수 급 자 수	18,276	11,804	806	9,162
	금 액	373,239,356,650	362,470,524,040	33,964,839,050	131,570,976,390
'16	수 급 자 수	18,434	11,997	792	9,262
	금 액	386,346,629,610	373,138,445,330	33,373,937,500	127,944,735,010
'17	수 급 자 수	18,432	12,359	782	10,407
	금 액	395,115,482,000	392,108,411,660	33,644,197,140	136,635,098,130
'18	수 급 자 수	18,589	14,568	774	10,575
	금 액	500,938,382,650	480,388,227,920	33,796,843,120	186,187,967,110
'19	수 급 자 수	18,977	16,133	763	14,744
	금 액	492,637,903,550	541,131,996,020	33,930,177,670	281,984,426,910

※ CS2의 경우 '피부질환'과 '기타질환'을, 근골격계는('10년부터)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제외)' 및 '진동으로 인한 증상'을 각각 포함



## 4-11.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단위 : 건, 원)

연 도	건 수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2007	153,202	232,063,855,042
2008	160,304	230,870,260,480
2009	162,240	212,168,256,613
2010	226,495	279,138,386,990
2011	220,178	253,114,067,696
2012	260,527	281,515,203,900
2013	200,279	239,875,090,390
2014	212,404	257,347,984,260
2015	224,026	277,391,727,850
2016	238,124	298,501,332,830
2017	253,009	326,157,293,770
2018	319,873	463,026,612,670
2019	431,966	678,511,217,220

※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수혜현황은 최저보상기준금액(장해급여, 유족급여)과 최저임금액(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적용받아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말함

4-12.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합계	<b>합 계</b>	<b>324 3,211,818,030</b>	<b>321 3,281,677,060</b>	<b>281 3,071,414,360</b>	<b>321 3,263,207,900</b>	<b>332 3,129,532,170</b>				
	요양급여	274 815,925,670	269 826,585,990	223 814,114,620	256 801,545,320	257 901,815,600				
	휴업급여	161 863,338,970	131 743,312,190	137 578,094,440	144 450,736,370	142 486,735,050				
	장해급여	89 1,225,829,850	85 1,432,350,930	92 1,423,878,880	97 1,663,074,340	79 1,312,656,810				
	유족급여	13 237,527,630	13 208,692,110	13 177,102,150	16 225,352,040	20 310,928,340				
	상병보상연금	3 30,009,250	3 42,570,870	2 32,384,840	2 19,477,910	1 19,477,790				
	장 의 비	3 29,118,110	1 8,794,710	- -	3 31,260,860	4 41,669,120				
	간 병 급여	1 10,068,550	3 17,078,300	4 35,966,390	5 50,828,730	5 50,785,060				
재활급여	- -	2 2,291,960	4 9,873,040	3 20,932,330	1 5,464,400					
금융 및 보험업	<b>합 계</b>	<b>2 1,199,750</b>	<b>1 1,815,340</b>	<b>1 7,631,990</b>	<b>2 3,512,670</b>	<b>1 52,439,690</b>				
	요양급여	2 1,199,750	1 1,815,340	1 7,631,990	2 378,850	- -				
	휴업급여	- -	- -	- -	1 3,133,820	- -				
	장해급여	- -	- -	- -	- -	1 52,439,690				
	유족급여	- -	- -	- -	- -	- -				
	상병보상연금	- -	- -	- -	- -	- -				
	장 의 비	- -	- -	- -	- -	- -				
	간 병 급여	- -	- -	- -	- -	- -				
재활급여	- -	- -	- -	- -	- -					
광업	<b>합 계</b>	<b>1 23,271,210</b>	<b>2 94,983,230</b>	<b>1 26,287,920</b>	<b>2 31,742,430</b>	<b>2 32,709,560</b>				
	요양급여	- -	2 16,673,390	- -	2 3,032,730	1 2,941,840				
	휴업급여	- -	1 19,574,960	- -	1 1,481,340	1 1,535,920				
	장해급여	1 23,271,210	2 58,734,880	1 26,287,920	1 27,228,360	1 28,231,800				
	유족급여	- -	- -	- -	- -	- -				
	상병보상연금	- -	- -	- -	- -	- -				
	장 의 비	- -	- -	- -	- -	- -				
	간 병 급여	- -	- -	- -	- -	- -				
재활급여	- -	- -	- -	- -	- -					
제조업	<b>합 계</b>	<b>119 1,179,768,060</b>	<b>122 1,236,184,870</b>	<b>101 945,677,240</b>	<b>120 1,058,047,020</b>	<b>137 1,290,713,840</b>				
	요양급여	94 255,902,570	95 247,929,450	73 178,497,200	92 173,652,480	101 273,331,810				
	휴업급여	55 248,851,580	46 246,719,390	42 144,047,100	50 104,249,340	63 242,778,390				
	장해급여	42 483,684,080	41 601,271,740	38 523,827,800	44 661,754,870	38 615,152,960				
	유족급여	7 160,818,130	7 122,165,730	7 91,530,690	8 98,995,520	9 138,589,260				
	상병보상연금	- -	- -	- -	- -	- -				
	장 의 비	2 20,443,150	1 8,794,710	- -	1 9,300,770	1 13,051,700				
	간 병 급여	1 10,068,550	1 9,303,850	1 7,774,450	1 10,094,040	1 7,809,720				
재활급여	- -	- -	- -	-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b>합 계</b>	<b>- -</b>	<b>- -</b>	<b>1 1,083,540</b>	<b>1 15,197,090</b>	<b>- -</b>				
	요양급여	- -	- -	1 1,083,540	1 2,282,350	- -				
	휴업급여	- -	- -	- -	1 3,393,140	- -				
	장해급여	- -	- -	- -	1 9,521,600	- -				
	유족급여	- -	- -	- -	- -	- -				
	상병보상연금	- -	- -	- -	- -	- -				
	장 의 비	- -	- -	- -	- -	- -				
	간 병 급여	- -	- -	- -	- -	- -				
재활급여	- -	- -	- -	- -	- -					





(단위 : 명, 원)

'15		'16		'17		'18		'19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b>343</b>	<b>3,230,285,110</b>	<b>368</b>	<b>3,999,372,270</b>	<b>390</b>	<b>4,341,024,980</b>	<b>456</b>	<b>4,915,152,970</b>	<b>486</b>	<b>5,332,284,480</b>
277	773,875,680	296	1,180,626,510	301	1,199,604,290	357	1,238,317,780	384	1,170,756,960
138	575,399,080	158	563,493,740	166	731,215,880	229	1,023,384,020	219	1,305,277,620
93	1,454,268,220	90	1,479,165,080	91	1,488,779,760	107	1,793,482,120	103	1,839,651,770
21	298,171,900	30	564,683,660	33	732,577,180	36	584,129,620	35	784,036,070
2	48,285,680	3	66,574,490	3	103,829,490	5	166,915,110	5	133,230,490
2	23,423,700	9	91,211,940	2	29,063,380	4	46,271,520	3	45,694,270
5	56,860,850	5	53,616,850	5	55,955,000	6	62,652,800	6	53,637,300
-	-	-	-	-	-	-	-	-	-
<b>1</b>	<b>1,238,650</b>	-	-	<b>1</b>	<b>306,960</b>	-	-	-	-
1	943,260	-	-	1	306,960	-	-	-	-
1	295,3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3</b>	<b>45,449,290</b>	<b>2</b>	<b>54,143,120</b>	<b>3</b>	<b>41,261,150</b>	<b>1</b>	<b>32,025,840</b>	<b>2</b>	<b>61,389,180</b>
2	9,116,650	1	3,284,810	2	3,626,760	-	-	1	2,027,620
1	7,410,240	1	10,887,120	1	1,035,200	-	-	1	14,362,000
1	28,922,400	2	39,971,190	2	36,599,190	1	32,025,840	2	44,999,5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135</b>	<b>1,573,551,870</b>	<b>122</b>	<b>1,427,839,840</b>	<b>140</b>	<b>1,742,783,180</b>	<b>177</b>	<b>1,952,620,530</b>	<b>177</b>	<b>1,918,129,700</b>
104	313,179,580	91	310,043,590	98	331,842,210	133	345,468,370	133	353,467,420
52	235,417,090	44	129,367,780	58	235,145,250	86	327,519,490	71	476,109,120
51	866,590,340	42	730,030,020	42	691,557,490	51	983,324,490	50	811,652,260
10	136,858,820	14	211,433,720	16	444,304,650	16	275,089,280	15	268,556,100
-	-	-	-	-	-	-	-	-	-
1	9,812,340	4	37,768,980	2	29,063,380	1	10,376,150	-	-
1	11,693,700	1	9,195,750	1	10,870,200	1	10,842,750	1	8,344,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10		'11		'12		'13		'14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b>건설업</b>	<b>합 계</b>	<b>20 220,077,150</b>	<b>15 166,924,000</b>	<b>18 244,953,980</b>	<b>24 317,407,790</b>	<b>27 330,360,660</b>	요양급여	19	100,068,360	14	45,486,180	15	111,859,200	20	150,853,720	23	127,917,080
	휴업급여	13	57,525,420	4	37,706,330	11	48,883,930	11	51,512,260	13	52,389,260	13	52,389,260	11	51,512,260	13	52,389,260
	장해급여	2	47,073,270	4	68,430,350	5	73,376,550	6	105,737,960	5	94,358,160	5	94,358,160	6	105,737,960	5	94,358,160
	유족급여	-	-	-	-	-	-	-	-	1	36,614,050	-	-	-	-	-	-
	상해보상연금	1	15,410,100	1	12,126,390	-	-	-	-	-	-	-	-	-	-	-	-
	장의비	-	-	-	-	-	-	-	-	1	9,539,140	-	-	-	-	-	-
	간병급여	-	-	1	2,319,590	1	9,329,340	1	9,303,850	1	9,542,970	1	9,542,970	1	9,303,850	1	9,542,970
	재활급여	-	-	1	855,160	1	1,504,960	-	-	-	-	-	-	-	-	-	-
<b>운수·창고 및 통신업</b>	<b>합 계</b>	<b>41 368,382,510</b>	<b>39 317,365,400</b>	<b>30 390,844,920</b>	<b>34 219,793,920</b>	<b>34 279,866,150</b>	요양급여	33	101,530,720	30	146,770,630	22	125,872,350	25	24,629,470	34	279,866,150
	휴업급여	15	87,442,930	11	38,780,080	12	69,368,700	17	41,316,810	9	35,592,140	9	35,592,140	9	41,316,810	9	35,592,140
	장해급여	13	127,104,940	8	77,994,340	11	141,612,590	9	84,942,250	10	137,820,190	10	137,820,190	9	84,942,250	10	137,820,190
	유족급여	3	29,961,260	3	39,552,020	3	38,791,300	4	40,431,850	4	44,064,570	4	44,064,570	4	40,431,850	4	44,064,570
	상해보상연금	1	13,667,700	1	14,268,330	1	15,199,980	1	1,293,650	-	-	-	-	1	1,293,650	-	-
	장의비	1	8,674,960	-	-	-	-	1	9,300,770	-	-	-	-	1	9,300,770	-	-
	간병급여	-	-	-	-	-	-	1	12,772,160	1	14,315,060	1	14,315,060	1	12,772,160	1	14,315,060
	재활급여	-	-	-	-	-	-	1	5,106,960	-	-	-	-	1	5,106,960	-	-
<b>임업</b>	<b>합 계</b>	<b>21 198,011,990</b>	<b>19 260,359,110</b>	<b>16 157,684,120</b>	<b>11 110,833,790</b>	<b>10 81,181,770</b>	요양급여	18	66,695,330	17	48,460,480	13	22,050,110	9	17,636,830	6	2,200,170
	휴업급여	12	65,138,950	14	82,471,050	9	32,287,900	6	36,572,910	5	18,618,110	5	18,618,110	6	36,572,910	5	18,618,110
	장해급여	3	48,638,790	6	106,381,320	6	77,997,010	2	31,300,440	2	35,034,960	2	35,034,960	2	31,300,440	2	35,034,960
	유족급여	1	17,538,920	1	17,591,400	1	16,019,760	1	16,019,760	1	15,785,560	1	15,785,560	1	16,019,760	1	15,785,560
	상해보상연금	-	-	-	-	-	-	-	-	-	-	-	-	-	-	-	-
	장의비	-	-	-	-	-	-	-	-	-	-	-	-	-	-	-	-
	간병급여	-	-	1	5,454,860	1	9,329,340	1	9,303,850	1	9,542,970	1	9,542,970	1	9,303,850	1	9,542,970
	재활급여	-	-	-	-	-	-	-	-	-	-	-	-	-	-	-	-
<b>어업</b>	<b>합 계</b>	<b>2 7,519,740</b>	<b>3 14,614,650</b>	<b>- -</b>	<b>- -</b>	<b>- -</b>	요양급여	2	798,540	3	2,234,610	-	-	-	-	-	-
	휴업급여	1	6,721,200	2	12,380,040	-	-	-	-	-	-	-	-	-	-	-	-
	장해급여	-	-	-	-	-	-	-	-	-	-	-	-	-	-	-	-
	유족급여	-	-	-	-	-	-	-	-	-	-	-	-	-	-	-	-
	상해보상연금	-	-	-	-	-	-	-	-	-	-	-	-	-	-	-	-
	장의비	-	-	-	-	-	-	-	-	-	-	-	-	-	-	-	-
	간병급여	-	-	-	-	-	-	-	-	-	-	-	-	-	-	-	-
	재활급여	-	-	-	-	-	-	-	-	-	-	-	-	-	-	-	-
<b>농업</b>	<b>합 계</b>	<b>1 21,990</b>	<b>1 4,287,130</b>	<b>3 4,107,650</b>	<b>2 142,639,490</b>	<b>2 59,079,100</b>	요양급여	1	21,990	1	2,689,060	3	2,857,350	2	118,498,210	2	39,173,550
	휴업급여	-	-	1	1,598,070	2	1,250,300	1	24,141,280	1	3,212,670	1	3,212,670	1	24,141,280	1	3,212,670
	장해급여	-	-	-	-	-	-	-	-	-	-	-	-	-	-	-	-
	유족급여	-	-	-	-	-	-	-	-	1	7,153,740	-	-	-	-	-	-
	상해보상연금	-	-	-	-	-	-	-	-	-	-	-	-	-	-	-	-
	장의비	-	-	-	-	-	-	-	-	1	9,539,140	-	-	-	-	-	-
	간병급여	-	-	-	-	-	-	-	-	-	-	-	-	-	-	-	-
	재활급여	-	-	-	-	-	-	-	-	-	-	-	-	-	-	-	-
<b>기타의 사업</b>	<b>합 계</b>	<b>117 1,213,565,630</b>	<b>119 1,185,143,330</b>	<b>110 1,293,143,000</b>	<b>125 1,364,033,700</b>	<b>119 1,003,181,400</b>	요양급여	105	289,708,410	106	314,526,850	95	364,262,880	103	310,580,680	100	408,176,960
	휴업급여	65	397,658,890	52	304,082,270	61	282,256,510	56	184,935,470	50	132,608,560	50	132,608,560	50	184,935,470	50	132,608,560
	장해급여	28	496,057,560	24	519,538,300	31	580,777,010	34	742,588,860	22	349,619,050	22	349,619,050	34	742,588,860	22	349,619,050
	유족급여	2	29,209,320	2	29,382,960	2	30,760,400	3	69,904,910	4	68,721,160	4	68,721,160	3	69,904,910	4	68,721,160
	상해보상연금	1	931,450	1	16,176,150	1	17,184,860	1	18,184,260	1	19,477,790	1	19,477,790	1	18,184,260	1	19,477,790
	장의비	-	-	-	-	-	-	1	12,659,320	1	9,539,140	1	9,539,140	1	12,659,320	1	9,539,140
	간병급여	-	-	-	-	1	9,533,260	1	9,354,830	1	9,574,340	1	9,574,340	1	9,354,830	1	9,574,340
	재활급여	-	-	1	1,436,800	3	8,368,080	2	15,825,370	1	5,464,400	1	5,464,400	2	15,825,370	1	5,464,400



(단위 : 명, 원)

'15		'16		'17		'18		'19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b>34</b>	<b>301,705,720</b>	<b>44</b>	<b>536,006,330</b>	<b>52</b>	<b>565,336,360</b>	<b>45</b>	<b>468,349,150</b>	<b>52</b>	<b>460,627,790</b>
31	118,733,480	39	217,003,720	44	245,094,880	39	178,239,370	45	119,925,240
16	49,040,130	25	92,338,070	21	88,241,150	23	70,889,870	23	124,757,930
7	91,579,280	9	152,874,510	8	119,177,840	9	90,220,290	7	143,799,760
1	4,910,640	2	18,087,600	3	66,759,650	4	37,574,180	4	46,891,870
1	27,422,940	1	35,843,390	1	36,043,590	2	71,466,110	2	5,873,290
-	-	1	9,812,340	-	-	1	10,763,580	-	-
1	10,019,250	1	10,046,700	1	10,019,250	1	9,195,750	2	19,379,700
-	-	-	-	-	-	-	-	-	-
<b>33</b>	<b>322,765,720</b>	<b>53</b>	<b>648,490,550</b>	<b>48</b>	<b>595,902,680</b>	<b>60</b>	<b>506,748,770</b>	<b>53</b>	<b>287,678,980</b>
24	76,335,040	43	265,582,050	37	197,361,090	43	91,844,900	42	76,790,620
15	74,045,740	20	136,483,060	27	148,735,860	31	109,542,940	30	123,168,270
11	119,624,260	11	131,161,160	15	187,267,960	14	186,597,380	6	63,186,290
3	37,733,630	4	90,383,720	4	47,510,720	5	86,125,950	2	24,533,800
-	-	-	-	-	-	-	-	-	-
-	-	1	9,812,340	-	-	1	10,061,800	-	-
1	15,027,050	1	15,068,220	1	15,027,050	2	22,575,800	-	-
-	-	-	-	-	-	-	-	-	-
<b>9</b>	<b>109,837,810</b>	<b>10</b>	<b>113,392,840</b>	<b>11</b>	<b>187,007,940</b>	<b>11</b>	<b>276,383,030</b>	<b>10</b>	<b>343,839,000</b>
6	3,906,190	5	8,635,140	6	51,023,390	6	118,905,470	5	115,411,300
4	16,505,040	3	7,866,350	3	14,040,780	5	42,570,060	3	39,764,270
2	35,034,960	2	35,034,960	3	55,600,840	4	48,125,730	4	117,687,900
2	30,761,010	3	41,747,890	3	56,323,680	3	56,762,520	3	60,956,280
-	-	-	-	-	-	-	-	-	-
1	13,611,360	1	10,061,800	-	-	-	-	-	-
1	10,019,250	1	10,046,700	1	10,019,250	1	10,019,250	1	10,019,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4</b>	<b>28,687,530</b>	<b>6</b>	<b>25,373,850</b>	<b>3</b>	<b>11,050,050</b>	<b>1</b>	<b>11,169,920</b>	<b>2</b>	<b>13,873,540</b>
4	6,718,050	5	5,857,480	2	571,290	-	-	1	1,194,940
2	12,148,200	3	2,600,870	-	-	-	-	-	-
-	-	1	6,803,940	-	-	-	-	-	-
1	9,821,280	1	10,111,560	1	10,478,760	1	11,169,920	1	12,678,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124</b>	<b>847,048,520</b>	<b>131</b>	<b>1,194,125,740</b>	<b>132</b>	<b>1,197,376,660</b>	<b>161</b>	<b>1,667,855,730</b>	<b>190</b>	<b>2,246,746,290</b>
105	244,943,430	112	370,219,720	111	369,777,710	136	503,859,670	157	501,939,820
47	180,537,250	62	183,950,490	56	244,017,640	84	472,861,660	91	527,116,030
21	312,516,980	23	383,289,300	21	398,576,440	28	453,188,390	34	658,326,000
4	78,086,520	6	192,919,170	6	107,199,720	7	117,407,770	10	370,419,420
1	20,862,740	2	30,731,100	2	67,785,900	3	95,449,000	3	127,357,200
-	-	2	23,756,480	-	-	1	15,069,990	3	45,694,270
1	10,101,600	1	9,259,480	1	10,019,250	1	10,019,250	2	15,893,550
-	-	-	-	-	-	-	-	-	-

4-13. 사업종류별(중분류)·연금종류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사 업 종 류	구 분	상 병 보 상 연 금		장 해 보 상 연 금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b>전 산 업</b>		<b>3,943</b>	<b>148,719,616,380</b>	<b>52,879</b>	<b>1,331,728,381,580</b>
<b>금 용 및 보 험 업</b>		<b>38</b>	<b>2,041,291,860</b>	<b>265</b>	<b>9,784,514,450</b>
금 용 및 보 험 업		38	2,041,291,860	265	9,784,514,450
<b>광 업</b>		<b>1,073</b>	<b>41,194,035,050</b>	<b>2,415</b>	<b>91,145,374,020</b>
석 탄 광 업		993	38,439,919,810	1,970	78,118,920,800
금 속 및 비 금 속 광 업		56	1,940,027,710	80	3,006,396,600
채 석 업		6	195,208,440	72	2,290,020,040
석 회 석 광 업		3	78,035,290	73	1,973,672,440
제 업 업		-	-	1	21,931,450
기 타 광 업		11	369,758,490	197	5,250,342,310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		5	171,085,310	22	484,090,380
<b>제 조 업</b>		<b>917</b>	<b>33,818,764,430</b>	<b>22,630</b>	<b>499,950,857,950</b>
식 료 품 제 조 업		51	1,465,939,680	1,356	24,251,355,990
담 배 제 조 업		-	-	8	180,090,11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갑)		10	330,387,230	318	6,788,054,580
제 재 및 베 니 아 판 제 조 업		7	287,447,600	201	4,040,433,550
목 제 품 제 조 업 (*19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15	572,849,490	531	9,303,308,250
펄 프 및 지 류 제 조 업		10	278,041,820	463	10,025,269,130
출판·인쇄·계본또는인쇄물가공업		9	401,109,740	105	2,891,193,550
인 쇄 업		4	171,991,830	179	3,982,352,620
경 인 쇄 업		-	-	7	187,989,900
화 학 제 품 제 조 업 (*19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65	2,626,715,580	2,119	43,126,052,190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제조		3	129,788,590	85	1,979,930,240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		3	119,175,740	2	51,121,440
고 무 제 품 제 조 업		12	362,403,800	430	9,196,380,700
도 자 기 제 품 제 조 업		11	521,020,030	48	1,007,325,980
유 리 제 조 업 (*19 유리·도자·시멘트제조업)		12	415,019,960	195	4,259,975,940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18	570,736,670	407	8,960,342,280
시 멘 트 제 조 업		-	-	72	2,053,944,68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10.5.20.) 및 시행(2010.11.21.)으로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 신설



(단위 : 명, 원)

진 폐 보 상 연 금		유 족 보 상 연 금		진 폐 유 족 연 금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11,002	189,564,742,000	28,376	560,519,728,380	1,338	26,015,135,130
48	744,420,570	390	12,820,030,150	6	84,538,340
48	744,420,570	390	12,820,030,150	6	84,538,340
8,484	141,191,187,330	4,618	76,126,313,170	1,151	22,324,918,530
7,740	128,439,509,520	4,022	66,428,365,070	1,011	19,702,316,480
293	4,624,838,140	277	4,073,346,270	68	1,141,174,660
236	4,119,191,820	79	1,369,719,840	33	715,505,410
68	1,209,998,010	60	1,138,199,770	5	114,776,980
-	-	1	20,346,720	-	-
107	1,799,642,350	149	2,638,842,240	20	405,208,080
55	998,007,490	30	457,493,260	14	245,936,920
1,720	32,267,006,240	7,279	158,082,486,460	117	2,225,001,180
-	-	418	7,815,443,220	-	-
-	-	2	31,083,580	-	-
-	-	134	2,147,006,150	-	-
1	14,629,200	43	697,522,220	-	-
1	14,629,200	151	2,461,104,060	-	-
-	-	133	2,692,615,980	-	-
-	-	84	1,919,265,300	-	-
-	-	39	726,686,790	-	-
-	-	-	-	-	-
10	181,245,500	700	15,062,827,860	1	19,261,200
-	-	40	1,338,401,930	-	-
22	330,789,650	5	83,454,410	3	42,936,680
3	50,571,240	133	2,846,623,860	1	14,629,200
55	821,357,690	43	750,735,260	5	84,444,150
30	451,134,970	87	1,773,263,920	2	42,751,200
103	1,686,470,340	266	4,606,531,850	8	139,242,210
18	298,017,610	38	1,048,634,440	4	82,285,170

사업종류	구 분	상 병 보 상 연 금		장 해 보 상 연 금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시멘트원료채굴 / 제조		2	120,804,000	34	1,218,328,090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제조업		107	3,463,260,230	2,837	53,182,915,790
금속제련업		5	159,047,310	133	3,966,786,440
금속재료품제조업		35	1,193,669,770	793	19,910,577,550
금속제품제조 / 가공		31	1,444,765,930	1,087	25,564,376,040
도금업		14	425,892,070	236	5,253,495,730
기계기구제조업		134	4,988,596,060	2,885	67,739,061,450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		20	642,054,420	506	10,918,479,850
전자제품제조업		28	1,228,015,330	478	11,322,315,040
선박건조및수리업		59	2,662,997,610	1,986	58,683,645,410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43	1,582,718,300	1,163	30,095,792,090
계량기·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		7	240,394,300	153	3,354,106,800
수제품제조업 (19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29	905,527,210	123	2,759,473,470
기타제조업		36	1,118,105,710	1,072	21,790,910,82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을)		106	4,237,452,000	934	19,176,946,970
금속제품제조 / 가공(을)		-	-	70	1,479,948,240
수송용기계제조업(을)		23	899,100,490	1,547	29,515,556,710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5	155,785,700	54	1,133,890,540
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2	87,155,720	17	397,244,620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	-	3	37,664,150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	10,794,510	7	164,221,020
<b>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b>		<b>11</b>	<b>619,432,140</b>	<b>121</b>	<b>4,758,962,310</b>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1	619,432,140	121	4,758,962,310
<b>건 설 업</b>		<b>1,003</b>	<b>41,061,898,870</b>	<b>15,985</b>	<b>472,388,150,000</b>
일반건설공사(갑)		974	39,404,374,600	15,523	455,512,740,160
중건설공사		15	801,116,100	193	6,874,158,950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1	47,030,900	19	642,071,590
일반건설공사(을)		13	809,377,270	250	9,359,179,300
<b>운송·창고및통신업</b>		<b>214</b>	<b>7,305,116,090</b>	<b>3,088</b>	<b>73,544,443,010</b>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5	188,617,210	72	2,492,477,390
자동차여객운수업 (19육상및수상운수업)		83	2,438,577,470	1,062	21,806,794,350
소형자동차운수업		16	473,206,650	246	4,847,552,860



(단위 : 명, 원)

진 폐 보 상 연 금		유 족 보 상 연 금		진 폐 유 족 연 금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4	48,764,000	3	73,277,330	-	-
1,256	24,160,183,080	1,093	21,144,686,830	72	1,402,636,230
22	371,858,810	113	3,312,403,240	2	40,029,630
46	902,401,420	302	6,600,607,170	8	152,374,880
3	52,463,640	107	2,056,738,300	-	-
4	53,900,160	109	1,995,862,480	1	22,607,520
18	300,689,780	899	20,146,956,460	1	19,205,190
1	17,487,840	197	5,896,690,310	-	-
1	25,882,620	259	7,123,834,930	-	-
31	550,182,210	456	12,729,920,300	2	37,236,720
9	151,095,440	370	9,958,685,090	1	27,946,750
3	46,746,240	57	1,341,801,990	-	-
61	1,084,067,130	63	1,060,550,060	2	36,618,630
6	131,731,090	350	6,233,058,820	-	-
-	-	316	6,302,613,020	1	23,465,700
-	-	-	-	-	-
2	29,258,400	202	4,653,551,600	-	-
-	-	55	1,022,483,730	-	-
-	-	5	73,698,370	-	-
12	184,456,140	2	27,163,070	3	37,330,120
17	306,992,840	12	326,702,530	-	-
<b>1</b>	<b>14,629,200</b>	<b>141</b>	<b>4,955,126,280</b>	-	-
1	14,629,200	141	4,955,126,280	-	-
<b>625</b>	<b>12,786,306,840</b>	<b>6,969</b>	<b>143,398,878,040</b>	<b>41</b>	<b>877,786,610</b>
618	12,665,840,400	6,932	142,623,543,740	41	877,786,610
6	101,662,800	17	309,075,150	-	-
-	-	2	57,077,540	-	-
1	18,803,640	18	409,181,610	-	-
<b>18</b>	<b>293,584,520</b>	<b>2,325</b>	<b>40,414,853,360</b>	<b>7</b>	<b>122,392,090</b>
-	-	115	4,242,130,030	-	-
2	30,603,720	1,009	13,407,930,410	-	-
-	-	76	749,255,590	-	-

사업종류	구분	상해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화물자동차운수업		35	1,284,637,270	565	14,576,433,000
수상운수업		21	696,378,210	429	9,410,814,000
항만하역화물취급사업		13	546,387,850	228	6,391,561,930
항공운수업		4	146,003,120	26	905,620,670
운수관련서비스업 (19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		12	401,386,380	140	3,346,375,120
창고업		7	270,916,760	100	2,060,698,410
통신업		14	738,323,480	206	7,474,394,740
소형화물운수·택배·퀵서비스업		4	120,681,690	15	231,720,540
<b>임업</b>		<b>18</b>	<b>645,284,230</b>	<b>291</b>	<b>5,484,679,000</b>
임업		16	585,195,490	154	3,088,420,120
기타의임업		2	60,088,740	137	2,396,258,880
<b>어업</b>		<b>4</b>	<b>112,079,170</b>	<b>41</b>	<b>775,447,730</b>
어업		1	25,122,630	33	663,535,100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3	86,956,540	8	111,912,630
<b>농업</b>		<b>13</b>	<b>434,116,860</b>	<b>128</b>	<b>2,333,817,310</b>
농업		13	434,116,860	128	2,333,817,310
<b>기타의사업</b>		<b>653</b>	<b>21,487,597,680</b>	<b>7,921</b>	<b>171,562,135,800</b>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	18	273,489,710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9건물종합관리및유사서비스업)		75	1,724,959,170	1,217	20,054,919,200
위생및유사서비스업		58	1,913,216,220	928	19,342,053,060
중기관리사업		13	504,662,000	297	8,351,481,790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4	194,026,130	69	1,791,309,210
기타의각종사업		360	12,557,201,220	4,581	104,853,988,650
해외파견사업		1	60,123,990	19	681,928,160
전문기술서비스업		30	1,296,806,290	127	3,805,912,59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8	474,168,930	191	3,959,771,780
교육서비스업		11	316,833,010	81	1,345,898,900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71	2,146,824,710	322	5,951,859,900
부동산업및임대업		-	-	8	137,836,960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12	298,776,010	32	464,081,050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		-	-	13	187,149,760
사업서비스업		-	-	13	180,925,000
주한미군		-	-	7	179,530,080





(단위 : 명, 원)

진 폐 보 상 연 금		유 족 보 상 연 금		진 폐 유 족 연 금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	-	241	3,648,942,420	-	-
12	189,414,360	340	6,299,536,040	3	53,162,770
4	61,375,440	89	1,528,842,220	4	69,229,320
-	-	27	785,714,130	-	-
1	12,191,000	197	3,866,521,400	-	-
-	-	76	1,402,663,730	-	-
-	-	136	4,152,123,600	-	-
-	-	21	331,193,790	-	-
-	-	<b>291</b>	<b>4,109,222,070</b>	-	-
-	-	222	3,329,716,960	-	-
-	-	69	779,505,110	-	-
-	-	<b>34</b>	<b>368,832,460</b>	-	-
-	-	29	330,681,910	-	-
-	-	5	38,150,550	-	-
-	-	<b>120</b>	<b>2,003,860,920</b>	-	-
-	-	120	2,003,860,920	-	-
<b>118</b>	<b>2,267,607,300</b>	<b>6,217</b>	<b>118,240,125,470</b>	<b>17</b>	<b>380,498,380</b>
-	-	9	156,256,920	-	-
25	449,206,410	1,268	14,206,211,440	4	101,369,870
4	77,077,350	735	11,987,857,940	-	-
2	29,258,400	111	1,812,184,620	-	-
-	-	34	643,001,530	-	-
65	1,248,920,660	2,817	59,165,938,640	10	220,882,000
1	17,487,840	42	1,387,132,780	-	-
1	17,487,840	294	9,619,355,080	-	-
-	-	146	2,885,955,280	-	-
-	-	61	1,065,725,940	-	-
17	363,348,280	461	9,948,096,690	1	22,607,520
3	64,820,520	23	582,372,030	-	-
-	-	60	1,414,315,910	1	16,831,730
-	-	78	1,288,236,690	1	18,807,260
-	-	73	1,811,282,500	-	-
-	-	11	266,201,480	-	-



## 4-14. 연도별·급여종류별 연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원)

구 분	합 계		장 해 보 상 연 금		유 족 보 상 연 금		상 병 보 상 연 금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80	2	5,895,414	2	5,895,414				
'81	3	7,192,216	3	7,192,216				
'82	22	61,835,014	22	61,835,014				
'83	236	131,472,580	30	87,220,168			206	44,252,412
'84	402	760,617,291	65	195,113,113	3	5,227,970	334	560,276,208
'85	255	1,041,050,860	101	318,471,320	3	20,327,630	151	702,251,910
'86	674	1,456,230,920	144	466,832,840	11	40,125,040	519	949,273,040
'87	1,195	2,312,326,700	228	627,223,520	36	115,653,480	931	1,569,449,700
'88	1,818	4,134,779,900	286	974,220,790	23	127,174,220	1,509	3,033,384,890
'89	2,223	9,652,245,260	588	4,209,235,690	43	176,679,490	1,592	5,266,330,080
'90	2,915	16,736,201,690	913	8,957,871,790	48	282,456,460	1,954	7,495,873,440
'91	3,209	24,410,031,560	1,144	13,990,150,600	62	367,463,300	2,003	10,052,417,660
'92	3,927	36,388,097,310	1,565	22,305,578,470	68	467,459,480	2,294	13,615,059,360
'93	4,290	43,959,294,070	1,905	26,837,526,270	82	670,012,000	2,303	16,451,755,800
'94	4,995	53,685,436,970	2,454	32,024,530,650	110	1,100,082,210	2,431	20,560,824,110
'95	5,963	68,361,386,970	3,124	41,496,811,070	135	1,307,529,160	2,704	25,557,046,740
'96	7,048	95,076,434,990	4,111	60,410,112,760	154	1,883,834,620	2,783	32,782,487,610
'97	8,272	123,197,020,940	4,989	79,441,014,910	178	2,573,781,410	3,105	41,182,224,620
'98	9,590	152,684,980,560	5,897	97,899,339,360	192	2,992,051,400	3,501	51,793,589,800
'99	11,095	177,915,863,700	6,989	111,997,334,950	231	3,836,178,980	3,875	62,082,349,770
'00	13,311	214,545,399,830	8,380	136,705,792,640	770	6,161,771,140	4,161	71,677,836,050
'01	17,426	266,593,031,780	10,428	168,120,367,450	2,500	17,711,567,850	4,498	80,761,096,480



(단위 : 명, 원)

구 분	합 계		장 해 보 상 연 금		유 족 보 상 연 금		상 병 보 상 연 금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02	21,657	339,667,274,720	12,499	211,553,215,240	4,232	33,979,510,380	4,926	94,134,549,100
'03	26,638	415,616,318,330	15,157	254,930,157,310	6,223	55,348,708,490	5,258	105,337,452,530
'04	32,003	523,814,849,530	18,250	322,658,082,730	8,093	78,013,737,970	5,660	123,143,028,830
'05	38,141	661,049,064,410	22,427	416,402,113,270	9,776	104,301,741,810	5,938	140,345,209,330
'06	45,383	822,362,488,590	27,772	536,079,724,330	11,429	134,702,574,010	6,182	151,580,190,250
'07	51,704	1,007,009,519,320	32,368	667,379,799,790	13,109	177,393,409,190	6,227	162,236,310,340
'08	58,284	1,091,978,302,570	37,174	722,597,588,480	14,662	193,222,492,850	6,448	176,158,221,240
'09	61,932	1,156,590,451,390	39,349	748,155,724,540	16,051	218,478,653,650	6,532	189,956,073,200
'10	76,251	1,271,200,468,810	52,272	844,360,378,060	17,528	243,974,426,560	6,451	182,865,664,190
'11	80,690	1,414,434,623,750	56,016	972,487,513,150	18,799	269,083,998,710	5,875	172,863,111,890
'12	84,173	1,657,975,843,070	58,091	1,153,332,603,120	20,187	309,432,135,060	5,895	195,211,104,890
'13	85,606	1,609,596,090,520	58,723	1,102,438,480,350	21,622	337,760,163,520	5,261	169,397,446,650
'14	87,688	1,711,073,321,650	59,673	1,169,666,684,150	22,957	374,891,056,990	5,058	166,515,580,510
'15	89,495	1,797,312,203,490	60,439	1,226,308,627,650	24,203	408,431,910,140	4,853	162,571,665,700
'16	91,307	1,879,662,611,240	61,246	1,279,337,084,020	25,418	441,448,551,510	4,643	158,876,975,710
'17	93,200	1,971,153,776,780	62,098	1,338,257,852,130	26,702	480,256,398,740	4,400	152,639,525,910
'18	95,489	2,128,270,025,360	63,060	1,440,918,419,900	28,237	533,250,974,510	4,192	154,100,630,950
'19	97,532	2,256,547,603,470	63,875	1,521,293,123,580	29,714	586,534,863,510	3,943	148,719,616,38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10.5.20.) 및 시행(2010.11.21.)으로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 신설되어, 장해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각각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합산한 금액임



## 4-15. 연도별·장해등급별(1-14급) 장해급여 지급 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합 계	88,863	1,397,872,234,060	91,906	1,509,244,845,760	95,229	1,712,958,058,080	93,524	1,629,026,710,510	93,689	1,667,219,394,800
1급	2,309	86,687,123,020	2,645	97,392,223,670	3,031	131,005,650,990	3,124	116,845,870,960	3,242	123,998,152,590
2급	3,351	96,755,726,540	3,680	105,648,421,900	3,980	132,190,481,030	3,984	121,956,659,360	4,030	128,539,508,760
3급	3,409	90,847,582,310	3,769	97,964,494,300	4,032	126,580,696,620	4,053	111,978,359,720	4,144	120,237,878,340
4급	2,306	55,266,865,830	2,392	58,170,103,500	2,490	69,294,389,370	2,545	65,153,671,900	2,592	68,464,811,980
5급	7,587	148,261,017,260	7,920	157,058,927,560	8,167	179,824,521,370	8,164	169,689,465,830	8,299	178,507,906,460
6급	14,156	239,870,192,610	14,458	248,759,914,040	14,747	278,996,884,570	14,745	268,460,403,580	14,787	276,144,950,680
7급	12,989	182,428,232,820	13,671	193,720,809,970	14,203	215,078,381,640	14,213	208,521,354,060	14,556	218,446,451,130
8급	2,100	69,958,131,340	1,903	66,660,017,890	1,827	63,407,074,400	1,585	61,629,337,940	1,323	52,967,319,640
9급	2,276	59,115,498,340	2,412	61,810,652,800	2,571	66,462,167,620	2,069	59,313,320,570	1,745	49,388,766,000
10급	5,400	119,910,485,280	4,866	109,558,247,070	5,130	121,040,248,150	4,519	111,435,866,640	3,501	89,024,670,360
11급	7,782	80,761,413,510	8,485	105,014,546,290	8,650	110,373,053,250	8,012	106,272,464,970	7,863	110,099,016,430
12급	9,723	108,734,401,440	9,442	110,993,594,820	9,215	113,099,591,950	9,082	115,873,959,380	9,424	127,059,541,470
13급	6,567	23,064,132,000	7,476	56,096,018,620	7,556	59,098,538,840	7,528	63,053,987,070	7,646	68,930,873,610
14급	9,180	36,206,948,070	9,584	40,396,873,330	10,576	46,506,378,280	10,758	48,841,988,530	11,567	55,409,547,350

※ 장해등급별 금액은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수급자수는 장해등급간 중복될 수 있음



(단위 : 명, 원)

'15		'16		'17		'18		'19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93,953	1,710,783,723,310	93,383	1,772,502,714,970	93,407	1,832,567,545,940	96,493	1,998,757,627,330	101,942	2,157,725,159,300
3,316	132,652,045,780	3,386	138,310,798,750	3,459	143,860,826,120	3,687	174,581,458,530	3,738	175,072,102,240
4,028	131,084,767,210	4,008	133,514,771,220	3,965	136,008,387,860	3,952	141,123,766,220	3,906	144,226,238,370
4,241	128,626,050,000	4,376	134,874,802,370	4,500	143,938,334,580	4,640	158,789,783,520	4,743	167,782,073,960
2,636	71,063,652,660	2,661	73,127,830,100	2,703	75,621,423,340	2,745	79,244,976,830	2,776	83,494,887,240
8,374	183,575,003,920	8,477	189,526,447,210	8,594	196,795,146,650	8,907	216,543,217,330	8,977	222,803,147,400
14,882	283,922,867,030	14,969	291,855,565,990	14,984	300,012,864,920	15,076	311,029,826,670	15,198	326,920,462,200
14,918	230,354,926,120	15,497	247,022,250,560	15,920	262,530,022,440	16,777	296,311,256,940	17,075	310,147,118,990
1,205	49,458,362,180	1,224	51,807,810,290	1,153	51,474,158,610	1,111	52,253,202,040	1,185	57,917,802,770
1,584	43,835,069,380	1,549	45,835,007,790	1,501	47,642,320,960	1,497	51,486,213,100	1,842	67,653,181,100
3,123	81,335,191,070	2,992	82,745,656,410	2,906	86,364,999,510	2,802	88,118,145,690	3,083	100,674,954,460
7,730	116,455,962,440	7,590	120,967,923,080	7,578	132,193,186,340	7,708	145,611,346,040	8,063	164,195,353,440
8,836	122,969,602,210	8,239	121,295,140,200	6,253	96,612,840,490	6,282	100,913,445,550	6,838	117,123,563,460
7,574	73,199,457,410	7,554	78,609,561,500	7,480	83,968,289,150	7,460	95,903,292,110	8,052	110,184,240,150
12,447	62,250,765,900	11,938	63,009,149,500	13,404	75,544,744,970	14,748	86,847,696,760	17,569	109,530,033,520

4-16. 연도별·장해등급별(1-7급)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합계	알수없음	1,201 60,107,265,630	1,069 52,093,720,320	1,179 52,219,138,640	737 38,454,374,810	524 29,484,440,080				
	연금	45,074 840,009,474,760	47,532 906,621,174,620	49,498 1,080,751,866,950	50,099 1,024,151,410,600	51,090 1,084,855,219,860				
1급	알수없음	7 655,170,520	7 610,984,590	3 100,548,710	3 253,112,330	3 199,400,470				
	연금	2,302 86,031,952,500	2,638 96,781,239,080	3,028 130,905,102,280	3,121 116,592,758,630	3,239 123,798,752,120				
2급	알수없음	5 380,640,830	3 346,329,700	5 456,652,170	3 271,733,100	3 331,469,300				
	연금	3,346 96,375,085,710	3,677 105,302,092,200	3,975 131,733,828,860	3,981 121,684,926,260	4,027 128,208,039,460				
3급	알수없음	2 186,058,400	5 328,133,900	3 261,104,540	2 139,657,230	3 248,171,700				
	연금	3,407 90,661,523,910	3,764 97,636,360,400	4,029 126,319,592,080	4,051 111,838,702,490	4,141 119,989,706,640				
4급	알수없음	23 1,667,691,680	30 1,944,543,540	40 1,868,229,480	22 1,619,300,620	20 1,519,105,470				
	연금	2,283 53,599,174,150	2,362 56,225,559,960	2,450 67,426,159,890	2,523 63,534,371,280	2,572 66,945,706,510				
5급	알수없음	163 9,286,088,900	147 8,580,683,360	192 8,645,260,620	92 5,403,452,700	79 5,204,958,720				
	연금	7,480 138,974,978,360	7,787 148,478,244,200	7,986 171,179,260,750	8,074 164,286,013,130	8,216 173,302,947,740				
6급	알수없음	292 15,235,774,170	258 13,169,525,520	314 14,943,118,960	184 10,352,490,350	102 6,167,222,690				
	연금	13,864 224,634,418,440	14,201 235,590,388,520	14,435 264,053,765,610	14,561 258,107,913,230	14,678 269,977,727,990				
7급	알수없음	709 32,695,891,130	619 27,113,519,710	622 25,944,224,160	431 20,414,628,480	314 15,814,111,730				
	연금	12,392 149,732,341,690	13,103 166,607,290,260	13,595 189,134,157,480	13,788 188,106,725,580	14,217 202,632,339,400				

※ 장해등급별 금액은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수급자수는 장해등급간 중복될 수 있음



(단위 : 명, 원)

'15		'16		'17		'18		'19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463	25,826,936,500	482	26,914,988,880	430	26,149,721,150	1,131	60,620,155,280	903	47,142,678,580
51,933	1,135,452,376,220	52,893	1,181,317,477,320	53,696	1,232,617,284,760	54,654	1,317,004,130,760	55,512	1,383,303,351,820
8	757,766,910	4	302,646,440	4	472,608,700	33	3,731,295,400	23	1,070,347,520
3,308	131,894,278,870	3,382	138,008,152,310	3,455	143,388,217,420	3,655	170,850,163,130	3,715	174,001,754,720
2	240,737,370	-	-	2	277,851,180	3	361,427,170	-	-
4,026	130,844,029,840	4,008	133,514,771,220	3,963	135,730,536,680	3,949	140,762,339,050	3,906	144,226,238,370
4	446,744,100	6	739,479,020	9	1,131,401,060	25	2,104,842,190	10	702,203,360
4,237	128,179,305,900	4,370	134,135,323,350	4,491	142,806,933,520	4,615	156,684,941,330	4,734	167,079,870,600
12	826,148,690	11	685,135,610	6	414,451,520	10	802,538,000	15	1,379,556,750
2,624	70,237,503,970	2,650	72,442,694,490	2,697	75,206,971,820	2,735	78,442,438,830	2,761	82,115,330,490
53	3,504,790,210	50	3,042,715,780	38	2,240,944,160	243	13,519,782,470	169	8,892,705,550
8,321	180,070,213,710	8,427	186,483,731,430	8,556	194,554,202,490	8,664	203,023,434,860	8,808	213,910,441,850
101	5,347,483,660	89	4,998,719,440	76	4,547,945,410	76	4,992,669,240	97	6,993,047,960
14,781	278,575,383,370	14,881	286,856,846,550	14,908	295,464,919,510	15,000	306,037,157,430	15,101	319,927,414,240
283	14,703,265,560	322	17,146,292,590	295	17,064,519,120	741	35,107,600,810	589	28,104,817,440
14,636	215,651,660,560	15,175	229,875,957,970	15,626	245,465,503,320	16,036	261,203,656,130	16,487	282,042,301,550

4-17. 연도별 유족급여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구 분	합 계		유 족 보 상 일 시 금		유 족 보 상 연 금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79		8,813,882,449		8,813,882,449		
'80		8,105,851,190		8,105,851,190		
'81		10,138,719,291		10,138,719,291		
'82		11,528,965,424		11,528,965,424		
'83		14,217,753,590		14,217,753,590		
'84		17,583,313,019		17,578,085,049		5,227,970
'85		20,741,446,080		20,721,118,450		20,327,630
'86		21,432,320,670		21,392,195,630		40,125,040
'87		23,691,260,440		23,575,606,960		115,653,480
'88		30,837,245,230		30,710,071,010		127,174,220
'89		37,696,616,210		37,519,936,720		176,679,490
'90		69,510,799,460		69,228,343,000		282,456,460
'91		92,712,604,020		92,345,140,720		367,463,300
'92		118,531,542,970		118,064,083,490		467,459,480
'93		107,052,635,330		106,382,623,330		670,012,000
'94		143,768,246,697		142,668,164,487		1,100,082,210
'95		160,912,268,070		159,604,738,910		1,307,529,160
'96		179,501,752,510		177,617,917,890		1,883,834,620
'97		198,638,429,080		196,064,647,670		2,573,781,410
'98	2,565	168,701,571,740	2,369	165,709,520,340	192	2,992,051,400
'99	2,395	157,741,932,640	2,165	153,905,753,660	231	3,836,178,980
'00	2,802	159,257,446,790	2,404	153,095,675,650	770	6,161,771,140





(단위 : 명, 원)

구 분	합 계		유 족 보 상 일 시 금		유 족 보 상 연 금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01	3,497	134,575,838,820	2,323	116,864,270,970	2,500	17,711,567,850
'02	5,133	151,757,325,700	2,172	117,777,815,320	4,232	33,979,510,380
'03	7,182	192,583,237,580	2,376	137,234,529,090	6,223	55,348,708,490
'04	9,000	210,834,007,670	2,180	132,820,269,700	8,093	78,013,737,970
'05	10,546	220,576,627,620	1,811	116,274,885,810	9,776	104,301,741,810
'06	12,166	253,875,684,970	1,761	119,173,110,960	11,429	134,702,574,010
'07	13,799	296,797,440,660	1,717	119,404,031,470	13,109	177,393,409,190
'08	15,394	317,714,466,930	1,691	124,491,974,080	14,662	193,222,492,850
'09	16,727	332,550,256,350	1,535	114,071,602,700	16,051	218,478,653,650
'10	18,130	352,125,096,850	1,401	108,150,670,290	17,528	243,974,426,560
'11	19,410	376,251,232,980	1,339	107,167,234,270	18,799	269,083,998,710
'12	20,764	407,497,865,540	1,268	98,065,730,480	20,187	309,432,135,060
'13	22,194	441,921,698,030	1,227	104,161,534,510	21,622	337,760,163,520
'14	23,517	476,888,697,100	1,146	101,997,640,110	22,957	374,891,056,900
'15	24,760	508,938,057,010	1,056	100,506,146,870	24,203	408,431,910,140
'16	25,949	538,712,886,800	963	97,264,335,290	25,418	441,448,551,510
'17	27,272	589,255,274,910	1,003	108,998,876,170	26,702	480,256,398,740
'18	28,842	656,225,422,910	1,190	122,974,448,400	28,237	533,250,974,510
'19	30,328	710,174,239,720	1,145	123,639,376,210	29,714	586,534,863,510

※ 유족보상연금은 전폐유족연금을 합산한 금액

4-18. 성별·연령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급여종류	연령	합계	
		수급자	금액
총 계	계	320,184	5,529,359,774,460
	20세미만	1,447	9,303,329,710
	20~29세	20,000	146,035,198,920
	30~39세	29,187	321,948,194,340
	40~49세	51,357	822,786,398,940
	50~59세	93,201	1,707,017,469,360
	60~69세	80,753	1,569,819,487,030
	70~79세	33,985	715,801,977,690
	80~89세	9,566	220,847,894,650
	90~99세	667	15,400,885,180
	100세~	21	398,938,640
요양급여	계	225,665	1,085,076,361,740
	20세미만	1,345	3,382,811,960
	20~29세	18,551	47,221,268,860
	30~39세	25,564	88,663,310,120
	40~49세	39,821	180,152,987,300
	50~59세	68,566	335,539,053,570
	60~69세	53,606	285,528,517,630
	70~79세	15,482	113,282,381,960
	80~89세	2,667	29,886,900,860
	90~99세	62	1,419,048,680
	100세~	1	80,800
휴업급여	계	137,309	1,319,084,657,040
	20세미만	971	3,933,456,500
	20~29세	11,916	63,216,594,910
	30~39세	16,354	121,753,957,580
	40~49세	25,916	246,574,110,340
	50~59세	44,992	456,793,810,520
	60~69세	30,861	344,916,437,890
	70~79세	5,828	71,199,804,480
	80~89세	458	10,402,601,580
	90~99세	13	293,883,240
	100세~	-	-

※ '13년부터 성별분리통계 작성



(단위 : 명, 원)

남		여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b>263,712</b>	<b>5,026,323,581,770</b>	<b>56,472</b>	<b>503,036,192,690</b>
1,124	8,309,419,550	323	993,910,160
15,293	127,419,866,440	4,707	18,615,332,480
25,106	295,025,422,570	4,081	26,922,771,770
43,468	761,499,635,440	7,889	61,286,763,500
73,098	1,526,760,966,660	20,103	180,256,502,700
66,123	1,417,427,961,450	14,630	152,391,525,580
29,873	663,785,929,340	4,112	52,016,048,350
8,957	210,504,674,410	609	10,343,220,240
649	15,190,767,270	18	210,117,910
21	398,938,640	-	-
<b>176,757</b>	<b>948,182,699,030</b>	<b>48,908</b>	<b>136,893,662,710</b>
1,038	3,064,684,710	307	318,127,250
14,154	41,152,744,890	4,397	6,068,523,970
21,849	80,907,145,500	3,715	7,756,164,620
32,730	162,465,746,650	7,091	17,687,240,650
50,557	283,443,269,380	18,009	52,095,784,190
41,354	246,449,407,240	12,252	39,079,110,390
12,628	101,527,398,090	2,854	11,754,983,870
2,389	27,799,821,420	278	2,087,079,440
57	1,372,400,350	5	46,648,330
1	80,800	-	-
<b>106,314</b>	<b>1,115,895,459,250</b>	<b>30,995</b>	<b>203,189,197,790</b>
755	3,337,048,180	216	596,408,320
9,472	53,648,012,590	2,444	9,568,582,320
14,243	109,731,377,020	2,111	12,022,580,560
21,616	220,126,627,570	4,300	26,447,482,770
32,928	376,402,773,810	12,064	80,391,036,710
22,676	285,297,914,820	8,185	59,618,523,070
4,231	57,659,793,150	1,597	13,540,011,330
381	9,405,644,070	77	996,957,510
12	286,268,040	1	7,615,200
-	-	-	-

급여종류	연령	합계	
		수급자	금액
상병보상연금	계	3,943	148,719,616,380
	20세미만	-	-
	20~29세	16	461,047,760
	30~39세	117	3,692,797,430
	40~49세	391	14,793,400,290
	50~59세	892	36,477,575,330
	60~69세	1,145	42,720,886,130
	70~79세	965	35,272,024,500
	80~89세	397	14,697,617,930
	90~99세	20	604,267,010
100세~	-	-	
장해급여	계	101,942	2,157,725,159,300
	20세미만	103	985,475,140
	20~29세	2,144	25,562,651,820
	30~39세	5,571	80,731,325,850
	40~49세	14,248	271,801,323,050
	50~59세	29,405	645,075,211,760
	60~69세	30,160	681,157,798,740
	70~79세	15,961	355,562,485,600
	80~89세	4,106	90,571,622,770
	90~99세	235	6,065,012,460
100세~	9	212,252,110	
유족급여	계	30,328	710,174,239,720
	20세미만	10	872,531,380
	20~29세	92	8,005,558,510
	30~39세	600	21,985,703,360
	40~49세	3,121	94,171,824,550
	50~59세	7,161	199,942,358,210
	60~69세	8,009	182,736,513,740
	70~79세	6,804	124,110,092,370
	80~89세	4,060	71,364,553,380
	90~99세	457	6,798,498,490
100세~	14	186,605,730	

※ 표4-18 유족급여는 유족특별급여를 합산한 금액



(단위 : 명, 원)

남		여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b>3,739</b>	<b>143,188,416,810</b>	<b>204</b>	<b>5,531,199,570</b>
-	-	-	-
16	461,047,760	-	-
107	3,415,079,200	10	277,718,230
372	14,179,199,880	19	614,200,410
845	35,154,375,380	47	1,323,199,950
1,096	41,471,705,610	49	1,249,180,520
909	33,783,834,970	56	1,488,189,530
375	14,142,589,350	22	555,028,580
19	580,584,660	1	23,682,350
-	-	-	-
<b>90,834</b>	<b>2,024,348,254,200</b>	<b>11,108</b>	<b>133,376,905,100</b>
95	906,100,550	8	79,374,590
1,916	23,499,006,400	228	2,063,645,420
5,126	75,671,803,730	445	5,059,522,120
13,112	258,307,987,380	1,136	13,493,335,670
25,803	605,223,190,140	3,602	39,852,021,620
26,403	635,654,698,650	3,757	45,503,100,090
14,391	333,730,132,070	1,570	21,832,353,530
3,756	85,204,681,780	350	5,366,940,990
223	5,938,401,390	12	126,611,070
9	212,252,110	-	-
<b>29,776</b>	<b>695,235,546,690</b>	<b>552</b>	<b>14,938,693,030</b>
10	872,531,380	-	-
85	7,255,640,710	7	749,917,800
568	20,488,484,700	32	1,497,218,660
3,043	92,259,049,340	78	1,912,775,210
7,039	196,260,709,960	122	3,681,648,250
7,853	178,830,246,180	156	3,906,267,560
6,686	121,977,000,810	118	2,133,091,560
4,023	70,312,340,350	37	1,052,213,030
455	6,792,937,530	2	5,560,960
14	186,605,730	-	-

급여종류	연령	합계	
		수급자	금액
장 의 비	계	2,470	31,838,396,980
	20세미만	9	101,253,720
	20~29세	72	834,794,410
	30~39세	166	2,108,944,400
	40~49세	334	4,431,288,950
	50~59세	576	7,765,767,210
	60~69세	623	7,865,573,620
	70~79세	458	5,808,845,740
	80~89세	219	2,740,897,330
	90~99세	13	181,031,600
	100세~	-	-
간 병 급 여	계	5,273	53,633,134,910
	20세미만	-	-
	20~29세	16	163,143,600
	30~39세	133	1,377,161,600
	40~49세	631	6,487,289,190
	50~59세	1,604	16,523,203,890
	60~69세	1,780	18,091,625,500
	70~79세	983	9,789,591,510
	80~89세	122	1,161,975,920
	90~99세	4	39,143,700
	100세~	-	-
직 업 재 활 급 여	계	3,688	23,108,208,390
	20세미만	3	27,801,010
	20~29세	110	570,139,050
	30~39세	324	1,634,994,000
	40~49세	771	4,374,175,270
	50~59세	1,435	8,900,488,870
	60~69세	956	6,802,133,780
	70~79세	88	776,751,530
	80~89세	1	21,724,880
	90~99세	-	-
	100세~	-	-



남		여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b>2,343</b>	<b>30,382,759,260</b>	<b>127</b>	<b>1,455,637,720</b>
9	101,253,720	-	-
65	744,250,600	7	90,543,810
153	1,947,750,100	13	161,194,300
320	4,267,158,840	14	164,130,110
546	7,414,970,110	30	350,797,100
587	7,463,380,550	36	402,193,070
443	5,639,832,010	15	169,013,730
207	2,623,131,730	12	117,765,600
13	181,031,600	-	-
-	-	-	-
<b>4,921</b>	<b>50,187,993,220</b>	<b>352</b>	<b>3,445,141,690</b>
-	-	-	-
14	138,097,300	2	25,046,300
126	1,302,307,270	7	74,854,330
587	6,030,808,070	44	456,481,120
1,535	15,848,358,290	69	674,845,600
1,660	16,935,978,380	120	1,155,647,120
889	8,876,834,500	94	912,757,010
106	1,016,465,710	16	145,510,210
4	39,143,700	-	-
-	-	-	-
<b>3,083</b>	<b>18,902,453,310</b>	<b>605</b>	<b>4,205,755,080</b>
3	27,801,010	-	-
100	521,066,190	10	49,072,860
309	1,561,475,050	15	73,518,950
701	3,863,057,710	70	511,117,560
1,150	7,013,319,590	285	1,887,169,280
751	5,324,630,020	205	1,477,503,760
69	591,103,740	19	185,647,790
-	-	1	21,724,880
-	-	-	-
-	-	-	-

4-19. 성별·사업종류별(중분류) 보험급여 지급 현황

사업종류	구분	합계	남	여
전 산 업	수급자수	320,184	263,712	56,474
	금 액	5,529,359,774,460	5,026,315,909,380	503,043,865,080
금 용 및 보 험 업	수급자수	1,596	1,180	416
	금 액	37,225,089,470	33,081,937,000	4,143,152,470
금 용 및 보 험 업	수급자수	1,596	1,180	416
	금 액	37,225,089,470	33,081,937,000	4,143,152,470
광 업	수급자수	26,973	26,183	790
	금 액	608,620,660,270	600,108,403,070	8,512,257,200
석 탄 광 업	수급자수	23,668	23,040	628
	금 액	542,302,761,030	534,605,158,650	7,697,602,380
금 속 및 비 금 속 광 업	수급자수	1,182	1,081	101
	금 액	23,436,569,170	23,174,992,740	261,576,430
채 석 업	수급자수	551	551	-
	금 액	10,987,594,190	10,987,594,190	-
석 회 석 광 업	수급자수	841	801	40
	금 액	14,639,017,710	14,197,162,140	441,855,570
제 업 업	수급자수	2	2	-
	금 액	52,324,870	52,324,870	-
기 타 광 업	수급자수	589	575	14
	금 액	13,590,351,330	13,482,686,580	107,664,750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	수급자수	170	162	8
	금 액	3,612,041,970	3,608,483,900	3,558,070
제 조 업	수급자수	94,156	82,384	11,774
	금 액	1,708,062,984,030	1,560,169,874,750	147,893,109,280
식 료 품 제 조 업	수급자수	7,309	4,326	2,983
	금 액	96,984,304,250	65,148,979,110	31,835,325,140
담 배 제 조 업	수급자수	11	11	-
	금 액	212,923,590	212,923,590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갑)	수급자수	1,887	1,219	668
	금 액	29,082,978,860	20,993,181,580	8,089,797,280
제 재 및 베 니 아 판 제 조 업	수급자수	276	248	28
	금 액	5,665,888,830	5,190,402,900	475,485,930





(단위 : 명, 원)

사업종류	구분	합계	남	여
목재제품제조업	수급자수	3,321	3,052	269
	금액	49,917,476,290	46,685,144,160	3,232,332,130
(19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수급자수	1,198	1,089	109
	금액	22,654,942,340	21,221,630,460	1,433,311,880
펠트및지류제조업	수급자수	1,100	907	193
	금액	15,727,864,460	14,212,547,920	1,515,316,540
출판인쇄제본인쇄물가공업	수급자수	232	219	13
	금액	5,359,082,990	5,169,291,930	189,791,060
인쇄업	수급자수	9	7	2
	금액	222,570,010	199,006,650	23,563,360
경인쇄업	수급자수	8,567	7,546	1,021
	금액	149,067,583,080	137,675,115,610	11,392,467,470
화학제품제조업	수급자수	597	370	227
	금액	8,399,521,750	6,290,985,100	2,108,536,650
(19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급자수	44	40	4
	금액	979,450,230	911,682,830	67,767,400
의약품화학품향료제조업	수급자수	1,466	1,288	178
	금액	25,824,960,070	23,677,628,670	2,147,331,400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수급자수	170	141	29
	금액	3,842,832,260	3,236,559,860	606,272,400
고무제품제조업	수급자수	1,204	1,130	75
	금액	19,474,075,650	18,528,616,410	945,459,240
도자기제품제조업	수급자수	1,422	1,319	103
	금액	26,886,990,920	25,304,263,290	1,582,727,630
유리제조업	수급자수	156	145	11
	금액	4,033,799,040	3,893,456,100	140,342,940
(19 유리도자기시멘트제조업)	수급자수	47	47	-
	금액	1,688,033,050	1,688,033,050	-
도자기타일업세라믹시멘트제조업	수급자수	27,718	25,888	1,831
	금액	451,005,183,710	426,092,601,590	24,912,582,120
시멘트제조업	수급자수	592	577	15
	금액	15,228,196,670	15,056,262,520	171,934,150

사업종류	구분	합계	남	여
금속재료품제조업	수급자수	1,394	1,367	27
	금액	35,451,473,930	35,005,887,210	445,586,720
금속제품제조/가공	수급자수	1,346	1,199	147
	금액	32,162,252,130	30,558,840,830	1,603,411,300
도금업	수급자수	930	842	88
	금액	18,150,767,360	16,819,627,320	1,331,140,040
기계기구제조업	수급자수	5,582	5,279	303
	금액	117,203,449,130	113,735,896,610	3,467,552,520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	수급자수	3,870	3,006	864
	금액	60,054,867,190	49,363,026,050	10,691,841,140
전자제품제조업	수급자수	999	827	172
	금액	24,716,636,340	21,542,188,470	3,174,447,870
선박건조및수리업	수급자수	7,796	7,323	473
	금액	191,315,396,640	180,688,165,090	10,627,231,550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수급자수	5,117	4,638	479
	금액	98,552,203,940	93,236,135,910	5,316,068,03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수급자수	332	280	52
	금액	6,603,090,330	5,962,978,840	640,111,490
수제품제조업 (1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수급자수	1,564	1,317	247
	금액	24,366,807,490	21,686,566,870	2,680,240,620
기타제조업	수급자수	2,650	2,325	325
	금액	47,550,211,630	43,417,651,450	4,132,560,180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을)	수급자수	2,817	2,312	505
	금액	71,909,935,440	63,590,277,850	8,319,657,590
금속제품제조/가공(을)	수급자수	89	69	20
	금액	1,492,922,440	1,296,464,580	196,457,860
수송용기계제조업(을)	수급자수	1,920	1,608	312
	금액	37,929,552,110	34,039,081,820	3,890,470,290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수급자수	303	294	9
	금액	4,429,760,770	4,125,504,560	304,256,210
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수급자수	24	24	-
	금액	695,374,220	695,374,220	-



(단위 : 명, 원)

사업종류	구분	합계	남	여
연탄맞응집고체연료생산업	수급자수	30	26	4
	금액	367,605,440	366,419,550	1,185,890
코크스연탄맞석유정제품제조업	수급자수	171	158	13
	금액	2,852,019,450	2,651,474,190	200,545,260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수급자수	520	485	35
	금액	14,411,650,810	14,152,159,010	259,491,800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수급자수	520	485	35
	금액	14,411,650,810	14,152,159,010	259,491,800
건설업	수급자수	81,559	79,484	2,075
	금액	1,770,613,207,140	1,734,057,105,490	36,556,101,650
일반건설공사(갑)	수급자수	80,993	78,927	2,066
	금액	1,748,164,418,740	1,711,814,801,140	36,349,617,600
중건설공사	수급자수	245	241	4
	금액	9,770,562,720	9,697,033,400	73,529,320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수급자수	22	21	1
	금액	821,362,710	806,289,910	15,072,800
일반건설공사(을)	수급자수	299	295	4
	금액	11,856,862,970	11,738,981,040	117,881,930
운송·창고및통신업	수급자수	17,065	15,924	1,141
	금액	281,085,727,500	272,395,051,520	8,690,675,980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수급자수	1,013	682	331
	금액	14,458,899,410	13,103,413,010	1,355,486,400
자동차여객운수업 ( '19 육상및수상운수업)	수급자수	7,981	7,810	171
	금액	122,431,987,170	120,555,139,250	1,876,847,920
소형자동차운수업	수급자수	348	343	5
	금액	8,003,889,320	7,929,396,070	74,493,250
화물자동차운수업	수급자수	957	956	1
	금액	23,647,709,270	23,647,194,130	515,140
수상운수업	수급자수	2,281	2,149	132
	금액	35,992,943,970	34,782,877,710	1,210,066,260
항만하역화물취급사업	수급자수	387	378	9
	금액	9,978,331,940	9,870,477,790	107,854,150

사업종류	구분	합계	남	여
항공운수업	수급자수	89	76	13
	금액	2,415,481,730	2,394,197,220	21,284,510
운수관련서비스업 (19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	수급자수	2,648	2,239	409
	금액	36,403,571,210	33,239,169,090	3,164,402,120
창고업	수급자수	437	400	37
	금액	6,906,404,970	6,593,286,140	313,118,830
통신업	수급자수	839	804	35
	금액	19,394,823,690	18,828,216,290	566,607,400
소형화물운수택배퀵서비스업	수급자수	103	103	-
	금액	1,451,684,820	1,451,684,820	-
임업	수급자수	2,701	2,609	92
	금액	40,072,131,020	39,049,728,710	1,022,402,310
임업	수급자수	2,488	2,415	73
	금액	36,611,482,020	35,902,230,790	709,251,230
기타의임업	수급자수	213	194	19
	금액	3,460,649,000	3,147,497,920	313,151,080
어업	수급자수	185	26	20
	금액	3,112,862,870	2,868,325,450	244,537,420
어업	수급자수	162	146	16
	금액	2,734,586,940	2,522,988,720	211,598,220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수급자수	23	19	4
	금액	378,275,930	345,336,730	32,939,200
농업	수급자수	1,487	1,018	469
	금액	20,343,224,050	15,556,886,510	4,786,337,540
농업	수급자수	1,487	1,018	469
	금액	20,343,224,050	15,556,886,510	4,786,337,540
기타의사업	수급자수	94,324	54,624	39,700
	금액	1,045,812,237,300	754,876,437,870	290,935,799,43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수급자수	28	25	3
	금액	450,717,160	413,388,450	37,328,710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건물종합관리및위수사업)	수급자수	12,371	7,944	4,427
	금액	151,288,263,150	110,332,479,720	40,955,783,430



(단위 : 명, 원)

사업종류	구분	합계	남	여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수급자수	3,198	2,986	212
	금액	56,668,798,170	54,547,630,260	2,121,167,910
중기관리사업	수급자수	436	436	-
	금액	12,372,044,610	12,372,044,610	-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수급자수	110	96	14
	금액	3,091,019,500	2,919,285,670	171,733,830
기타의각종사업	수급자수	33,823	19,498	14,325
	금액	403,149,892,690	296,647,469,100	106,502,423,590
해외파견사업	수급자수	131	124	7
	금액	3,519,907,300	3,462,885,820	57,021,480
전문기술서비스업	수급자수	2,587	1,894	693
	금액	36,346,061,170	32,258,216,200	4,087,844,97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수급자수	9,080	1,094	7,986
	금액	72,345,537,670	14,270,214,600	58,075,323,070
교육서비스업	수급자수	1,529	585	944
	금액	12,828,896,980	7,624,361,700	5,204,535,280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수급자수	15,210	11,204	4,006
	금액	152,446,749,430	126,612,682,900	25,834,066,530
부동산업및임대업	수급자수	509	387	122
	금액	4,819,563,200	3,997,626,800	821,936,400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수급자수	2,213	1,535	678
	금액	21,983,765,020	17,332,151,910	4,651,613,110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	수급자수	7,384	3,662	3,722
	금액	56,217,398,700	33,813,589,170	22,403,809,530
사업서비스업	수급자수	5,754	3,141	2,613
	금액	56,922,827,420	37,021,203,910	19,901,623,510
주한미군	수급자수	115	98	17
	금액	1,360,795,130	1,251,207,050	109,588,080

4-20. 연령별·사업종류별(대분류) 보험급여 지급 현황

사업종류	구분	합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총계	수급자수	320,184	1,424	20,000	29,187
	금액	5,529,359,774,460	8,870,544,710	146,035,198,920	321,948,194,340	822,786,398,940
금융및보험업	수급자수	1,596	1	91	236	371
	금액	37,225,089,470	1,031,910	266,727,520	2,172,583,170	7,664,697,740
광업	수급자수	26,973	-	6	28	151
	금액	608,620,660,270	-	101,255,670	302,299,480	3,856,929,580
제조업	수급자수	94,156	213	5,953	11,248	18,367
	금액	1,708,062,984,030	2,157,697,160	65,667,528,840	143,233,284,130	314,919,525,390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수급자수	520	1	38	46	96
	금액	14,411,650,810	7,984,820	289,907,210	396,802,940	2,589,886,970
건설업	수급자수	81,559	41	1,367	4,111	13,065
	금액	1,770,613,207,140	514,620,270	16,773,260,170	64,531,813,500	264,289,934,340
운송·창고및통신업	수급자수	17,065	186	1,481	2,249	3,318
	금액	281,085,727,500	1,391,478,030	11,004,519,910	21,152,233,820	47,582,851,590
임업	수급자수	2,701	-	13	35	245
	금액	40,072,131,020	-	135,899,770	297,767,340	3,392,140,170
어업	수급자수	185	-	10	23	37
	금액	3,112,862,870	-	53,965,440	425,870,000	512,391,440
농업	수급자수	1,487	4	107	135	172
	금액	20,343,224,050	29,415,290	667,803,120	999,953,000	2,144,369,780
기타의사업	수급자수	94,324	978	10,955	11,106	15,592
	금액	1,045,812,237,300	4,768,317,230	51,074,331,270	88,435,586,960	175,833,671,940



(단위 : 명, 원)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이상
93,200	80,753	33,985	9,566	667	44
1,706,965,769,180	1,569,819,487,030	715,801,977,690	220,847,894,650	15,400,885,180	831,723,640
459	297	122	19	-	-
12,819,720,100	10,628,728,230	3,134,820,500	536,780,300	-	-
1,428	7,104	11,239	6,424	574	19
32,792,735,220	147,269,035,710	254,406,863,550	156,104,144,250	13,421,920,220	365,476,590
29,310	21,649	6,340	1,024	35	17
573,246,330,430	445,628,029,020	136,599,566,890	25,585,242,920	653,771,370	372,007,880
148	134	47	10	-	-
4,458,842,360	4,704,092,460	1,777,713,540	186,420,510	-	-
29,859	25,592	6,755	744	21	3
658,551,356,820	581,916,368,980	164,943,410,720	18,385,935,300	579,848,760	74,958,100
4,600	3,610	1,378	234	9	-
88,086,252,850	77,406,983,100	29,865,508,610	4,364,116,780	231,782,810	-
1,004	1,028	336	40	-	-
15,352,623,770	15,351,133,840	5,054,833,950	487,732,180	-	-
43	49	18	4	1	-
641,283,760	1,019,779,990	415,490,050	40,524,150	3,558,040	-
393	470	183	22	-	1
6,479,206,500	7,014,148,640	2,549,664,580	448,832,270	-	9,830,870
26,052	20,936	7,619	1,055	27	4
314,537,417,370	278,881,187,060	117,054,105,300	14,708,165,990	510,003,980	9,450,200







## 제 5 장   산재기금   재정수지

5-1. 연도별 산재기금 수입의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10년)

구분 연도	합 계		보 험 료		가 산 금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86	269,229,130,608	240,153,782,798	252,742,271,176	231,367,167,534	607,954,810	398,456,090
'87	338,424,901,618	298,355,612,570	317,641,538,464	287,500,577,616	615,102,570	389,479,250
'88	393,784,049,279	336,215,061,030	368,320,666,302	325,054,863,969	764,493,930	503,732,720
'89	495,753,780,520	424,357,284,280	461,915,595,510	410,617,604,860	870,966,040	605,798,030
'90	698,757,541,330	601,045,073,070	605,327,963,980	550,304,463,890	976,463,100	670,152,780
'91	900,672,943,620	788,718,000,980	787,178,264,710	720,652,614,410	1,639,172,810	1,082,360,930
'92	1,250,495,819,580	1,088,147,561,220	1,157,381,985,090	1,049,848,234,760	2,224,188,770	1,421,508,960
'93	1,636,035,759,910	1,444,792,934,462	1,504,197,569,480	1,375,765,856,422	3,373,806,020	2,077,443,340
'94	1,521,986,748,150	1,291,418,110,860	1,365,697,434,730	1,207,205,949,280	4,166,588,920	2,210,800,960
'95	1,702,530,716,650	1,453,523,667,630	1,305,375,555,100	1,130,354,696,560	4,082,874,020	2,104,482,410
'96	1,983,446,224,660	1,675,402,057,880	1,639,167,434,550	1,423,109,811,950	5,989,176,870	3,536,391,840
'97	2,367,197,216,470	2,020,103,496,030	2,069,503,003,570	1,818,957,926,980	5,215,340,210	3,371,037,490
'98	2,119,666,072,180	1,719,087,067,930	1,739,739,372,040	1,451,435,640,010	5,680,159,110	2,457,271,320
'99	2,062,243,044,550	1,612,116,030,910	1,856,918,811,740	1,530,007,146,330	9,996,577,730	3,598,586,510
'00	2,504,684,703,750	1,955,454,630,260	2,289,191,371,470	1,876,394,611,800	12,354,516,630	5,163,545,980
'01	2,877,066,368,730	2,364,462,188,040	2,623,610,576,640	2,256,090,391,980	7,079,119,820	3,485,282,600
'02	3,209,432,209,150	2,715,625,227,150	2,744,580,997,680	2,395,318,682,900	8,718,141,230	5,241,703,900
'03	3,546,595,731,260	3,029,808,946,400	2,821,001,077,230	2,465,057,417,790	10,428,054,930	5,601,075,480
'04	5,993,303,982,030	5,363,935,831,830	3,336,497,854,070	2,896,117,975,470	13,744,082,400	5,314,523,500
'05	5,999,229,901,990	5,263,916,367,520	3,614,979,014,230	3,182,164,240,630	21,380,815,710	8,158,397,690
'06	6,684,570,938,140	5,747,179,986,090	4,168,374,283,660	3,749,501,079,520	20,659,013,150	8,546,594,990
'07	7,518,998,795,620	6,697,954,207,090	4,833,180,017,210	4,431,519,910,140	19,665,267,860	8,811,940,120
'08	8,690,974,723,690	7,894,290,289,300	5,233,937,786,760	4,846,005,508,400	18,391,834,250	9,457,843,610
'09	8,931,812,084,520	8,198,288,628,790	5,073,633,467,410	4,736,382,696,260	13,021,131,360	6,189,472,650
'10	7,854,779,894,330	7,163,594,822,990	4,969,454,459,170	4,635,288,951,730	10,743,962,760	4,949,074,630

※ '03년까지는 기금계정의 내역이고, '04년 이후는 적립금 계정을 포함한 기금 전체 내역임.

※ '07년부터는 해당연도에 징수결정된 금액만 통계에 산정(이월된 징수결정액 제외)

(단위 : 원)

기 타 경상이전수입		기 타 재 산 수 입		일 반 회 계 전 입 금		타 회 계 전 입 금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6,339,978,054	888,380,460	888,380,460	1,000,000,000	1,000,000,000		
16,931,752,874	7,340,697,614	1,409,363,220	1,409,363,220	1,000,000,000	1,000,000,000		
21,855,768,497	7,920,521,911	1,516,346,800	1,516,346,800	1,000,000,000	1,000,000,000		
29,601,431,100	9,897,260,410	1,657,208,640	1,657,208,640	1,000,000,000	1,000,000,000		
54,083,603,590	11,849,403,060	1,102,486,230	1,102,486,230	7,074,496,000	7,074,496,000	29,421,714,160	29,421,714,160
59,988,132,360	15,267,750,260	1,887,860,720	1,887,860,720	8,920,425,000	8,920,425,000	38,783,988,000	38,783,988,000
73,843,966,910	20,041,352,850	3,886,897,050	3,886,897,050	10,229,613,000	10,229,613,000		
89,056,063,650	27,801,831,350	22,808,866,750	22,808,866,750	12,489,000,000	12,489,000,000		
101,471,802,590	31,622,747,950	35,207,377,130	35,207,377,130	13,767,490,000	13,767,490,000		
103,175,693,480	31,417,543,040	13,603,477,880	13,603,477,880	7,034,734,000	7,034,734,000	267,778,811,000	267,778,811,000
131,273,913,870	42,166,220,870	21,323,654,250	21,323,654,250	9,000,000,000	9,000,000,000	173,316,010,010	173,316,010,010
148,386,523,990	54,047,296,140	30,107,795,830	30,107,795,830	10,884,000,000	10,884,000,000	100,000,000,000	100,000,000,000
148,600,561,620	39,880,899,880	14,189,718,470	14,189,718,470	11,619,000,000	11,619,000,000	197,000,000,000	197,000,000,000
159,891,524,640	43,409,446,180	7,539,039,870	7,539,039,870	8,714,000,000	8,714,000,000	15,094,000,000	15,094,000,000
172,235,498,670	43,363,529,220	15,060,057,860	15,060,057,860	9,149,700,000	9,149,700,000		
213,048,419,260	71,923,938,560	17,188,116,210	17,188,116,210	8,284,320,000	8,284,320,000		
221,632,813,670	80,910,317,750	15,342,400,650	15,342,400,650	11,328,640,000	11,328,640,000		
243,283,926,190	87,600,237,190	8,400,240,630	8,400,240,630	14,457,840,000	14,457,840,000	318,600,000,000	318,600,000,000
259,293,483,570	79,059,351,960	124,071,378,190	124,071,378,190	14,237,840,000	14,237,840,000		
372,156,164,390	83,305,559,510	89,020,162,390	89,020,162,390	14,237,840,000	14,237,840,000		
619,484,488,810	115,234,598,470	83,404,497,410	83,404,497,410	14,700,000,000	14,700,000,000		
509,180,417,210	111,265,953,220	116,020,437,520	116,020,437,520	14,700,000,000	14,700,000,000		
522,665,529,200	123,227,840,870	191,098,448,060	191,098,448,060	15,500,000,000	15,500,000,000		
511,400,850,310	122,349,462,230	218,735,306,630	218,735,306,630	15,500,000,000	15,500,000,000		
460,272,960,070	111,225,610,190	121,815,566,010	121,815,566,010	15,500,000,000	15,500,000,000		

※ '09년부터 발생한 벌금은 경상이전수입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에 포함

구분 연도	전년도이월금		관유물대여료		관유물매각대		기 타 잡 수 입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86			1,463,330				267,080,140	159,800,660
'87	377,163,540	377,163,540	1,463,330				448,517,620	338,331,330
'88			1,463,330				325,310,420	219,595,630
'89	203,288,920	203,288,920	1,463,330				503,826,980	376,123,420
'90	37,957,000	37,957,000	1,463,330				731,393,940	584,399,950
'91	1,309,510,110	1,309,510,110	1,463,330				964,126,580	813,491,550
'92	1,741,670,020	1,741,670,020	1,463,330				1,186,035,410	978,284,580
'93	2,141,244,120	2,141,244,120	1,463,330				1,967,746,560	1,708,692,480
'94	68,554,160	68,554,160	1,463,330				1,606,037,290	1,335,191,380
'95	78,237,680	78,237,680	1,463,330		10,789,880	10,789,880	1,389,080,280	1,140,895,180
'96			1,210,143,790	1,206,049,650	1,290,123,000	1,143,959,180	875,768,320	599,960,130
'97			2,041,373,120	2,039,909,790	146,163,000	130,000,000	913,016,750	565,529,800
'98			1,588,359,910	1,588,359,910	608,332,820	606,531,570	640,568,210	309,646,770
'99			1,709,025,200	1,709,025,200	1,437,121,250	1,435,370,000	942,944,120	609,416,820
'00			1,425,062,290	1,425,062,290	4,537,002,240	4,536,050,990	731,494,590	362,072,120
'01			1,318,993,560	1,318,993,560	4,954,948,650	4,954,397,400	690,136,590	325,009,730
'02	58,753,584,330	58,753,584,330	1,200,374,370	1,200,374,370	7,068,656,940	7,068,656,940	386,748,660	41,014,690
'03			1,141,987,260	1,141,987,260	5,264,519,100	5,264,519,100	460,096,710	127,639,740
'04			1,153,728,640	1,153,728,640	1,121,100,000	1,121,100,000	526,492,490	201,911,400
'05			1,289,671,630	1,197,892,640	1,252,882,000	1,252,882,000	8,833,367,710	8,499,408,730
'06			1,491,488,590	1,491,488,590	2,628,100,000	809,650,000	10,610,093,100	10,273,103,690
'07			1,162,787,730	1,162,787,730	21,910,479,930	11,660,523,170	11,493,099,380	11,126,366,410
'08			1,128,556,700	1,128,556,700	10,249,956,760	10,249,956,760	2,017,573,350	1,638,771,980
'09			1,134,047,430	1,134,047,430	3,709,329,090	3,709,329,090	16,877,722,820	16,490,198,970
'10			1,113,564,400	1,113,564,400	5,621,949,000	3,835,989,000	8,498,874,120	8,107,758,800

※ '06년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에는 예탁원금회수액 50,000,000,000원이 포함된 내역임.



(단위 : 원)

용 자 원 금 회 수		기 타 민간이자수입		여유자금회수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891,738,000	891,738,000						
114,927,805,000	114,927,805,000	25,492,046,620	25,492,046,620				
102,994,970,390	102,994,970,390	20,563,018,820	20,563,018,820				
101,116,373,850	101,116,373,850	18,120,509,000	18,120,509,000	2,121,341,865,860	2,121,341,865,860	2,079,273,960	2,079,273,960
99,429,955,820	99,429,955,820	14,597,435,660	14,597,435,660	1,760,126,469,180	1,760,126,469,180	1,926,123,270	1,926,123,270
106,605,102,360	106,605,102,360	15,993,384,040	15,993,384,040	1,588,809,788,400	1,588,809,788,400	51,810,698,620	51,810,698,620
92,774,649,810	92,774,649,810	12,964,486,850	12,964,486,850	1,885,947,152,120	1,885,947,152,120		
86,119,169,870	86,119,169,870	13,052,873,730	13,051,198,040	2,595,610,995,010	2,595,610,995,010	1,202,000,000	1,202,000,000
102,401,059,350	102,401,059,350	12,665,256,660	12,663,142,720	2,959,728,913,470	2,959,728,913,470	3,004,999,990	3,004,999,990
107,413,465,100	107,413,465,100	12,634,390,000	12,634,139,430	2,133,660,772,220	2,133,660,772,220	8,049,931,480	8,049,931,480

5-1-1. 연도별 산재기금 수입의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11년~'18년)

(단위 : 원)

연도	합 계		보 험 료		관유물대여료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12	8,674,959,575,970	7,479,635,089,480	6,325,442,187,230	5,512,366,536,700	1,040,823,690	1,040,823,690
'13	8,105,021,745,670	6,744,576,788,770	6,358,522,911,170	5,439,841,761,260	963,033,850	963,033,850
'14	10,040,530,721,900	8,529,785,336,710	6,825,239,497,200	5,800,618,811,570	1,142,419,050	1,142,419,050
'15	11,530,800,717,074	9,970,294,739,870	7,116,187,297,980	6,065,842,790,880	1,095,822,020	1,095,822,020
'16	14,281,005,770,150	12,750,261,657,100	7,339,819,471,340	6,288,064,833,780	1,103,994,620	1,103,994,620
'17	12,604,382,664,970	11,093,375,051,820	7,511,930,886,600	6,434,242,538,600	1,117,423,930	1,117,423,930
'18	12,378,283,408,150	10,778,407,064,430	8,539,051,816,610	7,352,754,015,870	1,131,913,280	1,131,913,280
'19	12,267,974,558,500	10,657,637,982,220	8,750,079,547,490	7,545,811,739,400	973,549,250	973,549,250

연도	기 타 잡 수 입		고정자산매각대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12	9,260,170,780	9,258,970,420	546,573,260	546,573,260	1,581,687,990	583,426,740	109,336,945,160	109,336,945,160
'13	8,209,187,470	8,207,578,460	-	-	249,581,250	249,581,250	120,207,659,140	120,207,659,140
'14	9,728,994,850	9,727,206,070	1,031,287,890	1,031,287,890	6,218,272,110	6,218,272,110	119,137,638,140	119,137,638,140
'15	8,248,040,070	8,246,326,390	380,061,060	380,061,060	2,619,578,940	2,619,578,940	128,934,295,990	128,934,295,990
'16	14,296,030,290	14,294,207,090	777,854,490	777,854,490	256,360,000	256,360,000	128,185,525,460	128,185,525,460
'17	11,005,572,510	11,003,606,110	741,231,230	741,231,230	8,460,315,670	8,460,315,670	120,687,056,180	120,687,056,180
'18	10,964,463,330	10,962,366,120	0	0	0	0	123,362,282,170	123,362,282,170
'19	8,215,775,280	8,213,434,320	0	0	0	0	134,496,145,390	134,496,145,390

연도	기금예탁원금회수		기금예탁금이자수입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12	300,000,000,000	300,000,000,000	19,022,465,710	19,022,465,710
'13	200,000,000,000	200,000,000,000	14,807,095,870	14,807,095,870
'14	300,000,000,000	300,000,000,000	17,517,871,200	17,517,871,200
'15	300,000,000,000	300,000,000,000	16,939,750,660	16,939,750,660
'16	660,000,000,000	660,000,000,000	14,912,778,030	14,912,778,030
'17	400,000,000,000	400,000,000,000	7,130,860,250	7,130,860,250
'18	400,000,000,000	400,000,000,000	8,639,999,990	8,639,999,990
'19	400,000,000,000	400,000,000,000	7,579,999,980	7,579,999,980

※ '11년부터 4대보험 통합 징수에 따른 과목구조 개편 내용 반영하여 작성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벌금 및 과료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86,782,374,990	86,677,199,000	17,576,690	17,576,690	14,283,517,460	5,450,106,080	527,427,020,490	155,116,233,510
53,186,861,180	53,186,861,180	-	-	16,080,016,810	5,384,159,910	541,463,501,610	110,397,160,530
279,784,213,950	279,784,213,950	168,229,440	-	16,062,133,040	3,855,286,360	579,292,360,480	105,544,525,820
264,842,403,940	264,842,403,940	173,731,000	173,731,000	18,001,985,160	5,413,474,470	622,626,834,114	125,055,588,380
527,026,965,990	527,026,965,990	36,355,610	36,355,610	19,133,826,030	5,948,616,230	583,204,811,340	117,402,368,850
578,422,874,810	578,422,874,810	-	-	17,933,480,660	5,589,584,730	527,557,478,100	106,584,075,280
381,008,628,400	381,008,628,400	-	-	17,639,208,570	6,154,879,590	497,656,931,970	95,564,815,180
254,107,849,520	254,107,849,520	35,457,970	35,457,970	18,690,952,800	6,459,621,940	487,915,332,940	94,080,236,57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일반회계전입금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15,834,885,660	15,834,885,660	775,000,000,000	775,000,000,000	473,883,346,860	473,883,346,860	15,500,000,000	15,500,000,000
20,651,269,190	20,651,269,190	475,000,000,000	475,000,000,000	280,180,628,130	280,180,628,130	15,500,000,000	15,500,000,000
25,049,387,390	25,049,387,390	-	-	1,844,658,417,160	1,844,658,417,160	15,500,000,000	15,500,000,000
26,146,293,090	26,146,293,090	150,000,000,000	150,000,000,000	2,859,104,623,050	2,859,104,623,050	15,500,000,000	15,500,000,000
28,282,601,970	28,282,601,970	-	-	4,948,469,194,980	4,948,469,194,980	15,500,000,000	15,500,000,000
46,830,061,660	46,830,061,660	-	-	3,357,065,423,370	3,357,065,423,370	15,500,000,000	15,500,000,000
42,704,672,270	42,704,672,270	-	-	2,340,623,491,560	2,340,623,491,560	15,500,000,000	15,500,000,000
47,355,792,770	47,355,792,770	-	-	2,143,024,155,110	2,143,024,155,110	15,500,000,000	15,500,000,000

5-2. 산재기금 예산항목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

과 목 별	연 도		'83		'84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합</b>	<b>계</b>		<b>150,472,371,362</b>	<b>137,039,828,341</b>	<b>182,706,878,411</b>	<b>165,817,041,622</b>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133,933,760,992	125,010,749,554	159,538,488,426	147,955,308,143	
		개 산 보 험 료	112,908,748,816	109,238,085,389	134,941,597,126	130,510,563,166	
		증 가 보 험 료	2,775,896,033	2,718,278,720	2,123,555,576	2,090,458,338	
		확 정 보 험 료	12,129,405,804	10,431,913,486	14,765,405,053	12,935,660,279	
		이 월 보 험 료	6,119,710,339	2,592,471,959	7,707,930,671	2,418,626,360	
	피고용자부담금		-	-	-	-	
		개 산 보 험 료	-	-	-	-	
		확 정 보 험 료	-	-	-	-	
		이 월 보 험 료	-	-	-	-	
		경상이전수입		10,144,676,773	5,636,978,351	11,291,437,430	5,987,222,812
위 약 금 가 산 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위 약 금	위 약 금	-	-	-	-	
	가 산 금	가 산 금	481,392,973	289,996,701	553,054,995	352,753,969	
	기타경상이전수입	연 체 금		9,663,283,800	5,346,981,650	10,738,382,435	5,634,468,843
		급 여 징 수 금		2,658,898,369	1,853,087,979	2,786,297,749	1,802,896,720
		제3자구상금		3,053,700,930	1,823,571,223	3,387,705,548	1,922,395,773
		부정이득징수금		488,347,283	463,561,579	582,299,428	582,299,428
		채납처분비		102,698,193	99,075,185	80,281,598	74,192,318
		과오납지급금		-	-	-	-
		전년도이월수입		3,359,639,025	1,107,685,684	3,901,798,112	1,252,684,604
		기 타		-	-	-	-
재 산 수 입			363,778,052	362,314,719	205,593,698	204,130,368	
	관유물대여료		1,463,333	-	1,463,330	-	
		토지·건물대여료		-	-	-	-
		기타관유물대여료		1,463,333	-	1,463,330	-
	기타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	-	-	
기타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362,314,719	362,314,719	204,130,36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용자원금회수 여유자금회수 전년도이월금 일반회계전입금 타계정전입금 공공기금예탁금회수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잡 수 입	기 타 잡 수 입	59,337,266	58,967,438	74,880,109	73,901,551	
	관유물매각대		-	-	-	-	
	용자원금회수		-	-	-	-	
	여유자금회수		-	-	-	-	
	전년도이월금		95,900,000	95,900,000	-	-	
	일반회계전입금		1,000,000,000	1,000,000,000	777,000,000	777,000,000	
	타계정전입금		4,874,918,279	4,874,918,279	10,819,478,748	10,819,478,748	
	공공기금예탁금회수		-	-	-	-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	-	-	-	

\* '08년 결산기준의 과목체계로 수정.

\* '08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수납에 따른 피고용자부담금 항목 신설



(단위 : 원)

'85		'86		'87	
정수결정액	수 납 액	정수결정액	수 납 액	정수결정액	수 납 액
<b>228,439,500,669</b>	<b>205,628,583,538</b>	<b>269,229,130,608</b>	<b>240,153,782,798</b>	<b>338,424,901,618</b>	<b>298,355,612,570</b>
209,649,740,373	193,170,741,645	252,742,271,176	231,367,167,534	317,641,538,464	287,500,577,616
209,649,740,373	193,170,741,645	252,742,271,176	231,367,167,534	317,641,538,464	287,500,577,616
177,865,302,174	170,832,875,080	213,709,526,301	204,861,576,520	270,497,314,217	255,441,577,857
2,250,251,850	2,228,129,800	2,233,289,530	2,220,191,560	2,315,872,790	2,291,551,370
19,388,940,015	16,980,273,929	22,371,292,243	20,002,147,793	26,935,636,110	24,175,856,660
10,145,246,334	3,129,462,836	14,428,163,103	4,283,251,661	17,892,715,347	5,591,591,729
-	-	-	-	-	-
-	-	-	-	-	-
-	-	-	-	-	-
-	-	-	-	-	-
12,931,743,277	6,607,019,134	14,329,935,502	6,738,434,144	17,546,855,444	7,730,176,864
-	-	-	-	-	-
664,423,821	413,789,894	607,954,810	398,456,090	615,102,570	389,479,250
12,267,319,456	6,193,529,240	13,721,980,692	6,339,978,054	16,931,675,564	7,340,620,304
3,529,142,378	2,372,034,408	3,599,008,497	2,268,076,022	4,531,976,865	2,302,079,309
3,256,949,685	1,595,493,204	3,956,828,235	1,670,170,984	4,763,710,500	1,994,807,320
526,242,425	526,542,425	471,085,050	471,084,390	731,880,100	729,880,100
133,534,390	112,169,875	162,286,270	125,612,060	130,051,270	117,234,040
-	-	-	-	-	-
-	-	-	-	-	-
4,821,450,578	1,587,289,328	5,532,772,640	1,805,034,598	6,774,056,829	2,196,619,535
-	-	-	-	-	-
465,582,102	464,118,772	889,843,790	888,380,460	1,410,826,550	1,409,363,220
1,463,330	-	1,463,330	-	1,463,330	-
-	-	-	-	-	-
1,463,330	-	1,463,330	-	1,463,330	-
-	-	-	-	-	-
464,118,772	464,118,772	888,380,460	888,380,460	1,409,363,220	1,409,363,220
97,029,417	91,298,487	267,080,140	159,800,660	448,517,620	338,331,330
-	-	-	-	-	-
-	-	-	-	-	-
-	-	-	-	-	-
14,400,000	14,400,000	-	-	377,163,540	377,163,54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4,281,005,500	4,281,005,500	-	-	-	-
-	-	-	-	-	-
-	-	-	-	-	-

과 목 별	연 도		'88		'89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합	계		393,784,049,279	336,215,061,030	495,753,780,520	424,357,284,280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368,320,666,302	325,054,863,969	461,915,595,510	410,617,604,860
		개산보험료	368,320,666,302	325,054,863,969	461,915,595,510	410,617,604,860
		증가보험료	300,669,405,063	280,912,098,907	368,804,901,680	353,560,593,850
		확정보험료	1,981,682,210	1,959,234,250	1,758,524,780	1,682,937,800
		이월보험료	38,340,554,528	34,900,821,323	51,121,363,830	47,173,743,370
	피고용자부담금		27,329,019,501	7,282,709,489	40,230,805,220	8,200,329,840
		개산보험료	-	-	-	-
		확정보험료	-	-	-	-
		이월보험료	-	-	-	-
		경상이전수입		22,620,262,427	8,424,254,631	30,472,397,140
재 산 수 입	위 약 금	위 약 금	-	-	-	-
		가 산 금	764,493,930	503,732,720	870,966,040	605,798,030
	가정양육자부담금	연 체 금	21,855,768,497	7,920,521,911	29,601,431,100	9,897,260,410
		급여징수금	4,789,173,346	2,536,302,471	5,990,904,200	3,375,929,930
		제3자구상금	6,641,783,980	2,207,806,270	7,844,682,910	2,401,840,510
		부장특징수금	1,352,422,629	1,107,365,560	2,266,935,930	1,198,728,680
		채납처분비	158,839,190	131,361,130	108,467,270	92,897,970
		과오납지급금	-	-	-	-
		전년도이월수입	8,913,549,352	1,937,686,480	13,390,440,790	2,827,863,320
		기 타	-	-	-	-
		관유물대여료	1,517,810,130	1,516,346,800	1,658,671,970	1,657,208,640
		토지관유물대여료	1,463,330	-	1,463,330	-
		가정양육자부담금	1,463,330	-	1,463,330	-
기타재산수입	-	-	-	-		
기타재산수입	1,516,346,800	1,516,346,800	1,657,208,640	1,657,208,640		
재정조정금	325,310,420	219,595,630	503,826,980	376,123,420		
관유물매각대	-	-	-	-		
융자금회수	-	-	-	-		
여유자금회수	-	-	-	-		
전년도이월금	-	-	203,288,920	203,288,920		
일반회계전입금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타계정전입금	-	-	-	-		
공공자금회수	-	-	-	-		
공공자금차입	-	-	-	-		

\* '08년 결산기준의 과목체계로 수정.

\* '08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수납에 따른 피고용자부담금 항목 신설

(단위 : 원)

'90		'91		'92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698,757,541,330	601,045,073,070	900,672,943,620	788,718,000,980	1,250,495,819,580	1,088,147,561,220
605,327,963,980	550,304,463,890	787,178,264,710	720,652,614,410	1,157,381,985,090	1,049,848,234,760
605,327,963,980	550,304,463,890	787,178,264,710	720,652,614,410	1,157,381,985,090	1,049,848,234,760
497,799,897,240	480,673,190,780	653,671,319,750	628,189,040,700	969,454,392,110	913,089,114,410
3,885,262,880	3,756,980,840	4,380,086,980	4,296,713,090	7,206,850,420	7,081,793,700
57,643,861,810	53,896,673,330	80,324,380,090	74,412,331,350	123,924,718,250	114,390,807,190
45,998,942,050	11,977,618,940	48,802,477,890	13,754,529,270	56,796,024,310	15,286,519,460
-	-	-	-	-	-
-	-	-	-	-	-
-	-	-	-	-	-
-	-	-	-	-	-
55,060,066,690	12,519,555,840	61,627,305,170	16,350,111,190	76,068,155,680	21,462,861,810
-	-	-	-	-	-
976,463,100	670,152,780	1,639,172,810	1,082,360,930	2,224,188,770	1,421,508,960
54,083,703,590	11,849,403,060	59,988,132,360	15,267,750,260	73,843,966,910	20,041,352,850
24,848,634,930	3,922,438,150	9,479,782,380	4,907,680,320	13,777,091,740	7,656,930,760
9,107,321,480	3,046,802,260	10,285,932,730	3,776,497,030	17,213,327,200	5,635,397,140
1,483,381,970	1,403,306,620	2,113,895,880	1,585,602,620	1,570,015,940	1,390,892,660
268,531,220	158,037,780	425,152,420	185,525,160	693,745,440	337,257,390
-	-	-	-	-	-
-	-	-	-	-	-
18,375,833,990	3,318,818,250	37,683,368,950	4,812,445,130	40,589,786,590	5,020,874,900
-	-	-	-	-	-
1,103,949,560	1,102,486,230	1,889,324,050	1,887,860,720	3,888,360,380	3,886,897,050
1,463,330	-	1,463,330	-	1,463,330	-
-	-	-	-	-	-
1,463,330	-	1,463,330	-	1,463,330	-
-	-	-	-	-	-
1,102,486,230	1,102,486,230	1,887,860,720	1,887,860,720	3,886,897,050	3,886,897,050
731,393,940	584,399,950	964,126,580	813,491,550	1,186,035,410	978,284,580
-	-	-	-	-	-
-	-	-	-	-	-
-	-	-	-	-	-
37,957,000	37,957,000	1,309,510,110	1,309,510,110	1,741,670,020	1,741,670,020
7,074,496,000	7,074,496,000	8,920,425,000	8,920,425,000	10,229,613,000	10,229,613,000
29,421,714,160	29,421,714,160	38,783,988,000	38,783,988,000	-	-
-	-	-	-	-	-
-	-	-	-	-	-

과 목 별	연 도		'93		'94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합</b>	<b>계</b>		<b>1,636,035,759,910</b>	<b>1,444,792,934,462</b>	<b>1,521,986,748,150</b>	<b>1,291,418,110,860</b>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1,504,197,569,480	1,375,765,856,422	1,365,697,434,730	1,207,205,949,280	
		개 산 보 험 료	1,504,197,569,480	1,375,765,856,422	1,365,697,434,730	1,207,205,949,280	
		증 가 보 험 료	1,257,271,225,284	1,200,303,267,886	1,110,961,207,460	1,058,408,684,930	
		확 정 보 험 료	5,057,349,670	4,939,357,860	4,520,579,270	4,377,761,040	
		이 월 보 험 료	150,398,022,456	136,414,593,766	135,951,934,740	116,125,058,430	
			91,470,972,070	34,108,636,910	114,263,713,260	28,294,444,880	
		피고용자부담금		-	-	-	-
		개 산 보 험 료		-	-	-	-
		확 정 보 험 료		-	-	-	-
		이 월 보 험 료		-	-	-	-
경상이전수입	위 약 금 가 산 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위 약 금	92,429,869,670	29,879,274,690	105,638,391,510	33,833,548,910	
		위 약 금	-	-	-	-	
		가 산 금	3,373,806,020	2,077,443,340	4,166,588,920	2,210,800,960	
		가 산 금	89,056,063,650	27,801,831,350	101,471,802,590	31,622,747,950	
		연 체 금	20,207,838,360	11,610,122,540	18,577,377,210	11,215,225,700	
		급 여 징 수 금	17,341,589,510	6,361,764,230	19,896,787,990	6,249,168,170	
		제 3 자 구 상 금	2,455,573,090	2,339,682,370	2,766,097,260	2,504,335,050	
		부정이득징수금	896,220,710	430,556,730	920,681,590	453,069,570	
		채 납 처 분 비	-	-	-	-	
		과오납지급금	-	-	-	-	
재 산 수 입	관 유 물 대 여 료 토지, 건물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기타기간이자수입 기타채산수입	관 유 물 대 여 료	22,810,330,080	22,808,866,750	35,208,840,460	35,207,377,130	
		관 유 물 대 여 료	1,463,330	-	1,463,330	-	
		토지, 건물대여료	-	-	-	-	
		기타관유물대여료	1,463,330	-	1,463,330	-	
		기타기간이자수입	-	-	-	-	
		기타기간이자수입	-	-	-	-	
		기타채산수입	22,808,866,750	22,808,866,750	35,207,377,130	35,207,377,130	
		기타채산수입	22,808,866,750	22,808,866,750	35,207,377,130	35,207,377,130	
		기타채산수입	1,967,746,560	1,708,692,480	1,606,037,290	1,335,191,380	
		기타채산수입	-	-	-	-	
채화및용역관계수입	관 유 물 매 각 대 용 자 원 금 회 수 여 유 자 금 회 수 전 년 도 이 월 금 일 반 회 계 전 입 금 타 계 정 전 입 금 공 공 기 업 예탁금회수 공 공 기 업 예탁이자수입	관 유 물 매 각 대	-	-	-	-	
		관 유 물 매 각 대	-	-	-	-	
		용 자 원 금 회 수	-	-	-	-	
		용 자 원 금 회 수	-	-	-	-	
		여 유 자 금 회 수	-	-	-	-	
		여 유 자 금 회 수	-	-	-	-	
		전 년 도 이 월 금	2,141,244,120	2,141,244,120	68,554,160	68,554,160	
		전 년 도 이 월 금	12,489,000,000	12,489,000,000	13,767,490,000	13,767,490,000	
		일 반 회 계 전 입 금	-	-	-	-	
		일 반 회 계 전 입 금	-	-	-	-	
타 계 정 전 입 금	-	-	-	-			
타 계 정 전 입 금	-	-	-	-			
공 공 기 업 예탁금회수	-	-	-	-			
공 공 기 업 예탁금회수	-	-	-	-			
공 공 기 업 예탁이자수입	-	-	-	-			

※ 산재보험특별회계에서 '95년 5월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재청사 토지, 건물대여료 발생 ('96년부터 수입)

(단위 : 원)

'95		'96		'97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1,702,530,716,650</b>	<b>1,453,523,667,630</b>	<b>1,983,446,224,660</b>	<b>1,675,402,057,880</b>	<b>2,367,197,216,470</b>	<b>2,020,103,496,030</b>
1,305,375,555,100	1,130,354,696,560	1,639,167,434,550	1,423,109,811,950	2,069,503,003,570	1,818,957,926,980
1,305,375,555,100	1,130,354,696,560	1,639,167,434,550	1,423,109,811,950	2,069,503,003,570	1,818,957,926,980
1,007,809,552,950	961,147,982,680	1,296,280,017,480	1,234,861,138,010	1,690,791,620,570	1,593,845,315,310
2,506,646,030	2,301,182,540	4,623,620,390	4,507,557,640	3,848,169,760	3,802,683,720
162,290,352,440	138,025,390,430	172,575,325,270	155,364,283,750	207,268,908,470	188,728,475,900
132,770,003,680	28,880,140,910	165,688,471,410	28,376,832,550	167,594,304,770	32,581,452,050
-	-	-	-	-	-
-	-	-	-	-	-
-	-	-	-	-	-
-	-	-	-	-	-
107,258,567,500	33,522,025,450	137,263,090,740	45,702,612,710	153,601,864,200	57,418,333,630
-	-	-	-	-	-
4,082,874,020	2,104,482,410	5,989,176,870	3,536,391,840	5,215,340,210	3,371,037,490
103,175,693,480	31,417,543,040	131,273,913,870	42,166,220,870	148,386,523,990	54,047,296,140
19,080,044,620	13,270,154,220	30,979,127,650	18,361,762,080	27,708,075,540	19,251,410,860
16,469,870,460	4,868,721,940	21,297,371,740	7,475,096,820	25,790,791,780	9,055,493,110
2,802,833,560	2,747,034,130	5,490,300,710	5,052,727,980	16,448,164,210	13,254,263,220
579,882,040	405,463,680	1,514,866,250	660,713,760	2,671,086,670	1,156,039,460
-	-	-	-	-	-
-	-	-	-	-	-
64,243,062,800	10,126,169,070	71,992,247,520	10,615,920,230	75,768,405,790	11,330,089,490
-	-	-	-	-	-
13,604,941,210	13,603,477,880	22,533,798,040	22,529,703,900	32,149,168,950	32,147,705,620
1,463,330	-	1,210,143,790	1,206,049,650	2,041,373,120	2,039,909,790
-	-	1,208,680,460	1,206,049,650	2,039,909,790	2,039,909,790
1,463,330	-	1,463,330	-	1,463,330	-
-	-	-	-	-	-
13,603,477,880	13,603,477,880	21,323,654,250	21,323,654,250	30,107,795,830	30,107,795,830
1,389,080,280	1,140,895,180	875,768,320	599,960,130	913,016,750	565,529,800
10,789,880	10,789,880	1,290,123,000	1,143,959,180	146,163,000	130,000,000
-	-	-	-	-	-
-	-	-	-	-	-
78,237,680	78,237,680	-	-	-	-
7,034,734,000	7,034,734,000	9,000,000,000	9,000,000,000	10,884,000,000	10,884,000,000
267,778,811,000	267,778,811,000	173,316,010,010	173,316,010,010	100,000,000,000	100,000,000,000
-	-	-	-	-	-
-	-	-	-	-	-

과 목 별	연 도		'98		'99	
	구 분	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합</b>	<b>계</b>	<b>2,119,666,072,180</b>	<b>1,719,087,067,930</b>	<b>2,062,243,044,550</b>	<b>1,612,116,030,910</b>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1,739,739,372,040	1,451,435,640,010	1,856,918,811,740	1,530,007,146,330	
	개 산 보 험 료	1,739,739,372,040	1,451,435,640,010	1,856,918,811,740	1,530,007,146,330	
	증 가 보 험 료	1,359,124,372,090	1,256,221,713,520	1,469,918,547,430	1,379,688,837,920	
	확 정 보 험 료	2,263,991,360	2,205,135,990	6,784,350,010	6,554,630,070	
	이 월 보 험 료	188,265,564,230	158,653,879,580	153,406,846,280	100,178,443,790	
	이 월 보 험 료	190,085,444,360	34,354,910,920	226,809,068,020	43,585,234,550	
	피고용자부담금	-	-	-	-	
	개 산 보 험 료	-	-	-	-	
	확 정 보 험 료	-	-	-	-	
	이 월 보 험 료	-	-	-	-	
경상이전수입	위 약 금	154,280,720,730	42,338,171,200	169,888,102,370	47,008,032,690	
	위 약 금	-	-	-	-	
	가 산 금	5,680,159,110	2,457,271,320	9,996,577,730	3,598,586,510	
	가 산 금	148,600,561,620	39,890,899,880	159,891,524,640	43,409,446,180	
	기타경상이전수입	연 체 금	22,936,487,800	13,924,334,310	26,582,802,040	16,089,930,720
		급 여 징 수 금	29,476,230,660	7,814,529,260	21,602,534,590	6,091,869,940
		제 3 자 구 상 금	14,796,123,580	7,033,501,820	12,525,635,090	8,239,136,010
		부정이득징수금	3,221,470,080	1,405,054,690	2,638,808,970	1,026,579,070
		채 납 처 분 비	97,111,970	31,546,990	104,596,470	43,869,360
		과오납지급금	-	-	-	-
		전년도이월수입	78,073,137,530	9,681,932,810	96,437,147,480	11,918,061,080
		기 타	-	-	-	-
재 산 수 입	관유물대여료	15,778,078,380	15,778,078,380	9,248,065,070	9,248,065,070	
		1,588,359,910	1,588,359,910	1,709,025,200	1,709,025,200	
		토지, 건물대여료	1,588,359,910	1,588,359,910	1,709,025,200	1,709,025,200
		기타관유물대여료	-	-	-	-
	기타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	-	-	-
	기타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14,189,718,470	14,189,718,470	7,539,039,870	7,539,039,87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잡 수 입	기 타 잡 수 입	640,568,210	309,646,770	942,944,120	609,416,820
관 유 물 매 각 대			608,332,820	606,531,570	1,437,121,250	1,435,370,000
용 자 원 금 회 수			-	-	-	-
여 유 자 금 회 수			-	-	-	-
전 년 도 이 월 금			-	-	-	-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1,619,000,000	11,619,000,000	8,714,000,000	8,714,000,000
타 계 정 전 입 금			197,000,000,000	197,000,000,000	15,094,000,000	15,094,000,000
공 공 기 금 예탁금원금회수			-	-	-	-
공 공 기 금 예탁이자수입			-	-	-	-

※ '01년부터 관유물대여료 재화및용역판매수입에서 재산수입으로 변경(기타관유물대여료), (토지, 건물대여료는 원래 재산수입)  
 ※ '02년부터 보험료 수입이 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에서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변경  
 ※ '02년 3월 산재보험기금 및 예방기금 통합으로 '01년까지는 산재기금관련 결산자료임.

(단위 : 원)

'00		'01		'02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2,504,684,703,750</b>	<b>1,955,454,630,260</b>	<b>2,877,066,368,730</b>	<b>2,364,462,188,040</b>	<b>3,209,432,209,150</b>	<b>2,715,625,227,150</b>
2,289,191,371,470	1,876,394,611,800	2,623,610,576,640	2,256,090,391,980	2,744,580,997,680	2,395,318,682,900
2,289,191,371,470	1,876,394,611,800	2,623,610,576,640	2,256,090,391,980	2,744,580,997,680	2,395,318,682,900
1,778,140,862,450	1,623,559,642,740	1,988,211,358,410	1,863,582,504,050	2,181,592,824,600	2,048,021,958,140
6,890,885,170	6,583,963,980	4,794,669,240	4,584,622,220	5,093,366,950	4,889,695,420
245,875,618,230	188,552,607,470	282,572,571,010	256,466,120,430	279,527,347,440	249,654,754,590
258,284,005,620	57,698,397,610	348,031,977,980	131,457,145,280	278,367,458,690	92,752,274,750
-	-	-	-	-	-
-	-	-	-	-	-
-	-	-	-	-	-
-	-	-	-	-	-
184,590,015,300	48,527,075,200	220,127,539,080	75,409,221,160	230,350,954,900	86,152,021,650
-	-	-	-	-	-
12,354,516,630	5,163,545,980	7,079,119,820	3,485,282,600	8,718,141,230	5,241,703,900
172,235,498,670	43,362,529,220	213,048,419,260	71,923,938,560	221,632,813,670	80,910,317,750
23,454,087,340	12,784,054,790	34,473,619,650	21,001,231,230	31,353,105,580	21,323,369,990
29,540,407,910	8,017,653,300	35,105,406,690	13,325,101,170	46,705,307,640	17,855,364,280
12,367,204,380	7,474,623,990	16,085,124,230	10,650,091,410	19,425,801,400	11,536,981,810
2,844,823,170	1,391,595,240	7,758,270,630	3,979,156,840	6,069,559,050	4,296,033,350
126,860,810	45,883,000	295,430,350	131,802,530	369,980,560	185,126,520
-	-	-	-	-	-
103,902,115,060	13,648,718,900	119,330,567,710	22,836,555,380	117,166,316,590	25,170,698,950
-	-	-	-	542,742,850	542,742,850
16,485,120,150	16,485,120,150	18,507,109,770	18,507,109,770	42,034,821,640	42,034,821,640
1,425,062,290	1,425,062,290	1,318,993,560	1,318,993,560	1,200,374,370	1,200,374,370
1,425,062,290	1,425,062,290	1,318,993,560	1,318,993,560	1,200,374,370	1,200,374,370
-	-	-	-	-	-
-	-	-	-	25,492,046,620	25,492,046,620
15,060,057,860	15,060,057,860	17,188,116,210	17,188,116,210	15,342,400,650	15,342,400,650
731,494,590	362,072,120	690,136,590	325,009,730	386,748,660	41,014,690
4,537,002,240	4,536,050,990	4,954,948,650	4,954,397,400	7,068,656,940	7,068,656,940
-	-	891,738,000	891,738,000	114,927,805,000	114,927,805,000
-	-	-	-	-	-
-	-	-	-	58,753,584,330	58,753,584,330
9,149,700,000	9,149,700,000	8,284,320,000	8,284,320,000	11,328,640,000	11,328,640,000
-	-	-	-	-	-
-	-	-	-	-	-
-	-	-	-	-	-

과 목 별	연 도		'03		'04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합</b>	<b>계</b>		<b>3,546,595,731,260</b>	<b>3,029,808,946,400</b>	<b>5,993,303,982,030</b>	<b>5,363,935,831,830</b>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2,821,001,077,230	2,465,057,417,790	3,336,497,854,070	2,896,117,975,470	
			2,821,001,077,230	2,465,057,417,790	3,336,497,854,070	2,896,117,975,470	
		개 산 보 험 료	2,187,064,985,020	2,053,121,341,710	2,656,947,314,870	2,482,808,791,780	
		증 가 보 험 료	8,281,548,510	7,974,928,280	5,416,332,830	5,210,322,810	
		확 정 보 험 료	347,964,239,180	302,149,233,000	395,434,216,550	315,358,893,790	
		이 월 보 험 료	277,690,304,520	101,811,914,800	278,699,989,820	92,739,967,090	
		피고용자부담금		-	-	-	-
			개 산 보 험 료	-	-	-	-
			확 정 보 험 료	-	-	-	-
			이 월 보 험 료	-	-	-	-
경 상 이 전 수 입	위 약 금 가 산 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위 약 금	48,849,720	48,849,720	-	-	
		가 산 금	10,428,054,930	5,601,075,480	13,744,082,400	5,314,523,500	
		기타경상이전수입	243,235,076,470	87,551,387,470	259,293,483,570	79,059,351,960	
		연 체 금	30,194,936,240	23,309,823,180	25,901,909,650	20,457,568,630	
		급 여 징 수 금	53,852,539,550	20,138,681,280	51,016,883,490	16,641,245,420	
		제 3 자 구 상 금	22,398,516,470	11,152,995,990	32,982,902,930	13,844,407,910	
		부정이득징수금	9,887,172,650	6,979,012,580	8,919,680,010	5,240,746,760	
		체 납 처 분 비	325,438,760	155,305,240	223,392,110	96,166,460	
		과오납지급금	-	-	-	-	
		전년도이월수입	125,619,893,440	24,858,989,840	140,248,433,380	22,778,934,780	
재 산 수 입	관 유 물 대 여 료 토지, 건물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잡 수 입	관 유 물 대 여 료	956,579,360	956,579,360	282,000	282,000	
		토지, 건물대여료	30,105,246,710	30,105,246,710	143,345,615,830	143,345,615,830	
		기타관유물대여료	1,141,987,260	1,141,987,260	1,153,728,640	1,153,728,640	
		기타민간이자수입	1,141,987,260	1,141,987,260	1,153,728,640	1,153,728,640	
		기타재산수입	-	-	-	-	
		잡 수 입	20,563,018,820	20,563,018,820	18,120,509,000	18,120,509,00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400,240,630	8,400,240,630	124,071,378,190	124,071,378,190	
		관 유 물 매 각 대	460,096,710	127,639,740	526,492,490	201,911,400	
		용 자 원 금 회 수	5,264,519,100	5,264,519,100	1,121,100,000	1,121,100,000	
		여 유 자 금 회 수	102,994,970,390	102,994,970,390	101,116,373,850	101,116,373,850	
전년도이월금	318,600,000,000	318,600,000,000	2,121,341,865,860	2,121,341,865,860			
일반회계전입금	-	-	-	-			
다 계 정 전 입 금	14,457,840,000	14,457,840,000	14,237,840,000	14,237,840,000			
공공기금예탁금원금회수	-	-	-	-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	-	2,079,273,960	2,079,273,960			

※ '03년까지 자료는 기금계정 결산자료, '04년은 기금계정과 적립금 계정 통합자료, '05.1.1적립금계정 폐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체 자료임.



(단위 : 원)

'05		'06		'07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5,999,229,901,990</b>	<b>5,263,916,367,520</b>	<b>6,684,570,938,140</b>	<b>5,747,179,986,090</b>	<b>7,518,998,795,620</b>	<b>6,697,954,207,090</b>
3,614,979,014,230	3,182,164,240,630	4,168,374,283,660	3,749,501,079,520	4,833,180,017,210	4,431,519,910,140
3,614,979,014,230	3,182,164,240,630	4,168,374,283,660	3,749,501,079,520	4,833,180,017,210	4,431,519,910,140
2,848,969,711,200	2,699,789,101,230	3,350,930,051,170	3,199,839,367,570	3,969,972,182,180	3,807,436,995,040
88,794,610	88,194,320	16,271,080	15,336,880	12,880	12,880
410,015,017,620	361,973,277,180	483,861,196,640	435,339,053,830	560,409,783,230	512,540,644,710
355,905,490,800	120,313,667,900	333,566,764,770	114,307,321,240	302,798,038,920	111,542,257,510
-	-	-	-	-	-
-	-	-	-	-	-
-	-	-	-	-	-
-	-	-	-	-	-
393,536,980,100	91,463,957,200	640,143,501,960	123,781,193,460	528,845,685,070	120,077,893,340
-	-	-	-	-	-
21,380,815,710	8,158,397,690	20,659,013,150	8,546,594,990	19,665,267,860	8,811,940,120
372,156,164,390	83,305,559,510	619,484,488,810	115,234,598,470	509,180,417,210	111,265,953,220
118,593,731,280	24,082,802,230	68,028,317,240	21,791,410,470	156,630,426,640	42,831,957,660
47,987,487,620	14,916,929,600	45,290,943,900	15,508,714,670	107,294,680,900	31,204,215,260
35,716,367,280	14,753,733,310	225,252,383,890	18,717,590,900	208,286,064,720	25,107,255,590
14,957,747,130	7,890,899,910	19,432,831,830	10,594,440,980	34,715,008,050	11,174,513,960
310,456,710	134,525,220	1,292,337,010	590,300,220	2,086,576,720	782,476,290
-	-	-	-	35,411,840	33,286,120
154,553,361,020	21,489,655,890	249,353,904,590	37,198,871,000	-	-
37,013,350	37,013,350	10,833,770,350	10,833,270,230	132,248,340	132,248,340
104,907,269,680	104,815,490,690	100,889,370,040	100,889,370,040	130,147,712,100	130,147,712,100
1,289,671,630	1,197,892,640	1,491,488,590	1,491,488,590	1,162,787,730	1,162,787,730
1,289,671,630	1,197,892,640	1,491,488,590	1,491,488,590	1,162,787,730	1,162,787,730
-	-	-	-	-	-
14,597,435,660	14,597,435,660	15,993,384,040	15,993,384,040	12,964,486,850	12,964,486,850
89,020,162,390	89,020,162,390	83,404,497,410	83,404,497,410	116,020,437,520	116,020,437,520
8,833,367,710	8,499,408,730	10,610,093,100	10,273,103,690	11,493,099,380	11,126,366,410
1,252,882,000	1,252,882,000	2,628,100,000	809,650,000	21,910,479,930	11,660,523,170
99,429,955,820	99,429,955,820	106,605,102,360	106,605,102,360	92,774,649,810	92,774,649,810
1,760,126,469,180	1,760,126,469,180	1,588,809,788,400	1,588,809,788,400	1,885,947,152,120	1,885,947,152,120
-	-	-	-	-	-
14,237,840,000	14,237,840,000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	-	-	-	-	-
-	-	50,000,000,000	50,000,000,000	-	-
1,926,123,270	1,926,123,270	1,810,698,620	1,810,698,620	-	-

※ '05년부터 가산금외 수입(연체금 및 급여징수금 등)은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분리

과 목 별	연 도		'08		'09	
	구 분	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합</b>	<b>계</b>	<b>8,690,974,723,690</b>	<b>7,894,290,289,300</b>	<b>8,931,812,084,520</b>	<b>8,198,288,628,790</b>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5,233,937,786,760	4,846,005,508,400	5,073,633,467,410	4,736,382,696,260	
		5,231,550,057,365	4,843,652,229,515	5,069,298,588,890	4,732,202,952,975	
	개 산 보 험 료	4,239,655,412,345	4,083,259,945,085	4,095,771,137,105	3,973,248,156,915	
	확 정 보 험 료	702,477,909,150	649,302,007,320	693,969,782,640	650,185,056,300	
	이 월 보 험 료	289,416,735,870	111,090,277,110	279,557,669,145	108,769,739,760	
	피고용자부담금	2,387,729,395	2,353,278,885	4,334,878,520	4,179,743,285	
	개 산 보 험 료	2,387,729,395	2,353,278,885	3,896,173,655	3,814,278,415	
	확 정 보 험 료	-	-	410,987,790	349,673,350	
	이 월 보 험 료	-	-	27,717,075	15,791,520	
경상이전수입		541,057,363,450	132,685,684,480	524,421,981,670	128,538,934,880	
	위 약 금	-	-	-	-	
	별 금	-	-	90,600,410	90,259,150	
	가 산 금	18,391,834,250	9,457,843,610	13,021,131,360	6,189,472,650	
	기타경상이전수입	522,665,529,200	123,227,840,870	511,310,249,900	122,259,203,080	
	연 체 금	148,420,380,070	53,998,025,160	121,392,301,680	41,168,238,600	
	급 여 징 수 금	104,217,910,910	32,605,263,520	97,792,998,850	32,064,101,620	
	제 3 자 구 상 금	228,373,222,130	23,425,687,280	247,541,418,580	35,078,528,660	
	부정이득징수금	38,758,419,990	11,644,891,500	42,307,513,390	12,972,113,890	
	체 납 처 분 비	2,200,179,020	862,620,690	2,038,056,360	742,237,060	
	과오납지급금	34,244,500	30,210,140	12,932,960	8,965,170	
	전년도이월수입	-	-	-	-	
	기 타	661,172,580	661,142,580	225,028,080	225,018,080	
재 산 수 입		205,279,878,490	205,278,202,800	232,534,610,720	232,532,496,780	
	관유물대여료	1,128,556,700	1,128,556,700	1,134,047,430	1,134,047,430	
	토지,건물대여료	1,128,556,700	1,128,556,700	1,134,047,430	1,134,047,430	
	기타관유물대여료	-	-	-	-	
	기타민간이자수입	13,052,873,730	13,051,198,040	12,665,256,660	12,663,142,720	
	기타재산수입	191,098,448,060	191,098,448,060	218,735,306,630	218,735,306,63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잡 수 입	2,017,573,350	1,638,771,980	16,877,722,820	16,490,198,970	
관 유 물 매 각 대		10,249,956,760	10,249,956,760	3,709,329,090	3,709,329,090	
용 자 원 금 회 수		86,119,169,870	86,119,169,870	102,401,059,350	102,401,059,350	
여 유 자 금 회 수		2,595,610,995,010	2,595,610,995,010	2,959,728,913,470	2,959,728,913,470	
전 년 도 이 월 금		-	-	-	-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타 계 정 전 입 금		-	-	-	-	
공 공 기 금 예 탁 금 원 금 회 수		-	-	-	-	
공 공 기 금 예 탁 이 자 수 입		1,202,000,000	1,202,000,000	3,004,999,990	3,004,999,990	

※ '09년부터 벌금과목 신설로 인한 과목 추가

(단위 : 원)

과 목 별	연 도		'10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합</b>	<b>계</b>		<b>7,854,779,894,330</b>	<b>7,163,594,822,990</b>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4,969,454,459,170	4,635,288,951,730
			4,966,043,134,480	4,631,982,663,590
	개 산 보 험 료		4,124,015,968,760	3,989,255,788,825
	확 정 보 험 료		600,699,675,625	563,232,753,685
	이 월 보 험 료		241,327,490,095	79,494,121,080
	피고용자부담금		3,411,324,690	3,306,288,140
	개 산 보 험 료		2,896,055,520	2,864,646,535
	확 정 보 험 료		383,743,375	374,694,275
	이 월 보 험 료		131,525,795	66,947,330
경상이전수입			471,016,922,830	116,174,684,820
	위 약 금	위 약 금	-	-
	별 금	별 금	21,503,010	20,727,510
	가 산 금	가 산 금	10,743,962,760	4,949,074,630
	기타경상이전수입		460,251,457,060	111,204,882,680
	연 체 금		109,204,715,990	35,502,448,390
	급 여 징 수 금		86,273,925,490	29,599,983,050
	제3자구상금		223,870,564,500	34,125,579,470
	부정이득징수금		38,972,793,150	11,161,045,470
	체 납 처 분 비		1,632,554,080	523,009,200
	과오납지급금		4,237,360	150,610
	전년도이월수입		-	-
	기 타		292,666,490	292,666,490
재 산 수 입			135,563,520,410	135,563,269,840
	관유물대여료		1,113,564,400	1,113,564,400
	토지,건물대여료		1,113,564,400	1,113,564,400
	기타관유물대여료		0	0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12,634,390,000	12,634,139,430
	기타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121,815,566,010	121,815,566,01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잡 수 입	기 타 잡 수 입	8,498,874,120	8,107,758,800
관 유 물 매 각 대			5,621,949,000	3,835,989,000
용 자 원 금 회 수			107,413,465,100	107,413,465,100
여 유 자 금 회 수			2,133,660,772,220	2,133,660,772,220
전 년 도 이 월 금			-	-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5,500,000,000	15,500,000,000
타 계 정 전 입 금			-	-
공 공 기 금 예탁금원금회수			-	-
공 공 기 금 예탁이자수입			8,049,931,480	8,049,931,480

※ '09년부터 별금과목 신설로 인한 과목 추가

5-2-1. 산재기금 예산항목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11년~'18년)

(단위 : 원)

과 목 별	연 도 구 분	'11		'12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합</b>	<b>계</b>	<b>7,880,517,799,590</b>	<b>6,843,526,402,030</b>	<b>8,674,959,575,970</b>	<b>7,479,635,089,480</b>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개 산 보 험료	5,487,822,643,470	4,808,602,353,990	6,325,442,187,230	5,512,366,536,700
		월 별 보 험료	5,484,574,202,100	4,805,953,102,200	6,320,629,253,970	5,508,382,333,260
		정 산 보 험료	1,306,416,881,125	1,103,663,661,305	1,125,759,426,155	1,025,402,304,060
		증 가 보 험료	3,433,903,133,900	3,061,298,339,110	4,035,845,721,540	3,617,692,347,490
		확 정 보 험료	2,978,369,040	2,204,752,430	546,087,256,285	517,711,419,200
		이 월 보 험료	2,337,630	121,020	-	-
		확 정 보 험료	740,277,556,920	637,946,714,255	333,361,164,525	271,194,344,555
		이 월 보 험료	995,923,485	839,514,080	279,575,685,465	76,381,917,955
		확 정 보 험료	3,248,441,370	2,649,251,790	4,812,933,260	3,984,203,440
		이 월 보 험료	46,186,695	18,264,145	421,250	366,700
재 산 수 입	피고용자부담금	개 산 보 험료	2,702,776,560	2,457,479,260	4,479,130,960	3,961,425,390
		월 별 보 험료	-	-	6,001,540	3,783,610
		정 산 보 험료	498,885,880	173,508,385	2,011,555	1,802,665
		증 가 보 험료	592,235	-	325,367,955	16,825,075
		확 정 보 험료	122,822,356,100	122,717,164,200	87,823,198,680	87,718,022,690
		이 월 보 험료	1,024,838,510	1,024,838,510	1,040,823,690	1,040,823,690
		확 정 보 험료	828,588,560	828,588,560	841,487,650	841,487,650
		이 월 보 험료	196,249,950	196,249,950	199,336,040	199,336,040
		확 정 보 험료	121,797,517,590	121,692,325,690	86,782,374,990	86,677,199,000
		이 월 보 험료	11,972,087,540	11,969,216,110	12,245,838,350	12,242,982,830
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109,825,430,050	109,723,109,580	74,536,536,640	74,434,216,170
		기타재산수입	465,379,387,240	110,307,237,120	541,728,114,640	160,583,916,280
		기타재산수입	61,612,270	60,836,770	17,576,690	17,576,690
		기타재산수입	11,434,319,640	4,744,478,680	14,283,517,460	5,450,106,080
		기타재산수입	453,883,455,330	105,501,921,670	527,427,020,490	155,116,233,510
		기타재산수입	111,162,779,480	36,097,566,770	144,251,527,600	39,150,573,200
		기타재산수입	86,282,026,690	23,401,467,140	105,694,984,120	28,140,533,710
		기타재산수입	203,857,735,550	29,274,162,280	169,112,928,720	29,728,902,800
		기타재산수입	47,402,689,390	12,190,845,230	99,500,425,060	49,756,010,520
		기타재산수입	912,766,420	276,574,950	662,189,520	139,939,070
재화용역판매수입	기타 잡수입	파 오 지 급 금	5,246,090	1,093,590	7,132,750	2,604,770
		기	4,260,211,710	4,260,211,710	8,197,832,720	8,197,669,440
		기	8,627,740,450	8,162,235,640	9,260,170,780	9,258,970,420
		기	8,627,740,450	8,162,235,640	9,260,170,780	9,258,970,420
		기	5,541,022,250	3,412,761,000	2,128,261,250	1,130,000,000
		기	1,016,097,310	469,524,050	546,573,260	546,573,260
		기	997,055,860	457,896,000	539,159,860	539,159,860
		기	7,413,400	7,413,400	7,413,400	7,413,400
		기	11,628,050	11,628,050	-	-
		기	4,524,924,940	2,943,236,950	1,581,687,990	583,426,740
융자및잔대차원금회수	토지매각대	토 지 매 각 대	4,524,924,940	2,943,236,950	1,581,687,990	583,426,740
		토 지 매 각 대	114,224,856,660	114,224,856,660	109,336,945,160	109,336,945,160
		토 지 매 각 대	114,224,856,660	114,224,856,660	109,336,945,160	109,336,945,160
		토 지 매 각 대	1,598,932,108,510	1,598,932,108,510	1,264,718,232,520	1,264,718,232,520
		토 지 매 각 대	14,802,462,230	14,802,462,230	15,834,885,660	15,834,885,660
		토 지 매 각 대	800,000,000,000	800,000,000,000	775,000,000,000	775,000,000,000
		토 지 매 각 대	784,129,646,280	784,129,646,280	473,883,346,860	473,883,346,860
		토 지 매 각 대	77,167,684,910	77,167,684,910	334,522,465,710	334,522,465,710
		토 지 매 각 대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토 지 매 각 대	50,000,000,000	50,000,000,000	300,000,000,000	300,000,000,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11,667,684,910	11,667,684,910	19,022,465,710	19,022,465,710

\* '11년 4대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과목구조 개편체제로 반영.

(단위 : 원)

과 목 별 합	연 도 구 분 계	'13		'14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사회보장기여금	합	8,105,021,745,670	6,744,576,788,770	10,040,530,721,900	8,529,785,336,710
고용주부담금	개 산 보 험 료 월 별 보 험 료 정 산 보 험 료 확 정 보 험 료 이 월 보 험 료	6,358,522,911,170	5,439,841,761,260	6,825,239,497,200	5,800,618,811,570
		6,353,682,020,160	5,435,813,009,190	6,820,433,010,170	5,796,659,816,320
		1,056,920,224,810	979,756,649,050	1,201,319,789,350	1,098,859,920,800
		3,664,764,947,720	3,291,902,334,570	3,910,439,968,700	3,517,481,369,950
		538,680,022,670	495,053,262,760	517,323,137,730	463,663,066,600
		331,774,564,400	288,163,093,310	362,375,195,580	319,018,788,940
		761,542,260,560	380,937,669,500	828,974,918,810	397,636,670,030
		4,840,891,010	4,028,752,070	4,806,487,030	3,958,995,250
		-	-	-	-
		4,024,358,580	3,566,733,460	3,993,324,170	3,551,548,990
		23,060,440	19,637,340	55,108,280	22,238,800
		33,729,610	22,752,560	-	-
		759,742,380	419,628,710	758,054,580	385,207,460
		54,149,895,030	54,149,895,030	280,926,633,000	280,926,633,000
관유물대여료	토 지 대 여 료 건 물 대 여 료	963,033,850	963,033,850	1,142,419,050	1,142,419,050
		801,950,700	801,950,700	914,634,190	914,634,190
		161,083,150	161,083,150	227,784,860	227,784,860
		53,186,861,180	53,186,861,180	279,784,213,950	279,784,213,95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11,967,386,010	11,967,386,010	12,110,203,060	12,110,203,060
		41,219,475,170	41,219,475,170	267,674,010,890	267,674,010,890
		557,543,518,420	115,781,320,440	595,522,722,960	109,399,812,180
경상이전수입	별 금 및 과 료 가 산 금 기타경상이전수입	-	-	168,229,440	-
		16,080,016,810	5,384,159,910	16,062,133,400	3,855,286,360
		541,463,501,610	110,397,160,530	579,292,360,480	105,544,525,820
		181,985,704,390	38,283,530,010	216,436,217,140	31,662,461,690
		118,595,491,850	27,005,692,400	127,108,305,770	27,075,020,630
		172,837,026,720	34,657,066,260	148,973,656,080	32,758,674,800
		67,089,479,440	9,967,615,540	82,377,879,400	10,071,421,870
		553,485,540	80,955,650	467,900,270	48,545,010
		17,381,580	17,368,580	631,200	631,200
		384,932,090	384,932,090	3,927,770,620	3,927,770,620
		8,209,187,470	8,207,578,460	9,728,994,850	9,727,206,070
		8,209,187,470	8,207,578,460	9,728,994,850	9,727,206,070
		249,581,250	249,581,250	7,249,560,000	7,249,560,000
		고정자산매각대	건 물 매 각 대	-	-
-	-			1,031,287,890	1,031,287,890
249,581,250	249,581,250			6,218,272,110	6,218,272,110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토 지 매 각 대	249,581,250	249,581,250	6,218,272,110	6,218,272,110
		120,207,659,140	120,207,659,140	119,137,638,140	119,137,638,140
융자및전대차원금회수	기타민간융자금원금회수	120,207,659,140	120,207,659,140	119,137,638,140	119,137,638,140
		775,831,897,320	775,831,897,320	1,869,707,804,550	1,869,707,804,55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융기면예치금회수 비통화융기면예치금회수	20,651,269,190	20,651,269,190	25,049,387,390	25,049,387,390
		475,000,000,000	475,000,000,000	-	-
		280,180,628,130	280,180,628,130	1,844,658,417,160	1,844,658,417,160
		230,307,095,870	230,307,095,870	333,017,871,200	333,017,871,2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예탁원금회수 기금예탁이자수입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200,000,000,000	200,000,000,000	300,000,000,000	300,000,000,000
		230,307,095,870	230,307,095,870	333,017,871,200	333,017,871,200
		14,807,095,870	14,807,095,870	17,517,871,200	17,517,871,200

\* '11년 4대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과목구조 개편체제로 반영.

(단위 : 원)

과 목 별 합	연 도 구 분 계	'15		'16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11,530,800,717,074	9,970,294,739,870	14,281,005,770,150	12,750,261,657,100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7,116,187,297,980	6,065,842,790,880	7,339,819,471,340	6,288,064,833,780
	개 산 보 험 료	7,111,098,902,840	6,061,511,918,330	7,334,264,835,140	6,283,302,441,820
	월 별 보 험 료	1,265,289,318,310	1,176,797,536,240	1,345,892,902,010	1,253,913,648,210
	정 산 보 험 료	4,061,120,165,720	3,659,593,917,080	4,153,036,785,380	3,749,973,714,820
	확 정 보 험 료	511,324,024,260	470,387,090,350	543,533,424,860	490,650,422,520
	이 월 보 험 료	372,582,855,750	322,521,419,970	445,047,237,190	375,866,478,690
	피고용자부담금	910,782,538,800	432,211,954,690	846,754,485,700	412,898,177,580
	개 산 보 험 료	5,088,395,140	4,330,872,550	5,554,636,200	4,762,391,960
	월 별 보 험 료	4,309,692,970	3,870,863,950	4,809,333,530	4,306,209,770
	정 산 보 험 료	54,904,640	41,078,950	45,632,600	34,201,440
	확 정 보 험 료				
	이 월 보 험 료	723,797,530	418,929,650	699,670,070	421,980,750
재 산 수 입	관유물대여료	265,938,225,960	265,938,225,960	528,130,960,610	528,130,960,610
	토 지 대 여 료	1,095,822,020	1,095,822,020	1,103,994,620	1,103,994,620
	건 물 대 여 료	843,060,200	843,060,200	865,704,720	865,704,72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52,761,820	252,761,820	238,289,900	865,704,720
	기타기간이자수입	264,842,403,940	264,842,403,940	527,026,965,990	527,026,965,990
	기타재산수입	10,948,607,330	10,948,607,330	9,747,927,390	9,747,927,390
경상이전수입	벌금 및 과료	253,893,796,610	253,893,796,610	517,279,038,600	517,279,038,600
	가 산 금	640,802,550,274	130,642,793,850	602,374,992,980	123,387,340,690
	과 징 금	173,731,000	173,731,000		
	기타경상이전수입	18,001,985,160	5,413,474,470	19,133,826,030	5,948,616,230
	연 체 금	622,626,834,114	125,055,588,380	36,355,610	36,355,610
	금여징수금등	249,972,807,120	48,868,235,910	212,569,517,910	41,789,653,500
	제3자구상금	136,118,343,150	30,659,127,970	128,805,185,910	27,712,177,500
	부당이득징수금	149,660,361,300	33,863,964,270	140,088,545,500	38,765,140,010
	채납처분비	85,760,009,504	11,023,398,330	100,990,483,440	8,757,331,580
	과오지급회수금	428,413,070	44,522,930	362,251,140	39,949,080
	기 타	807,870	489,000	2,907,000	2,438,87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 타 잡 수 입	686,092,100	595,849,970	385,920,440	335,678,310
	고정자산매각대	8,248,040,070	8,246,326,390	14,296,030,290	14,294,207,090
	건물매각대	8,248,040,070	8,246,326,390	14,296,030,290	14,294,207,09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999,640,000	2,999,640,000	1,034,214,490	1,034,214,490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380,061,060	380,061,060	777,854,490	777,854,490
	토지매각대	380,061,060	380,061,060	772,569,490	772,569,490
	입목죽매각대	2,619,578,940	2,619,578,940	5,285,000	5,285,000
	임목죽매각대	2,619,578,940	2,619,578,940	256,360,000	256,360,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28,934,295,990	128,934,295,990	128,185,525,460	128,185,525,46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8,934,295,990	128,934,295,990	128,185,525,460	128,185,525,46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한국은행예치금회수	3,035,250,916,140	3,035,250,916,140	4,976,751,796,950	4,976,751,796,95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6,146,293,090	26,146,293,090	28,282,601,970	28,282,601,97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50,000,000,000	150,000,000,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일반회계전입금	2,859,104,623,050	2,859,104,623,050	4,948,469,194,980	4,948,469,194,980
	기금예탁금원금회수	332,439,750,660	332,439,750,660	690,412,778,030	690,412,778,030
	기금예탁금이자수입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기금예탁금이자수입	300,000,000,000	300,000,000,000	660,000,000,000	660,000,000,000
	기금예탁금이자수입	16,939,750,660	16,939,750,660	14,912,778,030	14,912,778,030

(단위 : 원)

과 목 별	연 도		'17		'18	
	구 분	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합</b>	<b>계</b>	<b>12,604,382,664,970</b>	<b>11,093,375,051,820</b>	<b>12,378,283,408,150</b>	<b>10,778,407,064,430</b>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7,511,930,886,600	6,434,242,538,600	8,539,051,816,610	7,352,754,015,870	
	개산보험료	7,505,651,666,890	6,428,825,058,030	8,531,485,712,410	7,346,070,576,180	
	개월정산보험료	1,477,262,460,550	1,380,353,645,340	1,681,604,725,300	1,581,636,117,570	
	정확이월보험료	4,165,678,567,090	3,748,144,723,480	4,887,123,873,220	4,410,370,847,810	
	정확이월보험료	500,962,566,840	449,925,462,460	479,633,273,720	434,645,126,170	
	정확이월보험료	474,053,353,290	427,166,997,630	540,330,801,490	493,409,728,780	
	정확이월보험료	887,694,719,120	423,234,229,120	942,793,038,680	426,008,755,850	
	정확이월보험료	6,279,219,710	5,417,480,570	7,566,104,200	6,683,439,690	
	고용자부담금	5,470,250,370	4,904,222,590	6,860,597,310	6,135,339,690	
	개산보험료	58,529,870	49,095,940	44,138,010	38,727,480	
	개월정산보험료	750,439,470	464,162,040	661,368,880	509,372,520	
	정확이월보험료			382,140,541,680	382,140,541,680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1,117,423,930	1,117,423,930	1,131,913,280	1,131,913,280	
	토지대여료	887,065,210	887,065,210	906,635,120	906,635,120	
	건물대여료	230,358,720	230,358,720	225,278,160	225,278,160	
	기타자산수입	8,604,202,090	8,604,202,090	381,008,628,400	381,008,628,400	
	기타재산수입	569,818,672,720	569,818,672,720	7,591,778,020	7,591,778,020	
경상이전수입	벌금및과료	545,490,958,760	112,173,660,010	515,296,140,540	101,719,694,770	
	과산징금	17,933,480,660	5,589,584,730	17,639,208,570	6,154,879,590	
	기타경상이전수입	527,557,478,100	106,584,075,280	497,656,931,970	95,564,815,180	
	연체금	184,940,825,640	34,447,432,770	170,422,705,770	28,464,294,630	
	여정수금	125,461,056,610	25,026,715,140	121,283,761,730	19,695,088,680	
	3자구상금	127,417,136,530	36,572,196,530	126,127,396,350	36,349,227,880	
	부당이득징수금	89,149,012,500	10,239,500,990	78,597,978,020	10,513,588,280	
	채납차분비	326,854,160	35,637,190	282,513,970	26,802,820	
	과오지급회수금	669,000	669,000	100,000	100,000	
	기타	261,923,660	261,923,660	941,476,130	515,712,89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기타잡수입	11,005,572,510	11,003,606,110	10,964,463,330	10,962,366,120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매각대	9,201,546,900	9,201,546,900	10,964,463,330	10,962,366,120	
	건물매각대	741,231,230	741,231,23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41,231,230	741,231,230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8,460,315,670	8,460,315,670			
	토지매각대	8,460,315,670	8,460,315,670			
	입목죽매각대					
유지및전대차원금회수	기타민간유자원금회수	120,687,056,180	120,687,056,180	123,362,282,170	123,362,282,17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20,687,056,180	120,687,056,180	123,362,282,170	123,362,282,17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403,895,485,030	3,403,895,485,030	2,383,328,163,830	2,383,328,163,83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6,830,061,660	46,830,061,660	42,704,672,270	42,704,672,27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일반회계전입금	3,357,065,423,370	3,357,065,423,370	2,340,623,491,560	2,340,623,491,560	
	기금예탁금원금회수	422,630,860,250	422,630,860,250	424,139,999,990	424,139,999,990	
	기금예탁금이자수입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15,500,000,000	
	기금예탁금이자수입	400,000,000,000	400,000,000,000	400,000,000,000	400,000,000,000	
	기금예탁금이자수입	7,130,860,250	7,130,860,250	8,639,999,990	8,639,999,990	

(단위 : 원)

과 목 별	연 도		'19	
	구 분	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b>합</b>	<b>계</b>		<b>12,267,974,558,500</b>	<b>10,657,637,982,220</b>
사회보장기여금	고 용 주 부 담 금	개 산 보 험 료	8,750,079,547,490	7,545,811,739,400
		월 별 보 험 료	8,741,833,370,470	7,538,667,397,090
		정 산 보 험 료	1,801,360,284,420	1,702,297,853,370
		확 이 정 보 보 험 료	4,816,098,783,500	4,358,224,336,140
		월 보 보 험 료	540,761,784,770	502,959,900,060
		이 정 보 보 험 료	532,531,302,850	478,691,276,210
		월 보 보 험 료	1,051,081,214,930	496,494,031,310
		이 정 보 보 험 료	8,246,177,020	7,144,342,310
	폐 고 용 자 부 담 금	개 산 보 험 료		
		월 별 보 험 료	7,350,385,320	6,450,802,590
		정 산 보 험 료	38,820,030	36,153,150
		확 이 정 보 보 험 료		
		월 보 보 험 료	856,971,670	657,386,570
		이 정 보 보 험 료	255,081,398,770	255,081,398,770
재 산 수 입	관 유 물 대 여 료	토 지 대 여 료	973,549,250	973,549,250
		건 물 대 여 료	781,135,780	781,135,780
		기타	192,413,470	192,413,470
	기타(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민간(자수입)	254,107,849,520	254,107,849,520
		기타 재산수입	6,594,580,630	6,594,580,630
경 상 이 전 수 입	기타	기타	247,513,268,890	247,513,268,890
		기타	506,641,743,710	100,575,316,480
	발 금 및 과 과 과 기	산 정 금	18,690,952,800	6,459,621,940
		기타	35,457,970	
		연 체 금	487,915,332,940	94,080,236,570
		금 여 정 수 금	167,427,719,050	27,657,325,180
		계 3 자 구 상 금	108,282,741,830	14,112,536,420
		부 당 이 득 정 수 금	142,585,298,480	42,181,278,780
		채 납 처 분 비	67,692,042,390	8,807,930,130
		과 오 지 급 회 수	261,946,420	26,344,530
		기	400,000	400,000
		기	1,665,184,770	1,294,421,530
재 회 및 용 역 판 매 수 입	기 타 잡 수 입	기 타	8,215,775,280	8,213,434,320
관 유 물 매 각 대	고 정 자 산 매 각 대	건 물 매 각 대	8,215,775,280	8,213,434,320
		기타		
		고 정 자 산 매 각 대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토 지 매 각 대		
		입 목 주 매 각 대		
용 지 및 전 대 차 원 금 회 수	기타	기타	134,496,145,390	134,496,145,390
차 입 금 및 여 유 자 금 회 수	기타	기타	134,496,145,390	134,496,145,390
		기타	2,190,379,947,880	2,190,379,947,880
		기타	47,355,792,770	47,355,792,77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정 부 내 부 수 입 및 기 타	일 반 회 계 전 입 금	기금	2,143,024,155,110	2,143,024,155,110
		기금	423,079,999,980	423,079,999,980
		기금	15,500,000,000	15,500,000,000
		기금	400,000,000,000	400,000,000,000
		기금	7,579,999,980	7,579,999,980





## 5-3. 연도별 산재기금 수지 현황

(단위 : 개소, 원)

연도	구분 적용 사업장수	적용 근로자수			계 (A)
		계 (명)	상용(명)	일용(명)	
'91	146,284	7,922,704	5,295,694	2,627,010	900,672,943,620
'92	154,820	7,058,704	5,147,326	1,911,378	1,250,495,819,580
'93	163,152	6,942,527	5,125,635	1,816,892	1,636,035,759,910
'94	172,871	7,273,132	5,294,503	1,978,629	1,521,986,748,150
'95	186,021	7,893,727	5,652,737	2,240,990	1,702,530,716,650
'96	210,226	8,156,894	5,702,971	2,453,923	1,983,446,224,660
'97	227,564	8,236,641	5,692,205	2,544,436	2,367,197,216,470
'98	215,539	7,582,479	5,785,276	1,797,203	2,119,666,072,180
'99	249,405	7,441,160	5,628,458	1,812,702	2,062,243,044,550
'00	706,231	9,485,557	7,256,838	2,228,719	2,504,684,703,750
'01	909,461	10,581,186	8,142,537	2,438,649	2,877,066,368,730
'02	1,002,263	10,571,279	7,801,809	2,769,470	3,209,432,209,150
'03	1,006,549	10,599,345	7,966,004	2,633,341	3,546,595,731,260
'04	1,039,208	10,473,090	8,463,404	2,009,686	3,871,962,116,170
'05	1,175,606	12,069,599	8,931,739	3,137,860	4,239,103,432,810
'06	1,292,696	11,688,797	9,141,043	2,547,754	5,045,761,149,740
'07	1,429,885	12,528,879	9,641,245	2,887,634	5,633,051,643,500
'08	1,594,793	13,489,986	10,241,478	3,248,508	6,095,363,728,680
'09	1,560,949	13,884,927	10,678,427	3,206,500	5,972,083,171,050
'10	1,608,361	14,198,748	10,998,103	3,200,645	5,721,119,122,110
'11	1,738,196	14,362,372	11,275,241	3,087,131	6,231,585,691,080
'12	1,825,296	15,548,423	12,761,836	2,786,587	7,110,241,343,450
'13	1,977,057	15,449,228	12,882,396	2,566,832	7,129,189,848,350
'14	2,187,391	17,062,308	13,812,621	3,249,687	7,870,822,917,350
'15	2,367,186	17,968,931	14,610,118	3,358,813	8,195,549,800,934
'16	2,457,225	18,431,716	15,278,857	3,152,859	8,644,253,973,200
'17					8,800,487,179,940
'18					9,594,955,244,320
'19					9,677,594,610,620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보 험 료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	전년도이월 및 타회계전입금	계 (B)	보험료 (C)
787,178,264,710	61,627,305,170	2,853,450,630	49,013,923,110	788,718,000,980	720,652,614,410
1,157,381,985,090	76,068,155,680	5,074,395,790	11,971,283,020	1,088,147,561,220	1,049,848,234,760
1,504,197,569,480	92,429,869,670	24,778,076,640	14,630,244,120	1,444,792,934,462	1,375,765,856,422
1,365,697,434,730	105,638,391,510	36,814,877,750	13,836,044,160	1,291,418,110,860	1,207,205,949,280
1,305,375,555,100	107,258,567,500	15,004,811,370	274,891,782,680	1,453,523,667,630	1,130,354,696,560
1,639,167,434,550	137,263,090,740	24,699,689,360	182,316,010,010	1,675,402,057,880	1,423,109,811,950
2,069,503,003,570	153,601,864,200	33,208,348,700	110,884,000,000	2,020,103,496,030	1,818,957,926,980
1,739,739,372,040	154,280,720,730	17,026,979,410	208,619,000,000	1,719,087,067,930	1,451,435,640,010
1,856,918,811,740	169,888,102,370	11,628,130,440	23,808,000,000	1,612,116,030,910	1,530,007,146,330
2,289,191,371,470	184,590,015,300	21,753,616,980	9,149,700,000	1,955,454,630,260	1,876,394,611,800
2,623,610,576,640	220,127,539,080	25,043,933,010	8,284,320,000	2,364,462,188,040	2,256,090,391,980
2,744,580,997,680	230,350,954,900	164,418,032,240	70,082,224,330	2,715,625,227,150	2,395,318,682,900
2,821,001,077,230	253,711,981,120	138,824,832,910	333,057,840,000	3,029,808,946,400	2,465,057,417,790
3,336,497,854,070	273,037,565,970	248,188,856,130	14,237,840,000	3,242,593,965,970	2,896,117,975,470
3,614,979,014,230	393,536,980,100	216,349,598,480	14,237,840,000	3,503,789,898,340	3,182,164,240,630
4,168,374,283,660	640,143,501,960	222,543,364,120	14,700,000,000	4,108,370,197,690	3,749,501,079,520
4,833,180,017,210	528,845,685,070	256,325,941,220	14,700,000,000	4,812,007,054,970	4,431,519,910,140
5,233,937,786,760	541,057,363,450	304,868,578,470	15,500,000,000	5,298,679,294,290	4,846,005,508,400
5,073,633,467,410	524,421,981,670	358,527,721,970	15,500,000,000	5,238,559,715,320	4,736,382,696,260
4,969,454,459,170	471,016,922,830	265,147,740,110	15,500,000,000	5,029,934,050,770	4,635,288,951,730
5,487,822,643,470	465,379,387,240	262,883,660,370	15,500,000,000	5,194,594,293,520	4,808,602,353,990
6,325,442,187,230	541,728,114,640	227,571,041,580	15,500,000,000	5,914,916,856,960	5,512,366,536,700
6,358,522,911,170	557,543,518,420	197,623,418,760	15,500,000,000	5,768,744,891,450	5,439,841,761,260
6,825,239,497,200	595,522,722,960	434,560,697,190	15,500,000,000	6,360,077,532,160	5,800,618,811,570
7,116,187,297,980	640,802,550,274	423,059,952,680	15,500,000,000	6,635,043,823,730	6,065,842,790,880
7,339,819,471,340	602,374,992,980	686,559,508,880	15,500,000,000	7,113,509,860,150	6,288,064,833,780
7,511,930,886,600	545,490,958,760	727,565,334,580	15,500,000,000	7,289,479,566,790	6,434,242,538,600
8,539,051,816,610	515,296,140,540	525,107,287,170	15,500,000,000	7,995,078,900,600	7,352,754,015,870
8,750,079,547,490	506,641,743,710	405,373,319,420	15,500,000,000	8,067,258,034,340	7,545,811,739,400



연도	구분	수입액			수입률 (B/A)	계 (D)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등	전년도이월및 타회계전입금		
'91		16,350,111,190	2,701,352,270	49,013,923,110	87.6	782,495,339,450
'92		21,462,861,810	4,865,181,630	11,971,283,020	87.0	1,034,659,541,245
'93		29,879,274,690	24,517,559,230	14,630,244,120	88.3	1,056,959,647,290
'94		33,833,548,910	36,542,568,510	13,836,044,160	84.9	1,141,380,391,340
'95		33,522,025,450	14,755,162,940	274,891,782,680	85.4	1,421,030,057,710
'96		45,702,612,710	24,273,623,210	182,316,010,010	84.5	1,626,562,765,440
'97		57,418,333,630	32,843,235,420	110,884,000,000	85.3	1,848,562,056,220
'98		42,338,171,200	16,694,256,720	208,619,000,000	81.1	1,660,607,747,030
'99		47,008,032,690	11,292,851,890	23,808,000,000	78.2	1,514,116,469,170
'00		48,527,075,200	21,383,243,260	9,149,700,000	78.1	1,708,597,176,520
'01		75,409,221,160	24,678,254,900	8,284,320,000	82.2	2,023,751,665,560
'02		86,152,021,650	164,072,298,270	70,082,224,330	84.6	2,554,080,567,270
'03		93,201,312,670	138,492,375,940	333,057,840,000	85.4	2,960,730,115,310
'04		84,373,875,460	247,864,275,040	14,237,840,000	83.7	3,368,809,362,650
'05		91,463,957,200	215,923,860,510	14,237,840,000	82.7	3,675,151,057,470
'06		123,781,193,460	220,387,924,710	14,700,000,000	81.4	3,861,232,833,970
'07		120,077,893,340	245,709,251,490	14,700,000,000	85.4	3,982,343,212,080
'08		132,685,684,480	304,488,101,410	15,500,000,000	86.9	4,184,570,609,210
'09		128,538,934,880	358,138,084,180	15,500,000,000	87.7	4,209,585,083,660
'10		116,174,684,820	262,970,414,220	15,500,000,000	87.9	4,333,170,778,210
'11		110,307,237,120	260,184,702,410	15,500,000,000	86.8	4,493,817,516,370
'12		160,583,916,280	226,466,403,980	15,500,000,000	83.2	4,713,384,460,290
'13		115,781,320,440	197,621,809,750	15,500,000,000	80.9	4,609,755,221,380
'14		109,399,812,180	434,558,908,410	15,500,000,000	80.8	4,703,035,319,530
'15		130,642,793,850	423,058,239,000	15,500,000,000	80.9	4,972,711,856,540
'16		123,387,340,690	686,557,685,680	15,500,000,000	82.3	5,147,282,474,460
'17		112,173,660,010	727,563,368,180	15,500,000,000	82.8	5,307,775,490,770
'18		101,719,694,770	525,105,189,960	15,500,000,000	83.3	5,950,889,864,310
'19		100,575,316,480	405,370,978,460	15,500,000,000	83.6	6,449,626,405,070



지 출 액			수 지 율		비 고
보험급여(E)	업 무 비	반 환 금	D/B	E/C	
701,514,052,030	75,162,823,420	5,818,464,000	99.2	97.3	※ 일용은 상용으로 환산한 수치임. ※ '76, '77, '78년도의 보험급여액은 지출원인행위 금액임. ※ 업무비에는 보험시설 및 재해예방비가 포함되었음. ※ '04년 이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에서 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를 제외하고 산정. ※ 경상이전수입에는 가산금에 연체금, 급여징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포함. ※ 보험급여에는 연말 여입 금액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931,564,168,860	96,350,868,355	6,744,504,030	95.1	88.7	
872,530,590,480	174,166,524,970	10,262,531,840	73.2	63.4	
998,562,724,840	126,880,155,780	15,937,510,720	88.4	82.7	
1,133,577,490,290	273,514,693,470	13,937,873,950	97.8	100.3	
1,355,337,130,080	260,084,752,310	11,140,883,050	97.1	95.2	
1,556,041,967,620	278,526,492,120	13,993,596,480	91.5	85.5	
1,451,065,987,070	194,791,723,320	14,750,036,640	96.6	100.0	
1,274,225,648,770	224,943,386,820	14,947,433,580	93.9	83.3	
1,456,265,790,350	228,413,400,400	23,917,985,770	87.4	77.6	
1,744,560,198,260	255,157,838,390	24,033,628,910	85.6	77.3	
2,020,335,492,620	502,341,627,400	31,403,447,250	94.1	84.3	
2,481,814,399,410	426,057,891,380	52,857,824,520	97.7	100.7	
2,860,050,916,910	448,293,670,490	60,464,775,250	103.9	98.8	
3,025,779,270,990	571,990,336,510	77,381,449,970	104.9	95.1	
3,163,793,211,870	609,028,784,400	88,410,837,700	94.0	84.4	
3,242,272,278,160	654,214,178,180	85,856,755,740	82.8	73.2	
3,421,886,024,120	650,046,778,100	112,637,806,990	79.0	70.6	
3,463,140,606,700	631,668,107,980	114,776,368,980	80.4	73.1	
3,523,735,271,150	712,768,689,290	96,666,817,770	86.1	76.0	
3,625,397,032,670	717,505,535,540	150,914,948,160	86.5	75.4	
3,851,287,503,710	752,527,245,980	109,569,710,600	79.7	69.9	
3,795,434,385,050	814,320,836,330	0	80.0	69.8	
3,926,559,317,140	776,476,002,390	0	73.9	67.7	
4,079,108,065,550	893,603,790,990	0	74.9	67.2	
4,280,054,633,240	867,227,841,220	0	72.3	68.0	
4,436,037,673,030	871,737,817,740	0	72.8	68.9	
5,033,901,404,160	916,988,460,150	0	74.4	68.5	
5,529,359,774,460	920,266,630,610	0	79.9	73.3	



## 제 6 장 행정구제

6-1. 연도별 심사청구 결정 현황

급여 처리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b>합 계</b>	<b>521</b>	<b>535</b>	<b>694</b>	<b>693</b>	<b>627</b>	<b>773</b>	<b>1,135</b>	<b>1,223</b>	<b>1,268</b>	<b>1,548</b>	<b>1,756</b>	<b>2,451</b>	<b>2,948</b>	<b>3,368</b>	<b>3,271</b>	<b>3,529</b>	<b>4,063</b>	<b>5,084</b>	<b>5,197</b>
요양 급여	소계	64	67	107	107	90	124	204	215	185	279	435	564	663	637	734	925	1,443	2,166	2,363	2,099
	취소	16	10	34	21	31	20	57	46	32	37	80	54	43	63	152	95	222	263	218	302
	기각	46	51	68	76	54	92	140	158	134	220	314	478	590	541	531	771	1,153	1,807	2,057	1,688
	각하	2	4	5	10	5	12	7	11	18	21	39	28	28	30	49	54	56	78	70	66
	기타	-	2	-	-	-	-	-	-	1	1	2	4	2	3	2	5	12	18	18	18
휴업 급여	소계	5	16	9	15	-	4	4	4	8	9	8	7	8	24	18	52	118	164	120	148
	취소	1	2	1	1	-	1	-	-	4	1	2	1	1	2	1	9	28	34	33	32
	기각	4	10	8	11	-	3	4	3	2	5	4	6	7	19	15	35	84	118	81	101
	각하	-	4	-	3	-	-	-	1	2	3	2	-	-	3	2	8	4	10	5	12
	기타	-	-	-	-	-	-	-	-	-	-	-	-	-	-	-	-	2	2	1	3
장해 급여	소계	388	352	485	472	451	552	817	885	911	1,081	1,075	1,545	1,782	2,024	1,925	2,000	1,811	2,032	2,122	1,478
	취소	70	84	127	59	77	107	197	205	214	188	211	223	235	332	430	369	368	438	414	333
	기각	316	264	351	412	365	439	614	673	689	881	849	1,299	1,523	1,667	1,477	1,609	1,409	1,573	1,682	1,101
	각하	2	2	7	1	9	6	6	7	8	10	13	22	19	23	17	22	24	12	8	15
	기타	-	2	-	-	-	-	-	-	-	2	2	1	5	2	1	6	10	9	14	29
유족 급여	소계	64	93	93	72	60	89	101	105	130	140	171	197	252	337	370	449	657	694	582	497
	취소	19	23	20	14	15	24	29	22	21	20	28	33	35	61	136	69	86	99	52	57
	기각	45	67	72	56	42	59	70	80	101	112	137	154	211	268	218	364	552	562	514	424
	각하	-	-	1	2	3	6	2	3	8	7	6	9	6	8	15	14	18	32	13	12
	기타	-	3	-	-	-	-	-	-	-	1	-	1	-	-	1	2	1	1	3	4
기 타	소계	-	7	-	27	26	4	9	14	34	39	67	138	243	346	224	103	34	28	10	28
	취소	-	-	-	17	7	2	2	1	7	5	10	19	11	35	37	17	1	1	-	6
	기각	-	4	-	10	14	2	7	13	23	31	37	97	223	301	163	76	28	19	9	17
	각하	-	1	-	-	5	-	-	-	4	3	20	21	8	9	22	9	4	5	1	4
	기타	-	2	-	-	-	-	-	-	-	-	-	1	1	1	2	1	1	3	-	1

(단위 : 건)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204	3,973	3,470	3,831	4,494	6,370	8,458	8,871	7,854	7,843	8,014	8,024	8,469	8,265	8,371	8,489	8,157	8,656	9,017	10,685
1,636	2,238	1,917	2,264	2,744	3,984	5,407	5,783	5,116	5,097	5,001	5,085	5,365	5,247	5,068	4,888	4,244	4,173	4,573	5,350
178	161	108	138	243	333	522	513	543	531	521	621	710	788	791	701	581	658	834	815
1,394	1,971	1,719	1,992	2,356	3,455	4,711	5,115	4,423	4,416	4,352	4,322	4,497	4,318	4,150	4,078	3,564	3,385	3,618	4,377
42	53	49	74	86	153	151	127	118	98	86	90	104	97	68	48	50	54	40	58
22	53	41	60	59	43	23	28	32	52	42	52	54	44	59	61	49	76	81	100
127	136	39	37	59	76	151	224	159	218	188	173	275	307	316	346	304	357	455	485
30	13	4	5	7	16	21	50	45	44	43	46	73	69	68	82	48	59	84	97
84	108	32	26	40	56	105	167	101	159	135	124	193	231	237	257	244	289	360	335
5	9	1	-	3	4	21	6	4	9	5	3	8	6	7	1	5	4	8	4
8	6	2	6	9	-	4	1	9	6	5	-	1	1	4	6	7	5	3	49
964	1,053	914	888	918	1,316	1,710	1,723	1,450	1,651	1,528	1,546	1,652	1,694	1,953	2,234	2,744	2,676	2,734	3,165
167	99	99	113	124	185	240	254	204	232	211	195	185	197	274	372	395	392	486	587
744	888	764	720	737	1,085	1,432	1,434	1,220	1,399	1,299	1,326	1,423	1,467	1,642	1,831	2,285	2,248	2,196	2,526
15	14	10	15	11	24	20	24	20	11	11	11	21	15	18	13	11	16	22	20
38	52	41	40	46	22	18	11	6	9	7	14	23	15	19	18	53	20	30	32
440	512	412	400	426	478	567	500	463	399	421	422	387	340	367	317	325	247	245	310
56	71	49	48	41	50	46	48	42	39	42	37	30	20	31	28	23	17	26	25
376	428	353	342	379	419	509	441	410	349	357	396	346	315	329	282	297	225	212	278
8	8	7	6	5	7	8	9	8	9	17	8	9	3	4	3	2	4	4	5
-	5	3	4	1	2	4	2	3	2	5	1	2	2	3	4	3	1	3	2
37	34	188	242	347	516	623	641	666	478	876	778	790	677	667	704	540	1,203	1,010	1,375
4	0	17	39	44	84	99	104	74	107	145	193	134	101	139	157	90	97	105	166
24	25	148	186	276	406	478	499	526	341	692	559	615	541	493	526	437	1,081	870	1,134
6	8	10	10	18	19	37	27	26	19	22	14	29	17	16	15	7	16	19	50
3	1	13	7	9	7	9	11	40	11	17	12	12	18	19	6	6	9	16	25

6-2. 연도별 재심사청구 재결 현황

급여	연도 처리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b>합 계</b>	115	122	214	232	186	212	320	369	399	493	543	712	1,191	1,539	1,225	1,608	1,816	2,335	1,977
요양급여	소 계	15	21	30	54	29	31	77	73	73	96	172	242	372	417	343	454	588	1,002	901	785
	취 소	3	7	12	25	5	15	21	28	22	60	17	34	57	50	71	47	87	123	85	105
	기 각	12	13	17	24	24	15	51	39	46	22	130	195	290	345	240	380	477	828	785	652
	각 하	-	1	1	5	-	1	5	6	5	14	25	13	25	22	32	27	24	51	31	28
휴업급여	소 계	1	3	5	1	3	1	3	8	10	20	8	13	43	31	41	43	57	89	56	53
	취 소	-	-	4	1	2	-	1	2	2	4	-	-	7	5	18	7	7	17	4	6
	기 각	1	2	1	-	1	1	2	6	6	13	6	12	33	25	17	30	45	69	50	43
	각 하	-	1	-	-	-	-	-	-	2	3	2	1	3	1	6	6	5	3	2	4
장해급여	소 계	69	56	121	132	124	141	198	227	248	290	254	331	598	842	616	796	669	705	607	521
	취 소	5	5	31	34	24	27	44	49	33	55	24	68	152	139	110	102	65	78	60	76
	기 각	60	48	86	95	98	111	152	174	209	229	229	258	440	696	490	686	585	605	533	437
	각 하	4	3	4	3	2	3	2	4	6	6	1	5	6	7	16	8	19	22	14	8
유족급여	소 계	30	42	58	45	30	39	42	61	68	87	109	126	178	249	225	315	502	539	413	363
	취 소	10	13	29	23	10	14	17	23	32	32	29	9	25	26	26	38	71	73	36	60
	기 각	19	26	27	22	19	24	25	36	33	49	74	114	145	218	180	272	411	450	366	296
	각 하	1	3	2	-	1	1	-	2	3	6	6	3	8	5	19	5	20	16	11	7
기 타	소 계	-	-	-	-	-	-	-	-	-	-	-	-	-	-	-	-	-	-	-	-
	취 소	-	-	-	-	-	-	-	-	-	-	-	-	-	-	-	-	-	-	-	-
	기 각	-	-	-	-	-	-	-	-	-	-	-	-	-	-	-	-	-	-	-	-
	각 하	-	-	-	-	-	-	-	-	-	-	-	-	-	-	-	-	-	-	-	-



(단위 : 건)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40	1,389	1,499	1,394	1,568	1,664	2,347	3,532	2,576	3,499	3,371	3,356	3,023	3,155	2,928	3,107	2,869	3,053	3,273	3,462
673	828	901	894	1,020	1,120	1,498	2,333	1,717	2,466	2,333	2,314	2,006	2,193	1,939	1,981	1,722	1,622	1,645	2,010
85	62	46	61	53	65	90	192	147	226	244	220	187	182	158	105	140	158	171	171
561	749	847	822	956	1,036	1,384	2,110	1,541	2,214	2,063	2,074	1,791	1,970	1,752	1,856	1,553	1,443	1,455	1,803
27	17	8	11	11	19	24	31	29	26	26	20	28	41	29	20	29	21	19	36
41	10	14	9	17	13	38	65	43	40	25	26	44	50	47	56	53	65	75	94
7	1	-	2	8	2	10	19	9	5	7	3	5	5	6	8	15	10	14	11
28	8	14	7	9	11	27	46	34	35	18	23	39	45	41	48	36	54	60	82
6	1	-	-	-	-	1	-	-	-	-	-	-	-	-	0	2	1	1	1
251	232	248	232	237	267	441	668	428	436	393	454	445	441	481	562	698	931	678	670
28	8	13	5	6	8	26	38	23	29	33	39	36	37	50	43	71	84	81	67
220	222	231	224	226	257	413	620	399	397	350	406	399	397	429	512	623	844	585	596
3	2	4	3	5	2	2	10	6	10	10	9	10	7	2	7	4	3	12	7
254	270	287	226	237	216	285	349	280	418	393	422	365	367	356	362	295	288	255	279
17	16	16	12	16	12	9	11	20	28	23	26	32	25	24	11	26	28	33	20
235	248	270	213	221	204	274	335	258	387	364	390	333	342	330	348	267	257	220	255
2	6	1	1	-	-	2	3	2	3	6	6	-	-	2	3	2	3	2	4
21	49	49	33	57	48	85	117	108	139	227	140	163	104	105	146	101	147	620	409
-	3	4	11	7	7	12	15	23	34	16	29	17	11	14	13	15	90	537	256
14	42	43	21	48	39	72	100	83	102	208	107	138	92	90	132	81	54	80	144
7	4	2	1	2	2	1	2	2	3	3	4	8	1	1	1	5	3	3	9

6-3. 연도별 소송 현황

구분	연도		'00	'01	'02	'03	'04	'05
	결과구분							
합 계	합	계	1,334	1,430	1,628	1,871	2,082	2,318
	승	소	703	818	916	1,062	1,146	1,350
	패	소	332	239	234	272	243	252
	일	부 승 소	139	157	170	130	158	185
	조	정	37	65	85	142	161	108
	화	해	2	1	4	51	88	132
	인	낙	1	-	-	-	-	1
	취	하	120	150	219	214	286	290
	계	류 중	1,715	2,145	2,226	2,482	2,828	3,084
패	소 울	25	17	14	15	12	11	
민 사	합	계	538	660	776	827	1,018	1,033
	승	소	295	388	435	416	495	488
	패	소	32	16	30	34	51	43
	일	부 승 소	122	130	149	108	135	157
	조	정	37	65	84	134	156	108
	화	해	1	-	4	51	88	123
	인	낙	1	-	-	-	-	1
	취	하	50	61	74	84	93	113
	계	류 중	508	594	576	754	875	994
패	소 울	6	2	4	4	5	4	
행 정	합	계	796	770	852	1,044	1,064	1,285
	승	소	408	430	481	646	651	862
	패	소	300	223	204	238	192	209
	일	부 승 소	17	27	21	22	23	28
	조	정	-	-	1	8	5	-
	화	해	1	1	-	-	-	9
	인	낙	-	-	-	-	-	-
	취	하	70	89	145	130	193	177
	계	류 중	1,207	1,551	1,650	1,728	1,953	2,090
패	소 울	38	29	24	23	18	16	



구 분	연도		'06	'07	'08	'09	'10	'11	'12
	결과구분								
	합	계	2,543	2,746	3,123	3,221	2,689	2,850	2,736
합	승	소	1,640	1,666	1,691	1,637	1,376	1,409	1,199
	패	소	223	268	285	228	288	190	266
	일	부 승	197	217	181	170	120	123	104
	조	정	56	87	150	163	61	47	25
	화	해	117	167	338	322	413	435	496
	인	낙	3	3	-	-	-	-	-
	취	하	307	338	478	701	431	646	646
	계	류 중	3,265	3,374	3,290	2,885	3,079	3,099	3,148
	패	소	9	10	9	7	11	7	10
	합	계	1,114	1,186	1,340	1,496	1,103	1,199	1,189
민	승	소	629	562	482	460	377	377	318
	패	소	34	62	77	43	31	18	15
	일	부 승	164	190	142	122	76	68	64
	조	정	56	87	150	163	61	47	25
	화	해	116	167	338	322	413	435	496
	인	낙	3	3	-	-	-	-	-
	취	하	112	115	151	386	145	254	271
	계	류 중	1,068	1,041	1,068	778	832	828	881
	패	소	3	5	6	3	3	2	1
	합	계	1,429	1,560	1,783	1,725	1,586	1,651	1,547
행	승	소	1,011	1,104	1,209	1,177	999	1,032	881
	패	소	189	206	208	185	257	172	251
	일	부 승	33	27	39	48	44	55	40
	조	정	-	-	-	-	-	-	-
	화	해	1	-	-	-	-	-	-
	인	낙	-	-	-	-	-	-	-
	취	하	195	223	327	315	286	392	375
	계	류 중	2,197	2,333	2,222	2,107	2,247	2,271	2,267
	패	소	13	13	12	11	16	10	16

(단위: 건, %)

구 분	연도		'13	'14	'15	'16	'17	'18	'19
	결과구분	계							
	합	계	2,889	3,027	3,381	3,065	3,162	3,476	2,853
합 계	승 소	소	1,175	1,231	1,317	1,341	1,227	1,048	907
	패 소	소	217	217	235	242	267	398	280
	일 부 승 소	소	135	143	166	183	171	197	173
	조 정	정	28	55	84	45	48	35	54
	화 해	해	528	415	324	313	248	178	136
	인 낙	낙	-	1	-	-	-	-	-
	취 하	하	806	957	1,255	941	1,201	1,620	1,303
	계 류 중	중	3,314	965	3,111	2,963	2,819	2,484	2,818
패 소	율	7.5	7.2	7.0	7.9	8.4	11.4	9.8	
	합	계	1,303	1,375	1,623	1,186	1,203	1,070	915
민 사	승 소	소	304	389	394	336	380	319	246
	패 소	소	11	32	36	34	44	54	36
	일 부 승 소	소	72	104	135	141	147	153	141
	조 정	정	28	55	84	45	48	35	54
	화 해	해	528	415	324	313	247	177	136
	인 낙	낙	-	1	-	-	-	-	-
	취 하	하	360	380	650	317	337	332	302
	계 류 중	중	972	1,210	875	901	723	694	667
패 소	율	0.8	2.3	2.2	2.9	3.7	5.0	3.9	
	합	계	1,586	1,652	1,758	1,879	1,959	2,406	1,938
행 정	승 소	소	871	842	923	1,005	847	729	661
	패 소	소	206	185	199	208	223	344	244
	일 부 승 소	소	63	39	31	42	24	44	32
	조 정	정	-	-	-	-	-	-	-
	화 해	해	-	-	-	-	1	1	-
	인 낙	낙	-	-	-	-	-	-	-
	취 하	하	446	586	605	624	864	1,288	1,001
	계 류 중	중	2,342	2,259	2,236	2,062	2,096	694	2,151
패 소	율	13	11.2	11.3	11.1	11.4	14.3	12.6	





## 제 7 장 산재보험 병원시설



7-1. 병원별·요양기간별 산재환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6월 미만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	계	4,294	573	867	837	294	509	1,214
	입원	1,948	264	283	368	137	251	645
	외래	2,346	309	584	469	157	258	569
인병	소계	875	82	142	138	61	101	351
	입원	283	42	46	59	12	30	94
	외래	592	40	96	79	49	71	257
안병	소계	705	106	156	135	62	93	153
	입원	310	37	40	60	38	37	98
	외래	395	69	116	75	24	56	55
창병	소계	497	84	145	119	24	53	72
	입원	176	44	50	44	11	14	13
	외래	321	40	95	75	13	39	59
대병	소계	265	47	89	122	3	4	-
	입원	122	27	33	59	1	2	-
	외래	143	20	56	63	2	2	-
순병	소계	317	72	77	52	17	33	66
	입원	172	39	31	18	7	22	55
	외래	145	33	46	34	10	11	11
대병	소계	559	84	157	96	24	46	152
	입원	177	35	45	36	8	19	34
	외래	382	49	112	60	16	27	118
태병	소계	377	29	23	60	40	56	169
	입원	228	12	7	28	15	31	135
	외래	149	17	16	32	25	25	34
동병	소계	333	44	46	66	27	36	114
	입원	187	21	18	28	15	16	89
	외래	146	23	28	38	12	20	25
정병	소계	171	4	7	19	11	33	97
	입원	141	2	4	14	7	26	88
	외래	30	2	3	5	4	7	9
경요양병원	소계	159	6	9	25	25	54	40
	입원	152	5	9	22	23	54	39
	외래	7	1	-	3	2	-	1
서울의원 (외래재활센터)	소계	36	15	16	5	-	-	-
	외래	36	15	16	5	-	-	-



## 7-2. 연도별·병원별 산재환자 진료 현황(1일 평균)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합 계	합 계	3,175	3,574	3,879	3,971	4,344	4,315	4,616
	입원	1,966	2,218	2,324	2,297	2,431	2,360	2,517
	외래	1,209	1,356	1,555	1,674	1,913	1,955	2,099
인병	합 계	508	617	618	578	587	529	537
	입원	313	394	372	321	326	300	323
	외래	195	223	246	257	261	229	214
안병	합 계	264	308	335	286	346	406	466
	입원	138	149	165	127	146	159	177
	외래	126	159	170	159	200	247	289
창병	합 계	538	540	585	577	545	496	628
	입원	207	204	230	226	215	202	254
	외래	331	336	355	351	330	294	374
대병	합 계	-	-	-	-	-	-	-
	입원	-	-	-	-	-	-	-
	외래	-	-	-	-	-	-	-
순병	합 계	422	429	460	466	497	530	544
	입원	267	259	258	257	261	255	265
	외래	155	170	202	209	236	275	279
대병	합 계	-	-	-	264	447	532	637
	입원	-	-	-	129	215	238	269
	외래	-	-	-	135	232	294	368
태병	합 계	540	683	748	727	787	768	466
	입원	337	437	472	471	491	464	487
	외래	203	246	276	256	296	304	274
동병	합 계	540	683	748	727	787	768	761
	입원	325	340	346	296	294	283	271
	외래	169	166	203	200	246	196	188
정병	합 계	494	506	549	496	540	479	459
	입원	330	304	286	266	279	274	276
	외래	29	28	51	55	50	51	48
경요양병원	합 계	359	332	337	321	329	325	324
	입원	49	131	195	204	204	185	195
	외래	1	28	52	52	62	65	65
산재활원	합 계	50	159	247	256	266	250	260
	입원	129	128	149	121	137	81	92
	외래	-	-	-	-	-	-	-

(단위 : 명)

'95	'96	'97	'98	'99	'00	'01	'02	'03
4,613	5,736	5,940	5,791	5,838	6,044	5,784	5,706	5,662
2,532	3,144	3,228	3,180	3,227	3,323	3,255	3,205	3,148
2,081	2,592	2,712	2,611	2,611	2,721	2,529	2,501	2,514
546	1,017	1,132	1,245	1,231	1,304	1,308	1,302	1,224
326	646	669	688	655	648	617	601	543
220	371	463	557	576	656	691	701	681
546	652	687	627	599	617	532	511	520
221	269	283	274	253	286	275	268	295
325	383	404	353	346	331	257	243	225
781	962	992	983	1,004	1,058	956	904	945
324	382	383	390	400	407	340	335	350
457	580	609	593	604	651	616	569	595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2	624	625	505	419	515	802	781	787
269	296	281	223	225	244	275	270	242
283	328	344	282	194	271	275	278	262
738	863	832	752	855	872	802	781	787
308	337	347	323	373	412	422	405	404
430	526	485	429	482	460	380	376	383
546	652	687	627	599	617	734	726	765
501	533	526	513	546	555	527	521	539
249	282	286	281	295	238	207	205	226
320	358	388	399	408	402	414	433	411
270	303	335	341	341	339	358	363	338
50	55	53	58	67	63	56	70	73
260	287	301	312	315	318	315	320	325
194	221	236	256	268	268	268	263	257
66	66	65	56	47	50	47	57	68
120	158	171	174	166	165	173	181	181
119	157	168	172	166	164	173	179	180
1	1	3	2	-	1	-	2	1
750	-	-	-	-	-	-	-	-
228	-	-	-	-	-	-	-	-
145	-	-	-	-	-	-	-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5,659	6,321	6,405	6,643	6,563	6,571	6,529
	입원	3,124	3,177	3,184	3,217	3,120	3,001	2,914
	외래	2,535	3,144	3,221	3,426	3,443	3,570	3,615
인병	천원	1,226	1,383	1,265	1,267	1,191	1,187	1,136
	입원	562	599	515	494	451	439	405
	외래	664	784	750	773	740	748	731
안병	산원	544	623	695	829	914	980	981
	입원	312	323	358	426	451	441	447
	외래	232	300	337	403	463	539	534
창병	원원	915	987	969	974	951	890	892
	입원	330	315	329	325	305	271	253
	외래	585	672	640	649	646	619	639
대병	구원	-	-	-	-	-	-	-
	입원	-	-	-	-	-	-	-
	외래	-	-	-	-	-	-	-
순병	천원	738	832	780	777	713	675	666
	입원	265	293	291	296	288	269	266
	외래	310	452	489	481	425	406	400
대병	전원	738	832	827	838	797	795	807
	입원	380	398	403	393	346	319	302
	외래	358	434	424	445	451	476	505
태병	백원	756	813	839	870	858	848	850
	입원	522	510	535	530	526	495	488
	외래	234	303	304	340	332	353	362
동병	해원	403	436	561	653	690	713	706
	입원	329	326	382	413	407	409	393
	외래	74	110	179	240	283	304	313
정병	선원	332	326	291	261	289	325	343
	입원	255	239	197	169	188	203	217
	외래	77	87	94	92	101	122	126
경요양병	기원	170	176	178	174	160	158	148
	입원	169	174	174	171	158	155	143
	외래	1	2	4	3	2	3	5
산재	업원	-	-	-	-	-	-	-
	입원	-	-	-	-	-	-	-
	외래	-	-	-	-	-	-	-

※ '97. 1. 1. 장성병원이 태백병원으로 변경

(단위 : 명)

'11	'12	'13	'14	'15	'16	'17	'18	'19
6,432	6,432	6,476	6,916	7,104	7,150	6,878	6,967	7,144
2,738	2,670	2,711	2,902	2,924	2,837	2,638	2,544	2,450
3,694	3,762	3,765	4,014	4,180	4,313	4,240	4,424	4,694
1,125	1,116	1,098	1,122	1,194	1,184	1,186	1,169	1,165
384	363	335	338	366	346	322	314	296
741	753	763	784	828	838	864	855	869
999	908	891	980	969	1,017	1,005	1,052	1,090
448	372	348	416	412	429	416	408	393
551	536	543	564	557	588	589	643	697
947	964	960	1,081	1,104	1,052	900	917	946
253	251	252	280	291	236	214	225	227
694	713	708	801	813	816	686	692	718
-	110	275	344	381	418	426	450	437
-	59	165	209	221	229	217	218	180
-	51	110	135	160	189	209	232	257
642	618	556	602	629	645	595	573	587
249	227	249	265	267	274	236	221	228
393	391	307	337	362	371	359	352	359
813	813	731	740	763	772	760	798	858
297	299	257	270	274	271	261	241	238
516	514	474	470	489	501	499	557	620
808	814	856	885	904	896	860	868	880
453	452	453	458	442	409	361	339	317
355	362	403	427	462	487	499	529	563
692	677	663	688	678	655	637	657	685
369	359	345	334	323	304	289	269	260
323	318	318	354	355	351	348	389	425
304	292	298	287	301	301	301	293	285
199	193	195	192	201	199	189	175	167
105	99	103	95	100	102	112	118	119
102	120	148	187	181	210	208	191	192
86	95	112	140	127	140	133	135	145
16	25	36	47	54	70	75	56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년 일평균 외래 합계: 서울의원(외래재활센터) 17명, 대전의원(근로자건강센터) 1명 포함



## 7-3. 연도별 진폐 진료 현황

## 7-3-1. 진폐정밀진단 실시 현황(입원 실인원)

(단위: 명)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 계	5,192	5,626	4,804	4,736	5,595	7,056	6,524	6,375	6,365	6,288
안 산 병 원	1,216	1,252	1,007	783	928	899	948	877	1,187	1,254
창 원 병 원	-	-	-	-	-	-	229	271	228	107
순 천 병 원	362	309	300	512	574	1,383	948	532	544	599
대 전 병 원	-	-	-	-	37	261	190	229	286	336
태 백 병 원	1,442	1,351	1,193	1,158	1,440	1,887	1,646	1,882	1,693	1,660
동 해 병 원	964	1,237	1,037	965	1,148	1,107	1,166	11,87	1,196	1,069
정 선 병 원	1,228	1,477	1,267	1,318	1,468	1,519	1,397	1,397	1,231	1,263

※ '02.05.18. 안산병원 진폐정밀진단기관 지정

## 7-3-2. 진폐진료 현황(입원환자)

(단위: 명)

구 분	합 계	안산 병원	창원 병원	순천 병원	대전 병원	장성 규폐센터	태백 병원	산업 재활원	동해 병원	정선 병원	경기 요양병원
'10	2,821	460	-	153	-	-	583	-	1,337	288	-
'11	2,653	417	-	60	-	-	483	-	1,389	304	-
'12	2,634	394	-	50	-	-	456	-	1,362	285	87
'13	2,575	374	-	97	14	-	452	-	1,266	286	86
'14	1,034	422	-	147	29	-	473	-	317	354	-
'15	1,876	393	-	257	48	-	446	-	277	455	-
'16	2,102	413	66	413	48	-	421	-	296	445	-
'17	1,725	472	99	140	39	-	362	-	93	520	-
'18	1,741	439	123	136	21	-	328	-	194	500	-
'19	1,248	170	107	106	50	-	301	-	201	313	-

※ 실인원 산출

7-4. 연도별·병원별 작업환경측정 실시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
'02	4,072	1,021	1,050	543	570	412	-	476
'03	4,062	1,023	988	505	590	375	-	581
'04	4,228	988	1,098	580	478	443	-	641
'05	3,798	978	719	549	450	522	-	580
'06	3,642	906	727	553	485	490	-	481
'07	3,756	896	744	590	540	502	-	484
'08	3,774	934	756	607	535	440	-	502
'09	3,677	852	745	614	562	364	-	540
'10	3,754	824	733	610	576	502	-	509
'11	3,900	918	741	615	600	503	-	523
'12	3,809	927	674	649	615	402	-	542
'13	3,925	975	692	679	611	415	-	553
'14	3,692	907	664	669	580	319	-	553
'15	3,707	910	643	641	605	349	-	559
'16	3,589	821	643	661	586	299	-	579
'17	3,426	765	625	672	579	226	-	559
'18	3,072	427	534	739	582	227	-	563
'19	2,638	218	425	637	573	204	-	581

## 7-5.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현황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합 계	243,613	238,146	281,766	295,406	304,959	347,379	341,310	389,422	338,780	349,429	355,543
	일반검진	161,229	143,461	174,731	175,222	188,427	225,156	215,220	247,829	211,787	207,662	208,885
	특수검진	56,429	64,672	65,490	72,152	70,184	80,024	81,745	91,101	79,644	81,392	86,342
	신체검사	25,955	30,013	41,545	48,032	46,348	42,199	44,345	50,492	47,349	60,375	60,316
인천 병원	소 계	31,135	28,246	34,442	35,866	33,726	36,800	35,823	36,842	34,199	34,137	35,042
	일반검진	21,850	20,405	23,079	20,605	20,626	26,229	23,669	26,789	24,160	20,944	20,776
	특수검진	7,196	5,542	5,853	7,740	7,977	6,756	6,413	5,980	5,361	5,203	5,065
	신체검사	2,089	2,299	5,510	7,521	5,123	3,815	5,741	4,073	4,678	7,990	9,201
안산 병원	소 계	36,085	36,758	38,296	40,025	40,858	44,179	37,524	47,450	40,493	47,445	47,579
	일반검진	26,515	22,968	25,080	24,737	25,054	32,974	28,427	37,709	30,436	32,840	35,643
	특수검진	6,426	7,966	6,635	7,102	6,012	6,968	5,657	6,557	5,501	5,959	6,309
	신체검사	3,144	5,824	6,581	8,186	9,792	4,237	3,440	3,184	4,556	8,646	5,627
창원 병원	소 계	36,585	41,590	49,788	52,892	54,857	89,072	90,275	105,056	79,454	84,242	86,954
	일반검진	19,346	22,365	27,221	27,395	29,151	41,753	43,873	51,894	39,114	39,749	39,429
	특수검진	11,643	13,319	16,837	18,536	18,149	32,726	33,441	37,129	29,095	29,068	31,472
	신체검사	5,596	5,906	5,730	6,961	7,557	14,593	12,961	16,033	11,245	15,425	16,053
순천 병원	소 계	31,433	34,623	57,341	57,395	57,411	52,425	58,717	60,917	46,268	47,316	52,387
	일반검진	19,532	18,249	39,735	40,045	38,560	35,224	35,126	36,695	25,772	24,921	28,525
	특수검진	7,220	11,270	13,361	13,487	14,832	13,821	18,178	18,126	15,021	15,734	17,050
	신체검사	4,681	5,104	4,245	3,863	4,019	3,380	5,413	6,096	5,475	6,661	6,812
대전 병원	소 계	31,643	32,940	41,691	44,034	46,141	57,347	50,088	61,984	59,309	59,787	58,457
	일반검진	19,798	22,887	24,574	25,746	30,118	42,545	36,887	41,742	38,823	35,650	33,209
	특수검진	4,508	4,225	4,904	6,170	6,522	7,076	6,525	10,693	11,992	11,981	13,210
	신체검사	7,337	5,828	12,213	12,118	9,501	7,726	6,676	9,549	8,494	12,156	12,038
태백 병원	소 계	35,019	35,913	28,808	28,637	33,199	33,394	21,889	25,578	30,554	26,990	24,524
	일반검진	19,247	20,484	15,528	16,121	20,978	21,660	15,345	19,799	22,904	23,275	20,903
	특수검진	13,553	12,234	10,015	6,983	7,036	6,323	21	-	-	-	-
	신체검사	2,219	3,195	3,265	5,533	5,185	5,411	6,523	5,779	7,650	3,715	3,621
동해 병원	소 계	34,757	24,905	26,294	32,106	34,117	29,222	42,339	45,450	43,446	43,848	44,805
	일반검진	28,177	13,288	16,770	17,718	21,502	22,036	29,586	30,520	28,674	28,172	28,588
	특수검진	5,883	10,116	7,885	12,134	9,656	6,354	11,510	12,616	12,674	13,447	13,236
	신체검사	697	1,501	1,639	2,254	2,959	832	1,243	2,314	2,098	2,229	2,981
정선 병원	소 계	6,956	3,171	5,106	4,451	4,650	4,940	4,655	6,145	5,057	5,664	5,751
	일반검진	6,764	2,815	2,744	2,855	2,438	2,735	2,307	2,681	1,904	2,111	1,768
	특수검진	-	-	-	-	-	-	-	-	-	-	-
	신체검사	192	356	2,362	1,596	2,212	2,205	2,348	3,464	3,153	3,553	3,983
경기 요양 병원	소 계	-	-	-	-	-	-	-	-	-	-	44
	일반검진	-	-	-	-	-	-	-	-	-	-	44
	특수검진	-	-	-	-	-	-	-	-	-	-	-
	신체검사	-	-	-	-	-	-	-	-	-	-	-

\* 반검진에 종합검진실적 포함된 자료임.

(단위: 연명)

'12	'13	'14	'15	'16	'17	'18	'19
325,203	361,335	375,998	386,659	389,747	364,578	343,525	335,178
186,004	201,289	208,136	208,780	209,225	200,457	181,277	179,914
80,676	81,416	91,773	103,689	112,505	104,832	104,601	98,325
58,523	78,630	74,852	74,190	68,017	59,289	57,647	56,939
33,907	38,622	44,626	43,636	44,889	41,930	39,404	36,101
20,453	21,288	21,214	21,228	21,296	20,572	17,811	16,993
5,249	5,663	8,728	8,389	9,675	9,988	10,105	11,288
8,205	11,671	14,684	14,019	13,918	11,370	11,488	7,820
49,241	51,301	53,203	49,657	52,970	52,459	47,981	49,764
36,729	32,323	36,282	32,541	35,546	36,369	31,426	31,685
6,348	6,097	6,746	8,037	8,579	9,205	9,062	8,825
6,164	12,881	10,175	9,079	8,845	6,885	7,493	9,254
74,140	80,967	74,036	78,695	75,901	53,732	52,247	52,363
32,155	35,610	32,167	33,902	33,451	24,164	23,125	23,868
28,004	27,223	26,027	27,444	26,935	17,185	16,181	14,481
13,981	18,134	15,842	17,349	15,515	12,383	12,941	14,014
46,427	50,681	50,975	48,220	48,104	46,195	43,389	42,908
22,340	24,102	24,279	22,900	24,330	23,594	22,346	23,118
16,994	15,956	17,699	18,286	19,237	17,897	18,182	17,052
7,093	10,623	8,997	7,034	4,537	4,704	2,861	2,738
44,782	53,027	61,007	65,435	64,753	67,438	64,528	60,844
22,858	27,034	31,677	32,166	30,082	30,699	28,500	26,852
10,947	13,130	15,447	19,733	22,454	24,330	24,278	22,899
10,977	12,863	13,883	13,536	12,217	12,409	11,750	11,093
25,517	33,534	31,956	31,394	29,810	28,366	29,738	29,044
19,318	27,343	26,696	25,647	24,526	23,526	24,219	22,594
-	-	-	-	-	-	579	944
6,199	6,191	5,260	5,747	5,284	4,840	4,940	5,506
46,030	48,936	55,822	65,035	68,567	70,323	62,162	60,658
29,758	31,892	35,181	38,397	38,158	38,832	32,085	33,252
13,134	13,347	17,126	21,800	25,625	26,227	26,214	22,836
3,138	3,697	3,515	4,838	4,784	5,264	3,863	4,570
4,824	4,164	4,270	4,381	4,559	4,009	3,996	3,461
2,058	1,594	1,774	1,793	1,642	2,575	1,685	1,517
-	-	-	-	-	-	-	-
2,766	2,570	2,496	2,588	2,917	1,434	2,311	1,944
335	103	103	206	194	126	80	35
335	103	103	206	194	126	80	35
-	-	-	-	-	-	-	-
-	-	-	-	-	-	-	-



## 7-6. 연도별 직업재활훈련사업 및 사회심리재활 실시 현황

구분	합계	전기 용접	봉제	인쇄	의지 장구	R/TV 수리	시계 수리	인장	표구	전자	서예	미세 기기	전통 공예	멀티 미디어	귀금속 공예
'83	818	71	54	60	25	97	67	79	-	-	-	-	-	-	-
'84	699	-	77	56	43	103	81	89	-	-	-	-	-	-	-
'85	688	-	18	14	4	100	52	78	82	-	-	-	-	-	74
'86	711	-	-	-	-	121	65	67	126	-	-	-	-	-	75
'87	708	-	-	-	-	127	62	68	120	-	-	-	-	-	77
'88	666	-	-	-	-	117	57	69	109	-	-	-	-	-	68
'89	428	-	-	-	-	63	62	62	60	-	-	-	-	-	61
'90	429	-	-	-	-	63	60	62	60	-	-	-	-	-	60
'91	426	-	-	-	-	24	71	80	71	-	-	-	-	-	33
'92	403	-	-	-	-	-	68	82	-	-	-	-	-	-	80
'93	415	-	-	-	-	-	67	81	73	11	-	-	-	-	10
'94	444	-	-	-	-	-	62	72	62	55	-	-	-	-	63
'95	448	-	-	-	-	-	60	70	61	75	-	-	-	-	62
'96	448	-	-	-	-	-	62	77	61	60	-	-	-	-	67
'97	454	-	-	-	-	-	62	70	62	87	-	-	-	-	64
'98	458	-	-	-	-	-	24	77	74	81	-	-	-	-	55
'99	439	-	-	-	-	-	5	52	75	118	-	-	-	-	33
'00	444	-	-	-	-	-	51	50	65	62	-	-	-	-	63
'01	553	-	-	-	-	-	50	59	77	104	19	-	-	-	58
'02	586	-	-	-	-	-	-	54	82	130	-	62	-	-	73
'03	546	-	-	-	-	-	-	-	-	-	-	-	65	47	61
'04	591	-	-	-	-	-	-	-	-	-	-	-	74	69	50
'05	1,544	-	-	-	-	-	-	-	-	-	-	-	205	183	182
'06	1,322	-	-	-	-	-	-	-	-	-	-	-	204	179	161
'07	1,406	-	-	-	-	-	-	-	-	-	-	-	192	196	184
'08	1,450	-	-	-	-	-	-	-	-	-	-	-	207	174	220
'09	1,579	-	-	-	-	-	-	-	-	-	-	-	229	192	215
'10	1,539	-	-	-	-	-	-	-	-	-	-	-	232	149	169
'11	1,401	-	-	-	-	-	-	-	-	-	-	-	222	90	151
'12	3,419	-	-	-	-	-	-	-	-	492	252	-	223	309	163
'13	1,939	-	-	-	-	-	-	-	-	-	-	-	110	50	65
'14	9,881	-	-	-	-	-	-	-	-	-	-	-	123	80	117
'15	10,718	-	-	-	-	-	-	-	-	-	-	-	-	-	-
'16	9,677	-	-	-	-	-	-	-	-	-	-	-	-	-	-
'17	2,777	-	-	-	-	-	-	-	-	-	-	-	-	-	-
'18	12,044	-	-	-	-	-	-	-	-	-	221	-	-	-	-
'19	10,749	-	-	-	-	-	-	-	-	-	-	-	-	-	-

※ 직업재활훈련사업은 산업재활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96. 2.1. 산업재활원이 인천중앙병원에 흡수 통합되었고 이후 직업재활훈련사업은 인천병원에서 수행해 음. 이후 '03년부터는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등으로 운영중.

(단위: 명)

구분	원예	목조형	사진	음악	인지	컴퓨터	미술	생활 공예	스포츠	요리	팝아트	다도 명상	기타
'83	145	146	74	-	-	-	-	-	-	-	-	-	-
'84	121	129	-	-	-	-	-	-	-	-	-	-	-
'85	137	129	-	-	-	-	-	-	-	-	-	-	-
'86	124	133	-	-	-	-	-	-	-	-	-	-	-
'87	127	127	-	-	-	-	-	-	-	-	-	-	-
'88	120	126	-	-	-	-	-	-	-	-	-	-	-
'89	61	61	-	-	-	-	-	-	-	-	-	-	-
'90	61	63	-	-	-	-	-	-	-	-	-	-	-
'91	73	74	-	-	-	-	-	-	-	-	-	-	-
'92	88	85	-	-	-	-	-	-	-	-	-	-	-
'93	83	90	-	-	-	-	-	-	-	-	-	-	-
'94	66	64	-	-	-	-	-	-	-	-	-	-	-
'95	61	59	-	-	-	-	-	-	-	-	-	-	-
'96	65	56	-	-	-	-	-	-	-	-	-	-	-
'97	64	45	-	-	-	-	-	-	-	-	-	-	-
'98	67	80	-	-	-	-	-	-	-	-	-	-	-
'99	56	100	-	-	-	-	-	-	-	-	-	-	-
'00	68	85	-	-	-	-	-	-	-	-	-	-	-
'01	86	100	-	-	-	-	-	-	-	-	-	-	-
'02	78	107	-	-	-	-	-	-	-	-	-	-	-
'03	71	93	-	-	-	174	35	-	-	-	-	-	-
'04	65	95	-	-	-	153	85	-	-	-	-	-	-
'05	208	228	-	-	-	329	209	-	-	-	-	-	-
'06	190	195	-	-	-	211	182	-	-	-	-	-	-
'07	218	186	-	-	-	234	196	-	-	-	-	-	-
'08	212	203	-	-	-	248	186	-	-	-	-	-	-
'09	241	234	-	-	-	281	187	-	-	-	-	-	-
'10	223	254	-	-	-	299	213	-	-	-	-	-	-
'11	231	237	-	-	-	266	204	-	-	-	-	-	-
'12	856	277	-	-	-	-	847	-	-	-	-	-	-
'13	216	258	-	394	185	406	255	-	-	-	-	-	-
'14	1,757	4,304	-	423	224	2,276	577	-	-	-	-	-	-
'15	1,526	5,312	-	652	306	2,403	519	-	-	-	-	-	-
'16	1,327	4,647	153	612	369	1,992	577	-	-	-	-	-	-
'17	562	336	174	447	322	316	620	-	-	-	-	-	-
'18	1,544	270	104	1,627	248	259	2,656	690	1,408	64	1,906	692	355
'19	1,535	333	104	1,553	-	315	1,569	718	1,403	64	1,974	749	432





## 부 록 편

1. 산재보험법령 개정 연혁
2. 보험료징수법령 개정 연혁
3. 산재보험 사업종류별·규모별 적용 확대 연혁
4. 산재보험료율 변동 현황
5.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 연혁
6. 산재보험 정책연구용역 현황
7. 산재보험 관련 고시 현황
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9. 주요 외국 산재보험제도 현황
10. (구)한국산재의료원 연혁
11.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1 산재보험법령 개정 연혁

개정일자	주요 골자
'63.11.5 (법률 제1438호)	<p>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체계를 달리하는 산재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63.11.5. 제정·공포되어 '64.7.1.부터 시행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토록 함</li> <li>○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당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광업과 제조업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li> <li>○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11일 이상 요양 필요시 지급)·휴업급여(평균임금의 60% 지급)·장해급여(장해등급 제1급~제10급에게 1,000일본~50일본 지급)·유족급여(1,000일본 지급)·장의비(90일본 지급) 및 일시급여(1,000일본 지급)의 6가지를 두었음</li> <li>○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li> </ul>
'65. 3. 26 (대통령령 제208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범위를 상시 2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에 적용('65.4.1부터)</li> <li>※ 종전에는 500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li> </ul>
'65.12.20 (대통령령 제23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범위를 상시 1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66.1.1부터)</li> </ul>
'66.10.20 (대통령령 제277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10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25,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으로 확대(국영사업은 제외)</li> <li>○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을 상시 20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50,00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으로 확대</li> <li>※ 종전에는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li> <li>○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해발생 상황을 관할보험사무소장에 보고</li> <li>○ 일시급여, 보험급여, 분할지급 등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노동청장의 승인으로 함</li> </ul>
'67.11.30 (대통령령 제328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을 상시 5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3,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에까지 확대('68.1.1부터 시행)</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68.9.16 (대통령령 제358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을 수도 및 위생시설서비스업, 상업, 운수보관 및 통신업,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제외</li> <li>○ 보험급여 청구절차 및 서식 간소화</li> <li>○ 휴업급여에 한하여 사업주 또는 가족에게 보험급여의 청구와 수령을 위탁할 수 있게 함</li> <li>○ 신체장해가 둘이상인 경우 장해등급을 인상조정할 수 있게 하고, 가중장해의 경우 급여산정방법을 명시</li> <li>○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미보고 또는 보고가 사실과 다른때에는 조사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li> </ul>
'69.7.14 (대통령령 제398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적용단위를 공사단위별로 함(공사계약금 2천만원 이상)</li> <li>○ 한 사업장내에 보험요율표상 2종이상의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 적용</li> </ul>
'69.11.10 (대통령령 제42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시책으로 한글화됨에 따라 법조문을 한글로 바꿈</li> </ul>
'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을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8,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과 개인서비스업 및 도급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확대(도매업, 소매업 및 부동산업 적용제외)</li> <li>○ 요양급여심의위원회 설치하여 요양비 산정기준,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li> <li>○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에 임금변동순응율제 도입</li> <li>○ 신체장해등급을 종전 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조정</li> <li>○ 유족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3년마다 과거 및 현재의 경제사정과 장래의 경제예측 등을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연금액을 개정</li> <li>○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한 보험료 등을 그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협회 또는 그 연합회로서의 법인인 단체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함</li> <li>○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공사의 개산보험료는 30일이내에 보고하고 45일 이내에 납부</li> <li>○ 개산보험료액이 1만원 이상인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li> <li>○ 연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및 체납에 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함</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73. 3.13 (법률 제260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연체금의 비율을 1일 12전에서 7전으로 인하하고 보험료의 조사, 징수 시 20일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미리 통지하도록 함(개산보험료보고와 납부)</li> <li>○ 근로자가 요양중 정당한 지시를 위배하여 상병을 악화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지급제한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보험급여지급의 제한)</li> <li>○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적용범위)</li> <li>○ 보험급여수령전에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이 청구 수령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미지급의 보험급여)</li> </ul>
'73.6.23 (대통령령 제674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연간연인원 4,2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적용확대 하고, 금융업, 보험업, 증권업을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li> <li>○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절차규정</li> <li>○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순위 규정</li> <li>○ 휴업급여 임금변동순응율제는 동일한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이 100분의 120이상으로 되거나 100분의 80 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li> <li>○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 규정</li> <li>○ 초과보험료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그 초과액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과납보험료충당신청서를 제출토록 함</li> </ul>
'75.4.28 대통령령 제76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 석탄, 석유,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품제조업에 대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까지 확대 적용</li> <li>○ 개별실적용율 적용대상을 종전 200인이상(연간 연인원 5만인이상)에서 100인이상(연간 연인원 25,0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확대</li> </ul>
'76.12.22 (법률 제29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 9 일시급여)</li> <li>○ 근로자 또는 보험가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제한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백히 정하도록 함(제14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26조의 2)</li> <li>○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을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보험시설)</li> <li>○ 노동청장은 장해급여를 받은 신체장애자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8조의 2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li> <li>○ 분할납부할 수 없는 성질의 보험료는 그 금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강제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함(제23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li> <li>○ 보험급여청구 및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제30조 시효)</li> </ul>
<p>'77.3.14 대통령령 제8489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급여에 대하여도 임금변동순응율제에 의한 평균임금개종방법과 기준에 따르도록 함</li> <li>○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명백히 하고 보험급여의 지급율은 급여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급여지급시마다 100분의 30해당액 만큼 제한</li> <li>○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에 있어서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을 종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li> <li>○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개산보험료를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50일 이내에 납부토록하여 일반 다른 사업과 일치</li> <li>○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규정</li> </ul>
<p>'77.12.19 (법률 제302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보험급여에 임금변동순응율제를 적용함(제9조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사유 등)</li> <li>○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노동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의 보험급여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함(제9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li> <li>○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보험금의 분할지급)</li> <li>○ 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기간을 60일로 연장하여 일치시키고 그 기한내에는 보험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li> <li>○ 장해보상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함(별표 1)</li> <li>○ 근로자 중대과실의 보험급여의 지급제한규정을 삭제함</li> </ul>
<p>'78.2.13 대통령령 제885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변동순응율제 적용에서 통상임금 1인당 1월평균액이 20%이상 변동된 때에 조정하던 것을 10%이상 변동되면 그 변동율에 따라 적용토록 변동율 인하조정</li> <li>○ 유족연금은 기본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던 것을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연금액의 상한이 급여기초연액의 50%이던 것을 6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li> <li>○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li> </ul>



개정일자	주요 골자
'81.12.17 (법률 제346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요양 또는 휴업기간을 “7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단축함</li> <li>○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급여액수준을 12% 인상함</li> <li>○ 장해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li> <li>○ 60일이내에 종료 또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사업종료일 전일까지 보고 납부하도록 함</li> </ul>
'82.6.14 대통령령 제1083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범위를 16인이상(연간연인원 4,200명)에서 10인이상(연간 연인원 2,700인이상)으로 확대</li> <li>○ 임업중 벌목업을 강제적용업종으로 함</li> <li>○ 건설업 적용범위를 총공사금액 1천만원이상에서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으로 확대</li> <li>○ 임금변동순응율제의 적용방법을 매분기별로 산정하여 다음 분기부터 적용하던 것을 매월마다 산정하여 다음달부터 적용하도록 함</li> <li>○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은 1,3,7,11급 밖에 없었으나 장해등급 5, 9급을 추가</li> <li>○ 유족보상연금을 유족수에 따라 11.6 ~15.5% 인상하여 I.L.O 권고수준으로 함</li> <li>○ 건설공사의 경우 개산보험료 납부시 임금총액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li> </ul>
'82.12.31 (법률 제363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동일사업주가 시공하는 2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무를 간소화함</li> <li>○ 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li> <li>○ 산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장가요양을 필요로 하는 발병근로자에게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 의료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함</li> <li>○ 장해특별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장해를 입는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사업주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함</li> <li>○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특별급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의 계산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함</li> <li>○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되고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함</li> </ul>

개정일자	주요 골자
<p>'83.8.6 대통령령 제1119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 위탁판매업과 중개업을 적용대상사업으로 추가하고 별목업은 별목 제적량 1,7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li> <li>○ 건설공사의 보험적용을 공사단위에서 기업단위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험사업 및 징수업무를 대폭 간소화</li> <li>○ 임금변동순응율제의 적용기준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임금이 저율로 변동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함으로써 보상수준의 현실화 도모</li> <li>○ 민사배상액의 대체제도인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및 지급 절차를 정함</li> </ul>
<p>'83.12.31 (법률 제371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가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각종 보험금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규제와 벌칙이 강화되어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과중한 제재와 부담을 입게 되므로 이 급여징수 제도를 폐지함</li> <li>○ 보험료 등 징수금의 위탁징수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간소화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함</li> <li>○ 보험료의 초과납부액을 반환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바, 이 이자 지급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적정한 이자가 지급되도록 함</li> </ul>
<p>'86.8.27 대통령령 제1196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으로 '86.9.1부터 연차적으로 확대</li> <li>○ 보험관계성립신고 의무기간을 종전 7일에서 14일로 연장</li> <li>○ 개별실적요율적용 사업장을 종전 100인이상(연간연인원 2만5천인이상)에서 50인이상(연간 연인원 1만2천5백인이상)으로 확대</li> <li>○ 연체금을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에서 5전으로 하향 조정</li> <li>○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3년간 급여 징수하던 것을 1년으로 단축</li> <li>○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재산중 공매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산은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정함</li> </ul>
<p>'86. 5. 9 (법률 제381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조합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주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li> <li>○ 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는 과거 3년간의 재해율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연금 등 보험금에 필요한 금액도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제정의 건전화를 기하도록 함</li> </ul>

개정일자	주요 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별로 재해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요율을 증가 혹은 경감시켜 적용할 증감 폭을 현재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주의 재해예방의욕을 높이도록 함</li> <li>○ 보험료의 체납에 대한 연체금 부담율을 100에 대하여 1일 7전으로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li> <li>○ 보험료 등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재산중 공매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의 것은 성업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li> <li>○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복지공사가 행하는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범위에 재해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근로자 및 유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함</li> <li>○ 가벼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li> </ul>
'86.8.27 대통령령 제1196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으로 '86.9.1부터 연차적으로 확대</li> <li>○ 보험관계성립신고 의무기간을 종전 7일에서 14일로 연장</li> <li>○ 개별설적요율적용 사업장을 종전 100인이상(연간연인원 2만5천인이상)에서 50인이상(연간 연인원 1만2천5백인이상)으로 확대</li> <li>○ 연체금을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에서 5전으로 하향 조정</li> <li>○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3년간 급여 정수하던 것을 1년으로 단축</li> <li>○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재산중 공매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산은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정함</li> </ul>
'89. 4. 1 (법률 제41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li> <li>○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만으로 하던 것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li> <li>○ 사업주가 동종의 사업을 수개의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함</li> <li>○ 휴업급여의 수준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li> <li>○ 종전에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던 것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에서 4년분까지 선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평생 보호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li> <li>○ 유족급여의 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서 1,300일분으로 장의비는 평균임금 90일분에서 120일분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음</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급여를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li> <li>○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다른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은 재해를 가한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도록 함</li> <li>○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장해보상일시금을 10%, 장해보상 연금을 5% 각각 상향조정하고, 발병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상병 보상연금액을 5%씩 상향 조정함</li> </ul>
'91.4.11 대통령령 제1334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제의 되던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업까지 적용확대 하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li> <li>○ 소속사업장의 휴폐업 기타 사유로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 통계조사에 의한 임금변동율을 기준으로 함</li> </ul>
'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91.9.9 개정고시되어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에 맞추어 그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li> </ul>
'93.12.27 (법률 제464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2이상 동시에 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을 일괄적용함으로써 보험업무를 간소화하도록 함</li> <li>○ 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사업의 보험관계성립일을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 승인을 얻는날의 다음날로 변경함</li> <li>○ 요양기간이 2년 이상 지났으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 당해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가 어려울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 금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휴업급여 수급자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함</li> <li>○ 요양급여의 범위 및 금액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소재지, 인력 또는 시설이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함</li> <li>○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이 일시금보다 적을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보상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li> <li>○ 장해등급 3급이상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을 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수준과 같은 상병 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li> </ul>

개정일자	주요 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도록 함</li> <li>○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기한을 연도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함</li> <li>○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li> <li>○ 보험급여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이에 협조하도록 함</li> </ul>
'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에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 추가('96.1.1부터 시행)</li> <li>○ 산재보험급여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 등 이중보상 방지</li> <li>○ 보험료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징수하는 급여징수금을 보험급여액의 30%에서 10%로 하향조정</li> </ul>
'94.12.22 (법률 제482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업무와 그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동 공단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를 수행하게 함</li> <li>○ 근로복지공단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는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업무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설치하며, 동 기금은 보험료·기금 운영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li> <li>○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동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고, 동 공단의 심의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의결은 각각 제기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급여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li> <li>○ 근로복지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동 공사의 재산·권리·사무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포괄승계 하도록 함</li> </ul>

개정일자	주요 골자
<p>'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li> <li>○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용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li> <li>○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 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 기금의 관리·운영·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li> </ul>
<p>'97.3.27 대통령령 제1531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시 종전에는 전분기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토록 함</li> <li>○ 재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는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종전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상임위원·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li> </ul>
<p>'97.8.28. 법률 제539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li> <li>○ 해외과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li> <li>○ 산업재해근로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li> <li>○ 재해예방에 대한 유인의 강화를 위하여 사업의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와 확정 보험료청산의 특례의 실적에 따른 보험료 증감폭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li> <li>○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체금 징수의 상한제를 도입함.</li> </ul>
<p>'97.12.13. 법률 제545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li> <li>○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li> <li>○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li> <li>○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 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li> <li>○ 종전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납부통지 및 독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3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하도록 함</li> <li>○ 법정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은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일 4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연체금의 부과비율을 하향조정함</li> <li>○ 체납보험료의 징수를 위한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행의뢰서에 기재할 사항 및 압류재산의 인도에 관한 사항 기타 공매대행의 의뢰를 해제하는 경우의 해제절차를 정함</li> <li>○ 과거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이 85퍼센트초과 9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5퍼센트 인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6퍼센트 인상하는 등 다수의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 인상율을 확대조정하고 산업재해발생건수가 적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 인하율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자율적인 재해예방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함</li> </ul>
'98.1.13. 법률 제550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36개 법률의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li> </ul>
'98.6.24 대통령령 제158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보험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으로 함</li> <li>○ 금융·보험업이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3년이후부터는 과거 3년간 납부한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지급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인하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사업에 금융·보험업을 추가함</li> </ul>

개정일자	주요 골자
'99.2.8. 법률 제588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중 상임이사 4인을 3인으로 감축하려는 것임.</li> </ul>
'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예산처직제중 개정령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제17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li> </ul>
'99.12.31. 법률 제607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법 제명).</li> <li>○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2조제2호)</li> <li>○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3항 신설).</li> <li>○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불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li> <li>○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li> </ul>
'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5인미만 사업의 사업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에는 기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산재보험 적용.</li> <li>○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등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 함</li> <li>○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됨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li> </ul>



개정일자	주요 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업급여가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상응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65세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5퍼센트로 감액하여 지급</li> <li>○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등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등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li> <li>○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등 연금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li> <li>○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등을 고려하여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함</li> <li>○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자신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li> </ul>
'01.12.31 법률 제659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명칭을 산업재해예방기금(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련 조항 삭제)과 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변경</li> <li>○ 기금의 용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한국산업안전공단예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지출예산의 100분의 5이상을 계상하도록 함</li> </ul>
03.5.7 대통령령 제1797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수시간병급여 대상에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자 포함)</li> <li>○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징수한 금액은 징수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함</li> <li>○ 국제징수법상의 공매대행수수료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공매대행 수수료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토록 함</li> <li>○ 기금운영을 위한 기준수익 기준 변경(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li> <li>○ 종전에는 예규에서 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은 직접적인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으로 대통령령에 명시</li> </ul>
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름</li> <li>○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변경</li> </ul>
03.12.30 대통령령 제1820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름</li> <li>○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으로 적용제외사업에 추가</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04.1.29 법률 제715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근거 마련</li> <li>○ 산재예방사업에의 지원비율(5%→8%) 조정</li> </ul>
04.1.29 대통령령 제1827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료 반환이자율이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율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연동하도록 변경</li> </ul>
'04.10.29 대통령령 제1857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징수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정비 등</li> <li>○ 가입대상에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외에 “화물지입차주개인택시 등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함</li> <li>○ 또한 임의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연도중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는 자영업자 자신은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중·소기업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li> </ul>
'06.08.17 대통령령 제1964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시기에 맞추어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인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li> <li>○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li> <li>○ 사업주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던 직장복귀지원금을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함</li> <li>○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li> </ul>
'07.4.11 법률 제837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법 문장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문장 구조가 많음</li> <li>○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07.12.14 법률 제869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 조항을 명시</li> <li>○ 현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개선함</li> <li>○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하고,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일 수 있도록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를 개선함</li> <li>○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li> <li>○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하여 당연지정제를 도입함</li> <li>○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li> <li>○ 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li> <li>○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li> <li>○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li>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li> <li>○ 2000년 7월 1일 이전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li> </ul>
<p>'08.06.25 대통령령 제2087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에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미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근로자의 일(日)당 임금 평균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출하도록 함.</li> </ul> </li> <li>○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동안의 상병 경과와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등을 진료계획에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료 계획을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li> <li>○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li> <li>○ 장해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신경·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를 가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li> </ul>
<p>'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 등으로 정함.</li> </ul>
<p>'08. 7. 1 법률 제883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08. 7. 1 법률 제8863호	○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
'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를 일반 건축공사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조정
'08.12.31 법률 제9319호	○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
'09. 1. 7 법률 제9338호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 되도록 하려는 것임.
'09.6.30. 대통령령 제21588호	○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불도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건설기계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제고
'09.10. 9 법률 제9794호	○ 이 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10. 1.27 법률 제9988호	○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내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10. 2.24. 대통령령 제22060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산업재해 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함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p>'10. 3.26. 대통령령 제2210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장애등급 제12급까지 확대하고,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도 추가</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li> <li>○ 법률에서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한국산재의료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특진의료기관의 대상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을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으로 정비</li> </ul>
<p>'10. 5.20 법률 제1030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애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담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li> <li>-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을 지급</li> <li>-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li> <li>-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진폐판정 절차를 간소화함</li> </ul> </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도록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및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 하여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를 정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li> <li>-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li> <li>-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법령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li> </ul>
'10. 9. 29. 대통령령 제224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출연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li> <li>- 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출연금은 징수위탁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며, 출연금이 징수위탁업무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위탁업무에 사용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기금출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li> </ul>
'10.11.15. 대통령령 제2249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과거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업종·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함.</li> <li>○ 법률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li> <li>- 진폐판정과 관련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진폐장해등급을 통합하여 정하고,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신설</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에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는 사항으로 정함</li> </ul>
<p>'11.12.30. 대통령령 제2346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과 퀵서비스 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li> <li>- 택배업종사자 및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하여 적용</li> </ul> </li> <li>○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p>'12. 4.16 대통령령 제2372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 적립 및 재정수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에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총액으로 산정된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li> <li>- 고용노동부장관은 징수한 보험료 총액과 지급한 보험급여 총액을 3년마다 분석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 유지 노력</li> </ul> </li> </ul>
<p>'12.11.12 대통령령 제2417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공포, 2012. 11. 18. 시행)됨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을 허용</li> </ul> </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li> </ul>
<p>'12.12.18 법률 제11569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 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13. 6.28 대통령령 제2465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요인 14종류를 포함하여 35종류 유해요인을 추가로 규정하여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유해요인과 질병명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수정하는 한편, 질병계통별로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하는 방식으로 분류체계를 개편</li> <li>○ 별표3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해당 질병조항을 인용한 규정도 함께 변경</li> </ul>
'15.4.14. 대통령령 제2619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li> </ul>
'15.4.21. 법률 제1304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에 진료, 업무상질병 관련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을 추가할 추가함</li> <li>○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li> <li>○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li> </ul>
'16.7.1. 대통령령 제2619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개선</li> <li>○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li> <li>○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li> </ul>
'16.12.27. 법률 제1449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li> </ul>
2017.10.24. 법률 제14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상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까지 인정 범위 확대</li> <li>- 출퇴근 경로 이탈·중단 시 불인정. 단, 일상행위 필요한 행위의 경우 예외 인정</li> <li>- 출퇴근 경로가 불분명한 직종 적용 제외(제외 직종 시행령 위임)</li> </ul> </li> <li>○ 자동차보험사와 구상금 청구액 협의·조정을 위한 구상금협의조정기구 설치 규정 신설</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17.12.26. 대통령령 제2850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기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 적용제외 기준에서 “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 및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 규정 삭제</li> </ul> </li> <li>○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기간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실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li> </ul> </li> <li>○ 재요양 이후 장해보상연금 지급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해일시금을 받은 노동자가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할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일시금을 조정함에 있어 해당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게 개정</li> </ul> </li> <li>○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보험급여 조정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수공제” 방식을 “금액공제” 방식으로 개정</li> </ul> </li> </ul>
'18.12.13. 법률 제1566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려운 한자용어 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변경</li> </ul> </li> <li>○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명확화 및 최저보상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명시</li> <li>○ 유족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li> <li>○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개선</li> <li>○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배액징수 면제 및 고의상습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근거 마련</li> <li>○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수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증원 및 비위사실 있는 경우의 면직 근거 마련</li> <li>○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li> </ul>
'18.12.11. 대통령령 제2935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원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봄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li> </ul> </li> <li>○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경우에도 직장적응훈련비 지급하도록 지원 범위 확대</li> </ul> </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등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을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등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진찰, 검사, 약제의 처방 또는 재활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병증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구체화</li> </ul> </li> <li>○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개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효과와 명단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간의 균형을 도모</li> </ul> </li> <li>○ 직업성 암 인정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면 노출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노출기간, 잠복기간 및 동반 질환과의 연관관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벤젠의 경우 노출기준을 현행 1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낮추며,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에 비호지킨림프종을 추가하는 등 직업성 암 발병요인 중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밝혀진 유해물질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반영</li> </ul> </li> </ul>
'19.7.16. 법률 제1627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li> </ul>

## 2 보험료징수법령 개정 연혁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03.12.31 (법률 제7047호)	<p>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산보험료(概算保險料)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하고,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9조).</li> <li>○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함(법 제21조).</li> <li>○ 연체금(延滯金)의 기산시기(起算時期)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미납이 발생한 경우별로 정함(법 제25조).</li> <li>○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을 종전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 개인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li> </ul>
'04.10.29 (대통령령 제1857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사업주 일괄적용 대상 확대</li> <li>○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li> <li>○ 노무비율의 결정·적용방법 신설</li> <li>○ 산재보험요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li> <li>○ 징수특례 적용제외 사업 신설</li> <li>○ 연체료 부과방법 변경(매 3월 1,000분의 36→매1월 1000분의 12&lt;연14.4%&gt;)</li> <li>○ 보험사무대행기관 관련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통일, 인가대상 확대, 지급기준을 시행령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li> </ul>
'04.12.31 (노동부령 제2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개 서식 통합 신설</li> <li>○ 확정보험료 수정신고 신설</li> <li>○ 징수특례 적용제외 신청, 부과고지 방법, 재산정 신청절차를 규정</li> <li>○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규정</li> </ul>
'04.12.31 (법률 제730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을 신고</li> <li>○ 기존 건설업자 등 건설업 관련 면허소지자의 일괄적용 성립신고 요건 완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1개월 유예</li> </ul>

개정일자	주요 골자
'05.12.7 (법률 7706호)	○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05.12.30 (대통령령 19247호)	○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어 관련 조문 정비
'05.12.30 (노동부령 제243호)	○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06.3.29 (대통령령 19422호)	○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 채권자협회의 기능 보충 ○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 ○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
'06.12.28 (법률 제8117호)	○ 최초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정함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 경감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경감
'07.3.27 (대통령령 19973호)	○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및 비율 ○ 전자신고 및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의 제외 사유
'07.3.29 (노동부령 제269호)	○ 전자신고의 방법과 절차 ○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절차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분할납부 도입
'07.4.11 (법률 제8373호)	○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07.5.11 (법률 제8429호)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적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험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개정일자	주요 골자
'07.7.24 (노동부령 제281호)	○ 이행강제금의 징수·반환절차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07.12.27 (법률 제8812호)	○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 ○ 최고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최고한도 설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 규정
'07.12.28 (노동부령 제287호)	○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 직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 시에 개산보험료 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확정보험료 신고 또는 징수특례 제외신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적어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편리성과 사회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간 사업장관리번호를 일원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08.6.25 (대통령령 제20874호)	○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서 천재지변이나 정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계산에서 제외 ○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인 경우 증감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30,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 증감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으로 하여 재해발생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체의 급격한 요율변동 방지
'08.7.1 (노동부령 제305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12호, 2007. 12. 27. 공포, 2008. 7. 1. 시행)개정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09.12.30. (법률 제9896호)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보험가입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보수(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로 변경함..

개정일자	주요 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를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li> <li>○ 500만원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한 자와 1년에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li> </ul>
'10.01.27. (법률 제998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li> <li>○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통일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은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 납부방식은 자진신고납부(연)에서 월별 부과지로 각각 변경함.</li> </ul>
'10.9.29. (대통령령 제2240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에서 보수의 뜻을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함.</li> <li>○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신청한 하도급공사에서 하도급공사의 착공 15일부터 신청 접수일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함.</li> <li>○ 월별보험료 부과징수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으로 정함.</li> <li>○ 건강보험공단은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 사업운영계획, 재무제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징수현황을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li> <li>○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및 금융거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li> </ul>
'11.3.30. (대통령령 제2280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최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도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이 법정 수준보다 낮았고,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어 법정 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11로 조정</li> </ul>
'11.4.4. (대통령령 제2282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li> </ul>

개정일자	주 요 골 자
'11.07.21. (법률 제10894호)	○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
'12.1.1. (대통령령 제23466호)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 및 그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12.02.01. (법률 제11269호)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산정 단위를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장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매년 2월 말에서 매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증대
'12.7.1. (대통령령 제23910호)	○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불승인 사유 추가 ○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 시 제외되는 보험급여 정비
'13.6.4 (법률 제11863호)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보험료부과 위한 근거 마련 ○ 일정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3.6.28. (대통령령 제24650호)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11에서 1천분의 13으로 조정
'13.12.30. (대통령령 제25047호)	○ 재해예방활동을 반영한 산재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재해 예방활동의 내용, 보험료 인하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4.3.24. (법률 제12526호)	○ 보험료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소액인 경우 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고 미납 연체금을 다른 사회보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어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일자	주요 골자
'14.9.24. (대통령령 제2562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환수금을 3천원 미만으로 함</li> <li>○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등 금액을 부과고지 사업장은 1천만원 이하, 건설업 및 별목업의 경우에는 1억2천만원으로 함</li> <li>○ 사업주의 보험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의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하고 관련 직무를 2년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함</li> </ul>
'14.9.3. (대통령령 제2558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를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확대</li> </ul>
'15.12.30. (대통령령 제2680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사업장의 범위를 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li> <li>○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채용으로 지원대상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계속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li> <li>○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지급수준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에서 5분의3으로 지원 수준을 상향조정함</li> </ul>
'16.3.22. (대통령령 제2705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을 적용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을 공단에 신고된 총공사금액과 고용정보 신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선정함</li> <li>○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급여액 산정기준의 개선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산정과 보험급여액 징수 대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함</li> </ul>
'16.12.27. (법률 제1449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적용되던 납부 상한금액 기준 폐지함</li> <li>○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함</li> <li>○ 보험료 체납 시에 부과되던 연체금의 산정방식을 월 단위 산정방식에서 일 단위 산정방식으로 개선함</li> <li>○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제도로의 개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li> </ul>
'17.10.24. (법률 제1493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함.</li> </ul>

개정일자	주 요 글 자
'19.1.15. (법률 제1626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함</li> <li>○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함</li> <li>○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li> <li>○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시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제도를 폐지함</li> <li>○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고용보험료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함</li> </ul>

## 3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 규모별 적용 확대 연혁

연 도 별	업 종 별	규 모 별
'64. 7. 1	광업·제조업	▶ 500인 이상
'65. 1. 1	전기가스업·운수보관업 추가	▶ 200인 이상
'66. 1. 1		▶ 150인 이상
'67. 1. 1		▶ 100인 이상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25,000인 이상)
'69. 1. 1	건설업, 수도업, 위생시설서비스업, 상업, 통신업, 서비스업 추가	▶ 50인 이상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13,000인 이상)
'69. 7. 14		▶ 건설업은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71. 1. 1	금융, 증권, 보험업 제외	
'72. 7. 1	상업, 서비스업 제외	▶ 30인 이상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8,000인 이상)
'73. 7. 1		▶ 16인 이상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4,200인 이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
'76. 1. 1		▶ 광업, 제조업 중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제조업은 5인 이상
'82. 7. 1	임업중 벌목업 추가	▶ 10인 이상 ▶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2,700인 이상 ▶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83. 8. 6	농수산물위탁판매 및 증개업 추가	▶ 벌목업은 재적량 1,700m <sup>3</sup> 이상
'86. 9. 1		▶ 5인 이상(14개 업종) · 베니아판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펄프 및 지류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 ·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금속재료제품제조업 · 수상운수업

연 도 별	업 종 별	규 모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금업</li> <li>· 화물취급업</li> <li>· 화물자동차운수업</li> <li>· 중기관리사업</li> <li>· 향만하역업</li> <li>· 제재업</li> </ul>
'8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20개 업종)</li> <li>▶ 목재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li> <li>▶ 선박건조 및 수리업 식료품제조업</li> <li>▶ 인쇄 또는 제본업</li> <li>▶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li> <li>· 도자기제조업</li> <li>· 유리제조업</li> <li>· 시멘트제조업</li> <li>· 금속제조업</li> <li>· 계량기·광학기계·시계 등의 제조업</li> <li>·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li> <li>· 목재악기제조업</li> <li>· 전기기계기구제조업</li> <li>·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li> <li>· 기타 제조업</li> <li>· 자동차여객운수업</li> <li>· 소형자동차운수업</li> <li>· 항공운수업</li> <li>· 창고업</li> </ul>
'8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목업은 재적량 800m<sup>3</sup> 이상</li> <li>▶ 유기사업은 연간 1,350인 이상</li> <li>▶ 5인 이상(16개 업종)</li> <li>·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li> <li>· 경인쇄업</li> <li>· 신문업 또는 출판업</li> <li>· 화폐 등 제조업</li> <li>· 전자제품제조업</li> <li>· 수제품 제조업</li> <li>· 전기업·가스업·수도업</li> </ul>

연 도 별	업 종 별	규 모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li> <li>· 통신업</li> <li>· 농수산물 위탁판매업</li> <li>· 운수관련서비스업</li> <li>·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li> <li>·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li> <li>· 기타의 각종사업</li> </ul>
'91.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인 이상</li> <li>· 기타의 임업</li> <li>· 해면어업</li> <li>· 정치망어업 또는 해면 어류 양식업</li> <li>· 기타의 어업</li> <li>· 일반농업</li> <li>· 기계화 농업</li> <li>· 기타의 각종 사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li> <li>-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li> <li>-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li> <li>- 수렵업</li> <li>-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li> <li>- 부동산업</li> </ul> </li> </ul>
'92.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li> <li>· 기타의 임업</li> <li>· 해면어업</li> <li>· 정치망어업 또는 해면 어류 양식업</li> <li>· 기타의 어업</li> <li>· 일반농업</li> <li>· 기계화 농업</li> <li>· 기타의 각종 사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li> <li>-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li> <li>-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li> <li>- 수렵업</li> <li>-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li> <li>- 부동산업</li> </ul> </li> </ul>

연 도 별	업 종 별	규 모 별
'9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li> <li>· 기타의 각종사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서비스업</li> <li>-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li> <li>- 연구 및 개발업</li> </ul> </li> </ul>
'98. 7. 1	금융 및 보험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5인 이상</li> </ul>
'0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추가 가사서비스업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1인 이상</li> <li>· 금융·보험업</li> <li>· 광업</li> <li>· 제조업</li> <li>· 전기·가스, 상수도업</li> <li>· 기타의 사업(수렵업 제외)</li> <li>· 임업중 벌목업</li> <li>· ▶ 건설업은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또는 330㎡ 이상</li> <li>· ▶ 5인 이상(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li> </ul>
'0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동종사업 일괄적용 규모 확대</li> <li>- 2년 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li> </ul>
'05.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 확대</li> <li>· 건설공사 적용확대</li> <li>·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임·어업·수렵업을 행하는 법인(1인 이상 당연적용)은 산재보험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도 적용특례에 의거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li> <li>▶ 건설업자(주택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공사는 적용 제외</li> <li>▶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상시 5인 미만 사업 적용 제외</li> </ul>
'08.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대상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차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산재보험 적용 확대</li> </ul>
'0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적용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자(주택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제외</li> </ul>

연 도 별	업 종 별	규 모 별
'12. 5. 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대상 확대	▶ 택배기사 및 전속 퀵서비스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퀵서비스업자 및 비전속 퀵서비스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적용 확대
'12. 11. 18.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 확대	▶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16. 7. 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대상 확대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대리운전업자와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적용 확대
'18. 1. 1.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 확대	▶ 자동차 정비업, 1차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18. 12. 11.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 확대	▶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적용 확대
'19. 1. 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대상 확대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27종의 건설기계조종사 산재보험 적용 확대

## 4 산재보험료율 변동 현황

산업 분류	연도별/업종수 사업종류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60	67	74	67	67	67	67	67	67	68	64	62	58	
	연도별 전 산업 평균료율 <sup>1)</sup>	164	164	194	221	194	150	152	168	155	165	176	167 (15.2)*	149	
광 업	석탄 광업 및 채석업	-	-	-	-	-	-	-	-	-	-	-	-	-	
	석탄 광업 (갑) <sup>2)</sup>	212	227	286	335	355	272	303	288	244	271	283	297	311	
	" (을) <sup>2)</sup>	-	-	-	-	-	-	-	-	-	-	-	-	-	
	" (병) <sup>2)</sup>	-	-	-	-	-	-	-	-	-	-	-	-	-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95	146	182	175	178	109	142	178	158	197	226	237	248	
	채석 광업	73	66	79	85	88	71	77	91	85	111	121	116	121	
	석회석 광업	36	38	53	67	64	50	55	59	58	74	85	88	82	
	제염업 <sup>3)</sup>	3	6	8	9	7	7	9	12	14	18	21	22	23	
	흑연 광업 <sup>4)</sup>	-	-	-	-	-	-	-	-	-	-	-	-	-	-
	기타 광업	44	42	46	48	43	36	38	44	42	55	60	59	61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sup>5)</sup>	-	-	26	30	31	26	30	35	35	39	45	41	43		
석회석·금속·비금속 광업 및 기타 광업	-	-	-	-	-	-	-	-	-	-	-	-	-	-	
제 조 업	식료품 제조업 (갑) <sup>6)</sup>	10	11	13	14	13	11	12	14	13	16	16	15	15	
	" (을) <sup>6)</sup>	-	-	-	24	-	-	-	-	-	-	-	-	-	
	담배 제조업 <sup>5 4)</sup>	3	4	6	8	7	6	6	7	6	7	8	8	7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sup>62)</sup>	-	-	-	-	-	-	-	-	-	-	-	-	-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갑)	5	6	8	9	6	5	6	7	7	8	8	8	8	
	" (을)	-	-	-	14	12	10	13	17	12	15	16	15	16	
	제재 및 배너판 제조업 <sup>7)</sup>	34	33	38	40	36	29	31	34	32	41	42	44	46	
	배너판 제조업 <sup>7)</sup>	-	-	-	-	-	-	-	-	-	-	-	-	-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sup>6 3)</sup>	-	-	-	-	-	-	-	-	-	-	-	-	-	-
	목제품 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	26	29	34	31	25	25	27	25	32	35	35	37	
펠트·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sup>5 5)</sup>	19	19	21	23	20	16	17	18	16	20	21	20	17		
인쇄 또는 출판업	-	-	-	-	-	-	-	-	-	-	-	-	-	-	
신문·화폐 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sup>5 6)</sup>	2	3	4	5	5	4	5	6	5	6	6	6	6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sup>5 6)</sup>	-	-	-	-	-	-	-	-	-	-	-	-	-	-	
인쇄 또는 출판업 <sup>8)</sup>	-	-	-	-	-	-	-	-	-	-	-	-	-	-	
신문업 또는 출판업 <sup>8)</sup>	-	-	-	-	-	-	-	-	-	-	-	-	-	-	
화폐(지폐) 등 제조업 <sup>8)</sup>	-	-	-	-	-	-	-	-	-	-	-	-	-	-	
인쇄 또는 제본업 <sup>9)</sup>	12	12	14	17	-	-	-	-	-	-	-	-	-	-	
인쇄업	-	-	-	-	14	11	12	13	12	14	15	15	15	15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sup>10)</sup>	-	-	-	-	20	15	15	16	15	18	18	17	-	-	
경인쇄업 <sup>11)</sup>	7	7	7	17	8	6	8	8	7	8	8	8	-	-	
화학제품 제조업	17	16	17	18	16	13	14	15	14	16	15	15	16	16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업 <sup>4)</sup>	3	4	5	6	6	5	6	7	6	7	8	8	8	8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 제조업 <sup>4)</sup>	-	-	-	-	-	-	-	-	-	-	-	-	-	-	

※ 2001년 연도별 전산업 평균료율(15.2)\*는 금융보험업 포함 시 요율임  
 - 금융보험업은 2001년 당시 적용된지 3년 미만이라서 평균요율 산정 시 제외되었음



(단위 : 천분율)

03 59	04 60	05 61	06 61	07 61	08 61	09 61	10 61	11 62	12 60	13 58	14 58	15 58	16 58	17 51	18 45	19 35
13.6	14.8	16.2	17.8	19.5	19.5	18.0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7.0	16.5	15.0
-	-	-	-	-	-	-	-	-	-	-	-	-	-	323	281	225
317	377	436	459	522	553	360	360	354	354	340	340	340	3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6	278	313	316	304	230	206	236	201	161	129	104	84	77	-	-	-
121	143	155	167	184	201	208	233	234	246	238	285	338	325	-	-	-
74	60	56	67	76	79	69	68	67	76	77	87	83	76	-	-	-
23	27	32	37	41	37	33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64	60	71	81	80	70	72	72	72	67	71	69	71	-	-	-
43	51	61	76	91	98	-	-	-	-	-	-	-	-	-	-	-
-	-	-	-	-	-	-	-	-	-	-	-	-	-	71	71	57
15	17	20	24	27	25	22	23	22	22	20	20	19	19	19	19	16
-	-	-	-	-	-	-	-	-	-	-	-	-	-	-	-	-
6	7	8	10	12	11	10	9	9	9	8	8	8	8	8	-	-
-	-	-	-	-	-	-	-	-	-	-	-	-	-	-	-	11
7	8	9	11	13	16	14	15	14	14	13	13	13	13	13	13	-
15	17	20	24	28	27	24	25	25	25	23	22	21	20	20	20	-
48	57	59	65	77	77	72	76	84	8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35	41	43	47	55	54	50	50	51	51	47	49	46	44	42	42	-
17	20	23	26	29	27	25	27	26	26	25	25	24	24	24	-	-
-	-	-	-	-	-	-	-	-	-	-	-	-	-	-	24	-
5	5	6	7	8	10	9	9	10	10	10	12	12	12	11	-	-
-	-	-	-	-	-	-	-	-	-	-	-	-	-	-	11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5	18	19	21	19	17	17	16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6	19	21	23	21	18	18	18	18	17	17	17	17	16	16	-
7	8	9	11	13	11	10	10	9	9	9	9	9	9	9	-	-
-	-	-	-	-	-	-	-	-	-	-	-	-	-	-	8	7

산업 분류	연도별/업종수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60	67	74	67	67	67	67	67	67	67	68	64	62	58
제조업	석 탄 제 품 제 조 업 <sup>12)</sup>	24	24	-	-	-	-	-	-	-	-	-	-	-	
	코크스 및 석탄 가스 제조업	-	-	24	23	15	12	16	22	26	34	39	33	30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 <sup>13)</sup>	-	-	-	-	-	-	-	-	-	-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	-	-	-	-	-	-	-	-	-	-	-	-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sup>6 4)</sup>	-	-	-	-	-	-	-	-	-	-	-	-	-	
	고무 제품 제조업	8	9	11	12	11	10	12	14	13	15	16	15	16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sup>6 5)</sup>	-	-	-	-	-	-	-	-	-	-	-	-	-	
	도자기 제품 제조업 <sup>46)</sup>	7	9	11	14	13	11	12	15	14	18	19	20	21	
	유리 제조업	8	8	10	12	11	9	10	12	12	14	14	14	15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제조업 <sup>5 7)</sup>	21	22	25	27	23	18	19	22	21	25	27	27	27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 제조업 <sup>5 7)</sup>	-	-	-	-	-	-	-	-	-	-	-	-	-	
	시멘트 제조업 <sup>5 7)</sup>	7	10	13	17	17	3	15	16	15	18	21	22	23	
	시멘트 원료 채굴 및 제조업 <sup>14)</sup>	16	17	23	29	28	21	22	23	20	24	24	-	-	
	기계기구, 비금속 광물 및 금속 제품 제조업 <sup>66)</sup>	-	-	-	-	-	-	-	-	-	-	-	-	-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sup>15)</sup>	37	33	36	39	36	28	30	32	30	39	42	43	43	
	기계기구,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sup>58)</sup>	-	-	-	-	-	-	-	-	-	-	-	-	-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sup>16)</sup>	-	-	-	-	-	-	-	-	-	-	-	-	-	
	비금속 광물 제조업 <sup>16)</sup>	-	-	-	-	-	-	-	-	-	-	-	-	-	
	석재 제품 제조업 <sup>17)</sup>	-	-	-	-	-	-	-	-	-	-	-	-	-	
	조업	금속 제련업	5	5	6	8	8	7	7	8	7	8	8	7	7
		금속 재료 제품 제조업	26	25	28	32	29	23	24	27	24	30	33	32	33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갑) <sup>18)</sup>		35	35	39	38	33	26	28	31	29	37	40	40	-	
" (을) <sup>19)</sup>		-	-	-	87	93	82	107	147	123	149	-	-	-	
도금업		19	21	26	27	24	17	18	20	18	22	24	21	20	
기계기구 제조업 <sup>5 8)</sup>		17	17	20	23	21	16	17	19	18	21	23	22	22	
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 <sup>20)</sup>		-	-	-	-	-	-	-	-	-	-	-	-	-	
전기 기계기구 제조업 <sup>5 9)</sup>		10	10	11	12	10	8	9	11	10	11	11	11	11	
전기 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 기계 제조업 <sup>59)</sup>		-	-	-	-	-	-	-	-	-	-	-	-	-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 기계 제조업		-	-	-	-	-	-	-	-	-	-	-	-	-	
산업용	산업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	-	-	-	-	-	-	-	-	-	-	-	
	전자 제품 제조업 <sup>5 9)</sup>	2	3	4	6	5	4	5	5	5	6	6	5	5	
	선박 건조 및 수리업	25	28	34	34	27	19	20	24	24	29	29	26	26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갑)	13	13	15	16	9	8	9	12	12	14	14	13	14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sup>60)</sup>	-	-	-	-	-	-	-	-	-	-	-	-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sup>60)</sup>	-	-	-	-	-	-	-	-	-	-	-	-	-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을) <sup>47)</sup>	-	-	-	18	21	15	17	19	17	21	22	20	21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 기계 제조업	8	9	10	10	9	7	8	9	8	9	9	9	9	
	계량기·광학기계·실계 등의 제조업 <sup>21) 59)</sup>	-	-	-	-	-	-	-	-	-	-	-	-	-	
	기타 정밀 기계 제조업 <sup>21)</sup>	-	-	-	-	-	-	-	-	-	-	-	-	-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9	60	61	61	61	61	61	61	62	60	58	58	58	58	51	45
-	-	-	-	-	-	-	-	-	-	-	-	-	-	-	-
26	22	26	32	38	38	33	29	33	27	-	-	-	-	-	-
-	-	-	-	-	-	90	84	87	85	-	-	-	-	-	-
-	-	-	-	-	-	-	-	-	-	17	14	13	12	11	11
16	19	22	27	32	32	28	26	26	24	22	23	22	21	21	21
19	22	26	32	38	35	32	32	31	-	-	-	-	-	-	-
15	17	20	24	27	25	23	24	22	20	17	16	15	15	15	15
26	30	31	33	37	34	31	32	32	32	31	31	30	29	29	29
-	-	-	-	-	-	-	-	-	-	-	-	-	-	-	26
22	26	26	28	31	31	27	25	27	26	27	28	29	29	26	-
-	-	-	-	-	-	-	-	-	-	-	-	-	-	-	-
39	46	45	51	56	54	49	49	47	46	42	41	39	37	32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7	8	10	12	14	12	12	12	12	11	11	10	11	11	11
30	35	36	39	42	40	37	37	37	37	34	33	33	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1	24	26	28	26	23	23	23	23	21	20	19	18	17	17
21	24	28	30	33	30	26	26	25	24	22	21	20	19	19	-
-	-	-	-	-	-	-	-	-	-	-	-	-	-	-	-
10	11	13	16	18	15	13	13	13	13	12	12	11	11	11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5	5	6	7	8	9	8	7	7	7	7	7	7	7	7	-
27	32	38	47	56	57	49	42	36	31	27	26	26	25	26	26
14	16	19	23	27	33	29	25	22	20	18	17	16	16	16	16
-	-	-	-	-	-	-	-	-	-	-	-	-	-	-	16
-	-	-	-	-	-	29	25	22	21	18	18	17	17	17	-
20	23	27	29	31	27	23	22	21	-	-	-	-	-	-	-
8	9	10	12	14	13	12	11	11	11	10	9	9	9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 분류	연도별 / 업종수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60	67	74	67	67	67	67	67	67	68	64	62	58
	목재악기제조업 <sup>22)</sup>	-	-	-	-	-	-	-	-	-	-	-	-	-
	수제품제조업	6	7	8	8	9	8	9	11	10	12	13	12	12
	수제품제조업(을) <sup>23)</sup>	-	-	-	18	-	-	-	-	-	-	-	-	-
	기타제조업	15	16	19	20	19	15	17	19	18	22	23	22	23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sup>7)</sup>	-	-	-	-	-	-	-	-	-	-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및 가스업(갑) <sup>24)</sup>	4	5	6	6	-	-	-	-	-	-	-	-	-
	전기 및 가스업(을) <sup>24)</sup>	-	-	-	11	-	-	-	-	-	-	-	-	-
	전기 및 가스업 <sup>25)</sup>	-	-	-	-	-	-	-	-	-	-	-	-	-
	증기 및 수도업 <sup>25)</sup>	-	-	-	-	-	-	-	-	-	-	-	-	-
	수도업 <sup>26)</sup>	2	4	4	6	-	-	-	-	-	-	-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	5	6	6	6	5	6	8	7	8	8	7	7
건 설 업	일반건설공사(갑) <sup>27)</sup>	29	28	34	40	34	28	28	32	29	36	37	34	33
	" (을) <sup>28)</sup>	-	-	-	74	39	27	28	31	29	38	-	-	-
	건축건설공사 <sup>29)</sup>	-	-	-	-	-	-	-	-	-	-	-	-	-
	포장공사 <sup>30)</sup>	-	-	-	-	-	-	-	-	-	-	-	-	-
	토목건설공사 <sup>31)</sup>	-	-	-	-	-	-	-	-	-	-	-	-	-
	도로신설공사 <sup>32)</sup>	-	-	-	-	-	-	-	-	-	-	-	-	-
	기타공사 <sup>32)</sup>	-	-	-	-	-	-	-	-	-	-	-	-	-
	중견건설공사 <sup>33)</sup>	45	44	44	57	49	38	42	45	39	46	-	-	-
	수력발전시설등신설공사 <sup>34)</sup>	-	-	-	-	-	-	-	-	-	-	-	-	-
	철도또는케도신설공사 <sup>35)</sup>	54	56	47	69	46	39	37	39	31	34	-	-	-
	기계장치공사 <sup>36)</sup>	-	-	-	-	-	-	-	-	-	-	-	-	-
운수창고및통신업	철도케도및삭도운수업 <sup>61)</sup>	2	3	4	5	4	4	5	6	5	6	6	6	6
	철도·케도·삭도·항공운수업 <sup>61)</sup>	-	-	-	-	-	-	-	-	-	-	-	-	-
	자동차운수업및택배업·퀵서비스업	-	-	-	-	-	-	-	-	-	-	-	-	-
	육상및수상운수업 <sup>6 8)</sup>	-	-	-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수업	8	9	13	15	13	10	11	13	12	14	14	15	16
	소형화물운수업및택배업·퀵서비스업	-	-	-	-	-	-	-	-	-	-	-	-	-
	소형자동차운수업 <sup>37)</sup>	9	11	13	15	14	12	13	16	14	17	17	-	-
	화물자동차운수업	36	35	40	44	38	29	32	36	33	43	49	51	55
	수상운수업,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 <sup>38)</sup>	25	20	28	26	24	17	19	21	18	23	26	27	28
	항만하역업 <sup>39)</sup>	22	23	30	33	32	24	26	28	26	30	30	29	-
	해상하역업 <sup>40)</sup>	6	6	5	7	7	6	6	7	6	8	9	9	8
	항공운수업 <sup>6 1)</sup>	27	27	33	34	-	-	-	-	-	-	-	-	-
	화물취급업 <sup>41)</sup>	-	-	-	-	-	-	-	-	-	-	-	-	-
	창고및운수관련서비스업	2	3	4	6	5	4	5	6	5	6	6	6	6
	운수관련서비스업	10	13	17	18	16	12	13	15	13	15	16	15	16
	창고통신업 <sup>5 6)</sup>	3	4	5	6	5	5	6	7	7	8	8	8	8

03 59	04 60	05 61	06 61	07 61	08 61	09 61	10 61	11 62	12 60	13 58	14 58	15 58	16 58	17 51	18 45	19 35
-	-	-	-	-	-	-	-	-	-	-	-	-	-	-	-	-
12	14	16	20	23	20	18	18	18	17	16	16	16	16	15	15	-
-	-	-	-	-	-	-	-	-	-	-	-	-	-	-	-	-
22	26	29	31	35	33	31	32	33	33	31	30	29	28	27	27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7	8	10	12	11	10	10	10	10	9	9	10	10	10	10	8
29	33	31	34	38	36	34	37	36	37	37	38	38	38	39	39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5	6	7	8	10	9	8	9	9	8	8	8	9	9	-	-
-	-	-	-	-	-	-	-	-	-	-	-	-	-	-	9	8
-	-	-	-	-	-	-	-	-	-	-	-	-	-	20	20	-
-	-	-	-	-	-	-	-	-	-	-	-	-	-	-	-	18
15	17	20	25	27	25	22	22	21	20	19	19	19	19	-	-	-
-	-	-	-	-	-	-	-	-	20	24	23	25	28	-	-	-
-	-	-	-	-	-	-	-	-	-	-	-	-	-	-	-	-
48	57	61	68	71	71	67	74	73	73	71	71	69	66	-	-	-
27	32	32	35	38	36	33	34	33	32	30	31	30	29	28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8	7	8	9	9	8	7	7	7	7	7	8	9	9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5	5	6	7	8	10	9	9	9	9	9	9	9	9	9	9	-
15	17	19	21	23	21	18	18	17	16	15	15	14	14	13	13	-
7	8	9	11	13	12	11	11	11	12	11	12	12	11	11	11	9

산업 분류	연도별/업종수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60	67	74	67	67	67	67	67	67	67	68	64	62
임 업	별 목 업 <sup>42)</sup>	244	218	272	182	292	315	320	299	258	319	304	319	319
	기 타 의 임 업 <sup>42)</sup>	-	3	4	6	8	9	12	16	18	19	19	20	21
어 업	해 면 어 업 <sup>43)</sup>	-	17	19	29	-	-	-	-	-	-	-	-	-
	정 치 망 어 업 또 는	-	17	19	47	-	-	-	-	-	-	-	-	-
	해 면 어 유 양 식 <sup>43)</sup>	-	-	-	-	-	-	-	-	-	-	-	-	-
	기 타 의 어 업 <sup>43)</sup>	-	3	4	18	-	-	-	-	-	-	-	-	-
	어 업 <sup>43)</sup>	-	-	-	-	28	35	46	63	60	78	90	95	99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	-	-	-	-	-	-	-	-	-	-	-	-
	어업및양식어업어업관련서비스업 <sup>43)</sup>	-	-	-	-	-	-	-	-	-	-	-	-	-
농 업	일 반 농 업	-	-	3	4	10	-	-	-	-	-	-	-	-
	기 계 화 농 업	-	-	17	19	12	-	-	-	-	-	-	-	-
	농 업	-	-	-	-	9	8	10	13	14	16	17	15	16
기 타 의 사 업	농 수 산 물 위 탁 판 매업 <sup>48)</sup>	10	10	16	18	14	9	9	11	10	13	15	16	16
	건물 등의 종합 관리 사업	7	8	8	11	10	8	9	11	10	12	13	13	13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27	26	26	31	27	20	21	22	21	25	26	26	27
	건물종합관리, 위생및유사서비스업 <sup>49)</sup>	-	-	-	-	-	-	-	-	-	-	-	-	-
	건설 기계 관리 사업 <sup>44)</sup>	25	25	25	30	27	22	29	40	41	50	47	49	51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	8	8	12	10	9	9	9	8	9	11	11	11
	기 타 의 각 종 사 업	2	3	3	5	5	4	5	6	5	6	6	6	6
	컴퓨터운용및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	-	-	-	-	-	-	-	-	-	-	-	-
	전문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	-	-	-	-	-	-	-	-	-	-	-	-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sup>45)</sup>	-	-	-	-	-	-	-	-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sup>45)</sup>	-	-	-	-	-	-	-	-	-	-	-	-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	-	-	-	-	-	-	-	-	-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	-	-	-	-	-	-	-	-	-	-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사업 <sup>53)</sup>	-	-	-	-	-	-	-	-	-	-	-	-	-	
사 업 서 비 스 업	-	-	-	-	-	-	-	-	-	-	-	-	-	
금 융 및 보 험 업	-	-	-	-	-	-	-	-	2.5	3	3.5	4	4	

※ 해외파견자 : 14/1000('19년), 주한미군 : 7/1000('19년)

03 59	04 60	05 61	06 61	07 61	08 61	09 61	10 61	11 62	12 60	13 58	14 58	15 58	16 58	17 51	18 45	19 35
343	408	489	611	42	54	62	66	65	72	80	87	89	89	90	90	72
21	24	28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124	148	185	222	288	249	286	328	314	252	202	162	130	-	-	-
-	-	-	-	8	10	11	12	13	15	18	21	25	30	-	-	-
-	-	-	-	-	-	-	-	-	-	-	-	-	-	36	35	-
-	-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6	19	23	27	28	26	28	28	29	27	27	27	27	26	25	20
16	19	22	27	31	35	31	29	31	-	-	-	-	-	-	-	-
13	15	18	22	26	24	21	21	20	20	18	18	17	17	16	16	-
24	28	31	35	38	36	33	33	31	32	31	32	32	32	31	30	-
-	-	-	-	-	-	-	-	-	-	-	-	-	-	-	-	13
54	64	76	92	110	119	-	-	-	-	-	-	-	-	-	-	-
10	11	13	16	19	20	17	17	18	18	-	-	-	-	-	-	-
5	5	6	7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9
4	4	4	5	6	7	-	-	-	-	-	-	-	-	-	-	-
-	-	-	-	-	-	7	6	6	6	6	7	7	7	7	7	6
-	4	4	5	6	7	7	7	7	7	7	7	7	7	7	7	6
-	-	7	8	9	10	9	8	8	8	7	7	7	7	7	7	6
-	-	-	-	-	-	-	-	10	11	10	10	9	9	9	9	8
-	-	-	-	-	-	-	-	10	9	9	9	9	9	8	8	7
-	-	-	-	-	-	-	-	-	-	10	11	11	10	10	10	8
-	-	-	-	-	-	-	-	-	-	10	9	9	8	-	-	-
-	-	-	-	-	-	-	-	-	-	-	-	-	-	8	9	9
-	-	-	-	-	-	-	-	-	-	-	-	-	-	-	9	8
4	4	4	5	6	7	7	7	6	7	6	6	7	7	7	7	6

- 주 1) '01년도 괄호( )는 금융보험업 포함시 평균요율임
- 2) '70년부터 석탄광업(갑/을)으로 적용 후 '75년부터는 석탄광업으로 적용
  - 3) '11년부터 제염업을 기타광업으로 통합 적용
  - 4) '89년부터 기타광업으로 적용
  - 5) '09년부터 제조업으로 적용
  - 6) '93년 식료품제조업(갑/을)으로 분리 적용하다가 '94년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
  - 7) '88년부터 제재및베니어판제조업으로 적용
  - 8) '88년부터 신문화패발행, 출판업으로 적용되다가 '02년부터 신문화패발행, 출판업및경인쇄업으로 적용
  - 9) '94년부터 인쇄업으로 적용
  - 10) '02년부터 펄프,지류제조업및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으로 적용
  - 11) '02년부터 신문화패발행, 출판업및경인쇄업으로 적용
  - 12) '92년부터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으로 적용
  - 13) '09년부터 제조업으로 분류변경
  - 14) '01년부터 시멘트제조업으로 적용
  - 15) '78~'87년에는 비금속광물제품및석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가 다시 통합 적용
  - 16) '88년부터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통합 적용 후 '02년부터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으로 적용
  - 17) '84년 석제품제조업을 분류하였다가 이후 일부는 요업또는토석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비금속광물제품및석제품제조업으로 적용
  - 18) '02년도부터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으로 적용
  - 19) '00년부터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으로 통합적용후 '02년부터는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으로 적용
  - 20) '74년부터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
  - 21) '88년부터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으로 적용
  - 22) '89년부터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적용
  - 23) '93년수제품제조업(갑/을)로 분리적용후 '94년 다시 통합 적용
  - 24) '94년부터 전기가스및상수도업으로 통합적용
  - 25) '88년부터 전기가스업으로 통합적용후 '94년부터는 전기가스및상수도업으로 통합 적용
  - 26) '94년부터 전기가스상수도업으로 통합 적용
  - 27) '00년도부터 건설업으로 명칭 변경
  - 28) '00년부터 건설업으로 통합 적용
  - 29) '78년부터 일반건설공사로 적용
  - 30) '74년부터 건축건설공사로 적용
  - 31) '76년부터 건축건설공사로 적용
  - 32) '79년부터 일반건설공사로 적용
  - 33) '00년도부터 건설업으로 적용
  - 34) '78년부터 중건설공사로 적용
  - 35) '00년도부터 건설업으로 적용
  - 36) '88년부터 일반건설공사로 포함되어 적용



- 37) '01년부터 자동차여객운수업으로 통합적용후 '12년부터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으로 적용
- 38) '02년부터 수상운수업에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으로 명칭 변경
- 39) '02년부터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
- 40) '77년부터 항만하역업으로 적용
- 41) '94년부터 항만하역업요율을 적용하다가 2002년부터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
- 42) '07년부터 임업으로 통합하여 요율 적용
- 43) '94년부터 어업으로 통합 적용되다가 '07년부터 어업과 양식어업및관련서비스업으로 분리 적용
- 44) '09년부터 건설업으로 포함하여 적용
- 45) '11년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통합 적용되다가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업및임대업 분리 적용
- 46) '12년부터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으로 포함하여 적용
- 47) '12년부터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포함하여 적용
- 48) '12년부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
- 48) '12년부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
- 49) '13년부터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으로 포함하여 적용
- 50) '13년부터 인쇄업으로 포함하여 적용
- 51) '17년부터 여객자동차운수업에서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으로 적용
- 52) '17년부터 어업이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으로 적용
- 52) '17년부터 어업이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으로 적용
- 53) '17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적용
- 54) '18년부터 담배제조업, 의약품및화장품향료제조업이 '의약품·화장품향료·담배제조업'으로 적용
- 55) '18년부터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이 '펄프·지류제조업'으로 적용
- 56) '18년부터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중 신문·화폐발행은 '통신업'으로 적용되고, 출판업 및 인쇄업은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으로 적용
- 57) '18년부터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제조업과 시멘트제조업이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으로 적용
- 58) '18년부터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
- 59) '18년부터 전기기계기구제조업과 전자제품제조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이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으로 적용
- 60) '18년부터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이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적용
- 61) '18년부터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항공운수업이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으로 적용
- 62) '19년부터 섬유/섬유제품제조업(갑), (을)이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으로 적용
- 63) '19년부터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이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으로 적용
- 64) '19년부터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이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적용
- 65) '19년부터 유리제조업, 도자기기타 요업제품 시멘트제조업이 유리, 도자기, 시멘트제조업으로 적용
- 66) '19년부터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도금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이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적용
- 67) '19년부터 수제품제조업, 기타제조업이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으로 적용
- 68) '19년부터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 운수관련서비스업, 창고업, 수상운수업, 항운하역 및 화물취급 사업이 육상 및 수상운수업으로 적용
- 69) '19년부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적용

5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 연혁

급 여 별	'64. 7. 1 시행 (법 제정 '63.11.5)	'71. 1. 1 시행 (1차 개정 '70.12.31)	'77. 12. 19 시행 (5차 개정 '77.12.19)	'82. 1. 1 시행 (7차 개정 '81.12.17)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 지급대상: 11일 이상	지급대상: 8일 이상		지급대상: 4일 이상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60% 지급대상: 11일 이상	지급대상: 8일 이상		지급대상: 4일 이상
◦ 상병보상 연금				



'83. 1. 1 시행 (8차 개정 '82.12.31)		'89. 4. 1 시행 (11차 개정 '89.4.1)		'08.7.1 시행 (26차 개정 '07.12.14)
				요양급여 범위 중 “재활치료” 명시 ※ 간병료 지급기준 개선 → 간병 현물급여 '09.7.1.시행
		휴업급여 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70%)		- 부분휴업급여 : (취업일 평균임금-취업 시 임금) ×90% +미취업 시 임금 - 저소득근로자 : 평균임금의 90% - 고령자휴업급여 : 61세부터 매년 4%p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p까지 감액 - 재요양 시 휴업급여 : 재요양 당시의 임금기준으로 산정 (임금이 없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
상병보상연금제도 신설  지급대상 : 2년 이상 요양자 폐질등급 해당자  상병보상연금 수준		상병보상연금 수준 인상(5%)		- 저소득근로자 : 최저임금액의 100/70을 평균임금 - 고령자상병보상연금 : 61세부터 매년 4%p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p를 감액 - 재요양에 따른 상병보상 연금 : 재요양 개시일부터 2년경과 후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 기준
등 급	급 여 수 준	등 급	급 여 수 준	
1 급	평균임금의 313일분	1 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 급	” 277일분	2 급	” 291일분	
3 급	” 245일분	3 급	” 257일분	

급 여 별	'64. 7. 1 시행 (법 제정 '63.11.5)	'71. 1. 1 시행 (1차 개정 '70.12.31)	'77. 12. 19 시행 (5차 개정 '77.12.19)	'82. 1. 1 시행 (7차 개정 '81.12.17)
◦ 장해급여 (장해보상 연금 포함)	일시금 최고: 1급(1,000일분) 최저: 10급(50일분)	4개 등급 추가 최고: 1급(1,340일분) 최저: 14급(50일분)	장해보상연금 수준 인상	연금수급자 사망시 일시금과의 차액분 지급
		연금제 도입 (대상:1급~3급)		장해보상연금 수준 인상 및 4급~7급 연금 신설
		등급   급 여 수 준	등급   급 여 수 준	등급   급 여 수 준
		1급   평균임금의 240일분(65.8%) 2급   213(58.3%) 3급   188(51.5%)	1급   평균임금의 297일분(76.4%) 2급   248일분(68.0%) 3급   219일분(60.0%)	1급   평균임금의 313일분(85.7%) 2급   277일분(75.9%) 3급   245일분(67.1%) 4급   213일분(58.4%) 5급   184일분(50.4%) 6급   156일분(42.7%) 7급   131일분(35.9%)
	* 일시금 또는 연금은 수급권자 선택		*1~2년분은 선급금 으로 수령 가능	



'83. 1. 1 시행 (8차 개정 '82.12.31)	'89. 4. 1 시행 (11차 개정 '89. 4. 1)				'08.7.1 시행 (26차 개정 '07.12.14)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시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 재판정대상 : 신경·정신장해, 척추신경근 장해, 관절기능 장해 및 진폐증으로 장해연금 받은 경우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제도 개선 → 선급기간 중 연금의 50%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연금으로 지급 → 선지급 연금액의 2% 이자공제 장해연금 지급방법 및 시기 개선 → 12등분하여 매달 25일 지급 기존장해가 심해진 경우 장해보상연금 산정 방법 개선 → (연금에서 연금 공제)심해진 장해의 장해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지급일수를 공제 → (연금에서 일시금 공제)심해진 장해의 장해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일시금 지급대상인 8~14급)의 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장해연금 지급일수로 환산)를 공제			
	장해보상일시금 수준 인상(10%)							
	등급	급여수준	등급	급여수준	등급	급여수준	등급	급여수준
	1급	1,474일본	8급	495일본				
	2급	1,309일본	9급	385일본				
	3급	1,155일본	10급	297일본				
	4급	1,012일본	11급	220일본				
	5급	869일본	12급	154일본				
	6급	737일본	13급	99일본				
	7급	616일본	14급	55일본				
	장해보상연금 수준 인상(5%)							
	등급	급여수준	등급	급여수준				
	1급	329일본(01%)	5급	138일본(52%)				
	2급	291일본(7%)	6급	164일본(44%)				
	3급	257일본(7%)	7급	138일본(57%)				
	4급	224일본(61%)						
	*1급~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년분까지 선급금으로 지급 가능)							

급 여 별	'10. 11. 21 시행 (34차 개정 '10.5.20)		
<p>◦ 장해급여 (장해보상 연금 포함)</p>	<p>→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p> <p>→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 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진폐장해 연금은 제1급~제3급(132일분), 제5급~제7급(72일분), 제9급~제13급(24일분)이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함 금액을 지급)</p>		

급 여 별	'64. 7. 1 시행 (법 제정 '63.11.5)	'71. 1. 1 시행 (1차 개정 '70.12.31)	'77. 12. 19 시행 (5차 개정 '77.12.19)	'82. 1. 1 시행 (7차 개정 '81.12.17)			
◦ 유족급여 (진폐유족 연금포함)	평균임금 1,000일본	유족연금제 도입 → 유족수별 급여수준 (시행령 개정 '71.11.19)	유족연금 수준 인상 (시행령 개정 '78.2.13)	유족연금 수준 인상 (시행령 개정 '82.6.14)			
		유족	급 여 수 준	유족	급 여 수 준	유족	급 여 수 준
		1인	연소득의 30%	1인	연소득의 45%	1인	연소득의 52%
		2인	" 35%	2인	" 50%	2인	" 57%
		3인	" 40%	3인	" 55%	3인	" 62%
4인	" 45%	4인	" 60%	4인	" 67%		
		* 일시금 또는 연금은 수급권자 선택					
◦ 장의비	평균임금 90일본						
◦ 일시급여	평균임금의 1,000일본	2년 경과 후 평균 임금의 1,340일본					
◦ 간병급여							
◦ 직업재활 급여							

'83. 1. 1 시행 (8차 개정 '82.12.31)	'89. 4. 1 시행 (11차 개정 '89. 4. 1)	'00.7.1 시행 (18차 개정 '99.12.31)	'08. 7. 1 시행 (26차 개정 '07.12.14)
	유족급여 일시금 수준인상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로 지급	유족급여 수급권 순위의 결정 기준인 '부양'의 개념 구체화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개정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수급권 기준 정비 → 유족연금차액일시금의 수급권자를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으로 개정 유족연금 지급방법·시기개선 → 매달25일, 1/12 지급
	장의비 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최저 금액 도입	장의비 수급권자 결정 기준 정비 → '장제를 행하는 자'에서 '장제를 행하는 유족'으로 개정
폐 지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도입
		간병급여 신설 지급대상 : 치료종결 후 수시·상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	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 기준 개선 → '00.7.1.이전 치료종결자 까지 지급대상 확대 → 중복기준 통합,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무관한 기준 삭제
			법정 직업재활급여 도입 → 직업훈련비용 : 현물급여 지급 → 직업훈련수당 : 직업훈련 기간 1일당 최저임금의 100%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최장 12 개월),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최장 3개월)



급 여 별	'10. 11. 21 시행 (34차 개정 '10.5.20)	'12. 12. 18 시행 (37차 개정 '12.12.18)	'18. 12. 13 시행 (41차 개정 '18.6.12)
◦ 유족급여 (진폐유족 연금포함)	→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진폐유족연금:사망 당시 진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 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 할 수는 없음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편의 연령제한 (만 60세) 삭제 →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연령 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연령범위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
◦ 장의비			
◦ 일시급여			
◦ 간병급여			
◦ 직업재활 급여			

## 6 산재보험 정책연구용역 현황

◇ '08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예산
진폐재해자 요양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백도명	김상용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남영식)	이종구	"
산재보험 재정운용방식 개편방안	(사)한국사회보험연구소 (김용하)	조익환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김상용	"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임상혁)	김상용	"
뇌심혈관계질환 과로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산학협력단 (원종욱)	김상용	"
산재보험 재활수가 지급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산학협력단 (김진현)	김상용	"
울산병원 건립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 (이특구)	고근호	"
장해·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사)한국보험연구원 (정홍주)	김호병	"
'09년도 산재보험료율 산정	근로복지공단 (문성현)	김소현	"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림대 산학협력단 (권영준)	조원식	"
간병 현물급여 활성화 방안 연구	가천의대 산학협력단 (임 준)	김상용	"
산재보험 건설업의 노무비율 실태조사 및 산출	(사)한국물가협회 (남궁권)	이종구	"
산재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급여 산정기준 개편 방안	한국노동법학회 (이승길)	김호병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이종구	"
산재보험관리기구를 통한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방안	김장호	이종구	"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대 산학협력단 (김진현)	김상용	"

## ◇ '09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예산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분리·통합기준	건국대 산학협력단 (장동한)	오재민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진폐증 포괄수가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김상용	"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김상용	"
장해보상 연금제도 개선 방안	한국보험연구원 (정홍주)	조원식	"
휴업급여제도 개선 방안	한국사회법학회 (이승길)	조원식	"
동통장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연구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김준성)	고군호	"
2010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	근로복지공단 (양제성)	오재민	"
산재예방요율제도 도입 방안	관동대 산학협력단 (김상호)	오재민	"
재정사업의 효율적 성과지표 개발 연구	(주)휴보로 (김철환)	조익환	"
산재보험 수가가산을 합리화 방안 연구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정혜선)	진선권	"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수가개발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진선권	"
산재의료원 의료비 총액예산제 적용 방안 연구	한국지식경영연구원 (김철환)	성기운	"
국내외 산재보험제도 운영의 비교 연구	관동대 산학협력단 (김상호)	엄대섭	"
산재기금 재정투자에 따른 산재예방사업 효과 분석	한국지식경영연구원 (김철환)	조익환	"
산재요양 실태분석을 통한 산재요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원종욱)	김인호	"

◇ '10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비고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김수근)	김인호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외국사례를 통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연세대 산학협력단 (김진수)	이상목	"
진폐 일당정액수가 개발 및 구체적 운영방안 연구	호서대 산학협력단 (이지운)	이상목	"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기준의 개선방안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박종희)	윤재선	"
원직복귀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구대 산학협력단 (이달엽)	유재식	"
산재환자 심리검사 도구(척도)개발	광운대 산학협력단 (탁진국)	유재식	"
2011년 산재보험 요율 산정	근로복지공단 (양재성)	김주택	"
보험료징수법 관련 고시 산정방식 개선방안	백석대 산학협력단 (문성현)	김주택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식 검토	한양대 산학협력단 (김수영)	김주택	"
건설업 하도급 노무비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사)한국물가협회 (남궁권)	김주택	"
부과고지 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산재보험 피보험자 관리방안	한국산재보험학회 (이승길)	김주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인하대 산학협력단 (정재훈)	김주택	"
연금대비 추가 적립금 확보방안	한국지식경영연구원 (김철환)	조익환	"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및 적용방안 검토	관동대 산학협력단 (김상호)	김주택	"



## ◇ '11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비고
간병급여 지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은숙)	김봉진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기금 재정 및 산업재해 예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상호)	이상목	"
연금 대비 책임준비금 적립시 운용방안 마련	(주)한국채권연구원 (신준호)	유제식	"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박수연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이상목	"
산재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와 미래구상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박종희)	박수연	"
특수직종(경비, 교대근무)에 대한 만성과로 기준 설정연구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김인호	"
2012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산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양재성)	이상목	"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산재보험 적용 및 운영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김상호)	김남용	"
산재보험 적용방식 개선을 위한 일본 킥서비스 제도연구	한국물류관리사협회 (최시영)	이상목	"

◇ '12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비고
산재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박종희)	김남용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산재근로자 요양재활과정에서 의사의 적정역할 유인 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영수)	박수연	"
장해보상체계에 대한 법리적·제도적 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김용하)	김남용	"
요양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산재 근로자 입증부담 완화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지순)	김인호	"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인식 및 대응유형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재훈)	김인호	"
산재보험 운영주체와 사회안전망 기능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김진수)	김태영	"
뇌손상 및 척추질환 산재환자 재활가이드 개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원종욱)	김승희	"
연금대비 직립금을 반영한 요율계산 및 재정운영방식 연구	한국보험연구원 (김상호)	신권식	"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재철)	양영봉	"



## ◇ '13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비고
산재기금 연금부채규모 계산 및 합리적인 적립방안등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성현)	김남용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에 따른 비용 추계	보험개발원 (김성호)	박윤경	"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 및 요양방안 연구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김인아)	양영봉	"
직업성 암 진단 및 판정을 위한 유해물질 노출수준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 (김양호)	양영봉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노무제공 실태를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박지순)	김남용	"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김진수)	박윤경	"
산재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실행방안 연구	(주)에이치엠컴퍼니 (임배만)	조익환	"
외국의 진폐근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수근	박윤경	"
산재보험 장기제정추계 모형 연구 및 추계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주호)	김남용	"
산재보험 적립기준 마련 관련 세부 추계 및 쟁점 검토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성현)	김남용	"

◇ '14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비고
사업주의 재해예방 유인제고를 위한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성현)	오수학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산재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제도화 등 개선방안 연구	에이치엠엔컴퍼니 (임배만)	김승희	"
외국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판정절차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인아)	공영철	"
직업성 암 유해물질의 구체적 노출수준 관련 연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양호)	공영철	"
제3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욱)	김승희	"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연택)	박윤경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산재보험 재해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김용하)	박윤경	"
사회보장체계내 산재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산재보험과 타 사회보험간 중복 수혜 관련 재정추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조준모)	박윤경	"
산재모병원 건립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미래경영컨설팅 (김재선)	김승희	"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 개선대안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성현)	유광욱	"



## ◇ '15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비고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지원 발전방안 연구	대구대 산학협력단 (조성재)	양유건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직업성 암 등 업무상질병 진단 및 판정을 위한 유해물질 노출수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산학협력단 (송재철)	공영철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구체적 판정절차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한양대 산학협력단 (김인아)	공영철	"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산학협력단 (김인아)	공영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오수학	"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국제노동법연구원 (박은정)	오수학	"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전속성 기준 마련 연구	국제노동법연구원 (박은정)	오수학	"
근골격계질병 요양 실태조사 및 조기진단·치료·복귀 방안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원종욱)	공영철	"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근로복지공단연구센터 (김장기)	박윤경	"

◇ '16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비고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오수학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산재장해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체계 개편 방안 연구	국립한국복지대 (강동욱)	이종걸	"
건설기계종사자 노무제공 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방안 연구	한국사회보험 연구소 (김용하)	오수학	"
개별실적요율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백석대 산학협력단 (문성현)	오수학	"
산재지정 의료기관 지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김수근)	공영철	"
유해물질과 질병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확대방안 연구	한양대 의대 (송재철)	공영철	"
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활성화를 위한 산재수가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의료원 산학협력단 (강윤규)	이종걸	"
장애평가기준 변화에 따른 산재장해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연세대 산학협력단 (원종욱)	이종걸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적용 실태분석 및 개선을 위한 판정사례 분석·연구	한양대산학협력단 (김인아)	공영철	"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업무상 재해·의료, 요양·장해, 재활 부분)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김창환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적용, 재정·요율, 보상 부분)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박종희)	김창환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개선방안 연구	(사)한국사회보험연구소 (김용하)	박경구	

## ◇ '17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비고
제5차 재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대체인력지원제도 포함)	(사)한국사회정책 연구원 (윤조덕)	이종걸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및 재해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뇌심혈관계질환 * 근골격계질환 (요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한양대학교 (송재철)	공영철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	한국법제발전 연구소 (노상현)	박경구	"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은숙)	공영철	"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부터 산재의료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주영수)	공영철	"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연택)	어일천	"
조기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수가체계 개선 및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현)	공영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어일천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른 산재병원 간호서비스 개편방안	우송정보대학 (이현주)	이종걸	"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보험과의 관계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권혁)	어일천	"
고무산업의 발암성 및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산학협력단 (송재철)	공영철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개선방안 연구	(사)한국사회보험연구소 (김용하)	박경구	"

◇ '18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예산
서비스업종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노동연구원 (박찬임)	어일천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캐나다 온타리오주 직업성 질병보상 관정 체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구정완)	공영철	"
출퇴근제해 산재도입이 자동차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재운)	박경구	"
건강검진과 산재신청의 연계방안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환)	공영철	"
산재전문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송재철)	공영철	"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및 재해조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목, 다리, 손목, 팔 근골격계질환 중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영수)	공영철	"
진폐종사자의 위암 발생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준표)	공영철	"
영세사업장 산재보험료 적용·징수 효율화 방안 연구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성현)	어일천	"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원종욱)	공영철	"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방안 및 자녀 유족수급권 보장방안 연구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현주)	이계승	"
정신질환(자살포함) 인정기준 및 재해조사, 요양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인아)	공영철	"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편방안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안유진	"

## ◇ '19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담당 계약관	예산
과로·스트레스, 작업형태·업무시간 등 유해요인과 직업성 압과의 업무관련성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원종욱)	공영철	산재기금 연구개발비
뇌심혈관계질환 재해조사 등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재철)	공영철	"
산재보상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성 검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인아)	이계승	"
산재보험 간병급여 효율적 운영방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은숙)	이계승	"
간질환 직업병 인정사례와 관련성 판단의 쟁점 검토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신수)	공영철	"
산재환자의 타직장 복귀 및 사회재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안유진	"
산재보험 합의제 운영기구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박귀천)	이계승	"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현주)	이계승	"
자살에 대한 특진, 심리부검 등 재해조사 방법 및 업무관련성 판정과의 연계 등을 통한 업무효율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인아)	공영철	"
캐나다 온타리오주 직업병(업무상질병) 제도 운영실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구정완)	공영철	"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김용주	"
정신질환 요양관리 실태와 산재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개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인아)	공영철	"
산재근로자 재취업지원 개선방안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박혁)	안유진	"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최흥기)	김용주	"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연구과제

◇ '06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보험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이각희 외 4인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산재예방과 보상 연계 강화 방안 연구	이각희	"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의 비교분석 연구(적용·징수체계 중심)	문성현	"
산재보험 재정추계 및 부채 규모 추정	문성현	"
산재 지정 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최은숙	"
진료비 심사기법 및 지불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은숙	"
자문의 운영 실태조사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최은숙	"
보험급여 수급자 수혜만족도 제고 방안 연구	최윤영	"
후유증상관리제도의 현황과 성과분석 연구	최윤영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요인에 관한 연구	이승욱	"
재활상담사 직무분석을 통한 재활서비스 역할 정립 연구	이승욱	"
신체기능평가(FCE)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연구	이승욱	"
산재·고용보험 적용단위(사업·사업장) 개선방안 연구	조선주	"

◇ '07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산재보험 재정추계 및 보험재정 운영	문성현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산재 요양 종결자 사회복귀 실태조사 연구(계속)	이승욱	"
공공혁신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김장기	"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공단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직무개발 방안	김장기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산재보험 패널데이터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운	"
특별진찰제도 실태조사	방은주	"
산재보험 재해조사 업무 실태조사	박은주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활성화 방안	노현승	"

## ◇ '08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산재근로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실태 조사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태진 교수) * 위탁 수행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산재근로자 장기 요양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문성현	"
산재 요양 종결자 사회복귀 실태조사 연구(계속)	이승욱	"
산재보험 패널데이터 구축 방안	김태운	"
찾아가는 서비스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김장기 외 4인	"
요양기관 종합관리제 도입방안 연구 (질병 분류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김귀현	"
간병 평가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김태운	"
지역별 적정 의료기관수 운영방안 연구	김귀현	"
산재보험 케이스 매니저 양성 방안	박은주	"
산재장애인 직업평가 도구개발 연구	이승욱	"
근로복지공단 2급 이상 직무연봉급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직급별 직무가치(등급) 분석	김장기	"
보험료 부과기준 및 부과방식 변화가 산재보험료를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지훈	"

◇ '09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무급가족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타당성 연구	오종은 외 1인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산재근로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김태운	"
간병 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김태운	"
요양기관 종합관리제 도입 방안 연구	김귀현	"
장해폐질진단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도 도입	김구현	"
산재보상 맞춤형서비스 모델 개발	김장기 외 1인	"
국내외 산재보험제도의 비교 연구	김장기	"
산재장해인 직업평가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이승욱	"
사업주의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승욱	"
전원요양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노현승	"

◇ '10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퀵서비스,대리운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	오종은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공단 맞춤형서비스의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김장기 외 1인	"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효과성 분석	임화영 외 1인	"
산재근로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임화영	"
자문위원회의의 현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김귀현	"
산재지정 의료전달체계 도입방안 연구	김귀현	"
선진 재활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이승욱	"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산재장해인 직업평가도구 표준화 연구	이승욱	"
기관통합에 따른 조직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김장기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연구	박은주	"
공단 산재병원 이용 산재요양환자 실태조사	노현승	"

## ◇ '11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보험료 징수체계 개편과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오종은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업무상 질병 요양결정 사례분석(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김경하	"
진료비 청구경향심사제 도입방안 연구	양정희	"
산재장해인 직업적응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이승욱·박은주	"
국내의 구상권 행사범위 및 회수체계 연구	김장기·노현승	"
국의 보험범죄 방지대책 및 관리체계(미국 및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김장기	"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운영방안 연구	김장기·노현승	"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적용 및 급여징수금제도 개선연구	오종은	"
근로자지표프로그램(EAP) 효과측정 지표개발	박은주	"
산재보험료율의 효율적 운영방안(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양재성	"
업무상 질병 사례 연구(감정노동자와 야간근무자 사례중심으로)	김경하·양정희	"
산재보험진료수가 제도 고찰	양정희·김경하	"
공단 조직발전 역량의 진단과 평가(맥킨지의 7s를 중심으로)	김장기	"
산재근로자 다차원심리검사 타당성 연구	이승욱·이준석	"
부과고지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료 확정정산 방안	삼일회계법인	"

◇ '12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산재보험제도의 정책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김장기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승욱	"
산재지정의사 도입타당성 연구	김경하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정희	"
여성근로자의 산재보상에 관한 연구	박은주	"
공단 Job Coordinator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노현승	"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판정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김장기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사업이 직업복귀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승욱	"
근골격계질환 요양실태 분석	김경하	"
외국인근로자 산재보상실태 분석	박은주	"
산재환자 요양실태 분석 -업무상사고에 의한 손상을 중심으로-	노현승	"
국외 의료기관 평가의 운영사례 연구	양정희	"



## ◇ '13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산재보험 유족급여제도의 개선과제-수급권자 분석을 통한 급여 적정성 검토	오종은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보험료 자진신고 · 납부사업장에 대한 부과고지제 도입방안 연구	박은주	"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에 따른 효과 분석-산재보험을 중심으로	박은주	"
소규모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김장기 · 양정희	"
출퇴근재해의 도입과 제도설계 방안	김장기	"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사업 연구-공단 내부인식도조사를 중심으로	김장기 · 양정희	"
업무상 정신질환 요양결정 사례 분석	김경하	"
산재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연구	김경하	"
공단 산재병원 간병급여 지급체계의 개선	양정희	"
장해연금 수급대상 산재장애인 실태분석	이은혜	"
산재보험 재활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이승욱	"
재활서비스 전담기관으로서 산재병원 기능개편 방향 연구	이승욱 · 오종은 · 김경하	"
출퇴근재해 도입의 재정부담설정에 관한 연구-재정부담 주체 및 효율설정을 중심으로	양재성	"

◇ '14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산재보험 장해급여 추계 모형	오종은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추진방안 연구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김장기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박은주	"
업무상질병 판정을 위한 업무체계 효율화 방안	김경하	"
산재병원 산업보건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수익구조 창출을 중심으로)	양정희	"
잡코디네이터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잡코디네이터 1급을 중심으로)	이승욱	"
출퇴근 재해의 도입과 추진방안 정립	김장기·양정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연구	오종은·박은주	"
산재직영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김경하·박은주	"
간병서비스 지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승욱·김경하· 이은혜	"
산재보험 중기수입추계모형 구축	김경현·오종은	"
산재보험 재정추계모형의 국제비교	이찬미·오종은	"
재해조사 사내 자격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박은주	"
직업성 암 판례 분석 연구	한충현	"
근로정년 이후 사회보험 지급체계 실태 조사	이은혜·이승욱	"
제1차 산재보험 패널조사 기초분석	임찬수·신슬비	"



## ◇ '15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해외과건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추진방안	김장기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합리적 재분류 방안	양재성	"
산재보험 급여 지급 기준개편방안연구	박은주	"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의 실무 적용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김경하	"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관리방안	양정희	"
산재보험 단기성 급여 추계모형(요양 및 휴업급여를 중심으로)	오종은·김경현	"
산재보험 기초율 및 급여 분포 분석	오종은·김경현	"
상병보상연금제도 실태분석연구	오종은·이찬미	"
직영병원의 직장복귀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이승욱	"
산재근로자 내일찾기서비스 효과성 분석 연구	이승욱·한충현	"
효율적인 자문의사제도운동을 위한 평가도입 방안	이승욱·이은혜	"
석탄산업 등 관련산업의 동향과 진폐요양환자의 중장기적 추계	양정희	"
제2차 산재보험패널 조사기초분석	임찬수·신슬비	"
2015년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	임찬수·신슬비	"
201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산정	양재성	"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연구	한충현	"

◇ '16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산재보험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국세청 근로소득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보험사무대행기관 성과평가제 도입방안	김장기	"
산재보험 재정평가 연구	오종은	"
2017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정	최경진	"
근로자원프로그램(EAP) 효과성 분석	박은주, 최근호	"
간병요구도 측정도구 개발 연구	김경하, 최은숙	"
개정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방법 적용실태 분석	김경하	"
근골격계질병 다빈도상병 요양승인 절차 개선 방안	김경하	"
재해보상제도 연구	박은주	"
보험자병원들의 환자군 분석과 역할강화 방안	김노을, 이은혜	"
산재환자 초기 중증도 지수 개발	최근호, 이승욱	"
제3차 산재보험패널조사 기초분석	이정화, 신슬비	"
2016년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	이정화, 신슬비	"
공단 CS 경영활성화 방안	김장기	"
공단 조직문화의 진단과 발전방안	김장기	"
재해공무원 재활서비스 연계 타당성 분석 연구	이승욱, 이각희	"
주요 선진국의 산재보험법상의 재활사업 관련 법령 체계 현황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충현, 한병규	"

## ◇ '17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산재보험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김장기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최저임금, 최저보상기준금액 보험급여 적용 연구	박은주	"
보수총액신고 간소화 방안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박은주	"
업무상 뇌심혈관질병 판례분석 연구	김경하	"
산재재활인증의료기관 요양관리 실태 개선 방안	김경하	"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신청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이은혜, 송재철	"
우선상담대상군 분류기준 개선방안	최근호	"
산재보험 복지사업 개선방안 연구	한충현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효과성 분석	박은주, 최근호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제도 개선 연구	한충현, 이해춘	"
산재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이승욱, 임희정	"
직무지원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승욱, 이석민, 조성재	"
산재보험 연금부채 추정 연구	이찬미, 최경진	"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재정 추계	이찬미	"
산재보험 보험요율 편차 축소방안에 관한 연구	최경진	"
산재보험 재활치료 시범수가 효과성 분석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노을, 이은혜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우수 의사인력 확보 및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연구	김노을, 이은혜	"
산재전문재활간호사 운영방안	이은혜, 김노을	"
공단 조직문화의 진단모델 정립과 인식도 조사 방안	김장기	"
제4차 산재보험 패널조사 기초분석	이정화, 신슬비	"
2017년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	이정화, 신슬비	"
201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정	최경진, 이찬미	"

◇ '18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휴업급여 지급실태 분석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산재보험급여수급자 특성 분석	박은주	"
산재보험 의학자문 운영 개선방안	김경하	"
산재 화상환자 실태 분석	김경하	"
산재보험 임상 요양가이드 개발방안 연구	원소영, 이은혜, 원종욱	"
산재근로자 사례관리 서비스 성과분석-요양 중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승욱, 임희정	"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운영 담당자 교육과정 개발	김노을, 이은혜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진료성과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김노을, 이은혜, 김태현	"
산재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GIS 기반 산재지도 작성	정석훈, 유동희	"
제5차 산재보험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이정화, 신슬비	"
2018년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	이정화, 신슬비	"
산재보험 장해생명표 개선 연구	이찬미, 정홍주 외	"
선진사례를 통한 산재보험의 미래 준비-미국을 중심으로	오중은	"
산재보험 단기성 급여부채 추정 연구	이찬미	"
독일 「재해보험법(SGBV VII)」-한글 번역본	김영미	"
산재보험 운영기관 연구조직과 역할에 대한 연구	김영미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재활 활성화를 위한 진료 행태 및 성과 분석	원소영, 김노을, 이은혜	"
2019년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산정	이찬미	"



## ◇ '19년도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예산
제도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산재보험 장해급여 현황 고찰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건설근로자의 특성 및 산재보상과정 분석을 통한 산재보상서비스 운영방안 연구	박은주	"
직업성 암 요양결정 사례 및 판례분석 연구	김경하	"
업무상 정신질환 요양결정 사례 및 판례분석 연구	김경하	"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분석	이승욱	"
산재노동자의 요양 종결 후 집단별 고용 유지 패턴 및 영향 요인 분석	이정화, 정석훈	"
2018-2019년 산재보험 패널조사	정석훈, 신슬비	"
2019년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	이정화	"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의 품질개선 연구	신슬비	"
연구용 통합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정석훈	"
산재보험 재활인증병원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실태분석	김노을	"
산재환자 급성기 이후 전원 실태 분석	김노을	"
산재보험정책사항 평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진료체계 평가방안 연구	원소영	"
원직장복귀계획서 제도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원소영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이은혜	"
산재 장기요양환자 전원 실태분석	이은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 보호	오종은, 김영미	"
산재보험의 적용·보상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오종은	"
산재보험 연금부채 추정 및 재정평가지표 개발	이찬미	"
산재보험기금 장기재정전망 모형개선 연구	임희정	"
독일 재해보험법 해설(상)	김영미	"
공단 직영병원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전경미	"

7 산재보험 관련 고시 현황 ('19도 적용 기준)

고시명	근거 법령	주요 내용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보험료징수법	35개 사업종류, 평균요율 : 15.0/1000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액	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1등급~12등급까지 월 보수액 및 1일 평균임금 고시(별도 기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 월 보수액 및 1일 평균임금 고시(별도 기재)
기준보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되는 기준보수 및 그 적용기간 (별도 기재)
2019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4,226,652원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2019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0%
2019년도 별목업의 노무비율	"	별목제적량 1㎡당 10,718원
자활급여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산재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법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산재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을 받는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 시 명	근거 법령	주요 내용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통상근로계수	"	73/100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1.0424(4.24% 상승) 소비자물가변동률 : 1.0165(1.65% 상승)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1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 214,402원 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 : 66,800원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	최고 금액 : 15,554,290원 최저 금액 : 11,097,760원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	(‘14.8.1. 이후) 1일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 41,170원 1일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 27,4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	(‘14.8.1. 이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가족·기타간병인	61,750원(일)	51,460원(일)	41,170원(일)
전문간병인	67,140원(일)	55,950원(일)	44,760원(일)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산재보험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생 1인당 직업훈련비용: 6,000,000원</li> <li>·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산재장해인 위탁훈련: 8,000,000원</li> </ul> </li> <li>-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해등급 제1급~제3급: 월 600,000원</li> <li>· 장해등급 제4급~제9급: 월 450,000원</li> <li>· 장해등급 제10급~제12급: 월 300,000원</li> </ul> </li> <li>-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월 450,000원</li> <li>-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월 150,000원</li> </ul>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1.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004,000	66,800
2등급	2,406,540	80,218
3등급	2,809,080	93,636
4등급	3,211,620	107,054
5등급	3,614,160	120,472
6등급	4,016,700	133,890
7등급	4,419,240	147,308
8등급	4,821,780	160,726
9등급	5,224,320	174,144
10등급	5,626,860	187,562
11등급	6,029,400	200,980
12등급	6,432,060	214,402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보수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시행기간 : 2019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1.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 (월)	평균임금 (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183,000	72,766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684,000	56,13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533

### 2.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201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보수 고시

I. 기준보수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구분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자원 및 임대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서울	2,159,112	2,117,081	2,199,103	1,745,150	1,866,756	2,262,184	2,037,803	1,872,510	1,880,253	1,780,996	2,088,826
부산	2,299,897	1,933,096	2,274,602	1,745,150	1,802,944	2,183,403	1,745,150	1,891,039	1,746,528	1,879,450	1,887,856
대구	2,063,251	1,884,693	1,745,150	1,745,150	1,882,068	1,905,243	1,745,150	1,745,150	1,745,150	1,772,663	1,745,150
인천	2,311,771	1,899,068	2,141,266	1,745,150	1,965,175	2,249,004	1,853,043	1,745,150	1,745,150	2,181,633	1,777,616
광주	2,343,837	1,920,150	2,210,422	1,745,150	1,787,726	1,892,866	2,307,595	1,745,150	1,760,457	1,745,150	1,907,871
대전	2,246,574	1,869,391	1,918,496	1,745,150	1,745,150	2,091,833	1,854,524	1,745,150	1,836,811	1,745,150	2,016,588
울산	2,528,767	2,016,573	2,250,484	1,745,150	2,251,592	2,308,176	1,919,963	1,745,150	1,745,150	1,745,150	1,817,790
경기	2,399,429	2,016,731	1,912,594	1,745,150	1,960,025	2,216,220	1,878,647	1,791,725	1,745,150	1,996,158	1,960,894
강원	2,181,345	1,745,150	1,892,529	1,745,150	1,819,810	2,006,203	2,063,356	1,745,150	1,758,122	1,915,420	1,820,376
충북	2,691,614	1,834,499	1,882,827	1,745,150	1,978,047	2,064,755	1,857,335	1,799,437	1,755,211	1,806,822	1,793,133
충남	2,595,226	1,886,882	2,112,777	1,745,150	1,993,351	2,284,130	1,847,440	1,745,150	1,748,458	1,747,587	1,757,324
전북	2,329,749	1,758,413	2,048,973	1,745,150	1,745,150	1,837,633	1,815,206	1,745,150	1,835,869	1,745,150	1,835,785
전남	2,320,194	1,762,105	1,875,915	1,745,150	2,001,146	2,024,287	1,745,150	1,841,681	1,806,535	1,745,150	1,857,403
경북	2,386,424	1,828,294	1,785,958	1,745,150	1,833,466	2,060,094	1,809,109	1,745,150	1,745,150	1,965,256	1,777,845
경남	2,519,920	1,921,351	1,972,813	1,745,150	1,809,417	2,195,227	2,227,778	1,745,150	1,758,451	1,745,150	1,949,615
제주	2,179,230	1,779,577	2,246,453	1,821,932	1,745,150	2,230,106	1,745,150	1,802,582	1,818,573	1,745,150	1,881,092
세종	1,974,476	1,756,115	1,802,236	1,745,150	1,745,150	1,745,150	1,878,269	1,745,150	1,745,150	1,745,150	1,745,15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산업분류	기준보수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2,132,452
B. 광업	2,482,323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36,92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2,182,291
F. 건설업	3,906,885
J. 정보통신업	2,438,646
K. 금융 및 보험업	2,244,439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114,024
U. 국제 및 외국기관	3,279,143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2.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1995. 3.28.	노동부고시 제1995- 10호(1995. 5. 1. 시행)
1996. 3.19.	노동부고시 제1996- 10호(1996. 3.20. 시행)
1999. 8. 4.	노동부고시 제1999- 22호(1999. 8. 4. 시행)
2000. 8.19.	노동부고시 제2000- 34호(2000. 8.19. 시행)
2001.10. 6.	노동부고시 제2001- 56호(2001.10. 6. 시행)
2001.12.29.	노동부고시 제2001- 70호(2001.12.29. 시행)
2002. 4.25.	노동부고시 제2002- 7호(2002. 4.25. 시행)
2003.12.30.	노동부고시 제2003- 40호(2003.12.30. 시행)
2005. 1.31.	노동부고시 제2005- 4호(2005. 2. 1. 시행)
2006. 2.28.	노동부고시 제2006- 6호(2006. 3. 1. 시행)
2007. 3. 6.	노동부고시 제2007- 7호(2007. 3. 6. 시행)
2008. 7. 1.	노동부고시 제2008- 47호(2008. 7. 1. 시행)
2008.12.31.	노동부고시 제2008-102호(2009. 1. 1. 시행)
2010. 4.27.	노동부고시 제2010- 33호(2010. 4.28. 시행)
2010.11.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24호(2010.11.21. 시행)
2011.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61호(2012. 1. 1. 시행)
2012.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4호(2013. 1. 1. 시행)
2014. 3.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15호(2014. 4. 1. 시행)
2015. 3.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16호(2015. 4. 1. 시행)
2015.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96호(2016. 1. 1. 시행)
2016.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55호(2017. 1. 1. 시행)
2017.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2018. 1. 1. 시행)
2019.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80호(2020. 1. 1.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2017.12.29.>

③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에 의한다.<개정 2006. 2.28., 2007.3.6., 2014.3.31.>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의료기관(이하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이하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⑥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제2조의2(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 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재정적으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2조의3(산재전문의사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산재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전문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산재전문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3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2015.3.31., 2019.12.27.>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료 차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 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 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실시한 선택진료 추가비용(「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의 진료항목 및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추가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택진료 추가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 진찰을 요구하며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선택진료 항목 중 진찰(한방포함), 방사선특수 영상진단(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제외한다), 마취, 수술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은 경우

제4조(요양기관 종별가산율)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1. 가목(상급종합병원)은 15%
2. 나목(종합병원)은 12%
3. 다목(병원)은 1%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08.7.1., 2010.4.27., 2014.3.31.>

제5조(입원료)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제2호라목 및 제2부제1장 분류번호 가-2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7.12.29.>

1. 상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중 소정점수(이하 “소정점수”라 한다)의 100분의 100에 병원관리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산정
2. 종합병원: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을 산정
3. 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및 의원: 입원일부터 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 입원 51일째부터 1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90, 입원 151일째부터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85를 산정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입원료 산정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제6조(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휴일·야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재해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제6조2(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지원범위 및 비용산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12.27.>

제7조(이송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이송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7.1., 2010.4.27., 2015.3.31.>



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별표 제11절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재활치료)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함에 있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제8조의2(의약품관리료)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분류번호 가-11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설 2002.4.25., 2007.3.6., 2008.7.1., 2010.4.27.>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초일분 의약품관리료 × 투약일수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① 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이하 “자기공명영상진단 세부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신설 2005.1.31.,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 시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2.28., 2008.12.31., 2010.4.27., 2015.3.31.>

1.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2.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자기공명영상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3장제2절 분류번호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05.1.31., 2006.2.28., 2008.7.1., 2010.4.27.>

제9조의2(산소치료)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3조 관련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 합병증 등으로 통원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에 그 진폐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다.<신설 2008.12.31., 2010.4.27., 2017.12.29.>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

② 산소치료서비스 제공대상 산재근로자에게는 전기요금 등의 비용으로 월 3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신설 2008.12.31., 2017.12.29.>

제9조의3(초음파 검사) ① 초음파 검사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손상 및 질환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부위별로 1인 1회 인정한다. 다만,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 시점이 장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초음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2장제5절 [초음파 검사료]의 분류번호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14.3.31., 2019.12.27.>

제9조의4(관절가동범위검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및 분류번호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병변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검사를 실시한 경우 상지, 하지 및 수부(신체의 양측은 별개 부위로 본다)로 각각 나누어 비용을 산정한다.<신설 2015.3.31.>

제9조의5(치과임플란트) ① 치과임플란트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분류번호 찬-11치과임플란트 (1치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 상병에 대한 치과임플란트는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하나, 1치당 1개로 제한한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 개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2.30.>  
제9조의6(보청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3조제1항 별표2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 산재근로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청기를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9조의7(신경인지기능검사) ①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산정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 산정지침 분류번호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의 기질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평가하여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신경인지기능검사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는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6개월 마다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환자의 상태 변화 등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② 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3.6., 2010.4.27.>

③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6., 2006.2.28., 2008.7.1., 2010.4.27., 2014.3.31., 2015.12.30.>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부 칙 <2000.8.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보철·의지 및 보조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제7절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요양 중에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10.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전 재해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2002.4.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31.>**

이 고시는 2005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2.28.>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8절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중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중전의 고시에 의한다.
- ③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재활보조기구부터 적용한다.
- ④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7.3.6.>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 원칙] 중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중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중전의 고시에 의한다.
- ③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신설 되는 활동형 휠체어 및 금액이 조정된 재활보조기구(넓적다리 의지,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④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8.7.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중전의 진료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 ③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내용은 이 고시 시행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2.3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 ③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신설 되는 재활보조기구(이동식 리프트)와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조정된 재활보조기구(욕창 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④ (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2절 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4.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 제3조(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중 추가지급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11.21.>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12.30.>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12.3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충전의 고시를 따른다.

제3조(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중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동식 리프트를 지급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이 고시 시행 이후 배터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충전의 고시를 따른다.

제3조(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목발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충전 고시를 따른다.

제3조(화상약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9절 화상약제(케라힐)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제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12.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중전의 고시를 따른다.
- 제3조(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 내용은 이 고시 시행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제5조(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2절 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신설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2.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중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9.12.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중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중전 규정을 따른다.

별 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절 치과보철

## [진료원칙]

1. 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듐합금 또는 코발트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
2.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을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보철시행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시행시 같은 조건의 두가지 설계방법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 보철은 총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보철원칙]

1. 분류번호 카-1: 주조금관의 금합금 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2. 분류번호 카-2: 4분의 3 금관의 금합금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3. 분류번호 카-3 및 카-4: 도재전장주조관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귀금속은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듐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4. 분류번호 카-5: 국소의치는 고정성 가공의치료는 그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 백금가금은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5. < 삭제 >
6. 분류번호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는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이상이 파절되거나 그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이상인 팔라디움-은합금으로 한다.
7. 분류번호 카-10: 포스트(기성품)는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 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8. 분류번호 카-11, 카-12 및 카-13: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절재 등으로 생긴 실질 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국부의치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총의치에 준한다.
9. 분류번호 카-14: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10. < 삭제 >
11. 분류번호 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 $ZrO_2$ )에 약3~5% 정도의 안정화제(stabilizer)를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ISO 6872, ISO 13356, ISO 10993)에 적합하여야 한다.

[치과보철료] <개정 2006.2.28, 2007.3.6,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5.12.30., 2016.12.30., 2019.12.27.>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카-1	주조금관	340,000
카-2	3/4금관	280,00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403,00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97,00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544,000
카-6	삭제<2014.3.31.>	
카-7	삭제<2015.12.30.>	
카-8	삭제<2014.3.31.>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135,000
카-10	포스트(기성품)	93,00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1,507,00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유치악)	1,060,00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무치악)	1,487,000
카-14	임시레진관	24,000
카-15	삭제<2014.3.31.>	
카-16	삭제<2014.3.31.>	
카-17	삭제<2019.12.27.>	
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502,380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지급원칙]

1. 재활보조기구는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또는 전동스쿠터)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 지급할 수 있다.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비용 중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
5. 하지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 (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넓적다리의지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15(인공지능식)를 지급한다.
7.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라도 진료담당 의사가 재활보조기구의 훼손, 마모 또는 신체 변형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수리하여도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절손상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라. 하지골절로 인하여 통원치료시 목발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8. <삭제 2007.3.6>

9.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2년으로 하고,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한다.

10.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및 이에 따른 단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가. 근전전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다.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라. 활동형 휠체어

마. <삭제 2016.12.30.>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11. 활동형 휠체어, 수·전동 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벽체용)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가. 활동형 휠체어: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 적합하고,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몸체무게(주행바퀴 제외) 8킬로그램 이하, 등받이 높이는 시트면에서 280밀리미터 이하, 후륜축 조절 기능이 앞뒤 방향으로 후륜축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수·전동 휠체어: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B, C형)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6.12.30.>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마. 근전전동 의수

- (1)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 (2) 근전위 센서는 건식형이어야 하며, 침수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KS C IEC 60529: IPX7).
- (3) 소켓을 제외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는 800g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국가산업기술표준 KS P ISO 10535의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 12. 근전전동 의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
- 13. <삭제 2014.3.31.>
- 14. 집뇨기는 1회에 2개를 지급한다.
- 15. <삭제 2016.12.30.>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개정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6.12.30., 2017.12.29., 2019.12.27.>

## 1. 의지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팔의지	타-6-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 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610,000	5년
	타-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 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타-8-1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표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 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타-9-1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손목관절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 의수가 적합한 경우	5,700,000	5년
다리의지	타-14-1	넓적다리 의지(A-K prosthesis) (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나. 실리콘형 소켓	2,735,000	5년		
	타-15	넓적다리 의지(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 Intelligent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3,284,000			
나. 실리콘형 소켓	4,116,000	5년			

2. 보조기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팔 보조기	타-23	짧은팔 보조기 다. 운동형 짧은팔 보조기	손목관절 관절운동 제한 또는 기능 발휘를 위한 경우	142,000	3년
	타-22-라	어깨 보조기 (Shoulder Sling)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120,000	3년
척 추 보조기	타-24	목뼈 보조기 (cervical spine brace) 라. 4지주 목뼈보조기	두부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 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203,000	3년
	타-25	등·허리뼈보조기(dorsal, lumber spinal brace) 마. 나이트식 허리뼈보조기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관절을 고정할 경우	136,000	3년
다 리 보조기	타-29	무릎관절보조기 (knee ankle cage) 라. 플라스틱무릎관절 보조기(수가공품)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로서, 무릎관절에 변형이나 단축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기성품을 사용 할 수 없어 수가공품의 플라스틱 보조기제작이 필요한 경우	282,000	3년



## 3. 기 타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구 두	타-31	< 삭제 2017.12.29.>			
		< 삭제 2017.12.29.>			
		< 삭제 2017.12.29.>			
휠체어	타-32-3	활동형 휠체어 (light weight wheelchair for high activity level)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756,000	5년
	타-32-4	수전동휠체어 (Electric power wheelchair convertible to Manual control)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3,934,000	6년
기 타	타-37-1	가발(wig)	환자 상병정도 및 체형 등에 따라 주치의 소견에 의하여 착용이 필요한 경우	셋 가	5년
	타-37-4	<삭제 2016.12.30.>			
기 타	타-37-5	욕창예방매트리스			
		가. 고무제-공기격자형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449,000	3년
		<삭제 2016.12.30.>			
	타-37-6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 (urin bag)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손상, 비뇨기계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배뇨제어가 어려운 경우	57,000	1년
		<삭제 2016.12.30.>			
	타-37-7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타-37-8	설치형 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가. 차량용		2,500,000	5년
		나. 벽체용		2,500,000	5년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팔의지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	201,000	
	타-39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538,000	
	타-39-1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930,000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148,000	
	타-42	혹크 교환	351,000	
	타-43	의수 교환(기능형)	532,000	
	타-44	케이블 교환	119,000	
	타-45	어깨밴드 교환	24,000	
	타-45-1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237,000	
	타-45-2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964,000	
	타-45-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454,000	
	타-45-4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784,000	
	타-45-5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105,000	
	다리의지	타-46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444,000
		타-47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707,000
타-47-1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기능식)	2,181,000	
타-47-2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1,060,000	
타-48		발목장식 교환	158,000	
타-49		족부 교환	32,000	
타-50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137,000	
타-51		흡인 밸브 교환	14,000	
타-52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넨트 교환	24,000	
타-53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104,000	
타-5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416,000	
타-54-1		종아리 의지 스타키넨트 교환	21,000	
타-54-2		종아리 의지 스타키넨트카바 교환	18,000	
타-55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넨트카바 교환	21,000	
타-56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119,000	
타-57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83,000	
타-58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41,000	
타-59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435,000	
타-59-1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75,000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000	
타-59-3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664,000		
타-59-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527,000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리의지	타-59-5	영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541,000
	타-59-6	영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546,000
	타-59-7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646,000
	타-59-8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517,000
	타-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타-59-10	더마실 교환	108,000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113,000
보조기	타-60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91,000
	타-61	듀랄루민 커프 교환	25,000
	타-62	발목장식 교환	33,000
	타-63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21,000
	타-64	무릎띠 교환	19,000
	타-65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68,000
	타-66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	162,000
타-66-1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100,000	
휠체어	타-68	시트 교환(일반형)	27,000
	타-69	등받이 교환(일반형)	27,000
	타-70	뒷바퀴 전체 교환(일반형)	49,000
	타-70-1	<삭제 2019.12.27.>	
	타-70-2	<삭제 2019.12.27.>	
	타-70-3	뒷바퀴 타이어 교환(일반형)	12,000
	타-70-4	뒷바퀴 튜브 교환(일반형)	6,000
	타-70-5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14,000
	타-70-4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7,000
	타-71	앞바퀴 교환(일반형)	25,000
	타-71-1	앞바퀴 교환(전동)	31,000
	타-72	팔받침 교환(일반형)	12,000
	타-72-1	팔받침 교환(활동형)	13,000
	타-72-2	팔받침 교환(수전동)	13,000
	타-73	발판 교환(일반형)	14,000
	타-74	핸드림 교환(일반형)	25,000
	타-75	브레이크 교환(일반형)	14,000
	타-76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29,000
	타-77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58,000
	타-77-1	<삭제 2019.12.27.>	
	타-77-2	12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2,000
	타-77-3	12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0,000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타-77-4	14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4,000
	타-77-5	14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1,000
	타-78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85,000
	타-78-1	<삭제 2019.12.27.>	
	타-78-2	16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8,000
	타-78-3	16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2,000
	타-79	시트 교환(전동)	29,000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35,000
	타-81	팔받침 교환(전동)	14,000
	타-82	발판 교환(전동)	16,000
	타-83	옆받이 교환(일반형)	16,000
	타-84	옆받이 교환(활동형)	26,000
	타-85	요크 교환(일반형)	30,000
	타-86	요크 교환(활동형)	43,000
	타-87	<삭제>	
	타-94	팔걸이 교환(일반형)	17,000
	타-94-1	팔걸이 교환(활동형)	18,000
	타-94-2	팔걸이 교환(전동)	19,000
	타-94-3	팔걸이 교환(수·전동)	17,000
	타-95	발걸이 교환(일반형)	35,000
	타-95-1	발걸이 교환(활동형)	36,000
	타-95-2	발걸이 교환(전동)	42,000
	타-95-3	발걸이 교환(수·전동)	35,000
전동스쿠터	타-88	10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타-88-1	10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타-88-2	10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2,000
	타-88-3	10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8,000
	타-89	11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타-89-1	11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타-89-2	11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6,000
	타-89-3	11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0,000
	타-90	12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타-90-1	12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타-90-2	12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20,000
	타-90-3	12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2,000
기타	타-91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 2개 1세트	19,800



### 제3절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

<삭제 2014.3.31.>

### 제4절 식 대

<삭제 2007.3.6.>

### 제5절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에 의한 촬영

<삭제 2005. 1.31.>

### 제6절 초음파

<삭제 2014.3.31.>

##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지급원칙] <개정 2006. 2.28, 2007. 3. 6, 2008. 7. 1, 2010.4.27., 2012.12.31., 2014.3.31., 2017.12.29.,2019.12.27.>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7.1>
2. 동일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본호 신설 2006.2.28]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본호 신설 2008.7.1]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 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호 신설 2008.7.1]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본호 신설 2008.7.1.]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한다.
8.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전원 요양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9.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사유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10.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하여 간병요구도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11.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사본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복사수수료는 최대 30,000원까지 지급한다.
12. 토털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청구서의 확인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고 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13. 요양급여신청서(최초) 대행 신청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위임(동의)을 받아 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 산정하고,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신청서(최초)가 제출된 경우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수 수료를 지급한다.
14. 주치의 면담료는 주치의가 공단직원과 대면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재활·직업복귀 가 능성 등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되, 동일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하는 의료기관의 소속직원이 주치의와 면담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 액 (원)			
		상급종합 병 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너-1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40,000	30,000	25,000	20,000
너-2	삭제 <2001.10.6.>				
너-3	삭제 <2006.2.28.>				
너-4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확인	40,000	30,000	25,000	20,000
너-5	요양비 청구서 확인	6,000	5,000	4,000	3,000
너-6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20,000	18,000	17,000	15,000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20,000	20,000	20,000	20,000
너-7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50,000	40,000	-	-
너-7-1	신체감정용 진단서	100,000	-	-	-
너-8	소견조회 등 회신	10,000	10,000	10,000	10,000
너-9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	5,000	5,000	4,000	4,000
너-9-1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료(개당)	10,000	10,000	10,000	10,000
너-9-2	방사선 등 영상진단 DVD 복사수수료(개당)	20,000	20,000	20,000	20,000
너-10	삭제 <2006.2.28.>				
너-11	다차원심리검사(L형)수수료	13,000	13,000	13,000	13,000
너-12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50,000	50,000	50,000	50,000
너-13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수수료	50,000	50,000	50,000	50,000
너-14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수수료	50,000	50,000	50,000	50,000
너-15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수수료	40,000	30,000	25,000	20,000
너-16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 (1~5매까지, 1매당)	1,000	1,000	1,000	1,000
너-16-1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 (6매부터, 1매당)	200	200	200	200
너-17	토털서비스 이용 수수료	2,000	2,000	2,000	2,000
너-17-1	토털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대행) 수수료	10,000	10,000	10,000	10,000
너-18	주치의 면담료	20,000	20,000	20,000	20,000

## 제8절 약제

<삭제 2006.2.28.>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신설 2007.3.6>

[산정지침] <개정 2008.12.31., 2010.4.27., 2014.3.31., 2017.12.29.>

1. 화상환자에게 피부이식 또는 드레싱용으로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동일부위에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30% 이상으로 사용 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창상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삭제 2008.12.31>
4. <삭제 2014.3.31.>

[제품의 종류 및 금액 등] <개정 2008.12.31., 2011.12.30., 2014.3.31. 2015.12.30>

분류번호	분류	규격	단위	금액(원)	회사명
더-1	Holoderm	56cm <sup>2</sup>	1장	784,000	테고사이언스(주)
더-2			<삭 제>		
더-3			<삭 제>		
더-4			<삭 제>		
더-5	케라힐	1ml	1바이알	3,122,640	(주)엠씨티티



##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lt;신설 2007.3.6&gt;

[산정지침] &lt;개정 2008.7.1, 2008.12.31, 2010.4.27&gt;

1.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목발, 지팡이, 흰지팡이, 집뇨기 또는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는다.
2.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분류(유형)별 전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의지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나.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 안과
  - 다. 보청기, 체외성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라. 그 밖의 품목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처방 및 검수료] &lt;개정 2010.4.27&gt;

분류 번호	분류	금액(원)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러-1	의지(미관형 팔의지 제외)	24,680	21,700	18,720	16,580
러-2	미관형 팔의지·의지 이외의 품목	12,340	10,850	9,360	8,290

## 제11절 이송료

<신설 2007.3.6>

[산정지침] <개정 2008.7.1, 2010.4.27>

1.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 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2. 숙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 2 제2호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개정 2010.4.27>

구 분	이 용 기 준
근거리 대중 교통수단	의학적 소견에 따라 퇴원, 통원 하는 경우로 시내·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경우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가용·택시	1.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박·항공기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거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이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구 분		등 급 기 준		비 고
		1등급	2등급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	시내·외 버스, 전철,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등 등급 구분없이 실제 부담한 금액
원거리 대중교통 수단	고속버스	우등고속	일반고속, 시외버스	운행계통, 시설, 요금 등이 고속버스에 준하는 시외버스는 고속버스로 분류
	철도	새마을호 특실, KTX 보통실	새마을호 보통실	새마을호, KTX 비통과구간은 그 노선의 이용 열차 운임 적용
택 시		-	소형·중형택시	대형, 모범형, 고급형 배제
선 박		1등실	2등실	특등실 배제(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항공기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First Class 배제(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신설 2008.12.31>

[지급원칙] <개정 2010.4.27>

1. 치료보조기구는 해당 유형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자가도뇨기구는 월 1개를 지급한다.
2. 치료보조기구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개정 2010.4.27., 2016.12.30., 2017.12.29.>

분류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머-1	이동형 산소치료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지급 대상자로서 이동시에도 이동형 산소치료기가 필요한 경우	
	가. 산소절약기 부착		739,000
	나. 산소절약기 미부착		371,000
머-2	의료용 흡입기 (Inhalators for medical use)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기관지확장제 등 흡입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219,000
머-3	의료용 흡입기 (Aspirators for medical use)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의식장애 또는 호흡기장애 등으로 스스로 객담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	397,000
머-4	자가도뇨기구	척수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배뇨장애가 있고 잔뇨량이 100cc 이상인 경우, 기타 주치의사의 소견상 의학적으로 자가도뇨기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14,000
머-5	할로베스트(Halovest)	할로베스트 골건인술 대상자로서 경추골절의 척추 안정 또는 수술 후 경추부의 확고한 고정이 필요한 경우	1,800,000
머-6	팔걸이(Arm Sling)	상지 골절 또는 근육 손상 등으로 부목이나 캐스트 후 손상부위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000
머-6-1	어깨 밴드	견 및 쇄관절탈구 도수정복술 후 손상부위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000
	가. 쇄골밴드 나. 8자형 밴드		
머-6-2	석고 신발(Cast shoe)	하지 골절 또는 손상 등으로 캐스트 또는 부목 시행 후 필요한 경우	10,000



## 제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신설 2008.12.31>

[지급원칙] <개정 2010.4.27., 2014.3.31>

1.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첩약은 1일 2첩 인정하며, 입원 60일, 외래 30일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할 수 있다.

[지급대상 및 금액] <개정 2014.3.31>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버-1	한방 첩약(1첩당)	6,690
버-2	한방 탕전료(1첩당)	670
	가. <삭 제>	
	나. <삭 제>	

##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신설 2010.11.21>

[산정지침] <개정 2015.3.31.>

1. 전신해부비용은 분진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의 의뢰에 의하여 전신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신해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전신해부 행위료는 사체의 전신 검안 및 머리·가슴·배 등의 주요 장기의 해부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서-1	전신해부 행위료	500,000

3. 전신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따라 산정한다.
4. 전신해부와 관련된 병리검사는 반드시 5대 장기(뇌·심장·폐·간·신장) 절편 조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검의의 판단에 따라 골조직병리검사, 조직전자현미경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전신해부와 관련하여 독극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6. 해부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1회 지급하며, 전신해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서-2	해부 소견서	300,000

7. 사체 이송료는 전신해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체를 전신해부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장례를 위한 최초 도착지까지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며, 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응급의료수가기준」별표 3 이송처치료 기준액표의 특수구급차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15절 재활치료료

<신설 2011.12.30>

###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치료 종류 및 금액]

[치료 종류 및 금액]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원)
어-1	언어치료(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	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언어치료실에서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36,540
어-2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Attention-Memory)] [1일당]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 인지치료도구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17,630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원)
어-3	증식치료(Prolotherapy) [1일당] 가. 사지관절부위 나. 척추부위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사용된 약제 및 유도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3. 관절 및 그 주위부를 1부위(요·천추부위는 1부위)로 하며, 동시에 2이상의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2부위 이내만 산정 4. ‘가’, ‘나’ 각각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만 산정	5,750 11,520
어-4	도 수 치 료 ( M a n u a l Therapy)[1일당]	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할 수 있되,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 3.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맞사지 치료(사-105)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며, 운동치료(사-106, 사-116)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25,000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원)
어-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 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건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li> <li>2.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치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li> <li>3. 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li> </ol>	42,030

## 2. 검사료

[산정지침] <개정 2014.3.31., 2017.12.29.>

1. 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검사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개정 2014.3.31., 2015.3.31., 2016.12.30.>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원)
여-1	언어전반진단검사 (Language Assessment)	중추신경계 손상 및 질환에 의한 언어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표준화된 도구(K-WAB 등)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40,190
여-2	발음 및 발성검사 (Assessment of Speech and Voice disorder)  가. 발음검사 나. 발성검사	말장애(말더듬 포함), 음성장애, 조음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실에서 30분 이상 구강구조기능검사, 한국어발음의 위치별 정확도 측정, 최대모음연장 발성시간, 조음교대운동속도 등을 측정한 후 검사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28,130 56,260
여-3	< 삭제 2017. 12.29. >		
여-4	체온열검사 (Thermography)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및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2. 실시부위는 체간(얼굴 포함)·좌·우·상·하지의 5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며, 2부위 검사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 가산하되, 최대 5부위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	33,270



### 3.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신설 2015.3.31.>

1.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 사지절단, 신경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 등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활치료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명 이상이 참여하여 팀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팀회의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참여하여야 한다.
3. 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의사의 주도로 팀회의를 실시하고,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4. 팀 회의료는 입원 요양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인정하며, 최초 팀회의료는 재활치료 시작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한편, 최초 팀회의료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입원요양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5. 2회차 및 3회차 팀회의는 전회차 팀회의 실시일로부터 4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퇴원 직전 2주 이내에 실시하는 팀회의료는 전회차 팀회의 실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6.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치료 종류 및 금액] <신설 2015.3.31.>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오-1	재활팀회의료	
	가. 최초	30,150
	나. 2회차부터	20,100

## 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

<신설 2016.12.30>

### [산정지침]

1.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냉각부하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1	냉각부하검사	50,000



## 제17절 처치료

<신설 2017.12.29.>

### [산정지침]

1.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처치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 [처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원)
우-1	사후처치료	의사 또는 한의사의 사망진단이 내려진 후 병실 등에서 사망한 환자에게 사후처치를 시행한 경우 산정	20,000

## 제18절 예방접종비용

<신설 2018.12.27.>

### [산정지침]

1. 만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예방접종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산정하고,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예방접종 실시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예방접종 종류 및 산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유-1	폐렴구균 가. PCV(단백결합) 13 나. PPSV(다당질) 23	요양기간 중 총 1회 산정
유-2	인플루엔자 Flu3 (0.5ml)	요양기간 중 1년에 1회 산정
유-3	예방접종 시행비용 가. 폐렴구균 백신 나. 인플루엔자 백신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07. 3. 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척추 보조기) <span style="float: right;">☐ 최초 ☐ 추가지급</span>				
성 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상 병 명				
<b>의학적 소견</b>		납품희망일	200 . . . . .	
<b>처방 내역</b>				
품목 분류 (코 드)	<input type="checkbox"/> 목뼈보조기 : <input type="checkbox"/> 토마스소프트칼라(20242) <input type="checkbox"/> Cervial Jacket (20243) <input type="checkbox"/> 필라델피아(20244) <input type="checkbox"/> 4지주 목뼈보조기(20245)			
	<input type="checkbox"/> 허리·영치뼈보조기 - 윌리엄식(20253)			
	<input type="checkbox"/> 등·허리·영치뼈 보조기 - 등·허리·영치뼈 재킷(TLSO식 자켓)(20255)			
	<input type="checkbox"/> 척추 보조기 - 나이트 테일러식 보조기(20256)			
	<input type="checkbox"/> 등·허리뼈 보조기 - 나이트식 허리뼈 보조기(20257)			
	<input type="checkbox"/> 척추 보조기 - 콜셋(20254)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제작법 구분	<input type="checkbox"/> 취형 제작법 <input type="checkbox"/> 치수측정 제작법			
<b>특이사항</b>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수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 인도 예정일 _____				
<b>검 수 확 인</b>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차	구 입 처		
	구 입 가 격	원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07. 3. 6., 2019.12.27.>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휠체어·스쿠터)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추가지급				
성 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상 병 명				
<b>의학적 소견</b>		납품희망일	20 . . . . .	
<b>처방 내역</b>				
품목 분류 (코드)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 <input type="checkbox"/> 일반형(20320) <input type="checkbox"/> 활동형(20323) <input type="checkbox"/> 틸팅형/리클라이닝형(20325) <input type="checkbox"/> 수·전동(20324) <input type="checkbox"/> 전동(20321)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20322) : <input type="checkbox"/> 3륜식 <input type="checkbox"/> 4륜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			
휠 체 어	시트	<input type="checkbox"/> 폭            cm,    깊이            cm <input type="checkbox"/>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cm (수동 휠체어만 해당)		
	팔받이	<input type="checkbox"/> 표준형 <input type="checkbox"/> 데스크 식		
	발판 및 다리받이	<input type="checkbox"/> 발판 : <input type="checkbox"/> 고정 <input type="checkbox"/> 스윙아웃기능 <input type="checkbox"/> 착탈가능 <input type="checkbox"/> 길이조절가능 <input type="checkbox"/> 엘리베이팅 기능 <input type="checkbox"/> 다리받침대 : <input type="checkbox"/> 양측겸용 <input type="checkbox"/> 편측독립 <input type="checkbox"/> 발 받침대 : <input type="checkbox"/> 표준식 <input type="checkbox"/> 꺾임식		
	브레이크	<input type="checkbox"/> 레버형 <input type="checkbox"/> 토글형 (수동 휠체어만 해당)		
	등받이	<input type="checkbox"/> 등받이 높이 :            cm,    시트와의 각도 :            도 <input type="checkbox"/> 표준형 <input type="checkbox"/> 리클라이닝 <input type="checkbox"/> 안전벨트 :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머리받이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후륜	<input type="checkbox"/> 고정식 <input type="checkbox"/> 착탈식 (수동 휠체어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타이어 : <input type="checkbox"/> 솔리드식 <input type="checkbox"/> 공기튜브식 <input type="checkbox"/> 타이어 지름 : <input type="checkbox"/> 24인치 <input type="checkbox"/> 22인치 <input type="checkbox"/> 20인치 <input type="checkbox"/> 16인치 <input type="checkbox"/> 14인치 <input type="checkbox"/> 12인치		
	캐스터	<input type="checkbox"/> 사이즈 : <input type="checkbox"/> 9인치 <input type="checkbox"/> 8인치 <input type="checkbox"/> 7인치 <input type="checkbox"/> 6인치 <input type="checkbox"/> 5인치 <input type="checkbox"/> 방식 : <input type="checkbox"/> 솔리드식 <input type="checkbox"/> 공기튜브식		
<b>특이사항</b>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년    월    일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 인도 예정일            _____				
<b>검 수 확 인</b>	품 목	_____	코 드	_____
	구 입 일 자	_____	구 입 처	_____
	구 입 가 격	_____ 원	기 타	_____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년    월    일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07. 3. 6, 개정 2009. 1. 1, 2014.3.31.,2017.12.29.>

(양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수리료)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추가지급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 택	재해발생일
			휴대폰	
상 병 명		의학적 소견 및 처방 내역		
		납품희망일	20 . . . . .	
코 드	품목 분류	코 드	품목 분류	
	<b>&lt; 팔 의 지 &gt;</b>		<b>&lt; 보 조 기 &gt;</b>	
20380	<input type="checkbox"/> 위팔 의지 소켓 교환	20600	<input type="checkbox"/>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20390	<input type="checkbox"/>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20610	<input type="checkbox"/> 듀랄루민 커피 교환	
20391	<input type="checkbox"/>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20620	<input type="checkbox"/> 발목장식 교환	
20410	<input type="checkbox"/>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20630	<input type="checkbox"/> 커피용 가죽밴드 교환	
20420	<input type="checkbox"/> 휴크 교환	20640	<input type="checkbox"/> 무릎띠 교환	
20430	<input type="checkbox"/> 의수 교환(기능형)	20650	<input type="checkbox"/>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20440	<input type="checkbox"/> 케이블 교환	20660	<input type="checkbox"/> 다리보조기용 속신교환	
20450	<input type="checkbox"/> 어깨밴드 교환	20661	<input type="checkbox"/>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20451	<input type="checkbox"/>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b>&lt; 휠 চে 어 &gt;</b>	
20452	<input type="checkbox"/>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20680	<input type="checkbox"/> 시트 교환(일반형)	
20453	<input type="checkbox"/>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20690	<input type="checkbox"/> 등받이 교환(일반형)	
20454	<input type="checkbox"/>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20700	<input type="checkbox"/> 뒷바퀴 전체 교환(일반형)	
20455	<input type="checkbox"/>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2개 1세트	20703	<input type="checkbox"/> 뒷바퀴 타이어 교환(일반형)	
	<b>&lt; 다 리 의 지 &gt;</b>	20704	<input type="checkbox"/> 뒷바퀴 튜브 교환(일반형)	
20460	<input type="checkbox"/>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20705	<input type="checkbox"/>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20470	<input type="checkbox"/>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20706	<input type="checkbox"/>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20471	<input type="checkbox"/>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기능식)	20710	<input type="checkbox"/> 앞바퀴 교환(일반형)	
20472	<input type="checkbox"/>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20711	<input type="checkbox"/> 앞바퀴 교환(전동)	
20480	<input type="checkbox"/> 발목장식 교환	20720	<input type="checkbox"/> 팔받침 교환(일반형)	
20490	<input type="checkbox"/> 족부 교환	20730	<input type="checkbox"/> 발판 교환(일반형)	
20500	<input type="checkbox"/>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20740	<input type="checkbox"/> 핸드립 교환(일반형)	
20510	<input type="checkbox"/> 흡인 벨브 교환	20750	<input type="checkbox"/> 브레이크 교환(일반형)	
20520	<input type="checkbox"/>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넨트 교환	20760	<input type="checkbox"/>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20530	<input type="checkbox"/>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20770	<input type="checkbox"/>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20540	<input type="checkbox"/>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20771	<input type="checkbox"/> 12"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전동)	
20550	<input type="checkbox"/>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넨트카바 교환	20780	<input type="checkbox"/>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20560	<input type="checkbox"/>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20781	<input type="checkbox"/> 16"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전동)	
20570	<input type="checkbox"/> 짧은 종아리 의지 콜렛밴드 교환	20790	<input type="checkbox"/> 시트 교환(전동)	
20580	<input type="checkbox"/> 종아리 의지 콜렛밴드 교환	20800	<input type="checkbox"/> 등받이 교환(전동)	
20590	<input type="checkbox"/> 종아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20810	<input type="checkbox"/> 팔받침 교환(전동)	
20591	<input type="checkbox"/> 다리의지 파워프러답터 교환	20820	<input type="checkbox"/> 발판 교환(전동)	
20592	<input type="checkbox"/> 회전테이블 교환	20830	<input type="checkbox"/> 옆받이 교환(일반형)	
20593	<input type="checkbox"/>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20840	<input type="checkbox"/> 옆받이 교환(활동형)	
20594	<input type="checkbox"/>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20850	<input type="checkbox"/> 요크 교환(일반형)	
20595	<input type="checkbox"/>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20860	<input type="checkbox"/> 요크교환(활동형)	
20596	<input type="checkbox"/>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20870	<input type="checkbox"/> 배터리 교환(전동): 2개 1세트	
20597	<input type="checkbox"/>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20911	<input type="checkbox"/> 팔받침 교환(활동형)	
20598	<input type="checkbox"/> 씨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20912	<input type="checkbox"/> 팔받침 교환(수-전동)	
20599	<input type="checkbox"/>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20913	<input type="checkbox"/> 팔걸이 교환(일반형)	
20990	<input type="checkbox"/> 더마실 교환	20914	<input type="checkbox"/> 팔걸이 교환(활동형)	
20991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컵 교환	20915	<input type="checkbox"/> 팔걸이 교환(전동)	
20992	<input type="checkbox"/> 종아리 의지 스타키넨트 교환	20916	<input type="checkbox"/> 팔걸이 교환(수-전동)	
20993	<input type="checkbox"/> 종아리 의지 스타키넨트카바 교환	20924	<input type="checkbox"/> 발걸이 교환(일반형)	
		20925	<input type="checkbox"/> 발걸이 교환(활동형)	
		20926	<input type="checkbox"/> 발걸이 교환(전동)	
		20927	<input type="checkbox"/> 발걸이 교환(수-전동)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뒷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수리료)**       최초    추가지급

코 드	품목 분류	코 드	품목 분류
	<b>&lt; 전 동 스 쿠 터 &gt;</b>		
20880	<input type="checkbox"/> 10" 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20881	<input type="checkbox"/> 10"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20882	<input type="checkbox"/> 10"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20883	<input type="checkbox"/> 10"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20890	<input type="checkbox"/> 11" 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20891	<input type="checkbox"/> 11"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20892	<input type="checkbox"/> 11"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20893	<input type="checkbox"/> 11"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20900	<input type="checkbox"/> 12" 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20901	<input type="checkbox"/>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20902	<input type="checkbox"/> 12"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20903	<input type="checkbox"/> 12"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b>&lt; 기 타 &gt;</b>		
20910	<input type="checkbox"/>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 2개 1세트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수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담당의사 :

의자보조기 기사 \_\_\_\_\_ 인도 예정일 \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원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담당의사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9 주요 외국 산재보험 제도 현황

## ◇ OECD 회원국 산재보험 적용 범위

국 가	적 용 범 위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아일랜드	노동자
체코	노동자, 학생
스웨덴, 에스토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노동자, 자영업자
오스트리아	노동자, 학생, 견습생
헝가리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자, 자영업자
슬로바키아	노동자, 학생, 특정 의용소방대원
슬로베니아	노동자, 직업훈련생, 특정 실업자, 자영업자
터키	노동자, 가사노동자, 견습생, 자영업자
아이슬란드	노동자, 견습생, 구조활동 종사자, 운동선수, 자영업자
이탈리아	노동자, 학생, 견습생, 가사노동자, 특정 자영업자
룩셈부르크	노동자, 학생, 견습생, 가사노동자, 자영업자
뉴질랜드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멕시코, 스페인, 일본, 캐나다, 핀란드, 호주	노동자(당연적용) / 자영업자(임의적용)
미국	노동자(당연적용) / 자영업자(임의적용) ※주별로 상이
노르웨이	노동자, 학생(당연적용) / 자영업자(임의적용)
덴마크	노동자, 직업훈련생(당연적용) / 자영업자(임의적용)
프랑스	노동자, 학생, 특정 취업준비생(당연적용) / 자영업자(임의적용)
칠레	노동자, 학생, 견습생, 가사노동자, 자영업자(법정기준 연소득 이상)(당연적용) / 자영업자(법정기준 연소득 미만, 임의적용)
독일	노동자, 학생, 견습생, 특정 자원봉사자, 특정 자영업자(당연적용) / 일반 자영업자(임의적용)
스위스	노동자, 가사노동자, 견습생, 직업훈련생, 자원봉사자(당연적용) / 자영업자(임의적용)

※ 출처: ISSA(국제사회보장협회)(www.issa.int/en\_GB/country-profiles)

※ OECD 36개 회원국 중 독자적 산재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영국(국민보험에 포함), 이스라엘(국민보험에 포함), 네덜란드(건강보험, 상병급여보험 및 장애보험에서 산재보상 담당), 한국 등 4개국 제외

◇ 주요 국가 산재보험 운영형태 비교

구 분	일 본	독 일	프랑스	미 국
제도유형	독립 사회보험	독립 사회보험	독립 사회보험	개별사업주 책임보험
운영방식	공영 전담방식	공영 전담방식	공영 전담방식	‘배타적 국가(주정부) 운영기금/국가(주정부) 기금민간보험 경쟁/민간보험’ 3가지 형태 ※주별로 상이
감독기관	후생노동성	연방보험청	사회보장보건부	상 동
운영기관	후생노동성 (도도부현(都道府県) 노동국)	산업/공공/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	(전국)임금근로자-전국 건강보험공단/(광역)퇴직연금-산업안전공단/(기초)임금근로자-기초 건강보험공단	상 동
적용범위	노동자(당연적용) / 자영업자(임의적용) ※ 별도 제도: 공무원	노동자, 학생, 견습생, 특정 자원봉사자, 특정 자영업자(당연적용) / 일반 자영업자(임의적용) ※ 별도 제도: 공무원	노동자, 학생, 특정 취업준비생(당연적용) / 자영업자(임의적용) ※ 별도 제도: 농업/광업/철도/공공부문 노동자 및 선원	노동자(당연적용) / 자영업자(임의적용) ※ 주별로 상이
재 원	○사업주 : 부담 ○노동자 : 없음 ○국 가 : 일부지원	○사업주 : 부담 ○노동자 : 없음 ○국 가 : 없음	○사업주 : 부담 ○노동자 : 없음 ○국 가 : 사회보장제정의 부족을 막기 위해 일반국민 대상 조세형식의 기여금 (CSG,CRDS) 징수	○사업주 : 전액부담 (대부분) ○노동자 : 일부부담 (일부 주) ○국 가 : 없음
요율결정 방식	업종별 메리트율	업종별 메리트율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집단/혼합/개별요율 적용	업종별 메리트율

## ◇ 주요 국가 산재보험 급여현황 비교

구 분	일 본	독 일	프랑스	미 국
요양급여	요양비 전액	좌 동	좌 동	좌 동
휴업급여	· 소득의 60%(3일 이상 요양시) · 특별지급금 20%	· 소득의 80% (재해발생 전 순소득을 초과하지 못함)	· 근로중단 익일~28일 기준 임금의 60% · 근로중단 29일~ 치료종료 시점: 기준임금의 80%	· 평균임금의 66.6% (3~7일 이상 요양시)
장해급여	· 연금 (연금의무화: 1~7급) - 1급: 평균임금의 313일 - 7급: 평균임금의 131일 · 특별연금 - 1급: 산정기초일액의 313일 · 특별지급금 (342~159만엔)	· 연금 - 소득활동능력 100% 감소: 연소득의 2/3 - 소득활동능력 일부 감소: 차등 지급	· 연금 - '장해율(10% 이상)의 등급에 따른 비율'에 연간 총임금을 곱하되 약간의 조정을 거쳐 연간 연금액 계산 - 장해율 10% 이상 50% 미만: 비율을 2로 나눈 후 연간 총임금을 곱함 - 장해율 50% 이상: 50% 까지는 비율을 2로 나눈 후 나머지 초과비율에 대해서는 1.5를 곱하여 비율을 계산함	· 연금 - 완전장해: 연소득의 66.6% - 부분장해: 노동능력상실도에 따라 차등지급
	· 일시금 - 8급: 503일 - 14급: 56일 (1~7급 일시금 없음) · 특별일시금 - 8급: 산정기초일액의 503일 · 특별지급금(65~8만엔)	· 일시금 - 소득능력상실도 40% 미만 일 경우 신청에 의해 가능 - 소득능력상실도 40% 이상 일 경우 신청에 의해 10년간 연금에 대한 일시금만 가능	· 일시금(장해율 10% 미만) - 장해율 1%: 411.12€ - 장해율 9%: 4,110.05€	· 일시금: 없음
간병급여	· 개호비 - 상시개호: 57,030 ~ 104,950엔 - 수시개호: 28,520 ~ 52,480엔	· 근로자 상해종류, 건강상태, 필요범위 등을 고려하여 연금 형식으로 차등 지급 - 319~1,374€(월)	산재보험법 내 간병급여 규정하지 않으며, 영구장해 산재근로자 대상 장애인복지제도 내에서 가사지원서비스 제공함	
유족급여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을 경우> · 연금: 평균임금의 153일 ~ 245일 (유족수에 따라) · 특별연금: 산정기초일액의 153일~245일(유족수에 따라) · 특별지급금: 300만엔	· 연금이 원칙, 일시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 배우자/자녀/부모연금으로 구성되며 모두 합산하여 사망노동자 연간 근로소득의 80% 초과 불가 · 배우자: 수급권자 노동능력/연령/부양가족수에 따라 사망노동자 연간 근로소득의 30~40% · 자녀: 자녀 수 및 부모생존 여부에 따라 자녀 1인당 20~30% · 부모: 양친 생존 시 사망노동자 소득의 30%, 편친이 생존하는 경우 20%	· 연금(일시금 없음) - 배우자/동거인/연대민사계약(PACS) 대상자: 사망노동자 임금의 40% - 자녀: 자녀 수 및 부모생존 여부에 따라 자녀 1인당 20~30% - 부모: 사망노동자 임금의 10%	· 연금(일시금 없음) - 배우자: 사망노동자 소득의 35~70% (자녀가 있으면 60~80%)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경우> · 일시금: 평균임금의 1,000일 · 특별일시금: 산정기초일액의 1,000일분 · 특별지급금: 300만엔			
장의비	· '평균임금의 60일분'과 '평균임금의 30일분 + 315,000엔' 중 높은 것	· 노동자 사망시점의 표준소득의 1/7	1,609€ 상한액	·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액은 주별로 다름

## 10 (구)한국산재의료원 연혁

◇ '10.4.28.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 1976.12.12 근로복지공사법 공포(법률 제2913호)
- 1977. 2.15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8446호)
- 1977. 6. 2 근로복지공사 설립 등기완료(자본금 10억원), 장성병원 인수, 운영
- 1978. 7.22 규폐센터 설치, 운영
- 1979. 7. 4 산업재활원 인수, 운영
- 1979.12.28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 제3209호, 자본금 200억원)
- 1979.11.27 창원병원 설치, 운영
- 1982.12.31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 제3625호, 자본금 1,000억원)
- 1983. 2.28 중앙병원 설치, 운영
- 1983. 5. 3 동해병원 설치, 운영
- 1984. 9. 7 진폐연구소 설치, 운영
- 1985. 5.21 반월병원 및 재활작업소 설치, 운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 1985. 5.24 순천병원 설치, 운영
- 1985. 6.13 화성요양원 설치, 운영
- 1987.12.15 재활훈련센터 설치, 운영
- 1988.11.30 정선병원 설치, 운영
- 1988.10.13 장성 규폐센터 증·개축
- 1989. 4.13 직업병연구소 개설, 운영
- 1990.12.20 재활훈련센터 산업재활원과 통합
- 1991. 1.14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 제4333호, 자본금 2,000억원)
- 1991. 7.23 대전중앙병원 설치, 운영(대전보장구센터 설치)
- 1992. 1. 1 직업병연구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이관
- 1992.11.27 광주재활훈련원 및 반월재활작업소 부설 안산자립작업장 설치, 운영
- 1993. 1. 1 반월재활작업소를 안산재활훈련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1994. 2. 7 반월병원을 안산중앙병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1994. 8.31 대전보장구센터를 재활공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 1995. 4. 7 (재)산재의료관리원 설립(출연자산 117억원)
- 1996. 2. 1 산업재활원을 중앙병원으로 통합
- 1996.10. 1 화성요양원을 경기요양병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1996.12.3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본재산 430억원 추가 출연
- 1997. 1. 1 장성병원을 태백중앙병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1997. 3. 1 재활훈련원(안산, 광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 2001. 2. 1 중앙병원을 인천중앙병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02. 2.21 재활공학연구센터를 재활공학연구소로 기관명칭 변경
- 2004. 9.15 동해병원 증축
- 2006. 4. 3 안산중앙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설립
- 2006. 6.21 인천중앙병원 재활전문센터 개소
- 2006.10.31 대전중앙병원 재활전문센터 개소
- 2007. 7.23 창원병원 재활전문센터 개소
- 2007. 8.14 인천중앙병원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병동 설치
- 2007.10.22 경기케어센터 개소
- 2007.12.20 안산중앙병원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병동 설치
- 2008. 4.15 강원케어센터 개소
- 2008.10.13 안산중앙병원 재활전문센터 개소
- 2008.10.30 순천병원 재활전문센터 개소
- 2009. 8.26 태백중앙병원 재활전문센터 개소
- 2009.10.28 동해병원 재활전문센터 개소
- 2010. 4.28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 11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콜센터) 소재지 및 전화번호

기관명	소재지	전 화	FAX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19층(충무로3가)	02-2230-9789	0502-223-1201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10층(대치동)	02-3459-7182	0502-345-1103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4층(신천동)	02-3433-1370	0502-343-1100
서울서부지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8~12층(신수동)	02-2077-0150	0502-207-1101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영등포동2가)	02-2165-3100	0502-216-1101
서울북부지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6층(상봉1동)	02-944-8222	0502-844-1101
서울관악지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5층,10층,11층	02-2109-2320	0502-210-1101
의정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금오동)	031-828-3184	0502-828-1100
남양주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신지금로16번길 43 7층	031-524-7010	0502-828-1105
춘천시사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7층(석사동)	033-240-6182	0502-301-1102
강릉지사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3층(포남동)	033-640-9141	0502-330-1100
원주지사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무실동)	033-749-2315	0502-340-1100
서울서초지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16층(서초동)	02-6250-7203	0502-217-1100
서울성동지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4층(성수동2가)	02-460-3541	0502-460-1100
태백지사	강원 태백시 황지로 181, 3층(황지동)	033-550-0585	0502-311-1101
영월지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30, KT 빌딩 3층	033-371-6120	0502-371-1100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1층(영등포동2가)	02-2280-2616	0502-287-7777
부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4~9층(초량3동)	051-661-0104	0502-661-1101

기관명	소재지	전 화	FAX
부산동부지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 3층(부곡동)	051-550-3262	0502-550-1101
부산북부지사	부산 북구 기찰로 12, 6~7층(덕천동, 이수빌딩)	051-320-8150	0502-318-1101
창 원 지 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3층(신월동)	055-268-0103	0502-268-1100
울 산 지 사	울산 남구 문수로 330, 3층(옥동)	052-226-4251	0502-226-1100
양 산 지 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석산리)	055-380-8466	0502-380-1101
진 주 지 사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8층(칠암동)	055-760-0153	0502-760-1100
통 영 지 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6,7층	055-640-7106	0502-640-1100
부산중부지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2층(부전동)	051-801-4165	0502-801-1100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4, 7층(초량동)	051-469-2079	0502-005-3113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9층(삼덕동2가)	053-601-7205	0502-601-1100
대구북부지사	대구 북구 원대로 130, 3~4층(침산동, 화성파크드림갤러리)	053-607-4510	0502-607-1100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 8~9층(두류동, 감삼빌딩)	053-609-5315	0502-609-1100
포 향 지 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1~3층(대잠동)	054-288-5220	0502-288-1106
구 미 지 사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송정동)	054-479-9181	0502-479-1100
경 산 지 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7층(중방동)	053-819-2111	0502-819-1100
영 주 지 사	경북 영주시 대학로 13, 9층(휴천동)	054-639-0140	0502-639-1100
안 동 지 사	경북 안동시 경동로 841, 2층(용상동)	054-850-5440	0502-850-1100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0, 12층(대명동)	053-601-7151	0502-011-1313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9층(구월동)	032-451-9112	0502-451-1101
인천북부지사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4층(구산동)	032-540-4521	0502-540-1100





기관명	소재지	전 화	FAX
수 원 지 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4층(정자동)	031-231-4210	0502-231-1100
화 성 지 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8,9층	031-547-4777	0502-231-1103
용 인 지 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마북동 360-9) 1층)	031-547-3710	0502-719-1103
평 택 지 사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7,8,9층(서정동)	031-669-8680	0502-669-1101
부 천 지 사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4, 7층 (상동)	032-650-0357	0502-650-1100
안 양 지 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9층(안양동)	031-463-0568	0502-463-1101
안 산 지 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3층(본오동)	031-481-4119	0502-481-1100
고 양 지 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4층(마두동)	031-931-0910	0502-810-1100
성 남 지 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4, 대덕프라자 2차 4~6층(도촌동)	031-720-1240	0502-719-1100
경인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3층(구산동)	032-540-4911	0502-110-3355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9층(양동)	062-608-0314	0502-608-1100
전 주 지 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5층(인후동1가)	063-240-8113	0502-600-1101
익 산 지 사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어양동)	063-839-0131	0502-839-1100
군 산 지 사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1~3층(장미동)	063-450-0112	0502-450-1100
목 포 지 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5층(호남동)	061-240-0140	0502-240-1100
여 수 지 사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5,(문수동)	061-680-0150	0502-680-1100

기관명	소재지	전 화	FAX
제 주 지 사	제주 연신로 14, 2층(이도이동)	064-754-6750	0502-710-1100
광 산 지 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 10층 (우산동)	062-608-0404	0502-702-1102
순 천 지 사	전남 순천시 조례1길 10-27, 1층 (조례동)	061-805-0220	0502-680-4100
광주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	광주 북구 삼소로 141, 1층(대촌동)	062-975-0500	0502-163-8116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8층(둔산동)	042-870-9201	0502-870-1101
청 주 지 사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6번길 21, (내덕동)	043-229-5090	0502-229-1101
천 안 지 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7,8층 (불당동)	041-629-5171	0502-629-1101
충 주 지 사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34(봉방동)	043-840-0342	0502-840-1101
보 령 지 사	충남 보령시 한내로 27, 1~3층(동대동)	041-939-2256	0502-849-1100
유 성 지 사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8층(반석동)	042-820-5447	0502-820-1100
대전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9층(둔산동)	042-870-9581	0502-163-9911
인 재 개 발 원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043-539-5507	0502-640-1206
근로복지연구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 (영등포동2가)	02-2670-0467	0502-267-0430
콜 센 터	광주 북구 삼소로 141, 1층(대촌동)	062-975-0551	0502-210-1205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병원, 연구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기 관 명	소재지	전화	F A X
인 천 병 원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6(구산동)	032-5000-114	032-518-0549
안 산 병 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031-5001-114	031-506-8001
창 원 병 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055-2807-777	055-282-5681
대 구 병 원	대구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	053-7157-575	053-715-7722
순 천 병 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061-7207-114	061-721-2713
대 전 병 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285-3)	042-6705-114	042-631-8250
태 백 병 원	강원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033-5803-114	033-581-8547
동 해 병 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	033-5303-100	033-532-3136
정 선 병 원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	033-5607-100	033-562-8110
경 기 요 양 병 원	경기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033-351-3083	031-351-3086
재 활 공 학 연구 소	인천 부평구 경인로10번길 26, (구산동)	032-509-5300	032-512-9794
직 업 환 경 연구 원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본관 2층 (구산동)	032-540-4961	032-540-4997

## 산재보험사업연보

발행일 | 2020년 8월 31일

발행 | 고용노동부

제작·편집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인쇄 | 열림기획(주)  
044-868-5055